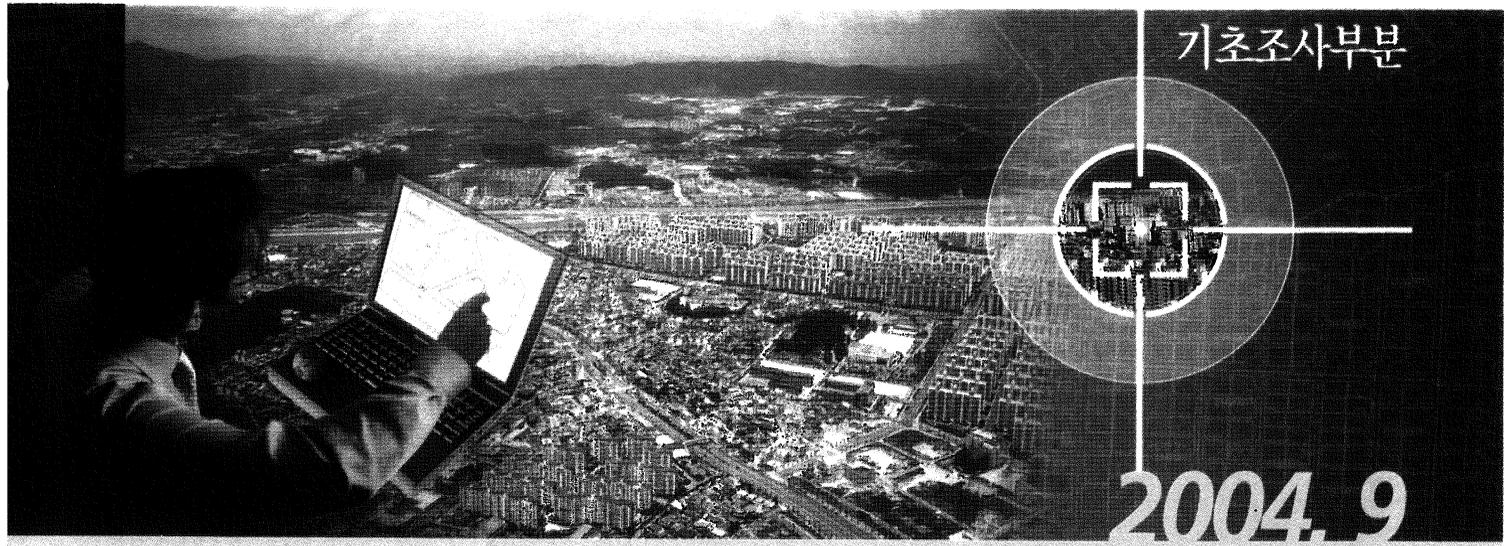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설정 지침서

기초조사부분



조사원 참고사항

본 지침서 중 조사원은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지역을 참고 하여 교육 및 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은 부록 “5. 새주소지도 활용지역 현황” 참조)

- ▶ 새주소 있는 지역 | 공통사항(6~7쪽) 및 해당 지역(8~20쪽) 참조
- ▶ 새주소 없는 지역 | 공통사항(6~7쪽) 및 해당 지역(21~23쪽) 참조
- 면 지역 | 공통사항(6~7쪽) 및 해당 지역(24~27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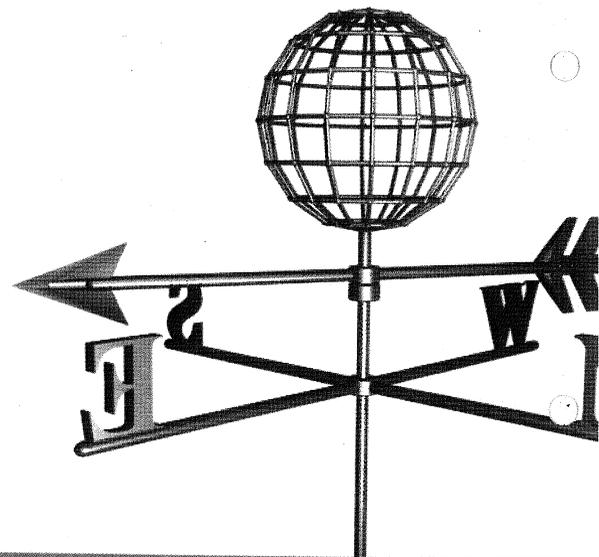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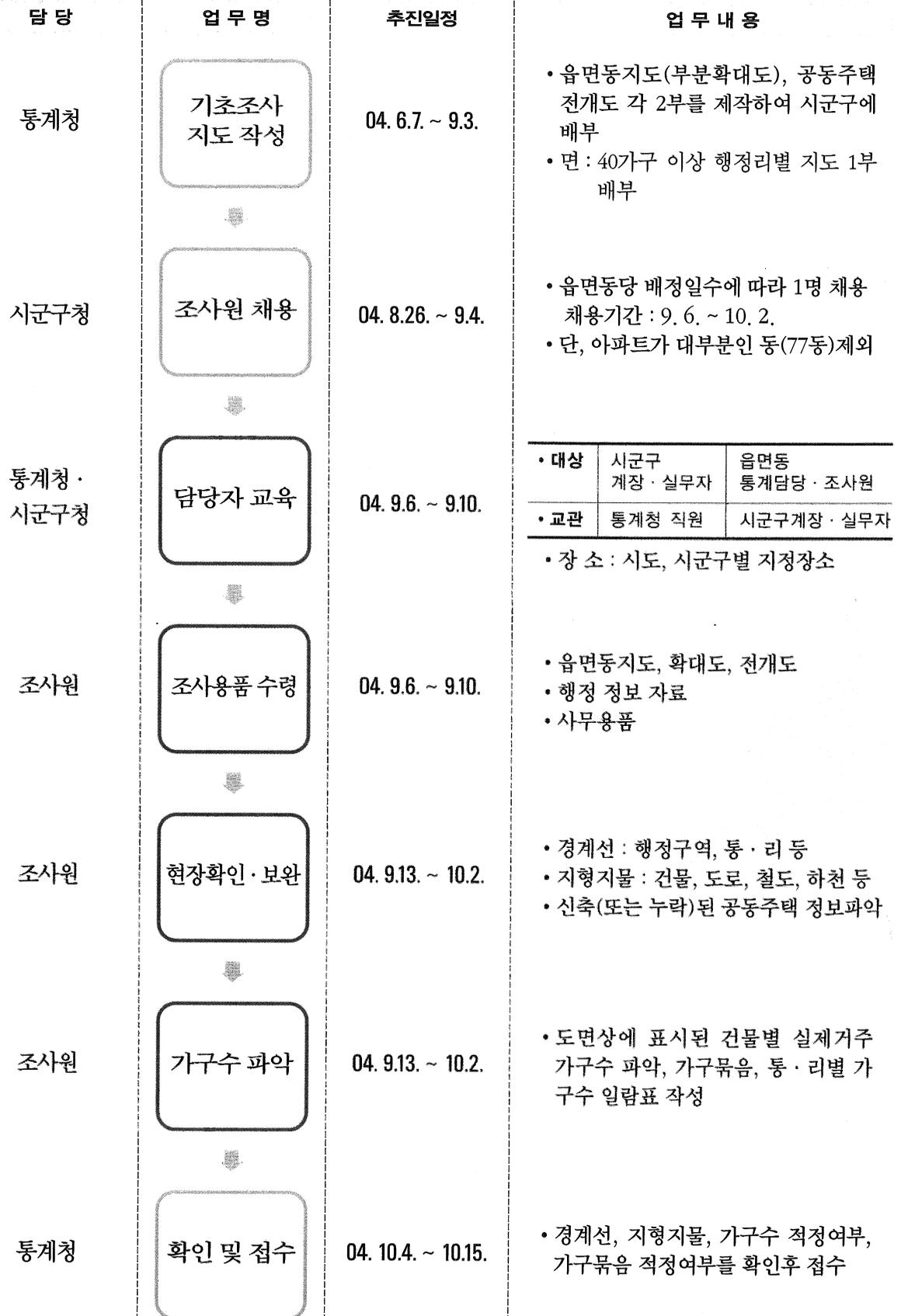
2005 인구주택총조사 / 조사구설정 지침서 / 기초조사 부분

I	기초조사 업무흐름도	01
II	기초조사 조사원 수행사항	03
III	기초조사 요령	05
	1. 기초조사 공통사항	06
	2. 기초조사 방법(읍·동지역)	08
	3. 기초조사 방법(면지역)	24
IV	행정사항	28
V	부 록	35
	1. 거처와 가구의 구분 및 개념	36
	2. 조사구의 종류	39
	3. 기초조사시 파악해야 할 시설지역	43
	4. 주요 질의사항	45
	5. 새주소 지도 활용 지역 현황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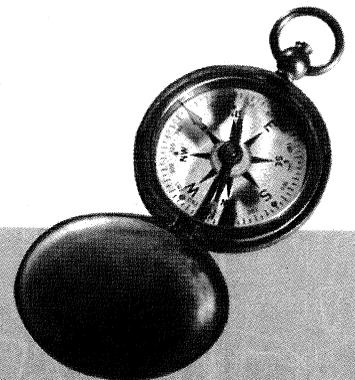
I 기초조사 업무 흐름도



I. 기초조사 업무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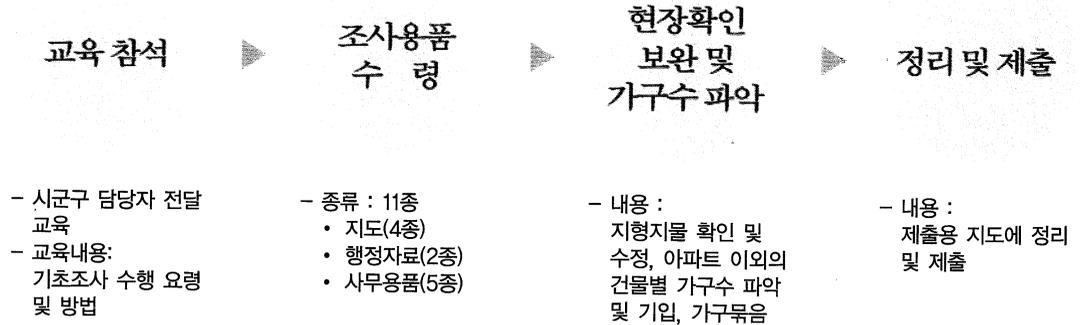


II 기초조사 조사원 수행사항



II. 기초조사 조사원 수행사항

1. 수행 절차



2. 수행 사항

교육 참석

- 장소 : 시·군·구청 지정장소
- 교육내용 : 기초조사 지침서 교육
 - 기초조사 업무중 조사원 수행사항 중점 교육

기초조사 용품 수령

- 수령 일시 : 기초조사 교육 후
 - 기초조사 지도 : 읍면동지도(기본도), 부분확대도, 공동주택전개도 각 2부(1부는「제출용」, 1부는「보관용」), 리별지도(면지역) 1부(2003년 현지확인 지도는 참고용임)

- * 읍면동지도란 : 읍면동 지역 특성(면적)에 따라 전지(A0) 1매 또는 2매이상으로 제작되어 있음
- * 부분확대도란 : 읍면동지도상 건물이 밀집되어 식별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별도로 확대하여 제작한 지도(A0)
- * 공동주택전개도란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정면에서 바라본 모양을 층수, 호수, 출입구수 등이 나타나도록 작성한 지도(A0)

- 행정자료 : 건축물관리대장(신축 및 증·개축 건물), 기숙시설·특수사회시설·관광호텔 명부
- 사무용품 : 연필, 지우개, 3색볼펜(적색, 청색, 흑색), 자, 종이테이프

III 기초조사 요령

1. 기초조사 공통사항	06
2. 기초조사 방법(읍·동지역)	08
- 새주소 있는 지역 기초조사	09
- 새주소 없는 지역 기초조사	21
3. 기초조사 방법(면지역)	25



1. 기초조사 공통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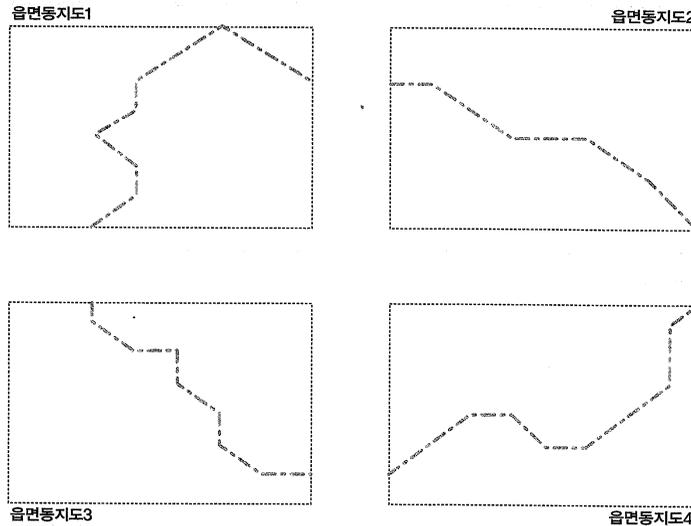
준비사항

- ❶ 조사 용품을 아래와 같이 준비합니다.
 - 읍면동지도, 부분확대도, 공동주택전개도, 리별지도(면지역)
 - 연필, 지우개, 3색볼펜(적색, 청색, 흑색), 자, 종이테이프
 - 건축물관리대장, 시설 및 관광호텔 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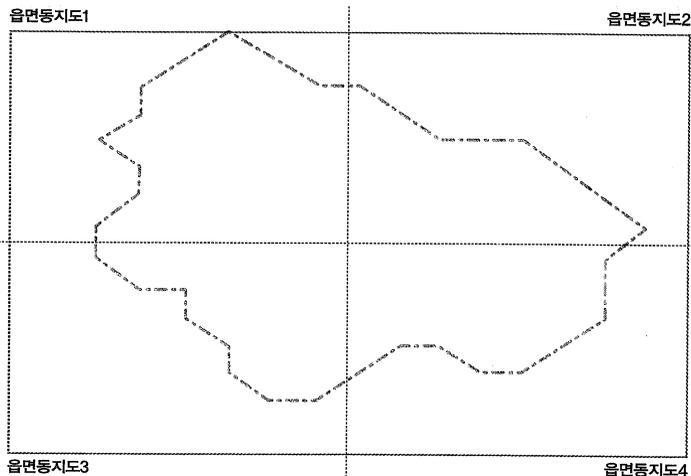
읍면동지도의 접합

- ❶ 도시 중심지역 등은 면적이 좁아 읍면동지도가 대부분 전지(A0) 1매로 되어 있습니다
- ❷ 면적이 넓은 지역은 전지(A0) 2매 이상 배부하였으므로 지도의 가장자리 여백을 절단하고 뒷면에 종이테이프로 부착한 후 읍면동 경계선을 확인합니다(제출용 1부만 접합)

[그림1] 출력·배부된 읍면동지도



[그림2] 읍면동지도 접합 예시



일반적인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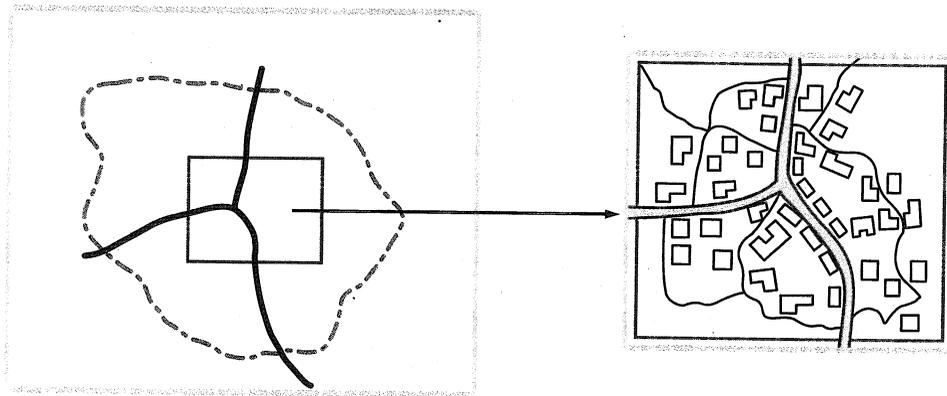
- ❶ 읍면동지도 수정·보완 색상은 반드시 지정된 색상과 기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수정·보완 담당자만 알 수 있는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읍면동지도 표시 및 수정·보완 색상]

확인·보완사항	색 상	
	확 인	수정·보완
행정구역 경계	시 도 : 적 색 (< · > -) 시군구 : 진보라색 (- - - -) 읍면동 : 연보라색 (- · -)	적 색
통·리 경계	주황색 (■)	청 색 (- ○ - ○ -)
지형지물	종류별로 다양(범례 참조)	적 색
공동주택전개도	번호, 건물모양 : 청색 공동주택명, 동명 : 흑색	적 색
가구수기입(가구묶음)	-	연 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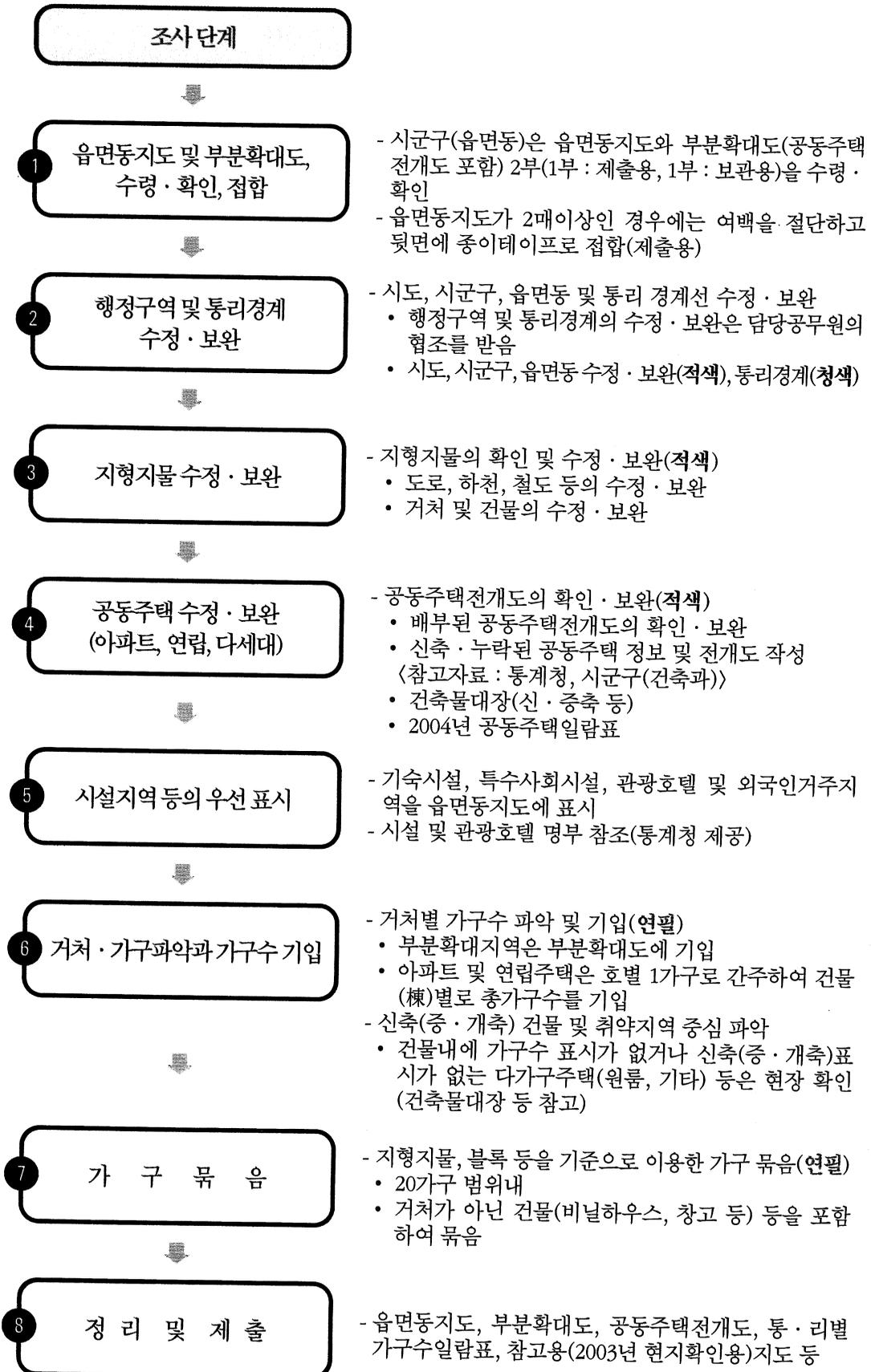
- 2 건물밀집지역에 대하여 부분확대도를 별도 제작한 지역은 수정·보완 사항을 반드시 부분확대도에 표시해야 합니다(읍면동지도에는 표기 안함)

[그림3] 건물 밀집지역의 부분확대도 작성 예시



- 3 지형지물(도로, 하천, 철도, 건물)의 수정·보완은 지도에 출력된 지형지물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읍면동지도상에 표시된 지형지물이 출력축척에 비해 너무 작거나 크게 표시해서는 안됩니다
- 4 읍면동지도에 지형지물이 너무 작게 출력되어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군구(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역도”를 참조하여 보완합니다(별지 사용 가능)
- 5 읍면동지도, 부분확대도, 공동주택전개도 작업시 습기, 물(음료수), 커피 등에 의해 색상이 번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2. 기초조사 방법(읍·동지역)



새주소 있는 지역 기초조사

* 새주소지도와
* 수치지형도
비교

- 1 몇 년전에 제작한 새주소 지도는 최근 신축 또는 철거된 지형지물(도로, 하천, 철도, 건물)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수치지형도(2003년 기초단위구 현지 확인용 지도)를 비교하여 누락 또는 철거된 지형지물(도로, 하천, 철도, 건물)을 새주소 지도에 옮겨 표시합니다
- 2 수정·보완된 새주소 지도를 이용하여 현지조사에 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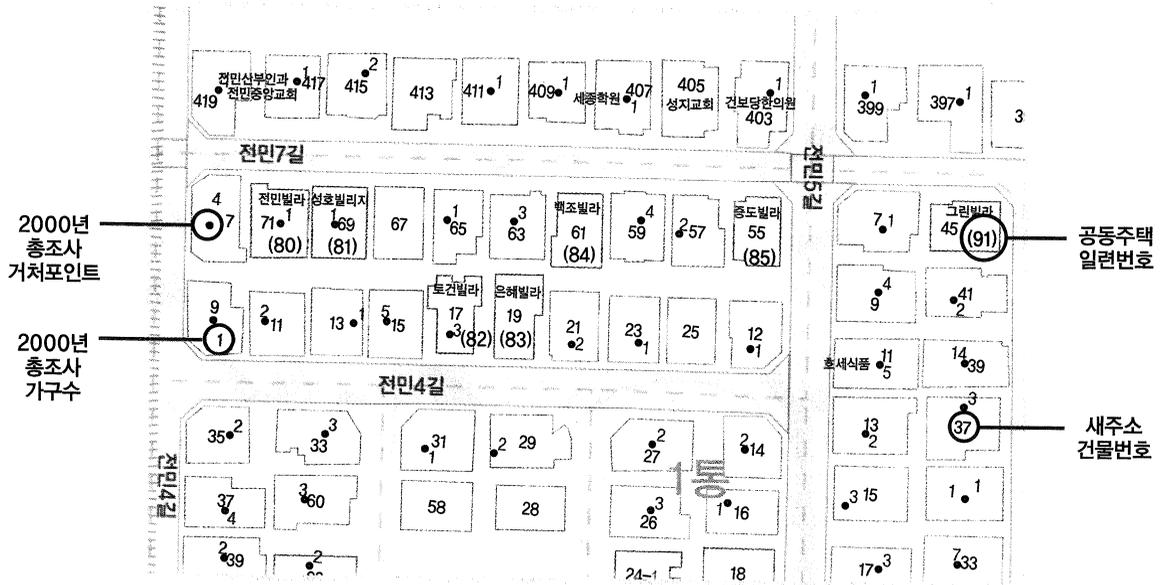
*** 새주소 지도란?**
읍면동지도상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표시된 지도를 말하며, 새주소작업이 완료된 지역은 새주소지도를 활용

*** 수치지형도(Digital map)란?**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모든 속성에 대해 좌표값(경·위도)을 가지고 있으며, 전산으로 수정·보완이 가능하며, 새주소 없는 지역에서 사용
⇒ 담당 읍면동이 새주소 지역인지 수치지형도 지역인지 구분은 읍면동지도의 확인표 좌측 상단에 “○” 표시되어 있음

1 읍면동지도
표시내용

- 1 새주소 지도를 활용한 지역의 읍면동지도에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적색)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2 아파트, 학교, 빌딩 등의 집합건물은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하여 표시되어 있습니다(건물용도에 따른 색상은 미구분)
- 3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시 조사된 거처는 건물내에 점(point)으로 표시하였고, 그 당시 가구수를 녹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4 공동주택 일련번호는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아파트는 단지번호가 추가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 5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변동된 건물(신축, 증·개축)은 읍면동지도에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림 4] 새주소 활용지역의 읍면동지도 출력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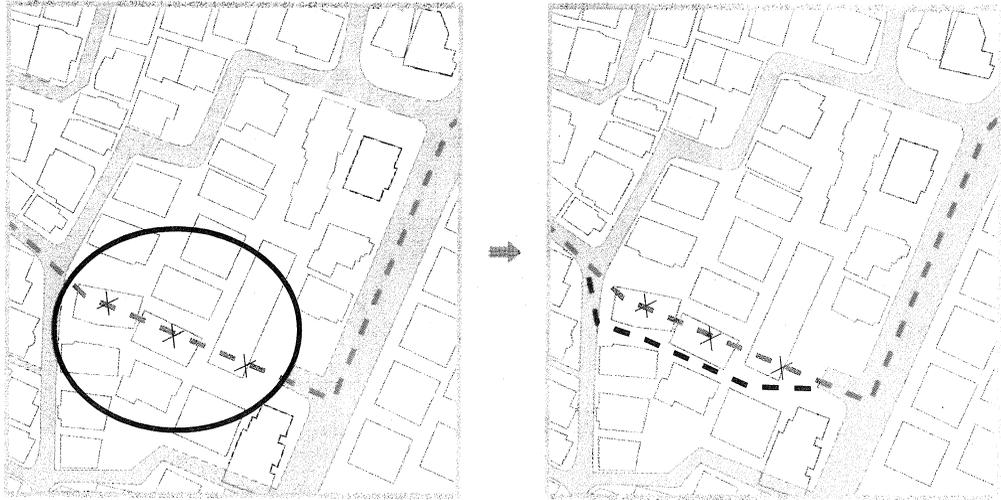
2 행정구역
경계

* 행정구역 경계란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계를 말합니다
 ⇒ 행정구역 경계는 담당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수정·보완합니다

- 1 행정구역 경계가 시군구 경계와 읍면동 경계가 일치할 경우 시군구 경계선 (----)으로 표시합니다.
 -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계가 일치할 경우 → 시도 경계선(—·—)으로 표시
- 2 행정구역 경계는 반드시 인접지역과 일치해야 하므로 서로 확인하되 불일치할 경우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여 처리합니다.
- 3 하나의 건물이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중첩되거나 어느 읍면동에도 포함되지 않아 서는 안됩니다.
- 4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접 읍면동(시군구)과 상호 확인하여 수정·보완 합니다.
 - 읍면동(시군구) 경계선이 없거나 끊어져 있는 경우
 - 경계선이 주택 밀집지역 중심부를 지나는 경우

※ 행정구역 경계가 건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과세대장 등을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에 포함합니다.

[그림 5] 건물에 걸쳐 있는 행정구역 경계의 수정·보완 예



⑥ 행정구역 경계가 변경된 지역은 적색으로 「××」표시하고 변경된 경계선을 적색으로 수정·보완합니다.

[그림 6] 변경된 행정구역 경계의 수정·보완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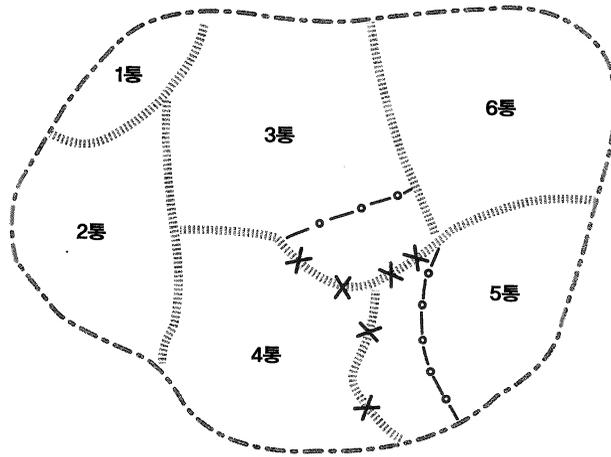


3 행정통·리
경계

* 행정통·리 경계는 담당공무원 또는 통장·이장의 협조를 받아 수정·보완합니다

- 1 읍면동지도상에 행정 통·리 경계기호와 명칭은 주황색으로 나타나 있으며 통·리 경계기호는 「|||||」와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2 행정 통·리경계와 명칭은 일일이 확인하여 잘못된 경계선은 청색으로 「××」 표시하고 올바른 경계선을 「-○-○-」 기호로 수정해야 합니다.
 - 특히, 산간지역의 행정 통·리경계가 산능선인 경우 정확하게 표시 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수정해야 합니다

[그림 7] 행정 통·리경계의 수정·보완 예



- 3 행정 통·리경계는 변동이 잦으므로 철저히 확인하여 정확한 경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4 지형지물
확인·보완

* 지형지물이란 도로, 하천, 철도, 건물, 능선 등 인공물 및 자연물을 말하며, 수정·보완은 모두 적색으로 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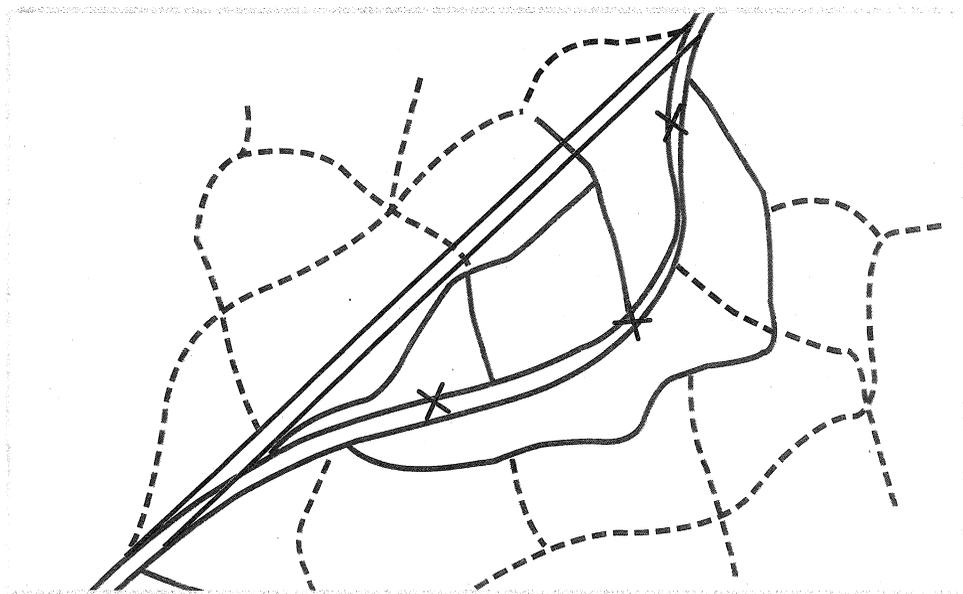
- 도로, 하천, 건물, 주요명칭 등을 확인하여 읍면동지도에 수정·보완합니다
 - 건축물대장을 이용하여 2000년 총조사(2000년 11월)이후 변동된 건물 현황을 파악합니다
 - 지형지물이 현재와 불일치하는 경우 적색으로 수정·보완합니다

- 수정보완은 반드시 읍면동지도의 범례에 있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 지형지물의 크기는 지도에 출력된 지형지물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표시합니다
- 관공서, 병원, 공원, 학교, 교회 등의 주요건물명칭을 확인·보완합니다

-도로

- 1 신설, 확장 또는 누락 등으로 추가 보완할 때는 축척비율과 실제 위치에 맞게 지정된 기호를 이용하여 지도에 적색으로 표기하고, 철거·폐쇄 등으로 삭제할 때는 해당위치에 적색으로 「×」표시합니다
 - 특히, 도면에 출력된 도로와 실제 도로폭의 비율이 일치하도록 보완합니다
- 2 소로(골목길 등)는 읍면동지도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빠짐 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 도로폭 3m 이상 : 두줄로 표시 (==), 3m 미만 : 점선으로 표시(-----)
 - 특히, 주택 밀집지역, 미개발지역의 골목길, 소로 누락에 주의합니다

[그림 8] 도로의 수정·보완 예



-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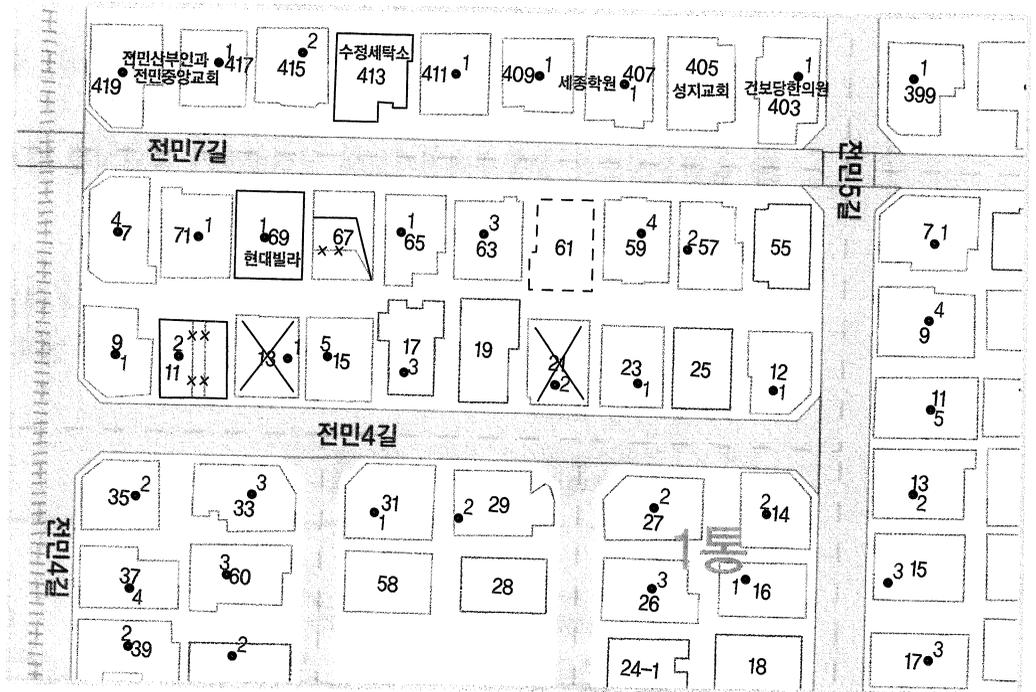
- 1 수로변경, 복개천 등 하천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보완하고 청색으로 수계를 표시합니다

-건물

- 1 읍면동 지도상에 표기되어 있는 건물을 일일이 확인하여 빠짐없이 수정·보완합니다
 - 기존의 건물이 헐리고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적색으로 「×」 표시 한 후, 신축 건물(거처)를 형태 및 축척에 비례하도록 알맞게 표시합니다
- 2 철거, 증·개축 건물과 신축·누락 등으로 보완하여야 할 건물은 「그림 9」를 참조하여 표시합니다

- 지도상에는 창고, 외양간 등의 부속건물이 모두 나타나 있으므로 건물 확인시 유의해야 하며, 부속건물은 추가적으로 보완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 신축중인 건물은  로 표시합니다
- 빈집은 「×」 표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림 9] 건물의 수정·보완 예



(주요명칭)

- 1 관공서, 학교, 공원, 교회, 사찰, ○○빌딩 등 주요건물의 명칭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적색으로 보완합니다
- 단, 음식점, 도·소매업 등 소규모업체의 명칭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5 기타지형지물

- 1 상기 이외의 지형지물 수정·보완은 읍면동지도 범례에 표시되어 있는 지정기호를 사용하여 적색으로 보완합니다

⑥ 공동주택

- ❶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동(棟)별로 층수, 호수, 출입구 형태 등을 확인하여 잘못 표시되어 있는 공동주택전개도는 적색으로 수정·보완합니다
- ❷ 다가구주택 등 단독주택이 전개도에 표시된 경우에는 전개도에 “다가구주택” 또는 “단독주택” 이라 기입하고 「×」로 삭제 표시합니다
(36~37쪽. 주택의 종류 참조)
- ❸ 공동주택의 신축·누락과 유형구분(아파트, 연립, 다세대)시에는 아래 자료를 활용합니다
 - 신·중축 건축물대장 명부(통계청 제공)
 - 2004년 공동주택일람표(통계청 제공)
 - 건축물관리대장(전산입력자료 : 시·군·구청(건축과) 제공)
- ❹ 읍면동지도와 공동주택전개도의 일련번호가 불일치할 경우 읍면동지도의 일련번호를 기준으로 수정·보완합니다
- ❺ 공동주택전개도(연립, 다세대)에 아파트가 표시된 경우에는 “아파트”로 기입하고, 아파트 단지번호를 부여합니다(단지번호 부여는 29쪽. 공동주택 정보 파악 및 작성 참조)

[그림 10] 공동주택전개도 수정·보완 예

26동

(9) 기초연립

가동 ()

201	202	203	204	
201	202	203	204	
101	102	103	104	

< 2층 건물임(3층 없음) >

(10) 기초연립

나동 ()

401	402	403	404
301	302	303	304
201	202	203	204
101	102	103	104

< 3, 4호 라인 누락 >

(11) 통계주택

다가구 단독주택 ()

301	302	303
201	202	203
101	102	103

< “다가구 단독주택”이므로 삭제 >

(12)(14) 은혜빌라

()

304	303	302	301
204	203	202	201
104	103	102	101

< “읍면동지도”와 “공동주택전개도”의 일련번호가 불일치
→ “읍면동지도”를 기준으로 수정 >

(13-7)(13) 동건씨티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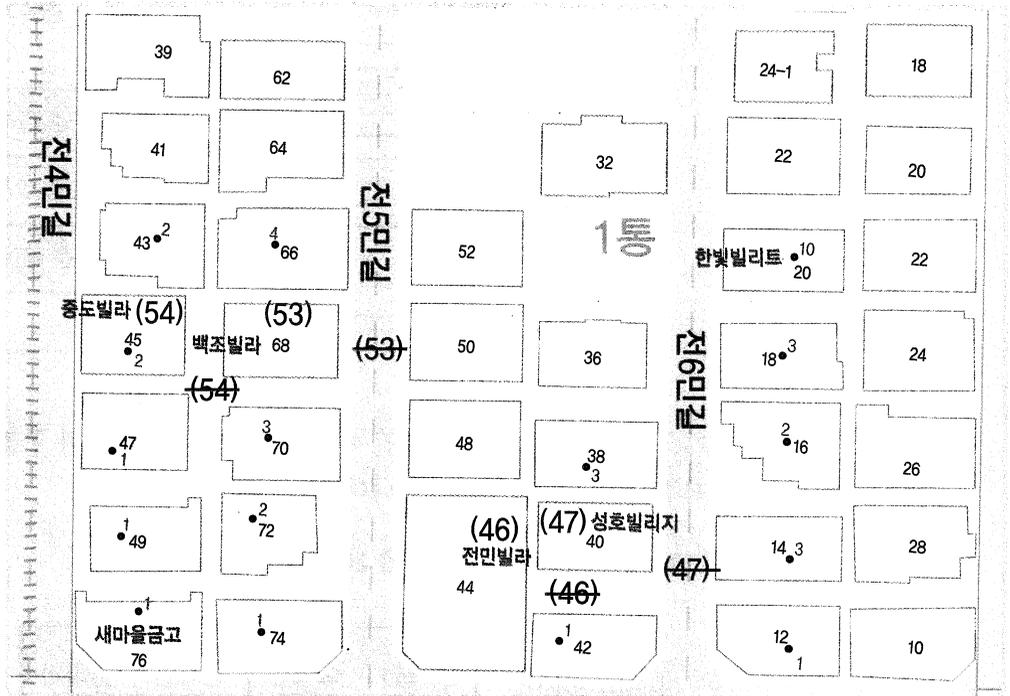
() 확인결과 “아파트”임

702	702
601	602
501	502
401	402
301	302
201	202
101	102

< 아파트 단지번호 >
* 연립, 다세대 주택은 단지번호 없음

- ⑥ 읍면동지도상의 공동주택일련번호가 해당 건물을 벗어나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여 일련번호를 수정·보완합니다

[그림 11] 읍면동지도의 공동주택일련번호 수정 예



- ⑦ 신축 또는 누락된 공동주택은 전개도의 여백이나 뒷면에 공동주택 정보를 수집하여 전개도를 작성합니다(29쪽. 공동주택 정보 파악 및 작성 참조)

- 신축 또는 누락으로 인해 새로이 작성한 공동주택전개도에 대해서는 “공동주택정보현황표” 상의 일련번호를 읍면동지도의 해당 건물에도 **적색**으로 기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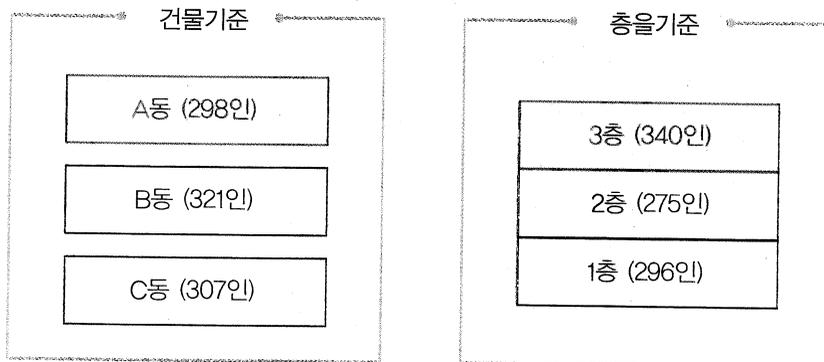
⑦ 시설지역

- ①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지역은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이외사항은 부록의 “3. 기초조사시 파악해야할 시설지역” 43~44쪽을 참조하여 우선 파악하고 읍면동지도에 표시합니다

- 통계청에서 배부한 **시설 및 관광호텔 명부**를 참조하여 읍면동지도에 **적색**으로 시설의 담장(울타리)을 표시하고 시설명칭을 기입합니다
 - 시설내에 거주(수용) 인원은 **연필**로 기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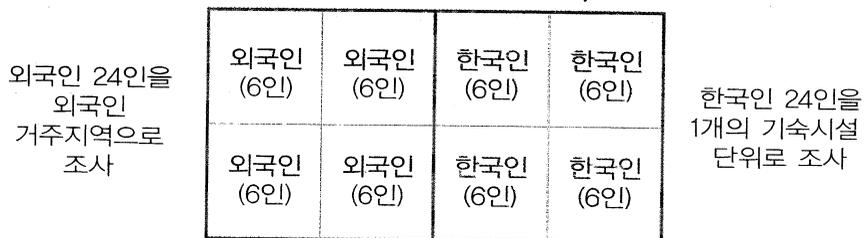
- 기숙시설 내에 거주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300인을 기준으로 동(棟), 층 또는 호·실 단위로 기숙시설을 아래 예시와 같이 읍면동지도에 작성합니다

[그림 12] 300인 이상인 기숙시설 작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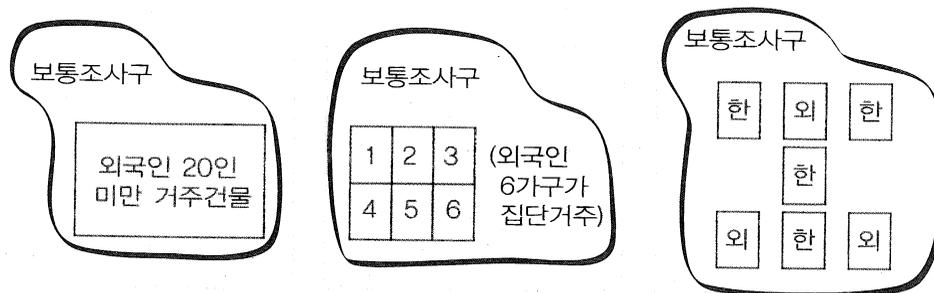
- 기숙시설내의 외국인이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내국인과 구분하여 별도의 외국인 거주지역으로 조사대상입니다

[그림 13] 기숙시설내에 외국인 20인 이상이 살고있는 경우



- 외국인이 20인 미만 또는 외국인 가구가 10가구 미만이거나 한국인 가구와 섞여서 거주하는 경우는 외국인거주지역 대상이 아닙니다

[그림 14] 기준미달인 외국인 조사구의 예시



⑧ 가구수 파악 기준

1 아파트·연립주택지역과 이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아파트·연립주택 지역>

- 별도로 가구수를 파악 하지 않고 호(戶)별 1가구로 간주합니다
(단, 2003년 10월 이후 신축 아파트·연립주택의 공동주택정보는 반드시 파악)

<아파트·연립주택 이외 지역>

- 지역특성 및 변동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읍·동》

- 변동 없는 건물 : 읍면동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수를 참고하고 별도 가구수 파악은 안함
- 단, 아래의 건물은 가구수 파악 실시
 - .. 2000년 총조사 당시 거주가구가 없었던 빈집, 상가, 공장, 빌딩 등
 - .. 단, 2000년 총조사 가구수와 편차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건물
- 변동 있는 건물 : 2000년 총조사 이후 신축·증개축 등에 의해 변동된 건물은 현장 방문하여 가구수 파악
- 새주소 지역은 지도상에 녹색으로 표시한 변동건물에 대해 가구수를 파악하되, 통계청에서 제공한 신·증축 건축물대장 명부를 참고합니다

⑨ 가구수 파악 및 기입

1 아파트, 연립주택은 가구수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호(戶)당 1가구로 간주하여 건물(棟)별로 전체 가구수를 기입합니다

2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2000년 총조사 이후 신축 및 증·개축된 건물(다가구 포함)을 중심으로 현장 방문하여 가구수를 철저히 파악합니다

- 통계청에서 배부한 읍면동별 건축물대장 명부를 활용하여 가구수를 파악합니다
- 지형지물 현장 확인·보완시 수정한 건물에 대해서도 가구수를 파악합니다
- 특히, 신축, 증·개축 표시(녹색)가 없는 다가구주택(원룸, 기타)은 2000년 총조사 가구수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가구수 표시가 없는 건물은 모두 현장 확인하여 가구수를 파악합니다

3 파악된 가구수를 읍면동지도상의 건물내에 연필로 기입합니다

- 가구수 파악 당시 비어 있는 주택은 “빈집”으로 표기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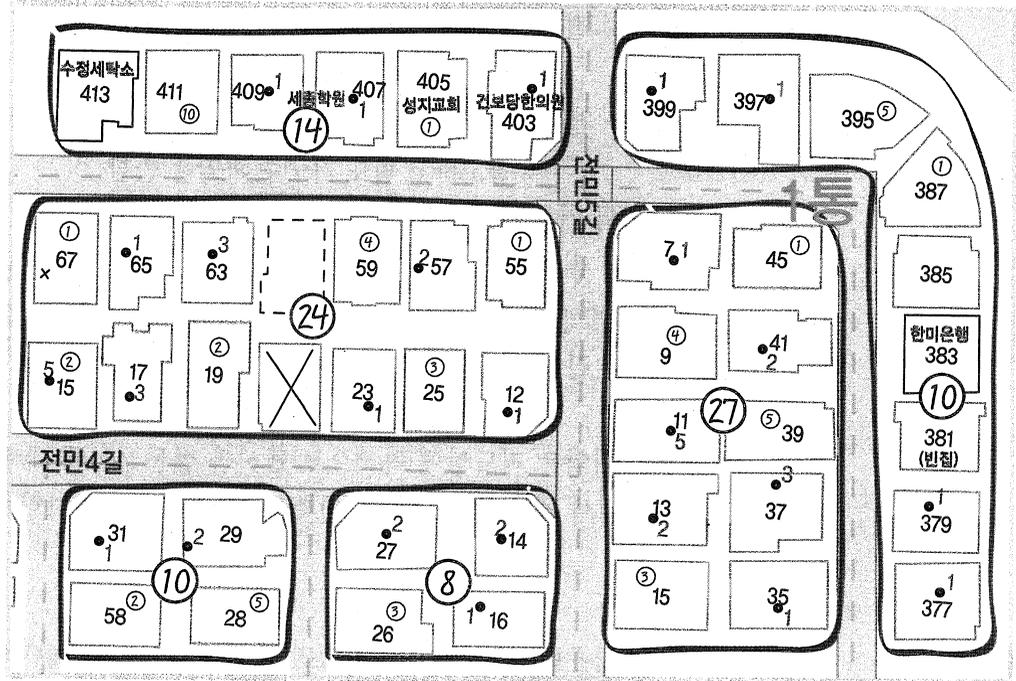
4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에 대한 조사는 통계청에서 배부한 읍면동별 “시설 및 관광호텔 명부”를 참고하여 파악합니다

- 관리인(또는 주인가구)가구는 별도로 가구수를 파악합니다
- 시설내에 거주(수용)인원은 인원수를 파악합니다

10 가구 묶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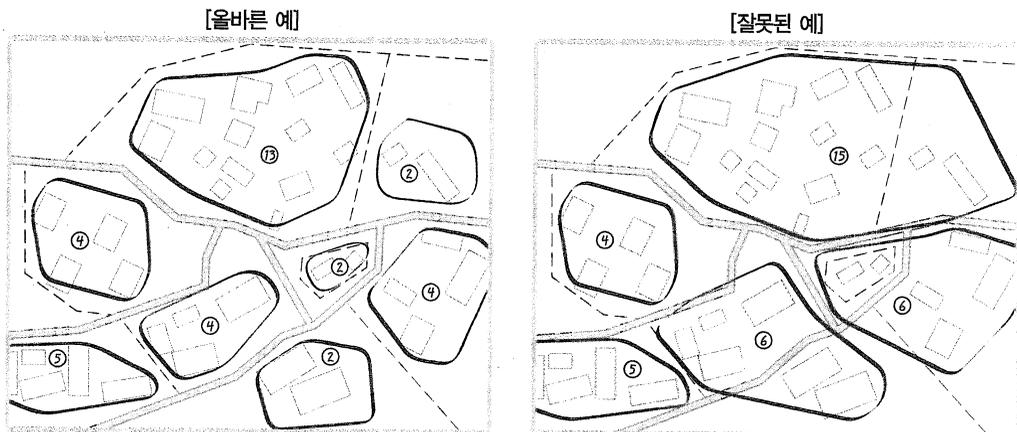
- 지형지물 및 블록 등을 기준으로 건물별 가구수를 묶어서 기입합니다
 - 가구수 기입과 가구묶음은 연필로 작성합니다

[그림 15] 일반주택의 가구수 기입 및 가구묶음 예



- 건물내에 가구수 기입이 곤란한 지역은 가구묶음으로 표시합니다
 - 기본도의 축척이 작아 건물내에 가구수 기입이 불가능한 경우 가구수 기입 대신 소로 등 식별이 가능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20가구 범위내에서 가구를 묶어 가구수를 ○안에 기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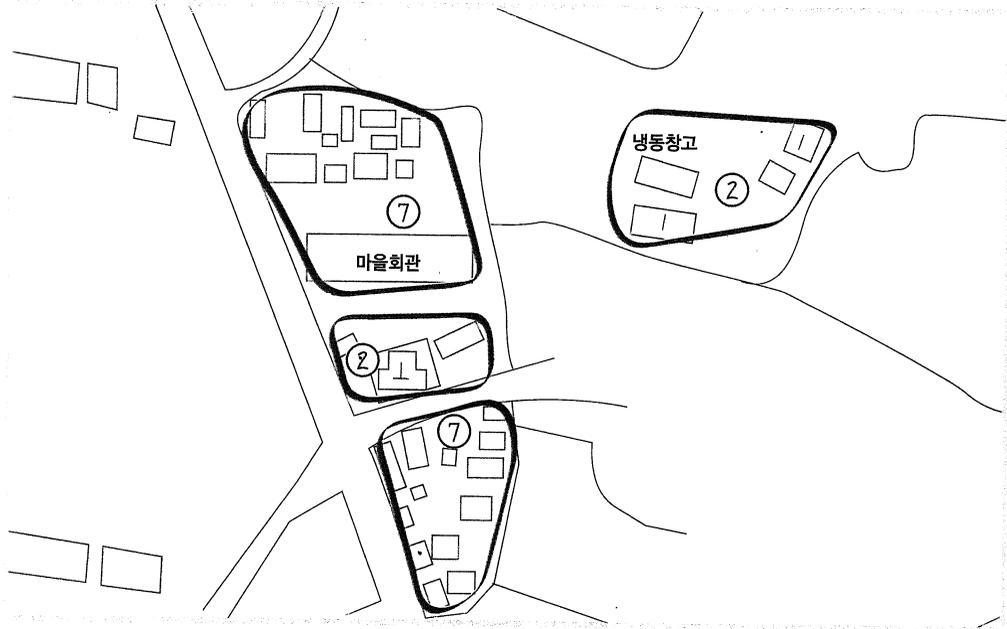
[그림 16] 건물내에 가구수 기입이 곤란한 지역의 가구묶음 예



* 도로 등 지형지물 기준으로 가구묶음을 하지 않은 경우

- ③ 읍면동 지도상에 표시된 건물은 거처가 아닌 건물(비닐하우스, 창고 등)이 모두 나타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도 모두 포함하여 가구목록을 해야 합니다

[그림 17] 거처가 아닌 건물이 포함된 가구목록 예



새주소 없는 지역 기초조사

1 읍면동지도 표시내용

- 1 건물용도에 따라 색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단독주택 : 청색, 아파트 : 적색, 연립·다세대 : 연두색, 상가 및 기타 : 분홍색
- 2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시 조사된 거처는 건물내에 점(point)으로 표시하였고, 그 당시 가구수를 녹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3 공동주택 일련번호는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아파트는 단지번호가 추가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 4 도로명 및 건물번호(적색)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5 아파트, 학교, 빌딩 등의 집합건물과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변동된 건물(신축, 증·개축)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림 18] 새주소 없는 지역의 읍면동지도 출력 상태



2 행정구역 경계

* 행정구역 경계란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계를 말합니다
⇒ 행정구역 경계는 담당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수정·보완합니다

- 이외는 새주소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를 참조합니다(10쪽 참조)

③ 행정통·리
경계

* 행정통·리 경계는 담당공무원 또는 통장·이장의 협조를 받아 수정·보완합니다

- 이외는 새주소 있는 지역의 행정통리 경계를 참조합니다(12쪽 참조)

④ 지형지물
확인·보완

* 지형지물이란 도로, 하천, 철도, 건물, 능선 등 인공물 및 자연물을 말하며, 수정·보완은 모두 적색으로 표시합니다

- 도로, 하천, 건물, 주요명칭 등을 확인하여 읍면동지도에 수정·보완합니다
 - 건축물대장을 이용하여 2000년 총조사(2000년 11월) 이후 변동된 건물 현황을 파악합니다
 - 지형지물이 현재와 불일치하는 경우 적색으로 수정·보완합니다
 - 수정보완은 반드시 읍면동지도의 범례에 있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 지형지물의 크기는 지도에 출력된 지형지물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표시합니다
 - 관공서, 병원, 공원, 학교, 교회 등의 주요건물명칭을 확인·보완합니다

- 도로
- 하천
- 건물

- 새주소 있는 지역의 도로, 하천, 건물을 참조합니다(13쪽 참조)

(주요명칭)

- 관공서, 학교, 공원, 교회, 사찰, ○○빌딩 등 주요건물의 명칭이 잘못 표기되었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적색으로 보완합니다
 - 단, 음식점, 도·소매업 등 소규모업체의 명칭은 기입하지 않으나, 변두리지역 및 농·어촌지역은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해 보완합니다

⑤ 기타지형
지물

- 새주소 있는 지역의 기타지형지물을 참조합니다(14쪽 참조)

⑥ 공동주택

- 새주소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을 참조합니다(15쪽 참조)

⑦ 시설지역 등

- 새주소 있는 지역의 시설지역을 참조합니다(16쪽 참조)

8] 가구수 파악 기준

■ 아파트·연립주택지역과 이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아파트·연립주택 지역>

- 별도로 가구수를 파악 하지 않고 호(戶)별 1가구로 간주합니다
(단, 2003년 10월 이후 신축 아파트·연립주택의 공동주택정보는 반드시 파악)

<아파트·연립주택 이외 지역>

- 지역특성 및 변동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읍·동》

- 변동 없는 건물 : 읍면동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수를 참고하고 별도 가구수 파악은 안함

● 단, 아래의 건물은 가구수 파악 실시

- .. 2000년 총조사 당시 거주가구가 없었던 빈집, 상가, 공장, 빌딩 등
- .. 단, 2000년 총조사 가구수와 편차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건물

- 변동 있는 건물 : 2000년 총조사 이후 신축·증개축 등에 의해 변동된 건물은 현장 방문하여 가구수 파악

● 새주소 이외 지역은 변동건물에 대해 표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① 통계청에서 배부한 “신·증축건축물대장 명부” ② 시·군·구청(건축과)에서 제공한 “건축물관리대장(전산자료)”을 참고하여 가구수를 파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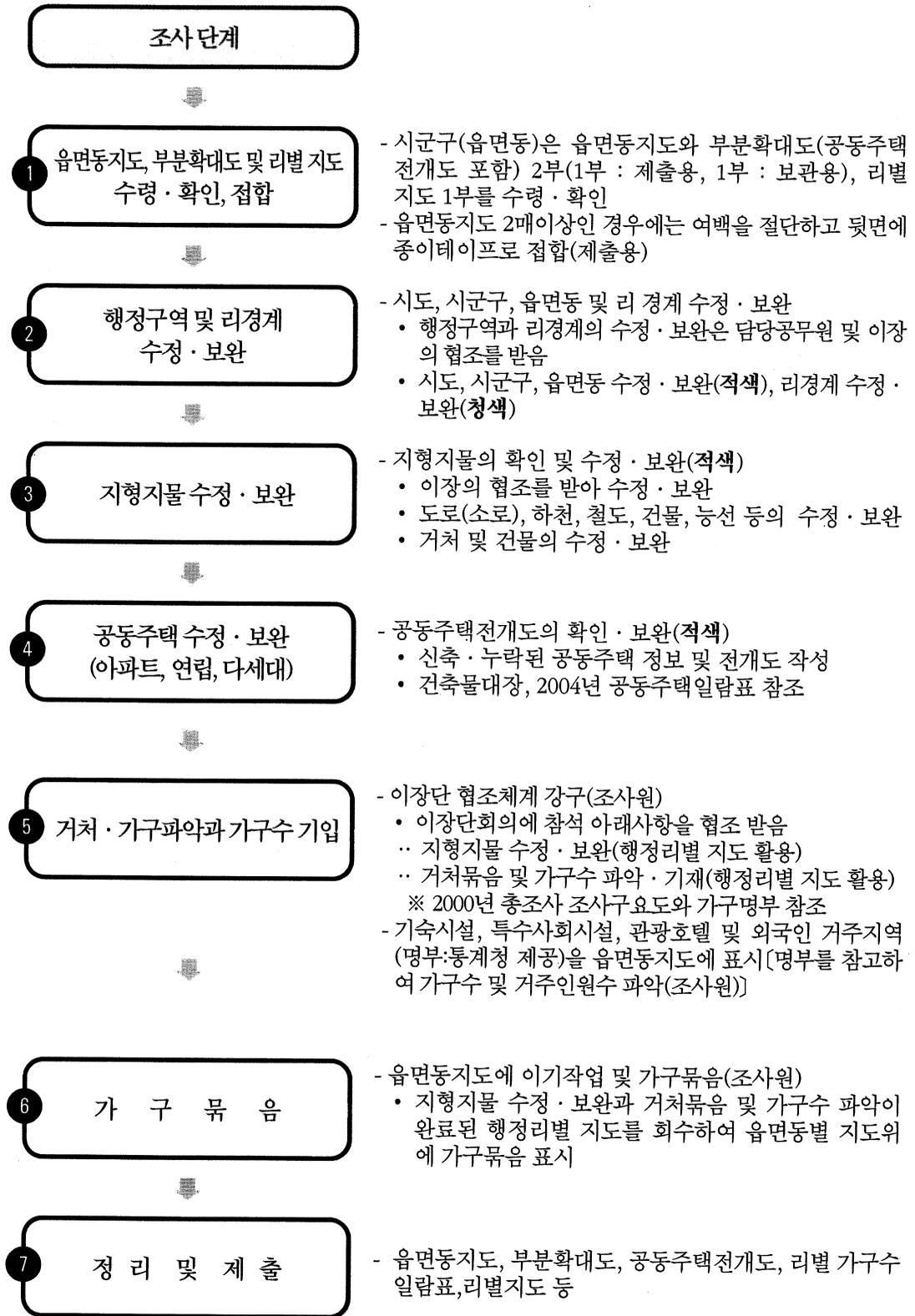
9] 가구수 파악 및 기입

- 새주소 있는 지역의 가구수파악 및 기입을 참조합니다(18쪽 참조)

10] 가구 묶음

- 새주소 있는 지역의 가구묶음을 참조합니다(19쪽 참조)

3. 기초조사 방법(면지역)



면지역 기초조사

1 읍면동지도 표시내용

- 1 건물용도에 따라 색상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단독주택 : 청색, 아파트 : 적색, 연립·다세대 : 연두색, 상가 및 기타 : 분홍색
- 2 공동주택 일련번호는 청색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아파트는 단지번호가 추가로 부여되어 있습니다
- 3 가구수 파악용 “행정리별 지도”를 별도로 제공하였습니다
- 면지역은 관할구역이 넓어 읍면동지도의 출력축적이 낮아 거처 등 건물이 작게 나타나 수정·보완이 곤란하여 1개리의 가구수(2000년 총조사 기준)가 40가구 이상되는 지역에 한하여 행정리별 지도(A3)를 제공
- 4 도로명 및 건물번호(적색)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5 아파트, 학교, 빌딩 등의 집합건물과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변동된 건물(신축, 증·개축)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행정구역 경계

* 행정구역 경계란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계를 말합니다
→ 행정구역 경계는 담당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수정·보완합니다

- 이외는 새주소 있는 지역의 행정구역 경계를 참조합니다(10쪽 참조)

3 행정리 경계

* 행정리 경계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장의 협조를 받아 수정·보완합니다

- 이외는 새주소 있는 지역의 행정통리 경계를 참조합니다(12쪽 참조)

4 지형지물 확인·보완

* 지형지물이란 도로, 하천, 철도, 건물, 능선 등 인공물 및 자연물을 말하며, 수정·보완은 모두 적색으로 표시합니다

- 도로, 하천, 건물, 주요명칭 등을 확인하여 읍면동지도에 수정·보완합니다
 - 지형지물이 현재와 불일치하는 경우 적색으로 수정·보완합니다
 - 수정·보완은 반드시 읍면동지도의 범례에 있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 지형지물의 크기는 지도에 출력된 지형지물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표시합니다
 - 관공서, 병원, 공원, 학교, 교회 등의 주요건물명칭을 확인·보완합니다

- 도로
 - 하천
 - 건물
- 새주소 있는 지역의 도로, 하천, 건물을 참조합니다(13쪽 참조)
- (주요명칭)
- 관공서, 학교, 공원, 교회, 사찰, ○○빌딩 등 **주요건물의 명칭**이 잘못 표기 되었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적색으로 보완합니다
 - 특히, 정확한 위치 파악을 위하여 음식점, 도·소매업 등 소규모업체의 명칭도 기입합니다
- ⑤ 기타지형지물
- 새주소 있는 지역의 기타지형지물을 참조합니다(14쪽 참조)
- ⑥ 공동주택
- 새주소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을 참조합니다(15쪽 참조)
- ⑦ 시설지역등
- 새주소 있는 지역의 시설지역을 참조합니다(16쪽 참조)
- ⑧ 가구수파악 수준
- 아파트·연립주택지역과 이외 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 〈아파트·연립주택 지역〉
- 별도로 가구수를 파악 하지 않고 호(戶)별 1가구로 간주하여 건물(棟)별로 전체 가구수를 기입합니다
 - (단, 2003년 10월 이후 신축 아파트·연립주택은 공동주택정보 파악)
- 〈아파트·연립주택 이외 지역〉
- 이장의 협조를 받아 가구수 확인, 불확실한 건물은 조사원이 직접 현장 확인을 합니다
- ⑨ 가구수파악 요령
- 이장단회의
- 「면담당자」는 매월 개최하는 “이장단회의”에 참석 협조사항을 설명하고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여 협조체계를 강구합니다
 - 「조사원」은 이장단회의에 참석하여 지형지물의 수정·보완, 거처묶음 및 가구수 파악에 협조를 받습니다
- 행정리별 지도활용
- 읍면동지도 외에 행정리별 지도(가구수 파악용)를 활용합니다
 - 행정리별 지도는 읍면동지도를 행정리별로 크게 확대(A3)한 지도로서 지형지물(도로, 하천, 건물 등)이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 거처묶음과 가구수 파악 및 기입

- 이 지도위에 ① 지형지물의 수정·보완과 ② 거처묶음 및 가구수를 파악·기재하는데 활용합니다

① 배부된 행정리별 지도를 현실에 맞게 **이장의 확인**을 통하여 지형지물(도로, 신축, 증·개축 건물 등)을 수정·보완 합니다

② 농촌지역은 거처(주택)은 물론 부속건물(축사, 창고 등)이 지도에 모두 나타나 있어 식별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2000년 총조사 조사구역도와 가구명부를 참조하여 거처묶음과 거주가구수를 파악합니다

※ 단위농협에서 발간하는 “전화번호부” 등을 참고로 활용합니다

• 단, 40가구미만(2000년 총조사 기준)인 행정리는 행정리별 지도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리의 총가구수만 기입합니다

• 그러나, 가구의 증가로 40가구가 넘는 행정리는 읍면동지도에 보완하되 도면이 적어 기재가 곤란시는 별도 용지(A3)를 사용합니다

※ 이장의 협조가 불가능한 지역은 조사원이 직접 현지확인을 통하여 수행합니다

●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에 대한 조사는 통계청에서 배부한 읍면동별 “시설 및 관광호텔 명부”를 참고하여 파악합니다

- 관리인(또는 주인가구)가구는 별도로 가구수를 파악합니다

- 시설내에 거주(수용)인원은 인원수를 파악합니다

(참고사항)

● 행정리별 지도 수정·보완시 참고사항

- 리별 지도에 리명칭이 없거나, 명칭을 알 수 없어 선(-)으로 표시된 경우와, 1개리에 2개이상의 리명칭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확한 행정리명 하나만을 기입해야 합니다

- 읍면동지도에 면지역 전체가 법정리 경계만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 이를 행정리 경계로 보완합니다(특히, 전북지역)

10. 가구 묶음

● 조사원은 이장의 작업으로 지형지물 수정·보완과 거처묶음 및 가구수 파악이 끝난 행정리별 지도를 회수하여 이를 토대로 읍면동별 지도위에 **가구묶음**을 합니다

● 이외는 새주소 있는 지역의 가구묶음을 참조합니다(19쪽 참조)

행정사항 IV

1. 지자체 공무원 유의사항	29
2. 공동주택 정보 파악 및 작성	29
3. 확인 및 접수	33



IV. 행정사항

1. 지자체 공무원 유의사항

- 각 시·군·구에서는 해당 읍·면·동의 기초조사 관련 지침서, 읍면동지도, 부분확대도, 공동주택전개도 각 2부, 리별지도 1부(면지역)씩 수령·배부
- 읍·면·동지도가 누락(일부 또는 전체)된 경우에는 통계청에 즉시 연락 조치
- 각 시·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한
 - ① 건축물대장(신·증축) 명부
 - ② 2004년 공동주택일람표와
 - ③ 기숙시설·특수사회시설·관광호텔 자료를 수령·배부

또한, 읍면동별로 시군구청(건축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산입력된 건축물관리 대장을 확보하여 조사원에게 배부토록 하여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파악 및 유형구분에 활용토록 해야합니다
- 통계청에서 배부되는 읍면동지도, 부분확대도, 공동주택전개도, 리별지도의 포장 겉면에 「제출용」, 「보관용」, 「참고용」으로 표시하여 배부 할 예정이오니 반드시 표시된 대로 처리 요망

2. 공동주택 정보 파악 및 작성

작성대상

- 2003년 10월 이후 신축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조사시점(2004년 10월) 현재 아파트는 2005년 10월말 입주예정인 가능(외장공사완료)한 경우,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즉시 입주 가능한 경우에 작성
 - ※ 기초조사(현지확인) 결과 “2004년 공동주택일람표” 누락된 경우에 작성

작성내용

- 공동주택 기본정보 현황표 : 통리명칭, 공동주택일련번호, 공동주택명, 동번호(동명칭), 층수, 1층의 총호수, 총호수, 동출입구 층수, 출입구 형태 등
- 공동주택 모형도 : 전개도, 평면도

공동주택 기본정보 현황표

① 행정구역부호	② 읍면동 명칭	③ 통리 명칭	④ 공동주택 일련번호	⑤ 공동주택명	⑥ 동(棟) 명칭	⑦ 층수	⑧ 1층의 총호수 (라인수)	⑨ 총호수	⑩ 동출입구 총 수	⑪ 출입구 형태	⑫ 비 고
2503060	둔산2동	3통	(70)	부흥맨션	-	4	8	32	3	계단식	1 - 4호:동일출입구
2503060	둔산2동	4통	(71-9)	개나리 아파트	101	8	7	49	4	계단식	1 - 5호:8층 6호:5층, 7호:4층
2503060	둔산2동	4통	(72-9)	개나리 아파트	102	18	9	137	4	계단식	1호: 9층, 8호:11층 9호:9층, 2-7호:18층
2503060	둔산2동	5통	(73-10)	동진아파트	101	14	7	90	1	복도식	1호:10층, 2-4호:14층 5호:10층, 6-7호:14층
∫	∫			∫	∫	∫	∫	∫	∫	∫	

- 공동주택 기본정보 현황표는 엑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읍면동별 건재순으로 시군구 단위로 작성하며, “확인 및 접수” 후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자료실의 ‘관련서식’, ‘기타’ 란에 게재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주소 : <http://www.nso.go.kr/census2005/>
- 작성(게재) 파일명 : 시도_시군구명칭.xls 예) 대구광역시_동구.xls

❶ 행정구역부호 : 해당 읍면동의 행정구역부호(7자리)를 기입
 행정구역부호는 읍면동지도, 공동주택전개도 제목에 표시되어 있음

❷ 읍면동명칭 : 해당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행정 읍면동 명칭을 기입

❸ 통리명칭 : 해당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행정 통·리 명칭을 기입

❹ 공동주택일련번호 : 읍면동별로 기구축된 공동주택 일련번호 끝번호에 이어 통·리 순으로 신규 번호를 부여(아파트인 경우에는 단지번호도 함께 부여)

※ ‘공동주택 일련번호’, ‘아파트 단지번호’의 끝번호는 “2004년 공동주택 일람표”나 “읍면동지도”를 참고

예) ○○○동의 “2004년 공동주택 일람표”상의 일련번호 끝번호가 (50), 단지번호 끝이 (40-7) 인데 기초조사 결과 신규아파트 2개 단지(3개동, 2개동), 연립주택 1개동이 신축된 경우

예시 $\frac{(51-8), (52-8), (53-8)}{\text{아파트}}$ $\frac{(54)}{\text{연립주택}}$ $\frac{(55-9), (56-9)}{\text{아파트}}$

❺ 공동주택명칭 : 해당 공동주택이 통상적으로 불리어지는 명칭을 말하며,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지번을 기입(예 : 28-4)

❻ 층 수 : 동별 층수를 말하며, 공동주택 1개 동의 출입구마다 층수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동에서 가장 높은 층을 기준으로 층수를 표시

- 7 1층의 총호수 : 해당 공동주택 1층의 총호수(라인수)를 말하며 동의 총가구수가 아님에 유의 (1층의 총호수×층수=총호수. 단, 층수가 다른 경우 예외)
- 8 총호수 : 해당 동(棟)의 거주가능 총호수를 말하며,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 등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총호수에서 제외
- 9 동출입구 총수 : 해당 공동주택 동의 총 출입구수를 말하며, 계단식의 경우 출입구가 측면에 있는 등 특이한 경우는 그 내용을 비교란에 표시
- 10 출입구 형태 : 계단식, 복도식 등 아파트의 출입구 형태를 기입
- 11 비 고
 - 계단식과 복도식이 혼합된 아파트의 경우, 동일한 출입구를 이용하는 호(라인)을 기입
 - 같은 동(棟)에서 층수가 다른 경우 그 내용을 표시
 - 외장공사가 완료(2005. 10말 입주가능)된 신축아파트는 **입주예정일**을 기입

공동주택 모형도

- 공동주택 모형도는 정면에서 펼쳐놓은 모양의 전개도와 위에서 내려다 본 모양의 평면도를 말하며 동(棟)별로 각각 작성
 - 단, 2개이상의 동(棟)의 전개도와 평면도 모양이 동일한 경우에는 동별로 작성하지 않고 일괄 작성
 - 신축 또는 누락된 공동주택 모형도는 공동주택 전개도의 여백 또는 뒷면에 그려 넣거나 부착(아파트의 경우는 반드시 단지번호를 부여, 연립주택과 구분토록 하여야 함)
 - 공동주택이 단지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지배치도를 작성
- ※ 신축 또는 누락된 공동주택의 전개도, 단지배치도를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전개도 여백 또는 뒷면에 부착 후 아래 예시와 같이 공동주택 일련번호(단지번호 포함), 통리명칭, 출입구 등을 기입

공동주택 모형도 작성 예시

- (70) 부흥맨션 / 3통

전개도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 ↑ 출입구

평면도

1	2	3	4	5	6	7	8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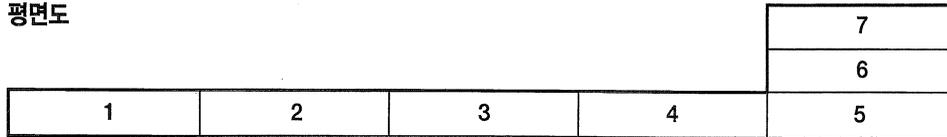
● 개나리아파트 101동 모형도

전개도

801	802	803	804	805		
701	702	703	704	705		
601	602	603	604	605		
501	502	503	504	505	506	
401	402	403	404	405	406	407
301	302	303	304	305	306	307
201	202	203	204	205	206	207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 출입구 ↑ ↑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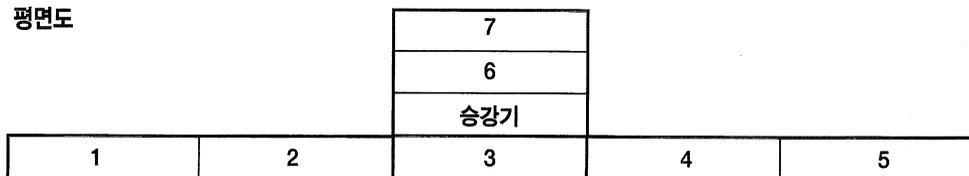
- 공동주택의 동(棟) 모양이 동일한 경우에는 건물마다 작성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작성
- (73-10) ~ (82-10) 동진아파트 / 5통 ~ 9통
101동 ~ 110동()

전개도

	1402	1403	1404		1406	1407
	1302	1303	1304		1306	1307
	1202	1203	1204		1206	1207
	1102	1103	1104		1106	1107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901	902	903	904	905	906	907
.
.
.
201	202	203	204	205	206	207
101	102	103	104	105	106	107

↑ 출입구

평면도



3. 확인 및 접수

확인 및 접수방법

- 2004. 10. 4. ~ 10. 16. 기간중 통계청 및 시·도 합동으로 조를 편성하여 시·군·구 일정에 의해 읍·면·동별로 조사내용 확인 후 접수

※ 시·군·구 및 읍·면·동(동원가능지역) 직원은 반드시 참석(조사원 참석 가능)

확인 및 접수 내용

- ❶ 읍면동지도(부분확대도)의 수정보완 상태 확인
 - 행정구역 및 통·리 경계, 주요 지형지물(건물)의 보완상태
- ❷ 가구수 파악의 정확성 및 가구 묶음 상태
- ❸ 2003년 10월 이후 신축(또는 누락)된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정보 작성 및 보완 상태
- ❹ 읍면동지도상의 확인표 작성 상태
- ❺ 통·리별 가구수 일람표 작성 상태

〈 제출서류 〉

- ❶ 읍면동지도
- ❷ 부분확대도
- ❸ 공동주택전개도
- ❹ 통·리별 가구수 일람표(34쪽 참조)
- ❺ 리별지도(면지역) 각 1 부
 - 단, 보관용 지도(2005년 계속 사용 예정)와 참고용(2003년 현지확인용) 지도를 함께 시·군·구에서 보관

〈 제출방법 〉

- 확인 및 접수가 완료된 후에 제출서류를 읍면동별 제출용봉투에 넣음
- 시군구별로 포장, 3일 이내에 통계청으로 우편 택배 발송
- ☞ 주소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통계청 인구조사과(3동 1104호)

통·리별 가구수 일람표

- 가구수 파악 및 가구묶음이 끝나면 읍·면·동별, 해당 통·리별로 통·리 명칭과 가구수를 기재하되,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지역은 시설단위로 비고란에 명칭과 가구수(인구수)란에 ()를 하고 인구수를 기재하여 확인 및 접수시 제출

통·리	가구수 (인구수)	비 고	통·리	가구수 (인구수)	비 고
(예시) 1통	250		∫	∫	
2통	150				
3통	180				
3통	(250명)	현대기숙사 A동			
3통	(305명)	현대기숙사 B동			
4통	160		∫	∫	
·	·				
·	·				
·	·				
			합계 : 30통	6,200 (555명)	

V 부록

- 1. 거처와 가구의 구분 및 개념..... 36
- 2. 조사구의 종류..... 39
- 3. 기초조사시 파악해야 할 시설지역... 43
- 4. 주요 질의사항..... 45
- 5. 새주소 지도 활용 지역 현황..... 47

1. 거처와 가구의 구분 및 개념

가. 거처의 구분

* 「거처」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거 처	주 택	<input type="checkbox"/> 단독주택(다가구용 단독주택 포함) <input type="checkbox"/> 아파트 <input type="checkbox"/> 연립주택 <input type="checkbox"/> 다세대주택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상가, 공장, 점포, 여관 등에 주택시설을 갖추어 살고있는 집)
	주 택 이외의 거 처	<input type="checkbox"/> 오피스텔(사무실겸용 주택) <input type="checkbox"/>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input type="checkbox"/>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input type="checkbox"/> 기타(비닐하우스, 움막, 판자집, 임시막사 등)

(1) 주택

* 주택이란 한 가구 이상이 살림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 영구건물이어야 하고
- 부엌과 1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 독립된 출입구가 있고
-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단독주택

● 통상 한 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합니다

- 일반 단독주택 : 통상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부엌,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고 있으며,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 : 한 거처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며 각 구획마다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으나 구획별로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2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5층이상(90년 이전은 4층 이상), 20가구 이상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상가아파트 포함)을 말합니다
- 아파트단지내에 4층이하의 동(棟)이 있는 경우도 아파트로 봅니다

3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이하 주택으로, 건축 당시「연립주택」으로 허가받고 동(棟)당 건축연면적이 200평을 초과 하는 주택(4층이하의 빌라, 맨션 포함)을 말합니다

4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이하의 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고 동(棟)당 건축연면적이 200평 이하 인 주택을 말합니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다른 점은

「다세대 주택」은 주택(세대)별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매매 및 분양이 가능한 점에서 「다가구(용)단독주택」과 다릅니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건물전체를 하나의 거처로 보는 반면에, 다세대 주택은 각각의 세대를 주거단위로 하여 거처로 봅니다

5 비거주용 건물(상가·공장·점포·여관 등)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영구건물,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2)주택이외의 거처

* 주택이외의 거처란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로서 사람이 살고있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1 오피스텔

- 사무실 겸용 주택

2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 대실료를 받고 손님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 단, 주인가구가 여관 등 숙박업소 건물내에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살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으로 봅니다

3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 기숙사, 수녀원, 양로원, 보육원 및 대사찰 등과 같이 집단수용을 위한 구조물을 말합니다

4 기타

- 여기에는 천막집, 비닐하우스, 판자집, 움막, 암자, 건설공사장의 임시막사 등과 같이 임시 거주를 위한 구조물이 해당됩니다

나. 가구**(1) 가구의 개념**

*가구란 혈연 또는 비혈연을 불문하고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가정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와는 다릅니다

(2) 가구의 종류**1 일반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가구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2 집단가구

-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 19인 이하의 가구 (특성번호 1 보통조사구)
- 집단 시설 가구
 - 기숙사, 수녀원, 사찰 등 20인 이상이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 (특성번호3. 기숙시설조사구)
 - 고아원, 양로원, 육아원, 요양원 등의 특수사회시설에 2인 이상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을 말합니다(특성번호4. 특수사회시설조사구)

2. 조사구의 종류

조사구	일반조사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파트조사구(특성번호 : A) 2 보통조사구(특성번호 : 1) 3 섬조사구(특성번호 : 2) 4 기숙시설조사구(특성번호 : 3) 5 특수사회시설조사구(특성번호 : 4) 6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지역 조사구(특성번호 : 5)
	특별조사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교통상부 관할 조사구(재외공관) 2 행정자치부 관할 조사구(전투경찰대 등) 3 법무부 관할 조사구(교도소, 소년원 등) 4 국방부 관할 조사구(육·해·공군)

※ 조사구설정 기초조사는 일반조사구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설정
(특별조사구는 해당기관을 통해 조사하므로 조사구설정 기초조사에서 제외)

■ 아파트조사구(특성번호 : A)

*아파트조사구는 「일반가구」와 「비혈연자 6인이상 19인이하가 거주하는 집단가구」를 대상으로 1개 동(棟) 또는 2개 동(棟) 이상의 총 호수(戶數)가 40 이상이 될 때 설정하는 조사구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변동이 없는 아파트는 2000년 총조사 경계를 그대로 활용 (불합리한 경우 일부 조정)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변동이 있는 아파트는 아래의 기준에 의해 설정
 - 상가아파트, 독신자아파트(사원, 공무원아파트 등) 등도 주택의 종류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조사구로 설정
 - 규모가 적은(40호 미만) 아파트는 인접동(棟)과 통합하고, 규모가 큰 경우(90가구 이상)는 2개 이상의 조사구로 분할
 - 계단식 아파트는 계단을 기준으로, 복도식 아파트는 층을 기준으로 설정
 -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 및 건물 등은 인접한 아파트 동(棟)에 포함하여 설정
 - 주택가 또는 외딴지역의 1개 동(棟) 또는 2개 동(棟)이상의 아파트 호실(戶室)이 40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조사구에 포함
 -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빌라, 맨션 등)은 보통조사구에 포함하여 설정

2. 보통조사구(특성번호 : 1)

* 보통조사구란 「일반가구」와 「비혈연자 6인이상 19인이하가 거주하는 집단가구」를 대상으로 주요 지형지물(도로, 하천 등) 또는 행정 통·리 경계를 이용하여 설정하는 조사구

- 1개 조사구당 통상적으로 평균 60가구를 기준으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준 가구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40 ~ 80가구 범위내에서 설정
- 보통조사구는 반드시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해야 하며 대하천, 대도로 등은 가능한 조사구 경계로 이용해야 함
- 특히, 도심지역인 경우 대하천, 대도로를 가로질러서 조사구가 설정되지 않도록 유의
- 2000년 총조사 이후 지형지물과 가구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2000년 총조사 경계를 그대로 활용하되 불합리한 경우에는 일부 조정 가능
- 오피스텔, 가족이 거주하는 사원주택 등은 보통조사구로 설정 (기숙시설 조사구로 설정해서는 안됨)

3. 섬조사구(특성번호 : 2)

* 섬조사구란 육지와 완전히 분리되어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을 대상으로 보통 조사구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는 조사구

- 군단위 이상의 청사가 소재하는 섬과 교량,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강화도 등)은 육지로 간주하여 보통조사구로 설정
- 유인도 또는 무인도가 군집되어 있는 섬지역은 거주가구수와 거주수를 고려하여 여러 개의 섬을 묶어 1개의 섬조사구로 설정하되 해상교통이 불편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섬의 경우에는 기준 가구수에 미달하더라도 한 개의 섬을 하나의 섬조사구로 설정할 수 있음

4 기숙시설조사구(특성번호 : 3)

***기숙시설조사구란 기숙시설에 정식 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기숙시설에 정식 명칭이 없더라도 20인 이상이 공동취사를 하고 있는 시설단위별로 설정하는 조사구**

- 기숙사의 정식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정식명칭이 없더라도 20인 이상이 공동취사를 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사구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수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경우 기숙시설조사구로 설정
- 고시원, 고시텔, 코쿤하우스 등과 같이 집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이와같은 명칭이 등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기숙시설조사구로 설정
- 단, 실버타운(Silver-town) 등과 같이 공통된 특성을 가진 사람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건물이 아파트일 경우에는 아파트조사구로,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보통조사구로 설정
- 단독주택 등에서 하숙업을 하거나 실제로 기숙사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주인 가구를 제외한 비혈연자 20인 이상이 공동취사를 하고 있으면 기숙시설조사구로 설정
- 사원아파트의 독신자 숙소는 아파트 위치에 따라 설정되며, 회사내에 위치하면 기숙시설 조사구로, 회사밖에 위치하면 아파트조사구로 설정
- 기숙시설 내에 거주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300인을 기준으로 동(棟), 층 또는 호·실 단위로 기숙시설을 분할하여 조사구를 설정

5 특수사회시설조사구(특성번호 : 4)

***특수사회시설조사구란 고아원, 양로원, 육아원, 요양원, 나환자 수용소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 비혈연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수용 시설 단위별로 설정하는 조사구**

- 나환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사는 지역은 보통조사구(특성번호 : 1)로 분류하여 설정
- 아동상담소, 아동직업보도소, 조산소, 아동입양위탁시설, 노인복지회관, 장애인이용시설, 점자도서관 등 비수용시설은 특수사회시설조사구로 설정하지 않음
- 단, 특수사회시설이지만 시설내에서 개별적으로 취사, 취침을 달리하고있는 경우에는 각각 개별가구로 파악

* 특수사회 시설조사구로 설정되는 수용시설의 사례

-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수용시설
 - ▶ 고아원, 보육원, 희망원, 영아원, 교호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수용시설
 - ▶ 양로원, 노인요양원, 노인복지주택 등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수용시설
 - ▶ 맹·농아시설, 정신장애자 시설, 지체부자유자 등의 요양시설 및 재활시설
- 특수병원, 수용소
 - ▶ 정신병원, 결핵요양원, 나환자 수용소, 전염병환자 수용소 등
- 기타
 - ▶ 윤락여성 직업보도를 위한 수용시설 등 상기 사항에 준하는 수용시설

6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지역조사구(특성번호 : 5)

*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지역조사구란 외국인이 투숙한 관광호텔과 20인 이상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건물 또는 10가구 이상의 외국인 가구가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조사구

- 관광호텔은 3등급(무궁화 2개)이상인 경우에만 호텔단위별로 「관광호텔조사구」로 설정하고, 3등급 미만(무궁화 1개)의 관광호텔, 여관 등은 보통조사구에 포함하여 설정
- 외국인이 20인 미만 또는 외국인 가구가 10가구 미만이거나 한국인 가구와 섞여서 거주하는 지역은 보통조사구에 포함하여 설정
- 1인 가구 또는 혈연가구가 숙박하고 있는 간이숙박소는 여관, 여인숙 등과 같이 보통조사구에 포함하여 설정
- 기숙시설내의 외국인이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내국인과 구분하여 별도의 기숙시설 조사구로 설정

3. 기초조사시 파악해야 할 시설지역

가구수 파악시 통계청에서 배부되는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명부를 활용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조사하되 읍면동지도에 명칭 및 거주인원을 기입·작성합니다
단, 외국인 거주지역은 별도의 명부가 없습니다

- * 기숙시설이란 기숙시설에 정식 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기숙시설에 정식 명칭이 없더라도 20인 이상이 공동취사를 하고 있는 시설단위
- * 특수사회시설이란 고아원, 양로원, 육아원, 요양원, 나환자 수용소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 비혈연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수용 시설 단위
- *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지역이란 외국인이 투숙한 관광호텔과 20인 이상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건물 또는 10가구 이상의 외국인 가구가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은 대상임

1 기숙시설

- 기숙사의 정식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정식명칭이 없더라도 20인 이상이 공동취사를 하고 있는 시설
- 고시원, 고시텔, 코쿤하우스 등과 같이 집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이와같은 명칭이 등록되어 있으면 대상임
- 단독주택 등에서 하숙업을 하거나 기숙사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주인 가구를 제외하고 비혈연자 20인 이상이 공동취사를 하고 있으면 대상임
- 사원아파트의 독신자 숙소는 아파트 위치에 따라, 회사내에 위치하면 기숙시설이며, 회사밖에 위치하면 아파트임

2 특수사회시설

- 아동상담소, 아동직업보도소, 조산소, 아동입양위탁시설, 노인복지회관, 장애인이용 시설, 점자도서관 등 비수용시설인 특수사회시설은 대상이 아님
- 특수사회시설이지만 시설내에서 개별적으로 취사, 취침을 달리하고있는 경우에는 각각 개별가구로 파악

* 특수사회시설 사례

-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수용시설
 - ▶ 고아원, 보육원, 희망원, 영아원, 교호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수용시설
 - ▶ 양로원, 노인요양원, 노인복지주택 등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수용시설
 - ▶ 맹·농아시설, 정신장애자 시설, 지체부자유자 등의 요양시설 및 재활시설
- 특수병원, 수용소
 - ▶ 정신병원, 결핵요양원, 나환자 수용소, 전염병환자 수용소 등
- 기타
 - ▶ 윤락여성 직업보도를 위한 수용시설 등 상기 사항에 준하는 수용시설

3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지역

- 관광호텔은 3등급(무궁화 2개)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3등급 미만(무궁화 1개)의 관광호텔, 여관 등은 대상이 아님

4. 주요 질의사항

사 례	해 설
<p>Q1 행정구역 경계선이 건물사이를 걸쳐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A1 동(면)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대장, 과세대장을 확인한 후 적색으로 「××」표시하고 적색으로 맞게 수정함 ☞ 즉시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의 확인</p>
<p>Q2 도로의 신설(또는 폐쇄), 주택의 대량신축 등으로 통·리경계가 변경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p>	<p>A2 통리경계가 잘못된 경우 청색으로 「××」표시하고 올바른 경계선을 청색 「-○-○-」기호로 수정함 ☞ 즉시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의 확인</p>
<p>Q3 읍면동지도에 지형지물이 너무 작게 출력되어 식별이 곤란한데요?</p>	<p>A3 우선 시군구(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요도를 참조해야하나,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요도가 없을 경우 통계청에 통보하여 조치하면 됩니다</p>
<p>Q4 기존 건물이 철거 되었을 경우 어떻게 수정 해야 하나요?</p>	<p>A4 읍면동지도상에 표기되어 있는 건물 크기 만큼 적색으로 「×」표시하여 수정함</p>
<p>Q5 등기가 안된 무허가 건물도 주택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요?</p>	<p>A5 주택이란 영구건물, 부엌과 1개이상 방, 독립된 출입구,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로 살림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을 말함으로 무허가 건물이라도 위 조건에 해당되면 주택입니다</p>
<p>Q6 공동주택 전개도상에 호실 및 일련번호 작성이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하는지?</p>	<p>A6 공동주택은 동(棟)별로 층수, 호수, 출입구 형태 등을 확인하여 잘못 표시되어 있는 공동주택전개도는 적색 등으로 수정함</p>

사 례	해 설
<p>Q7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도 가구수를 파악하는지?</p>	<p>A7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만 거주가구수 파악 안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가구수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호(戶)당 1가구로 간주함 단, 신축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전개도 작성 및 입주 가구수 파악(관리사무소 이용) <p>※ 아파트 이외 건물은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변동유무에 따라 구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동 없는 건물은 2000년 총조사 가구수를 참고하고 가구수 파악 안함 - 변동 건물은 현장 확인하여 건물별 가구수 파악함 - 가구수 표시가 없는 건물은 모두 현장 확인하여 가구수 파악
<p>Q8 2000년 총조사 이후 변동없는 건물에 대해서도 가구수를 파악합니까?</p>	<p>A8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총조사 이후 변동있는 건물 중심으로 특히, 신축, 중·개축주택 등 취약지역을 집중 파악해야 합니다</p>
<p>Q9 가구수 기입, 수정 및 보완시 읍면동지도와 부분확대도 두 곳에다 모두 표시해야 합니까?</p>	<p>A9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가구수 기입, 수정 및 보완사항은 읍면동지도 또는 부분확대도 중 한 곳에는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p>
<p>Q10 지난 국회의원 선거시 서울에 있는 친척집에 주소를 옮겨두고 실제 대전에서 생활하고 있으면 조사대상 가구에 해당되나요?</p>	<p>A10 아닙니다. 가구란 혈연 또는 비혈연을 불문하고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를 말하므로 주민등록 등재와는 상관없이 실제 거주하는 곳에서 조사되어야 합니다</p>
<p>Q11 가구묶음을 불가피하게 지형지물(도로, 하천, 철도, 건물), 블록, 기초단위구 경계를 무시하고 가구가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가구묶음을 할 수 있는지요?</p>	<p>A11 가구묶음은 건물별 가구수를 지형지물, 블록 등을 기준으로 10 ~ 20가구 정도로 가구묶음 함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원칙에 벗어나는 가구묶음을 지양해야 합니다</p>
<p>Q12 군부대, 교도소 등 특별조사구에 대한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p>	<p>A12 특별조사구에 대한 조사구설정 기초조사는 하지 않으므로 읍면동지도에 연필로 경계만 표시합니다</p> <p>※ 다만, 특별조사구 영내에 군인가족 등이 거주하는 주택(단독주택, 아파트 등)이 있는 경우와 영외에 직업군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통조사구에 포함하여 가구수를 파악 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외에 혼자 거주하는 직업군인은 제외 (군부대내에서 조사 예정)

5. 새주소 지도 활용 지역 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비 고	시·도	시·군·구	읍·면·동	비 고	
전 국	87	1,485		경 기	군포시	11		
서 울	25개구	521			의왕시	6		
서 울	9개구	141			하남시	10		
	서구	15			안성시	2	읍·면 제외	
	부산진구	25		이천시	4	읍·면 제외		
	동래구	14		강 원	3개시	44		
	북구	13			춘천시	15	읍·면 제외	
	사하구	16			원주시	16	읍·면 제외	
	금정구	18			강릉시	13	읍·면 제외	
	서 울	연제구	13		충 북	2개시	38	
		수영구	10			청주시	29	읍·면 제외
		해운대구	17			제천시	9	읍·면 제외
	인 천	8개구	117	강화군, 옹진군 및 서구 영종동은 새주소 없는 지역	충 남	6개 시·군	45	
	광 주	5개구	88			천안시	15	읍·면 제외
대 전	5개구	77		공주시		6	읍·면 제외	
경 기	17개시	291		보령시		5	읍·면 제외	
	수원시	42		아산시		6	읍·면 제외	
	성남시	44		논산시		4	면 제외	
	부천시	37		금산군	10	읍·면 제외		
	광명시	18		전 북	4개시	80		
	안산시	24			전주시	40	읍·면 제외	
	고양시	37			군산시	19	읍·면 제외	
	과천시	6			익산시	14	읍·면 제외	
	의정부시	15		경 남	1개시	12		
	동두천시	7			창원시	12		
구리시	8		제 주	2개시	31			
오산시	6			제주시	19			
시흥시	14			서귀포시	12			

※ 제4차, 제5차 시험조사 지역은 금번 조사에서 제외(시험조사 결과 활용)

- 제4차 시험조사 지역(3개 면·동) : 서울 송파2동, 경기 안성3동·보개면
- 제5차 시험조사 지역(9개 면·동) : 대구 방촌동, 인천 선학동·화도면, 광주 백운1동·주월2동, 대전 관암1동·산내동, 울산 송정동·양정동

조사구설정 지침서

조사구적합성 확인부분



2005.4

2005 Census

Contents

2006 인구주택총조사 | 조사구설정 지침서 | 조사구 적합성 확인부분

I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01	VI	조사구 심사	44
				1. 심사 준비	45
				2. 심사 방법	45
				3. 심사 내용	45
				3. 심사 결과 조치	45
II	조사구설정 개요	05	VII	자료제출	46
	1. 업무흐름도	06		1. 조사구일람표 및 집계표	47
	2. 조사구설정 목적	07		2. 공동주택기본정보 현황표	48
	3. 주요업무추진경과	07		3. 현지확인 제출용 지도	49
	4. 업무수행체계	07	VIII	변동조사구 수정·보완	49
	5. 조사구설정 지도의 종류	07	IX	【부록】	53
III	조사구 설정기준	09		1. 조사구심사표 예시	54
	1. 조사구의 종류	10		2. 조사구일람표(읍·면·동용) 예시	55
	2. 조사구 설정기준	10		3. 조사구집계표(시·군·구용) 예시	56
	① 아파트 조사구	10		4. 조사구집계표(시·도용) 예시	57
	② 보통 조사구	11		5. 수정 보고서 예시	58
	③ 섬 조사구	12		6. 무엇이든 물어보세요(Q&A)	59
	④ 기숙시설 조사구	13		7. 새주소 지도 활용지역 현황	62
	⑤ 특수사회시설 조사구	13		8. 조사구 가설정 읍면동지도	
	⑥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	14		8-1. 기본도	64
				8-2. 아파트 전개도	65
IV	그 동안의 추진 현황	18		8-3. 연립·다세대 전개도	66
	1. 조사구설정 기초조사 실시	19		8-4. 공동주택 모형도	
	2. 조사구 경계 가설정	20		(단지배치도, 전개도, 평면도)	67
V	조사구 확인 및 보완	23			
	1. 기본사항	24			
	2. 조사구 수정·보완	36			
	3. 정리 및 이기	41			
	4. 기본도 확인표 작성	41			
	5. 조사구심사표 작성	42			

I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14	인구주택총조사	10
24	인구주택총조사	20
34	인구주택총조사	30
44	인구주택총조사	40
54	인구주택총조사	50
64	인구주택총조사	60
74	인구주택총조사	70
84	인구주택총조사	80
94	인구주택총조사	90
104	인구주택총조사	100
114	인구주택총조사	110
124	인구주택총조사	120
134	인구주택총조사	130
144	인구주택총조사	140
154	인구주택총조사	150
164	인구주택총조사	160
174	인구주택총조사	170
184	인구주택총조사	180
194	인구주택총조사	190
204	인구주택총조사	200
214	인구주택총조사	210
224	인구주택총조사	220
234	인구주택총조사	230
244	인구주택총조사	240
254	인구주택총조사	250
264	인구주택총조사	260
274	인구주택총조사	270
284	인구주택총조사	280
294	인구주택총조사	290
304	인구주택총조사	300



I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의의 및 목적

- 역사적 · 범세계적 통계조사입니다
 - ❶ 우리나라의 인구조사는 삼한시대부터 호구조사라는 명칭으로 실시
 - 근대적 인구조사는 1925년부터 5년 마다 16차례에 걸쳐 실시
 - ❷ 세계적으로는 고대 바빌로니아(B.C. 3600년경) 시대부터 실시하였으며, 1790년 미국에서 근대적 인구조사를 최초로 실시
 - 2000년 라운드 센서스에는 217개 국가(독립지역) 중 204개 국가에서 실시
- 국가기본통계 조사입니다
 - ❶ 국가 영토내의 사람과 거처를 전부(완전성), 일시에(동시성), 각각 개별적(개별성)으로, 일정한 주기(주기성)를 갖고 실시되는 국가의 기본이 되는 통계조사
 - ❷ 조사결과는 국가기관, 기업, 학술단체 및 일반대중의 정책입안, 계획수립, 연구 및 평가, 학습 등을 포함한 각종 분야의 기초 자료로 활용
 - ❸ 인구, 가구 및 주택통계의 기준통계로서 각종 표본통계조사의 모집단으로 활용
- 소지역 단위 통계조사입니다
 - ❶ 읍·면·동 통계자료가 작성·제공되는 통계조사
 - ❷ 지역에 대한 비교 가능한 기초 자료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물론, 지역 정책의 수립 및 개발을 위해 유용한 자료로 활용
 - ❸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여 통계지도 작성 가능

조사 연혁

- ❶ 인구총조사는 1925년, 주택 총조사는 1960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
- ❷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총조사는 1949년에 실시
- ❸ 2005년도에 실시하는 인구총조사는 제17차, 주택총조사는 제9차에 해당

법적 근거

- ❶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의한 지정통계
 - 인구총조사 : 지정통계 제10101호
 - 주택총조사 : 지정통계 제10102호
- ❷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재정경제부령 제143호, 2000. 7. 1. 제정)

조사기준시점 : 2005. 11. 1. 0시 현재

조사 대상

- ❶ 조사 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 ❷ 다음과 같은 인구와 거처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제외되는 인구	제외되는 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취업·취학중인 사람 - 외교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공무로 체류중인 국내거주 외국인 및 그 가족 - 국내주둔 외국군인·군속 및 그 가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 전투경찰대(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병영 막사) - 교도소, 소년원, 구치소, 경찰서 보호소 등 시설 - 외국군대의 병영 막사 -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이 살고 있는 거처 등

조사 단위 : 가구

- ❶ 가구를 기본단위로 조사 실시

조사 기간

- ❶ 준비조사
 - 전수조사구 : 2005. 10. 29. ~ 10. 31.(3일간)
 - 표본조사구 : 2005. 10. 30. ~ 10. 31.(2일간)
- ❷ 본조사 : 2005. 11. 1. ~ 11. 15.(15일간)

조사 체계

- ❶ 주관기관 : 통계청
- ❷ 실시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부처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특별조사구 : 해외주재공관(외교통상부), 교도소·소년원(법무부), 군부대(국방부), 전투경찰대(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의무소방대(소방방재청)

조사 방법

- 조사원 면접방식, 응답자 기입방식, 인터넷 조사방식 병행

조사항목 : 44개 항목

- 전수조사 항목 : 21개 항목
- 표본조사 항목 : 23개 항목(시도 특성항목 3개 포함)

동원 인력 : 약 107천명

- 공무원 : 약 5천명
- 총 관리자 : 3,567명(읍면동별 1명)
- 조사원 : 약 90천명(예비조사원 8천명 포함)
- 조사관리자 : 약 8천명(조사원 10명당 1명)

소요예산(2005년) : 1,290억원

결과 공표

- 잠정결과 : 2005. 12월
- 전수집계결과(2회) : 2006. 5, 7월
 - 인구부문 : 2006. 5월
 - 가구·주택부문 : 2006. 7월
- 표본집계결과(3회) : 2006. 9, 11, 12월
 - 경제관련부문 : 9월
 - 주거·복지부문 : 11월
 - 기타부문 : 12월
- 특성별 분석 : 2006. 9 ~ 2007. 12월

II 조사구설정 개요



- 1. 업무흐름도 06
- 2. 조사구설정 목적 07
- 3. 주요업무추진경과 07
- 4. 업무수행체계 07
- 5. 조사구설정 지도의 종류 07



II 조사구설정 개요

1. 업무 흐름도

업무명	추진일정	업무내용	수행기관
현지 확인용 지도 작성	~ '0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별 기본도(부분확대도), 공동주택 전개도 각 2부를 제작하여 시군구에 배부 	통계청
조사원 및 업무보조원 채용	'05. 4.4. ~ 4.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원 : 읍면동당 1명 (업무량에 따라 채용인원 조정가능) 업무보조원 : 시군구당 1명 	시·군·구
담당공무원 교육	'05. 4.14. ~ 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 시군구 업무보조원 	통계청
조사원 교육 (조사용품 배부)	'05.4.14.~ 4.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공무원 및 조사원 (교육시 조사용품 배부) 	시·군·구
조사구 적합성 현지 확인	'05.4.18.~ 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계선 : 행정구역, 통·리 등 지형지물 : 건물, 도로, 철도, 하천 등 가설정 조사구 현지 적합성 여부 	조사원 (읍·면·동)
심사	'05.5.2~ 5.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구 적합성 및 지형지물 수정사항의 심사, 확정 심사관 : 통계청 및 시도 직원 	통계청 시·도
정리 및 제출	'05.5.6.~ 5.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사 내용 보완 정리 및 제출 (1부 보관, 1부 제출) 	읍·면·동 ⇒시·군·구 ⇒통계청
조사구요도 작성	'05.5.19.~ 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확인 및 보완 결과를 전산에 수정 입력 조사구당 조사구요도 각 2부 작성 및 배부(제출용, 보관용) 	통계청
변동조사구 수정보고 및 보완	'05.5.19.~ 1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구설정이후 가구수 증감 또는 지형지물 변동에 의한 조사구 수정 정기 : 매월 1회(매월15일) 수시 	읍·면·동 ⇒시·군·구 ⇒시·도 ⇒통계청

2. 조사구설정 목적

- 조사담당 구역을 명확히 하여 주택(가구)의 누락 또는 중복을 방지
- 조사원의 업무량을 적정하게 배분
-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틀로 활용
- 소지역별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3. 주요업무 추진 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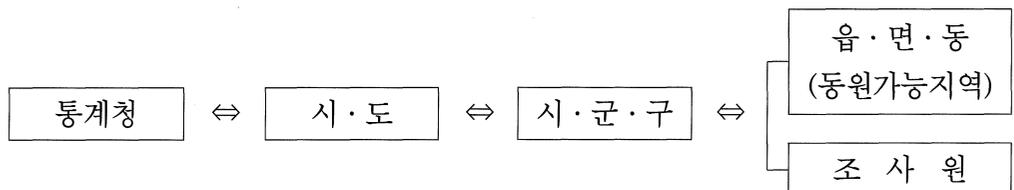
기초조사

- 조사기간 : '04. 9. 6. ~ 10. 16.
- 대상지역 : 전국 3,551개 읍면동(제 4, 5차 시험조사 지역 제외)

조사구 경계 가설정

- 설정기간 : '04. 10. 17. ~ '05. 3. 5.
- 대상지역 : 전국 3,567개 읍면동

4. 업무수행 체계



5. 조사구설정 지도의 종류

기본도

- 기본도란 인구주택총조사시 마다 주택 또는 가구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조사원의 업무량 배분 기준이 되는 조사구 설정업무에 활용하기 위해 국토지리정보원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작한 수치지도를 이용하여 읍면동 단위로 관내의 모든 지역이 포함되도록 접합·절단하여 제작한 지도를 의미합니다.
- 특히, 2005 인구주택총조사의 기본도는 2000년 총조사 이후 매년 기초단위구현지확인을 통하여 수차례의 수정·보완 및 전산입력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 또한, 읍면동 지역 특성에 맞도록 기본도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읍면동별 기본도는 전지(A0) 1매 또는 2매이상으로 제작됩니다.

부분확대도

- 기본도상 거처가 밀집되어 식별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조사구설정이 가능하도록 축척을 확대하여 별도로 추가 제작한 지도(A0)입니다.

공동주택 전개도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의 정면에서 바라본 모양을 층수, 호수, 출입구수 등이 나타나도록 일정한 규격(A0 또는 A3)으로 작성한 지도를 말합니다.

조사구역도

- 조사구단위로 조사구경계, 지형지물, 거처 및 거처번호를 일정한 규격(A3)에 표시하여 작성한 약식 지도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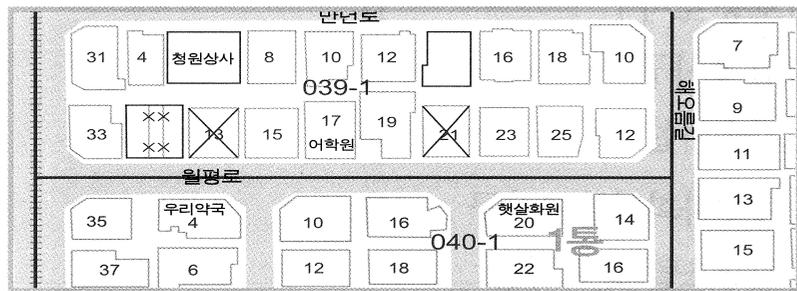
* 지도 관련 참고사항 *

* 조사구설정 기본도에 사용된 지도

금회 사용된 지도는 매년 수정·보완해온 1/1,000, 1/5,000, 1/25,000 축척의 수치지형도와 새주소지도를 조사구설정 기본도로 활용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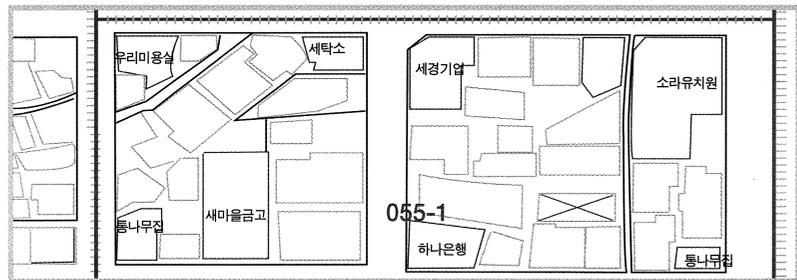
* 새주소 지도란?

기본도상에 도로명과 건물번호가 표시된 지도를 말하며, 새주소작업이 완료된 지역은 새주소지도를 활용합니다.



* 수치지형도(Digital map)란?

지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모든 속성에 대해 좌표값(경·위도)을 가지고 있으며, 전산으로 수정·보완이 가능하며, 새주소 없는 지역에서 사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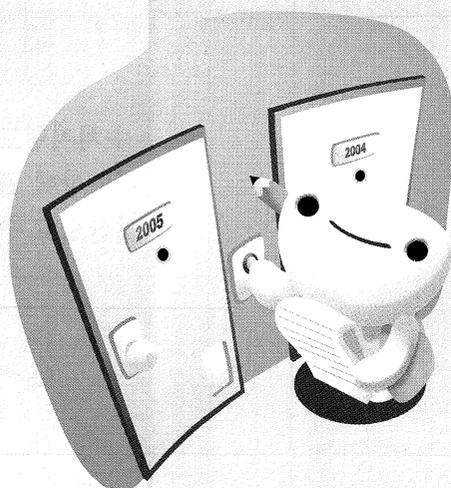


- ☞ 담당 읍면동이 새주소 지역인지 수치지형도 지역인지의 구분은 읍면동 기본도의 확인표 좌측상단에 "O" 표시되어 있습니다.

III 조사구 설정기준

for us Cen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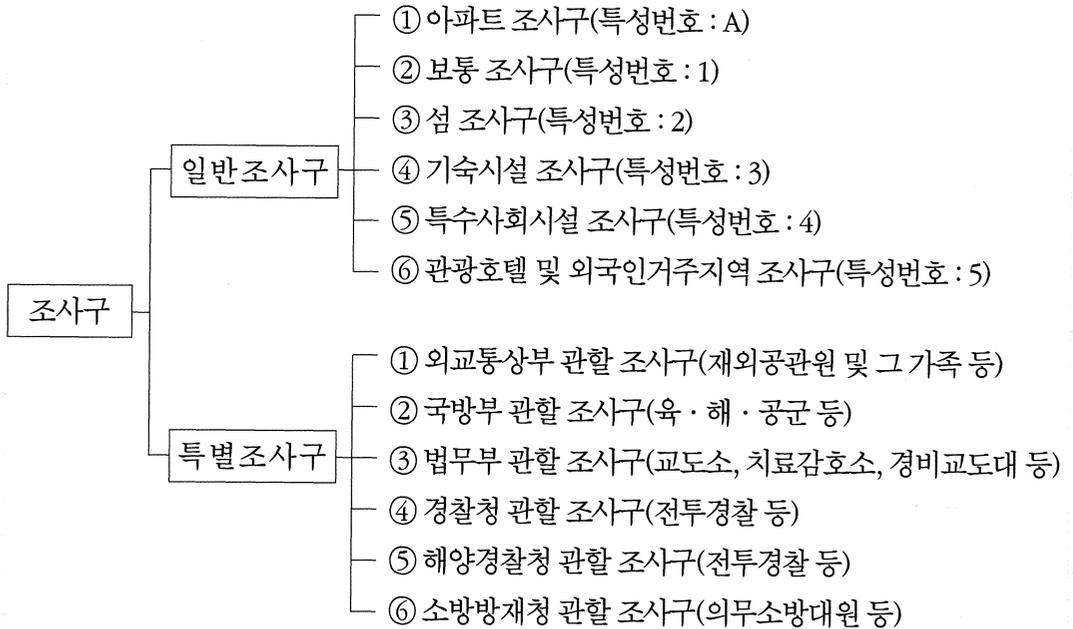
- 1. 조사구의 종류 10
- 2. 조사구 설정기준 10
 - ① 아파트 조사구 10
 - ② 보통 조사구 11
 - ③ 섬 조사구 12
 - ④ 기숙시설 조사구 13
 - ⑤ 특수사회시설 조사구 13
 - ⑥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 14



Ⅲ 조사구 설정기준

1. 조사구의 종류

- 조사구설정은 **일반조사구**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설정하고 특별조사구는 조사구 설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 조사구 설정기준

- 아파트조사구, 보통조사구, 섬조사구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평균 64가구 범위(64 ±20가구)내에서 식별이 확실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합니다.
- 기숙시설조사구, 특수사회시설조사구, 관광호텔조사구는 시설단위로 조사구를 설정합니다.
- 외국인조사구는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모여사는 지역에 대해 설정합니다.

1 아파트조사구(특성번호: A)

아파트조사구는 「일반가구」와 「비혈연자 6인이상 19인이하가 거주하는 「집단가구」를 대상으로 1개 동(棟) 또는 2개 동(棟) 이상의 총 가구수가 40 이상 이 될 때 설정하는 조사구

- 상가아파트, 독신자아파트(사원, 공무원아파트 등) 등도 주택의 종류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조사구로 설정합니다.

- 규모가 적은(40가구 미만) 아파트는 인접한 동(棟)과 통합하고, 규모가 큰 경우(90가구 이상)는 2개 이상의 조사구로 분할합니다.
- 계단식 아파트는 계단을 기준으로 복도식 아파트는 층을 기준으로 설정합니다.
-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 및 건물 등은 인접한 아파트 동(棟)에 포함하여 설정합니다.
- 주택가 또는 외판지역에 1개 동(棟) 또는 2개 동(棟)이상의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를 합하여도 40가구 미만일 경우에는 보통조사구(특성번호 : 1)에 포함하여 설정합니다.
-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빌라, 맨션 등)은 보통조사구에 포함하여 설정합니다.

[그림 1] 계단식과 복도식 아파트의 조사구 설정 예

[계단식]								[복도식]													
005-A (60)				006-A (60)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509	1510	1511	1512	009-A (6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409	1410	1411	1412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209	1210	1211	1212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109	1110	1111	1112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009	1010	1011	1012		008-A (60)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809	810	811	812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709	710	711	712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609	610	611	612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509	510	511	512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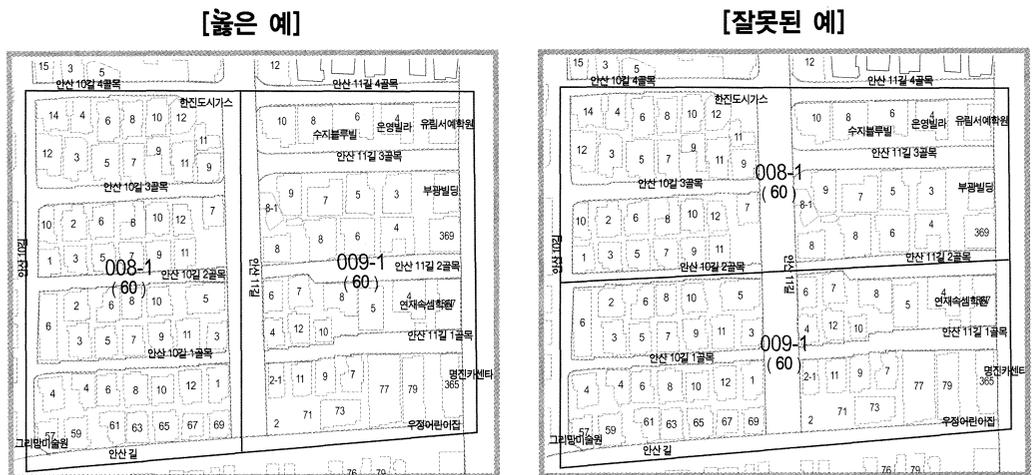
2 보통조사구(특성번호 : 1)

보통조사구란 「일반가구」와 「비혈연자 6인이상 19인이하가 거주하는 집단 가구」를 대상으로 주요 지형지물(도로, 하천 등) 또는 행정 통·리 경계를 이용하여 설정하는 조사구

- 1개 조사구당 통상적으로 평균 64가구를 기준으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준 가구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한 64±20가구 범위내에서 설정합니다.

- 보통조사구는 반드시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합니다. 예를들면 대하천, 대도로 등은 가능한 한 조사구 경계로 이용해야 합니다.
- 특히, 도심지역인 경우 대하천, 대도로를 가로질러서 조사구가 설정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 오피스텔, 가족이 거주하는 사원주택 등은 보통조사구로 설정합니다.
(기숙시설 조사구로 설정해서는 안됩니다)

[그림 2] 도심지역의 조사구설정 예



3 섬조사구(특성번호 : 2)

섬조사구란 육지와 완전히 분리되어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을 대상으로 보통조사구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는 조사구

- 유인도 또는 무인도가 군집되어 있는 섬지역은 거주가구수와 거쳐수를 고려하여 여러 개의 섬을 묶어 1개의 섬조사구로 설정합니다.
단, 해상교통이 불편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섬의 경우에는 기준 가구수에 미달하더라도 한 개의 섬을 하나의 섬조사구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 군단위 이상의 청사가 소재하는 섬과 교량,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강화도 등)은 육지로 간주하여 보통조사구로 설정합니다.

4 기숙시설조사구(특성번호 : 3)

기숙시설조사구란 기숙시설에 정식 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기숙시설에 정식 명칭이 없더라도 20인 이상이 공동취사를 하고 있는 시설단위로 설정하는 조사구

- 조사구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수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경우 기숙시설조사구로 설정합니다.
- 고시원, 고시텔, 코쿤하우스 등과 같이 집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정식 명칭이 등록되어 있으면 기숙시설조사구로 설정합니다.
 - 단, 실버타운(Silver-town) 등과 같이 공통된 특성을 가진 사람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건물이 아파트일 경우에는 아파트조사구로,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보통조사구로 설정
- 기숙시설 내에 거주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300인을 기준으로 동(棟), 층 또는 호·실 단위로 기숙시설을 분할하여 조사구를 설정합니다.
- 단독주택 등에서 하숙업을 하거나, 실제로 기숙사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주인 가구를 제외한 비혈연자 20인 이상이 공동취사를 하고 있으면 기숙시설조사구로 설정합니다(주인가구는 일반가구로 **보통조사구**에 포함하여야 함)
- 사원아파트의 독신자 숙소가 회사내에 위치하면 기숙시설조사구로, 회사밖에 위치하면 **아파트조사구**로 설정합니다.

5 특수사회시설조사구(특성번호 : 4)

특수사회시설조사구란 고아원, 양로원, 육아원, 요양원, 나환자 수용소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 비혈연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수용시설 단위로 설정하는 조사구

- 나환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사는 지역은 보통조사구(특성 번호 : 1)로 분류하여 설정합니다.
- 아동상담소, 아동직업보도소, 조산소, 아동입양위탁시설, 노인복지회관, 장애인이용시설, 점자도서관 등 비수용시설은 특수사회시설조사구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 단, 특수사회시설이지만 시설내에서 관리인가구 또는 모자원과 같이 개별적으로 취사, 취침을 달리하고있는 경우에는 각각 일반가구로 파악합니다.

〈 특수사회시설조사구로 설정되는 수용시설의 사례〉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수용시설

- ▶ 고아원, 보육원, 희망원, 영아원, 교호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수용시설

- ▶ 양로원, 노인요양원, 노인복지주택 등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수용시설

- ▶ 맹·농아시설, 정신장애자 시설, 지체부자유자 등의 요양시설 및 재활시설

특수병원, 수용소

- ▶ 정신병원, 결핵요양원, 나환자 수용소, 전염병환자 수용소, 종교단체 등

기타

- ▶ 윤락여성 직업보도를 위한 수용시설 등 상기 사항에 준하는 수용시설

6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지역 조사구(특성번호 : 5)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지역 조사구란 외국인이 투숙한 관광호텔과 20인 이상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건물 또는 10가구 이상의 외국인 가구가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조사구

- 관광호텔은 3등급(무궁화 2개)이상인 경우에만 호텔단위로 「관광호텔조사구」로 설정하고, 3등급 미만(무궁화 1개)의 관광호텔, 여관(모텔) 등은 보통조사구에 포함하여 설정합니다.
- 기숙시설내의 외국인이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내국인과 구분하여 별도의 기숙시설 조사구로 설정합니다.
- 외국인이 20인 미만 또는 외국인 가구가 10가구 미만이거나 한국인 가구와 섞여서 거주하는 지역은 보통조사구에 포함하여 설정합니다.
- 1인 가구 또는 혈연가구가 숙박하고 있는 간이숙박소는 여관, 여인숙 등과 같이 보통조사구에 포함하여 설정합니다.

참 · 고 · 자 · 료

거처와 가구의 구분

거처의 구분

* 「거처」란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장소를 통칭하는 말로서,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거 처	주 택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단독주택 (일반단독, 다가구단독, 영업겸용단독) ② 아파트 ③ 연립주택 ④ 다세대주택 ⑤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 (상가, 공장, 점포, 여관 등에 주택시설을 갖추어 살고있는 집)
	주 택 이외의 거 처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오피스텔 (사무실겸용 주택) ②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③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④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⑤ 기타

(1) 주택

* 주택이란 한 가구 이상이 살림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 ① 영구건물이어야 하고
- ② 부엌과 1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 ③ 독립된 출입구가 있고
- ④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건물을 말합니다.

① 단독주택

● 통상 한 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을 말합니다.

- 일반 단독주택 : 통상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부엌,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고 있으며,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가 가능합니다.
- 다가구 단독주택 : 한 거처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며 각 구획마다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으나 구획별로 매매는 불가능합니다.
- 영업겸용단독주택 : 주거용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중 주거부분이 영업용 부분과 같거나 더 큰 경우를 말합니다.

2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5층이상(90년 이전은 4층 이상)의 건물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상가아파트 포함)을 말합니다.
- 아파트단지내에 4층이하의 동(棟)이 있는 경우도 아파트로 봅니다.

3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이하 주택으로, 건축 당시「연립주택」으로 허가받고 동(棟)당 건축연면적이 200평을 초과 하는 주택(4층이하의 빌라, 맨션 포함)을 말합니다.

4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이하의 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고 동(棟)당 건축연면적이 200평 이하 인 주택을 말합니다.

* 「다가구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다른 점은

「다세대 주택」은 주택(세대)별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매매 및 분양이 가능한 점에서 「다가구단독주택」과 다릅니다.

☞ 다가구 단독주택은 건물전체를 하나의 거처로 보는 반면에, 다세대 주택은 각각의 세대를 주거단위로 하여 거처로 봅니다.

5 비거주용 건물(상가·공장·점포·여관 등)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영구건물, 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

(2)주택이외의 거처

* 주택이외의 거처란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로서 사람이 살고있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1 오피스텔

- 사무실이지만 숙박이 가능한 거처를 말합니다.

2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 대실료를 받고 손님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구조물을 말합니다.
※ 단, 주인가구가 여관 등 숙박업소 건물내에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살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으로 봅니다.

3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 기숙사, 수녀원, 양로원, 보육원 및 대사찰 등과 같이 집단수용을 위한 구조물을 말합니다.

4 판잣집, 비닐하우스, 움막

- 여기에는 판잣집, 천막집, 비닐하우스, 움막, 암자 등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구조물을 말합니다.

5 기타

- 업소의 잠만 자는 방, 건설 공사장의 임시 막사, 동굴 등 임시적 거주를 위한 구조물이나 위에서 예시되지 않은 주택 이외의 거처가 해당됩니다.

가구의 구분

(1)가구의개념

*가구란 혈연 또는 비혈연을 불문하고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가정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와는 다릅니다.

(2)가구의종류

1 일반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가구
-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 1인 가구

2 집단가구

-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 19인 이하의 가구(특성번호 1. 보통조사구)
- 집단 시설 가구
 - 기숙사, 수녀원, 사찰 등의 집단시설에서 생활하는 가구 (특성번호3. 기숙시설조사구)
 - 고아원, 양로원, 육아원, 요양원 등의 특수사회시설에 2인 이상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가구 (특성번호4. 특수사회시설조사구)

그 동안의 추진현황 IV

1. 조사구설정 기초조사 실시... 19

2. 조사구 경계 가설정 20



IV 그동안의 추진현황

1.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 실시

대상지역 : 전국 3,551개 읍면동

- 제4차, 5차 시험조사 지역은 시험조사 자료를 그대로 활용하였습니다.

실시 방법 : 3단계로 구분(담당자 교육, 현장조사 및 지도, 확인 및 접수)

실시 기간 : '04. 9. 6. ~ 10. 16.

기초조사 내용

- 조사구 설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파악하였습니다.

❶ 지형지물 현지 확인 및 보완 : 도로, 하천, 건물, 주요명칭 등

❷ 행정구역 및 통리경계 확인 · 보완

❸ 기존 공동주택 정보확인 및 신축(또는 누락) 공동주택 정보 파악

❹ 건물별 가구수 파악 : 주택특성 및 변동유무에 따라 구분

〈아파트 · 연립주택지역〉

- 별도로 가구수를 파악하지 않고 호(戶)별 1가구로 간주

〈아파트 · 연립주택 이외 지역〉

- 지역특성 및 2000년 총조사 이후 변동유무에 따라 구분 실시

· 변동 없는 건물 : 2000년 총조사 가구수를 참고하고 가구수 파악 안함

· 변동 있는 건물 : 2000년 총조사 이후 신축 · 증개축 등에 의한 변동건물은 현장 방문하여 가구수를 파악

· 면지역 : 이장의 협조를 받아 행정리별 가구수를 확인, 불확실한 경우 현장 조사

기초조사 결과

- 기초조사시 많은 지역에서 아래와 같이 가구수 편차가 발생하였습니다.

❶ 취약지역의 가구수 오차가 다수 발생

- 빌딩, 오피스텔 등 가구수 파악이 어려운 지역은 실제거주가구수와 편차가 발생

- 가구수 파악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일부지역의 누락 및 과다 사례 발생

⇒ 금회 실시예정인 “조사구 경계 적합성 현지 확인” 시 상기 지역에 대한

거주가구수의 집중적인 확인 필요

❷ 미입주된 신축 아파트의 가구수를 포함시켜 실제 가구수보다 과다 집계 되었음

⇒ 조사구 적합성 현지 확인시 철저히 파악, 입주된 가구수만 포함

2. 조사구 경계 가설정

설정 방법

-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2004년 9월 ~ 10월)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청에서 조사구 설정 기준에 의해 경계 구획 및 번호를 부여 하였습니다.
 - 조사구 가설정 완료후 일정양식에 의해 조사구일람표 작성 및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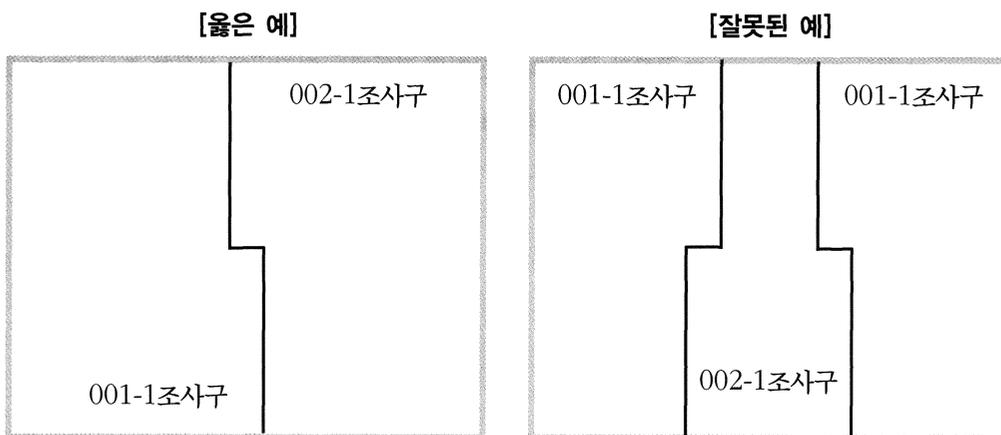
설정 기간 : 2004년 11월 ~ 2005년 3월 초

경계구획의 주요내용

❶ 기본도

- 모든 조사구는 기본도상에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 단, 기본도가 조밀하여 설정이 어려울 때는 부분확대도에 설정
- 경계구획기준 : 기초단위구경계, 도로, 하천, 통·리경계, 능선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 동(洞)지역은 기초단위구경계를 우선 적용
 - 읍면(邑面)지역은 통·리경계를 우선 적용
- 아파트조사구는 단지별로 묶어서 조사구경계, 번호 및 가구수를 표시하였습니다.
- 보통조사구와 섬조사구는 조사구 내에 다른 조사구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 단, 아파트,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는 보통조사구 내에 설정가능

[그림 3] 조사구내 조사구를 설정하는 예



2 연립·다세대 전개도

- 연립·다세대 전개도는 읍면지역과 동지역의 표시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 읍면지역 : 연립, 다세대 등이 속한 조사구번호 및 경계를 기입
 - 동(洞)지역 : 연립, 다세대 등이 속한 통 명칭만 기입

3 아파트전개도

- 아파트전개도는 2000년 총조사 조사구설정 당시의 아파트전개도와 조사구 경계를 가능한 한 활용하였습니다.
- 아파트 각 동(棟)에 아파트명칭, 동명칭, 공동주택일련번호를 기입하였습니다.
- 아파트 형태에 따라 계단식은 계단(벽)을, 복도식은 층을 기준으로 경계를 구획하였습니다.
- 아파트 단지내에 있는 상가 등은 인접한 동(棟)에 포함하여 설정하였고 해당 조사구 경계내에도 건물을 표시하여 누락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특성별 가설정 순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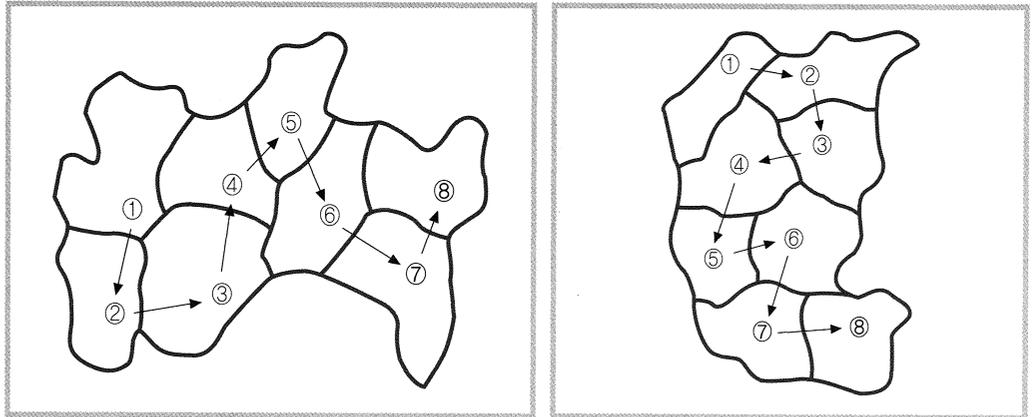
- 조사구 특성별 가설정 순서는 시설조사구, 아파트조사구, 보통조사구(섬조사구)로 하였습니다.

일련번호 부여

- 지형의 특성에 따라 좌→우(N자형), 상→하(S자형)로 번호가 연결되도록 부여 하였습니다.
- 보통조사구 내에 아파트, 시설 조사구가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보통조사구와 아파트조사구를 먼저 부여한후 시설조사구 번호를 부여하였습니다.

※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단지내에 설정한 조사구의 번호를 모두 부여한 후 인접지역으로 연결시켰습니다

[그림 4] 조사구 일련번호 부여방법의 예



조사구일람표 작성

- 읍면동별로 작성하였습니다.
- 조사구 일련번호순으로 조사구번호, 조사구특성번호, 가구수(인구), 주소, 비고란으로 구분되어 있으나 주소란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주소란은 조사구 적합성 확인후 작성해야 합니다.

오류사항 유의

조사구 가설정 검토결과 아래와 같은 오류 유형이 나타났으므로 금회 확인시 정확히 수정·보완 하여야 합니다.

- 조사구 경계선이 건물에 걸쳐 있는 경우
- 조사구 경계선이 누락되거나 끊어져 있는 경우
- 조사구 번호가 틀린 경우
- 예시) 130 - 1 ⇒ 030 - 1, 230 - 1 ⇒ 230 - A, 010 - A ⇒ 010 - 1
- 기본도와 부분확대도간의 연결되는 경계선이 불일치되는 경우
- 기초조사시 파악된 시설조사구(3, 4, 5) 명칭이 통·리별 가구수 일람표에는 표시되어 있으나, 기본도에 누락되어 조사구 설정을 하지 못한 경우
- 기본도상에는 공동주택이 표시되어 있으나, 공동주택전개도에 누락되어 가설정이 불가능한 경우
-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가구수가 정확히 파악 되지 않은 경우, 기본도상에 전체 호실수를 가구수로 산정하여 여러 개 조사구로 설정한 경우(과다 설정 경우)
- 조사구 일련번호가 결번, 누락, 중복이 발생한 경우
- 가구수가 없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어느 한 조사구에 포함되어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
- 계단식 아파트의 조사구 경계를 벽으로 나누지 않고 층으로 나눈 경우

V 조사구 확인 및 보완

1. 기본사항	24
2. 조사구 수정 · 보완	36
3. 정리 및 이기	41
4. 기본도확인표 작성	41
5. 조사구심사표 작성	42

for us Census

V. 조사구 확인 및 보완

1. 기본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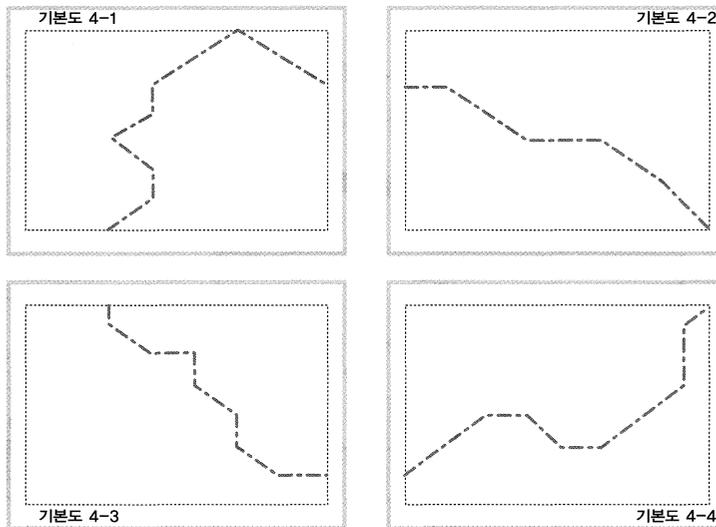
준비사항

- ❶ 조사용품은 아래와 같이 준비합니다.
 - 기본도, 부분확대도, 공동주택전개도 각 2부, 조사구일람표 1부, 공동주택기본정보현황표 1부, 기초조사 기본도(보관용) 1부 및 CD(스캔화일)
 - 연필, 지우개, 3색볼펜(적색, 청색, 흑색), 종이테이프,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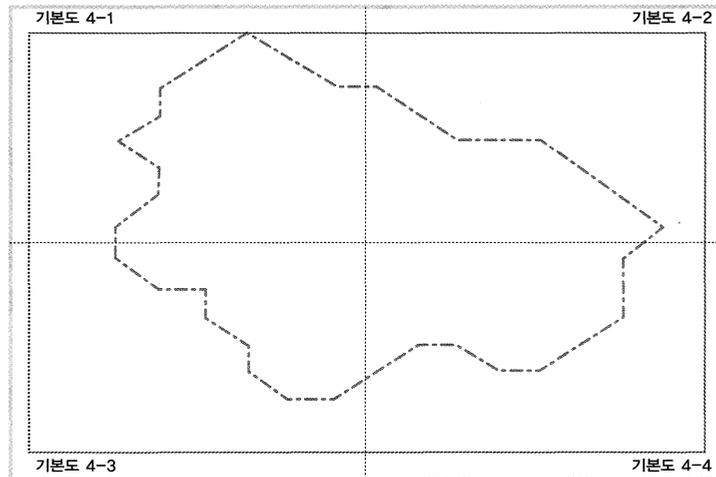
기본도의 접합

- ❶ 도시의 중심지역 등은 면적이 좁아 기본도가 대부분 전지(A0) 1매로 되어 있습니다.
- ❷ 면적이 넓은 지역은 전지(A0) 2매 이상 배부하였으므로 지도의 가장자리 여백을 절단하고 뒷면에 종이테이프로 부착합니다.(제출용 1부만 접합)

[그림5] 출력·배부된 기본도



[그림6] 기본도 접합예시



**일반적인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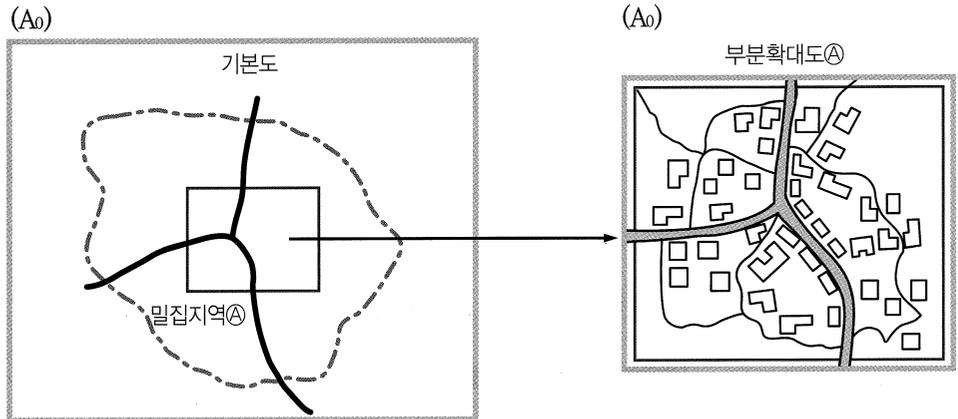
- ❶ 기본도 수정·보완은 반드시 지정된 색상과 기호를 사용해야 합니다.
- 수정·보완 담당자만 알 수 있는 기호를 사용하여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읍면동 기본도 표시 및 수정·보완 색상]

구 분	색 상	
	표 시	수정·보완
행정구역 경계	시 도 : 적 색 (—< · >—) 시군구 : 진보라색 (— · — · —) 읍면동 : 연보라색 (— · · —)	적 색
통·리 경계	적 색 ()	청 색 (—○—○—○—)
조사구 경계	적 색 (굵은실선—)	청 색 (굵은실선—)
조사구 번호	적 색	청 색
지형지물	종류별로 다양(범례 참조)	적 색
공동주택전개도	번호, 건물모양 : 청색 공동주택명, 동명 : 흑색	적 색
가구수기입(최종)	-	연 필

- ❷ 건물밀집지역에 대하여 부분확대도를 별도 제작한 지역은 수정·보완 사항을 반드시 부분확대도에 표시해야 합니다.(기본도에는 부분확대 이외의 지역만 표시합니다.)

[그림 7] 건물 밀집지역의 부분확대도 작성 예시



- ❸ 지형지물(도로, 하천, 철도, 건물)의 수정·보완은 지도에 출력된 지형지물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기본도상에 표시된 지형지물이 출력축척에 비해 너무 작거나 크게 표시해서는 안 됩니다.
- ❹ 기본도에 지형지물이 너무 작게 출력되어 식별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군구(읍면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요도”를 참조하여 보완합니다.(별지 사용 가능)
- ❺ 기본도, 부분확대도, 공동주택전개도 작업시 습기, 물(음료수), 커피 등에 의해 색상이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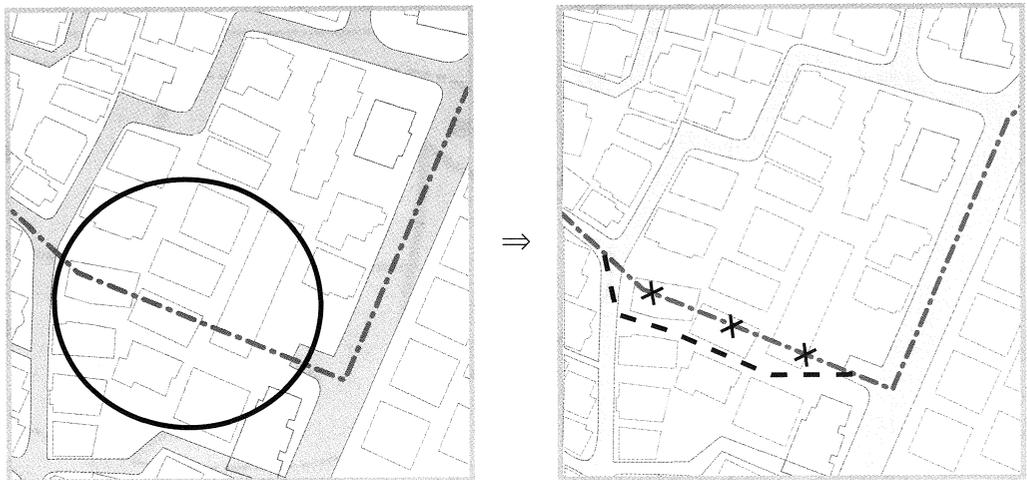
행정구역
경계

*** 행정구역 경계란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계를 말합니다**
 ⇒ 행정구역 경계는 담당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수정·보완합니다

- 1 기본도상의 행정구역 경계는 상위의 경계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 ☞ 시·군·구 경계와 읍·면·동 경계가 일치할 경우→시·군·구 경계선으로 표시
 - ☞ 시·도, 시·군·구, 읍·면·동 경계가 일치할 경우→시·도 경계선으로 표시
- 2 행정구역 경계는 반드시 인접지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불일치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상호 확인한 후 해당지역을 수정·보완합니다.
- 3 하나의 건물이 2개 이상의 읍면동에 중첩되거나 어느 읍면동에도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는 확인후 수정·보완합니다.
- 4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인접 읍면동(시군구)과 상호 확인하여 수정·보완합니다.
 - 읍면동(시군구) 경계선이 없거나 끊어져 있는 경우
 - 경계선이 주택 밀집지역 중심부를 지나가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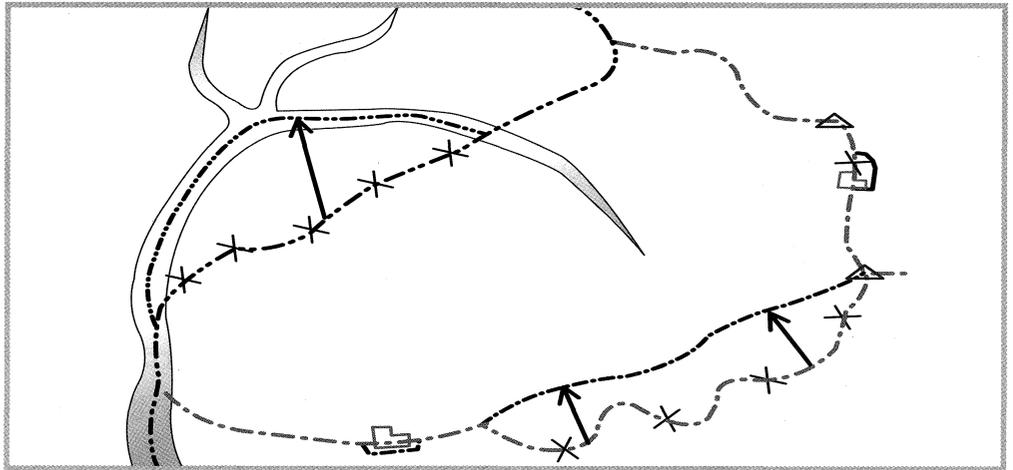
※ 행정구역 경계가 건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 과세대장 등을 관리하고 있는 읍면동에 포함합니다.

[그림 8] 건물에 걸쳐 있는 행정구역 경계의 수정·보완 예



- 5 행정구역 경계가 변경된 지역은 적색으로 「××」표시하고 변경된 경계선을 적색으로 수정·보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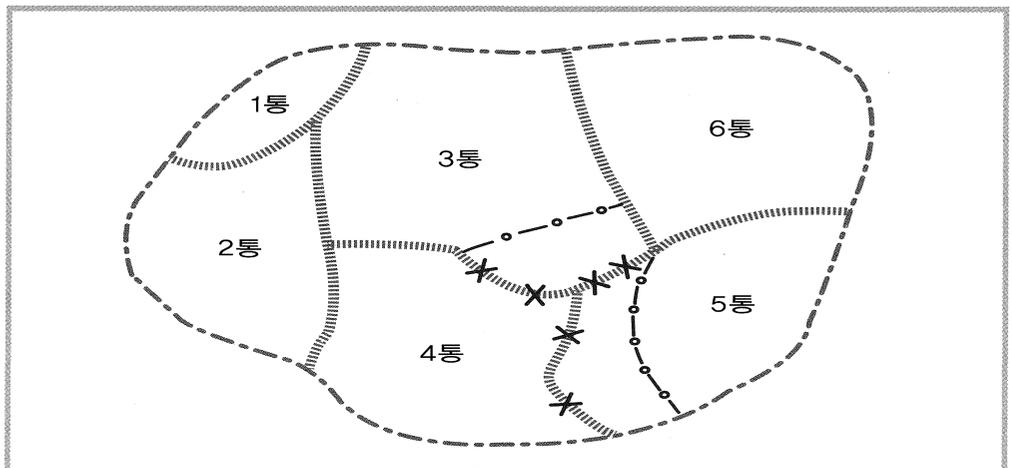
[그림 9] 변경된 행정구역 경계의 수정·보완 예



* 행정통·리 경계는 담당공무원 또는 통장·이장의 협조를 받아 수정·보완합니다.

- 1 기본도상에 행정통·리 경계기호와 명칭은 주황색으로 나타나 있으며 통·리 경계 기호는 「|| || || ||」와 같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 2 행정 통·리경계와 명칭은 일일이 확인하여 잘못된 경계선은 청색으로「××」표시하고 올바른 경계선을 「-○-○-」기호로 수정해야 합니다.
- 특히, 산간지역의 행정 통·리경계가 산능선으로 지나가는 경우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한 후 수정·보완 해야 합니다.

[그림 10] 행정 통·리경계의 수정·보완 예



- 3 행정 통·리경계는 변동이 잦으므로 철저히 확인하여 정확한 경계를 표시해야 합니다.

행정통·리
경계

지형지물
확인 · 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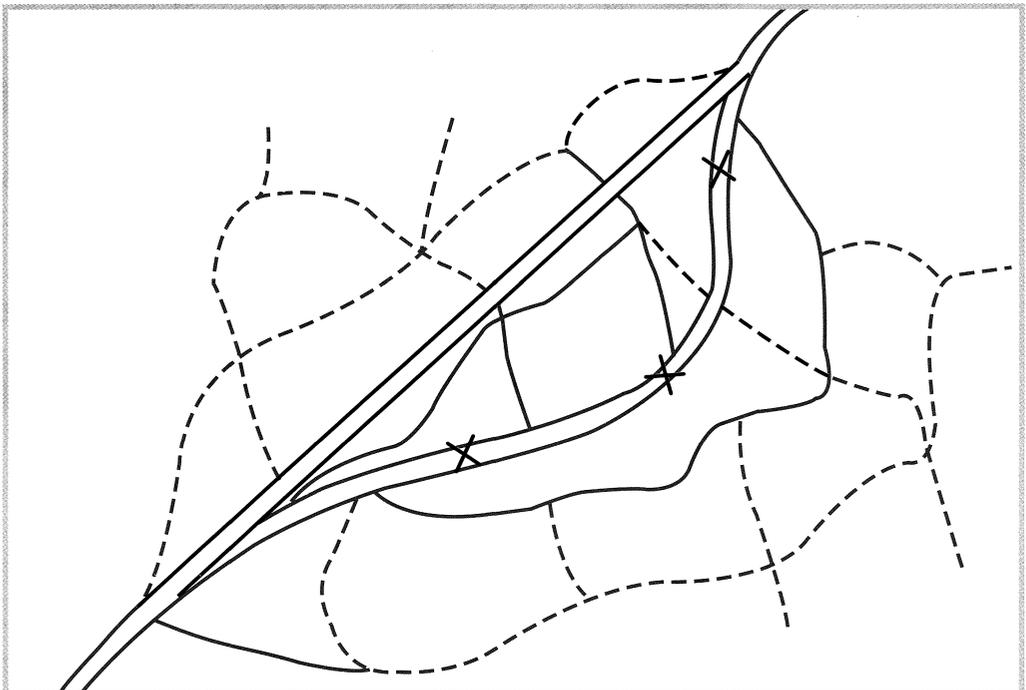
* 지형지물이란 도로, 하천, 철도, 건물, 능선 등 인공물 및 자연물을 말하며, 수정 · 보완은 모두 적색으로 표시합니다

- 1 도로, 하천, 건물, 주요명칭 등을 확인하여 기본도에 수정 · 보완합니다.
 - 지형지물이 현재와 불일치하는 경우 적색으로 수정 · 보완합니다.
 - 수정보완은 반드시 기본도의 범례에 있는 기호를 사용합니다.
 - 지형지물의 보완은 지도에 출력된 지형지물의 크기에 비례하도록 표시합니다.
 - 관공서, 병원, 공원, 학교, 교회 등의 주요건물명칭을 확인 · 보완합니다.

- 도로

- 1 신설, 확장 또는 누락 등으로 추가 보완할 때는 축척비율과 실제 위치에 맞게 지정된 기호를 이용하여 지도에 적색으로 표기하고, 철거 · 폐쇄 등으로 삭제할 때는 해당 위치에 적색으로 「×」표시합니다.
 - 특히, 도면에 출력된 도로와 실제 도로폭의 비율이 일치하도록 보완합니다
- 2 소로(골목길 등)는 기본도에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빠짐 없이 보완해야 합니다.
 - 도로폭 3m 이상 : 두줄로 표시 (=), 3m 미만 : 점선으로 표시(...)
 - 특히, 주택 밀집지역, 미개발지역의 골목길, 소로 누락에 주의합니다.

[그림 11] 도로의 수정 · 보완 예



- 하천

❶ 수로변경, 복개천 등 하천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보완하고 청색으로 수계를 표시합니다.

- 건물

❶ 기본도상에 표시되어 있는 건물을 일일이 확인하여 빠짐없이 수정·보완합니다.
- 기존의 건물이 헐리고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적색으로 「×」 표시 한 후, 신축 건물(거처)을 형태 및 축척에 비례하도록 알맞게 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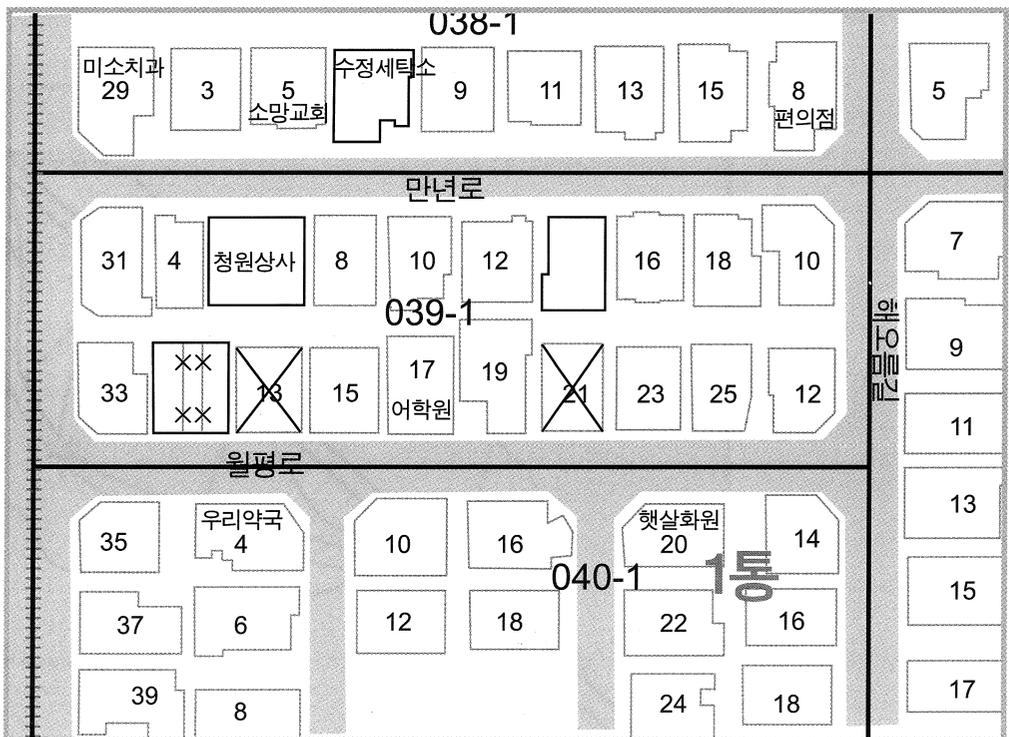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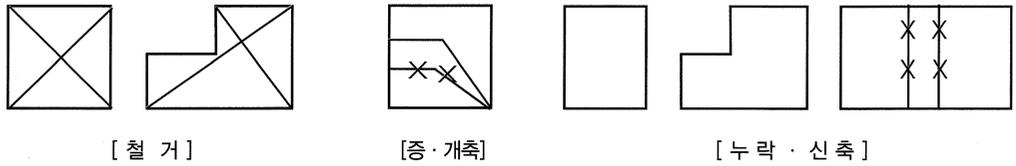
❷ 철거, 증·개축 건물과 신축·누락 등으로 보완하여야 할 건물은 「그림12」를 참조하여 표시합니다.

- 지도상에는 창고, 외양간 등의 부속건물이 모두 나타나 있으므로 건물 확인시 유의해야 하며, 부속건물은 추가적으로 보완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 신축중인 건물은 [] 로 표시합니다.

- 빈집은 「×」 표시를 하지 않고 그대로 둡니다.

[그림 12] 건물의 수정·보완 예



(주요명칭)

❶ 관공서, 학교, 공원, 교회, 사찰, ○○빌딩 등 **주요건물의 명칭**이 잘못 표시되었거나 누락된 경우에는 적색으로 보완합니다.

- 단, 음식점, 도·소매업 등 소규모업체의 명칭은 도심지역에는 기입하지 않으나, 도시의 외곽지역 또는 농어촌지역의 조사구경계 구분이 곤란한 지역은 기입합니다.

**기타
지형지물**

❶ 상기 이외의 지형지물 수정 보완은 기본도 범례에 표시되어 있는 지정기호를 사용하여 적색으로 보완합니다.

공동주택

❶ 시군구의 건축행정정보화 시스템(AIS) 관련부서에서 건축물대장 자료(공동주택 명부)를 입수,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공동주택 기본정보 현황표”와 대조하여 공동주택의 누락(신·증축)여부 및 유형(아파트, 연립, 다세대)을 확인합니다.

- 공동주택의 유형은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등)상에 등재된 명칭과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아파트와 아파트이외로 구분하고, 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번호를 부여합니다.

- 전개도 모양은 5층 이상인데 현황표에 연립·다세대로 표기된 것은 공부(건축물관리대장)상의 사용용도 및 명칭을 재확인합니다.

❷ 동(棟)별로 공동주택 명칭, 동명칭, 공동주택일련번호, 호실번호, 층수, 출입구형태(계단식, 복도식) 등을 일일이 확인하여 잘못 표시되어 있는 경우는 적색으로 수정·보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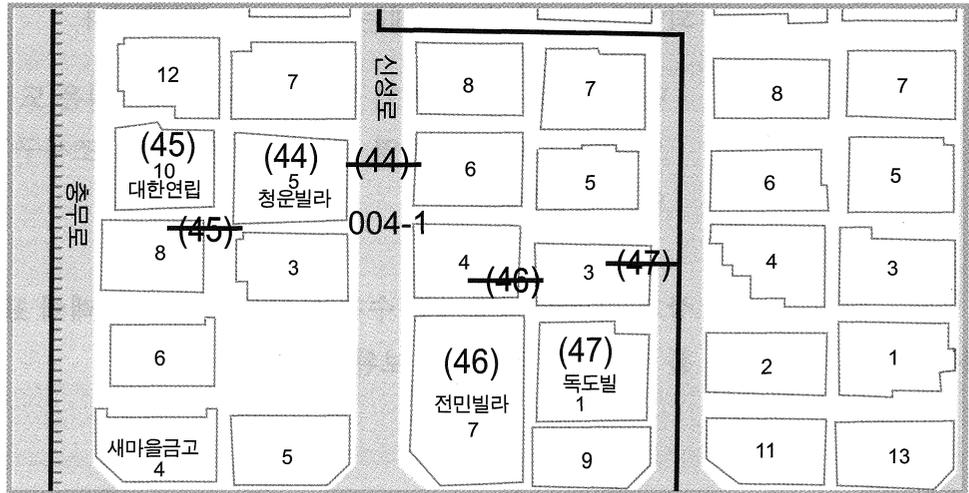
- 공동주택명칭은 통상적으로 불리어지는 명칭을 기준으로 하며,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지번을 기입합니다.

- 층수, 호수의 누락사항에 특히 유의합니다.
· 4호라인, 4층의 누락 및 중복 여부를 확인합니다.

- 일련번호가 기본도(부분확대도), 전개도 및 현황표 간에 서로 불일치 할 경우에는 기본도(부분확대도)를 기준으로 수정·보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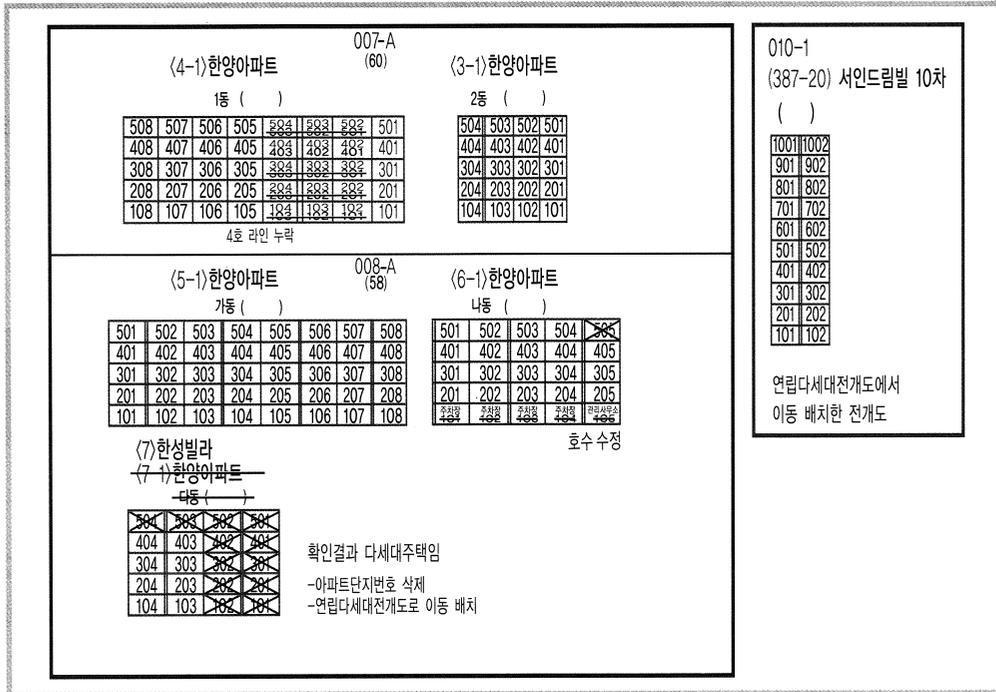
- 기본도상의 공동주택일련번호가 해당 건물을 벗어나 있는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여 일련번호를 수정·보완 합니다.

[그림 13] 기본도의 공동주택일련번호 수정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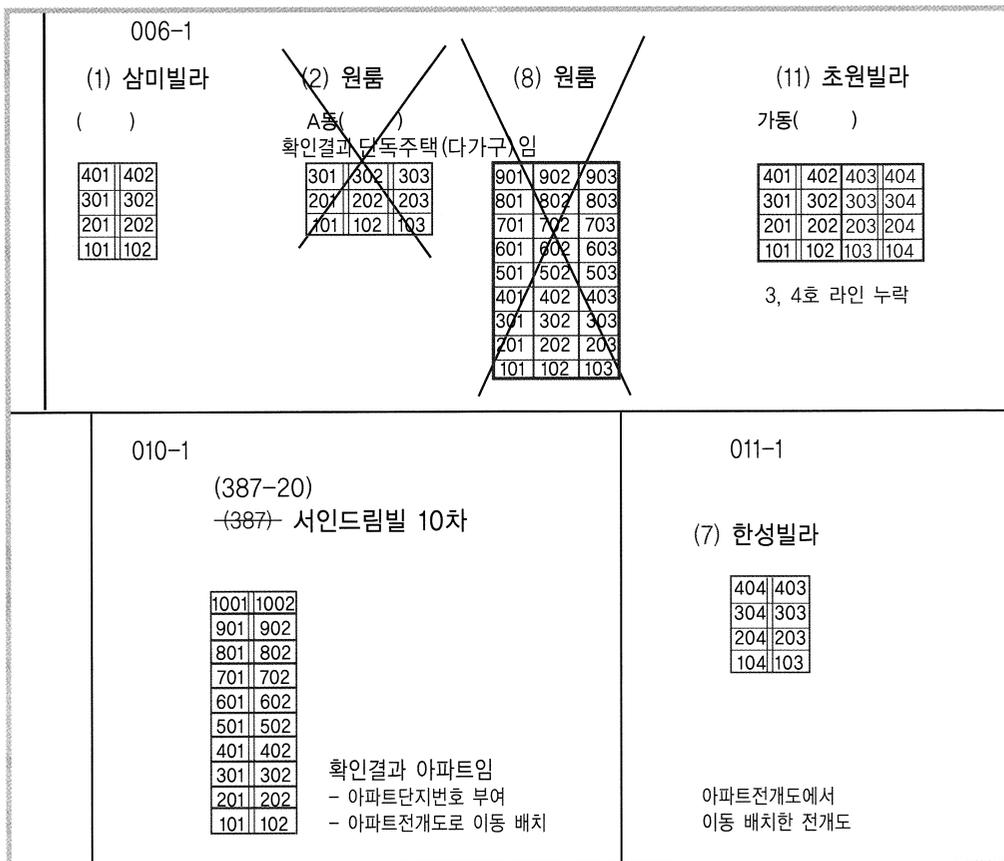


- 3 조사원의 동선 및 업무량 배정을 고려, 아파트 단지배치도의 모양에 따라 전개도가 적절히 배열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4 아파트는 아파트전개도에, 아파트이외 공동주택은 연립·다세대 전개도에 배치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 5 기초조사 결과 도심지역의 대규모 오피스텔의 누락이 많고, 특히 거주 여부 확인없이 호실수를 가구수로 산정하여 조사구가설정을 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거주가구수를 재확인합니다.
- 6 1개 동(棟)이 2개 조사구 이상으로 나뉘어 지는 경우에는 조사구 경계가 정확한지 재확인 합니다.(조사구 일람표상의 가구수 참조)
- 7 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총세대수와 “공동주택기본정보현황표” 상의 총호실수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미입주 또는 빈집이 있는 경우에는 현황표상에 그 내용을 기입하여 향후 변동조사구 보고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 8 특히, 기초조사시 읍면동 기본도상에 연립·다세대주택의 가구수가 파악되지 않아 조사구가설정시 제외된 지역이 다수 나타났으므로 반드시 가구수를 재파악하여 보완합니다.
- 9 동(洞)지역의 조사구 경계 가설정 시 40가구 미만의 소규모 아파트와 미입주 또는 신축중인 아파트는 특별관리를 위해 조사구경계를 초록색으로 구분하였으므로 재확인 후 조사구 설정 기준에 따라 조정합니다.

[그림 14] 아파트전개도 수정·보완 예



[그림 15] 연립·다세대전개도 수정·보완 예



공동주택
기본정보
파악 및
전개도 작성

* 2004년 10월 이후 신축 또는 누락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기본정보현황표와 모형도를 추가 작성합니다.

☞ 2005년 11월 이전에 입주 가능한 공동주택은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기본정보 현황표

① 행정구역 부호	② 읍면동 명칭	③ 통리 명칭	④ 조사구 번호	⑤ 공동주택 일련번호	⑥ 공동주택 명칭	⑦ 동명칭	⑧ 층수	⑨ 라인수	⑩ 출입구 형 태	⑪ 출입 구수	⑫ 총 호수	⑬ 입주 호수	⑭ 미입주 호수	⑮ 입주 예정월	⑯ 비 고
2503059	둔산동	3통	022-A	(47-8)	개나리아파트	101동	6	10	계단식	5	60				
2503059	둔산동	10통	094-1	(184-4)	라이츠아파트		5	4	계단식	2	19		19	2005년 10월	

- 동(棟)별로 한 줄(레코드)씩 작성하며, 명칭이 같더라도 위와 같다는 표시 (“//”) 를 하지말고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중복 또는 철거된 경우에는 해당 줄(레코드)을 삭제합니다
- 해당 읍면동 내의 모든 공동주택을 작성대상으로 하되, **층수, 라인수, 출입구 형태, 출입구수 항목은 누락, 신·증축의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① 행정구역부호 : 해당 읍면동의 행정구역부호 7자리를 기입합니다.
- ② 읍면동명칭 : 행정 읍면동 명칭을 기입합니다.
- ③ 통리명칭 : 행정 통리 명칭을 기입합니다.
- ④ 조사구번호 : 공동주택이 위치하고 있는 조사구번호를 기입하며, 1개 동(棟)이 2개 이상의 조사구로 구성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구번호 모두를 기입합니다.
- ⑤ 공동주택일련번호 : 읍면동별로 기구축된 일련번호를 활용하며, 신축 등의 사유로 일련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해당 읍면동의 일련번호 끝번호에 이어 부여합니다.
* 공동주택 일련번호는 해당 공동주택의 고유한 번호로 관리하기 때문에 삭제된 번호는 결번처리합니다.(전체적으로 이어서 부여하지 않습니다.)
- ⑥ 공동주택명칭 : 통상적으로 불리어지는 명칭을 말하며, 명칭이 없는 경우에는 지번을 기입합니다.
[새주소 지역은 새주소길, 번호를 함께 기입, 예 920번지(선사로139)]
- ⑦ 동명칭 : 2개동 이상이 하나의 명칭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분리하여 작성합니다.

- 8 층수 : 동별 층수를 말하며, 각 라인별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층을 기준으로 층수를 표시합니다.
- 9 라인수 : 1층의 총호수를 말하며, 거주호실과 함께 있는 피로티, 관리사무소 등도 포함합니다.
- 10 출입구형태 : 계단식, 복도식, 혼합식 등 출입구 형태를 기입합니다.
- 11 출입구수 : 해당 공동주택의 총출입구수를 말하며, 계단식의 경우 출입구가 측면에 있는 등 특이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비고란에 표시합니다.
- 12 총호수 : 해당 동(棟)의 거주가능 총호수를 말하며, 주상복합아파트의 상가 등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분은 총호수에서 제외합니다.
- 13 입주호수, 14 미입주호수 : 조사시점 현재 입주중이거나 장기간 부분입주로 있는 경우 그 총 입주호수 및 미입주호수를 기입합니다.
- 15 입주예정월 : 신축아파트 등 입주가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주예정월을 파악하여 기입합니다.
- 16 비고
 - 계단식과 복도식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출입구를 이용하는 라인을 기입합니다.
 - 같은 동에서 층수가 다른 경우에 그 내용을 기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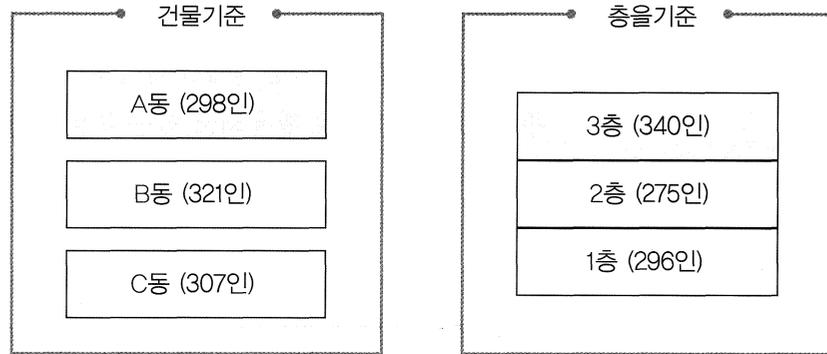
공동주택 모형도

- 1 작성대상 : 공동주택 기본정보 현황표에 등재된 공동주택으로 아파트전개도, 연립·다세대 전개도에 누락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누락 또는 신·중축 공동주택)
- 2 작성방법 : 아파트는 아파트전개도, 아파트이외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 등)은 연립·다세대전개도의 앞면 여백 또는 뒷면에 작성합니다.
 - 2개 이상 동(棟)의 전개도 모양이 동일하더라도 각 동별 전개도를 모두 작성합니다.
 - 전개도 작성 후 해당조사구 번호를 반드시 기입합니다.
- 3 작성내용
 - 단지배치도 : 아파트단지내 동(棟)이 3개 이상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 전개도 : 정면에서 펼쳐 놓은 모양이며, 누락 또는 신·중축된 전개도는 모두 작성하고, 건물 형태(복도식, 계단식, 혼합식), 출입구수, 층수 등이 정확하게 나타나도록 작성합니다.
 - 평면도 : 건물모양이 일자형이 아닌 경우(⊥형, +형 등)에 작성합니다.
- 4 작성예시 : p67. 부록8-4 참조

시설지역

- 1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지역이 기초조사 이후 신설 되었거나 누락 되었을 경우 조사구를 추가하여 설정합니다.(철거지역은 삭제)
 - 기숙시설 내에 거주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300인을 기준으로 동(棟), 층 또는 호·실 단위로 기숙시설을 아래 예시와 같이 기본도에 작성합니다.

[그림 16] 300인 이상인 기숙시설 작성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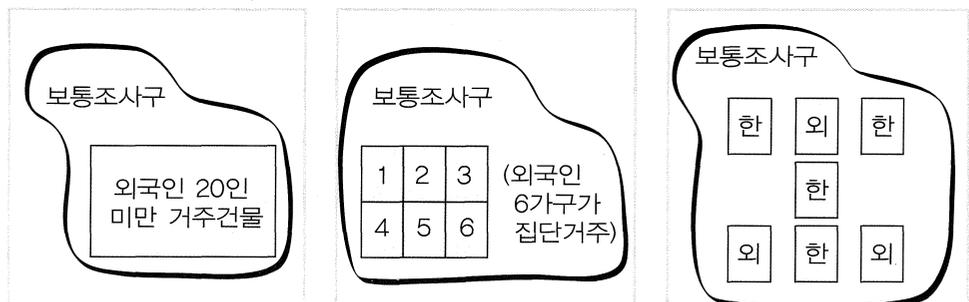
- 기숙시설내의 외국인이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내국인과 구분하여 별도의 외국인거주지역 조사구로 설정

[그림 17] 기숙시설내에 외국인 20인 이상이 살고있는 경우



- 외국인이 20인 미만 또는 외국인 가구가 10가구 미만이거나 한국인 가구와 섞여서 거주하는 경우는 외국인거주지역 조사구 설정대상이 아닙니다.

[그림 18] 기준미달인 외국인 조사구의 예시



2. 조사구 수정 · 보완

가. 기본사항

- ❶ 가구수 파악이 정확하게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취약지역 및 기초조사시 부정확하게 파악된 지역의 집중확인
- ❷ 공동주택의 신축 및 누락 현황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 아파트,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정확한 전개도 확보
- ❸ 적정 조사구 규모를 확보합니다.
 - 정확한 가구수를 바탕으로 적정 조사구수 확보
 - 주택의 대량 신축으로 가구수 증가폭이 큰 지역은 적정 조사구수를 재산정하여 설정합니다.(적정조사구수 산정시 특성번호 3,4,5번 조사구는 제외함.)
- ❹ 조사구 경계가 명확하게 설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현지 실정에 부합한 최적의 조사구 경계 설정
 - 뚜렷한 지형지물과 조사 동선을 고려하여 조사구 경계 구획

나. 조사구 수정 · 보완 범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설정된 읍면동 조사구 전체를 재조정합니다.

- ❶ 행정구역 개편(분할, 통합) 등으로 많은 조사구 경계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 ❷ 읍면동내의 대부분지역이 구획정리,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인하여 조사구의 전면조정이 필요한 경우
- 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다세대) 등이 읍면동내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신축, 철거 등으로 전면 조정이 필요할 때
- ❹ 기초조사시 파악한 가구수가 부정확하여 조사구의 가구수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 조사구 수정이 다수 필요한 경우
 - 특히 중점확인 대상지역 (가설정 조사구 적합성 현지확인 계획 참조) 및 취약지역의 가구수 편차 발생이 심한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설정된 조사구의 일부를 조정합니다.

- ❶ 행정구역 경계가 일부 변경된 경우
- ❷ 구획정리, 재개발, 도로(하천)의 신설·폐쇄 등에 의한 지형지물의 변화로 조사구경계 조정이 부분적으로 필요한 경우
- ❸ 가설정 조사구경계가 현지 실정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게 구획된 경우
- ❹ 가설정된 조사구 중 조사구당 가구수가 기준 가구수(64 ± 20)에 훨씬 미달되거나 초과되는 경우
- ❺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지역이 누락, 신설 또는 철거된 경우

다. 조사구 수정·보완 요령
공통사항

- ❶ 조사구 경계는 청색 실선으로 수정·보완합니다.
- ❷ 조사구 경계가 끊어져 있는 경우에는 모두 연결되도록 수정합니다.
- ❸ 조사구 경계내에는 조사구 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❹ 조사구 번호의 결번, 누락, 중복 및 오류 등으로 기본도와 조사구 일람표가 불일치할 경우 조사구번호를 일치되게 수정합니다.
- ❺ 조사구 경계가 건물위에 걸쳐 있어서는 안되며 걸쳐 있을 경우에는 현지 확인하여 한쪽으로 경계를 조정합니다.
- ❻ 아파트 신축, 가구수의 증가로 인해 조사구가 추가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마지막 다음번호를 부여합니다.
- ❼ 아파트 철거, 재개발, 가구수의 감소로 조사구가 통합 또는 삭제되었을 경우는 결번 처리합니다.
- ❽ 조사구 번호가 조사구 경계내에 위치하지 않아 불확실한 경우에는 조사구 번호를 경계안으로 이동시킵니다.
- ❾ 조사구 특성 번호가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수정·보완합니다.
- 보통조사구를 아파트조사구로 또는 그 반대 현상 등으로 특성 번호가 맞지 않는 경우는 수정·보완
- ❿ 조사구 경계가 기본도와 부분확대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게 연결되도록 확인·보완합니다.
- ⓫ 조사구 경계가 도로 또는 하천의 중앙으로 지나가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친 경우에는 경계를 중앙으로 바로 잡습니다.
- ⓬ 조사구 수정·보완이 완료된 후 조사구 번호 중앙 하단에 적색으로 () 표시하고, 연필로 괄호안에 최종 확인한 가구수를 기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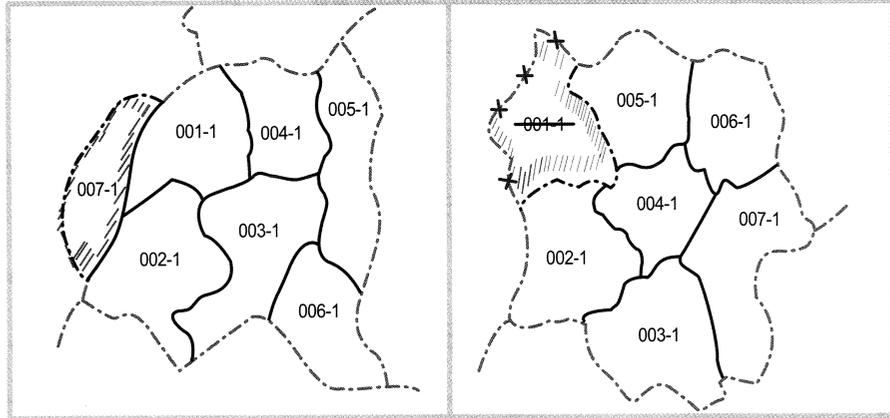
행정구역 변경

- ❶ 행정구역이 분할된 경우에는 조사구의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며, 조사구 번호를 새로 부여해야 합니다.
- 재조정된 조사구 경계 및 번호를 이용하여 조사구 일람표, 공동주택 기본정보 등 관련 자료를 모두 수정합니다.
- ❷ 행정구역이 통합된 경우에는 통합지역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조사구 번호를 조정하여 부여합니다.
- ❸ 행정구역이 일부 편입(또는 분할)된 경우에는 편입지역의 지형지물과 거처 및 가구수를 상호보완한 다음 편입 또는 분할지역의 조사구 경계를 조정합니다.

[그림 19] 행정구역 경계 변동으로 인한 조사구 수정·보완 예

[인접 읍면동 일부가 편입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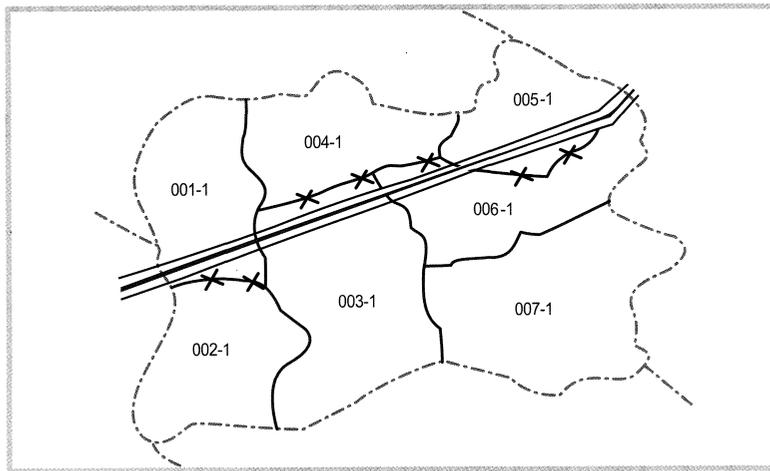
[인접 읍면동으로 일부 분할된 경우]



지형지물

- ❶ 도로의 신설 또는 철거로 인해 조사구를 수정해야 할 경우에는 가구수를 고려하여 경계를 조정합니다.

[그림 20] 지형지물 변동으로 인한 조사구수정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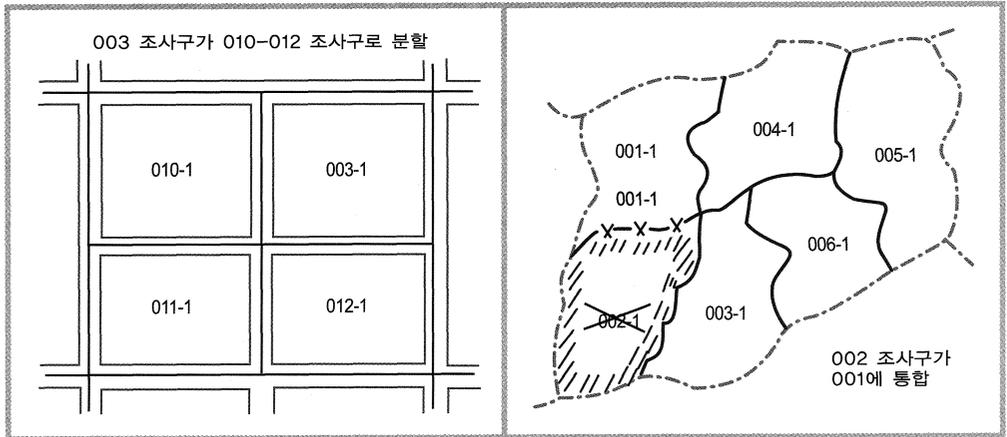


- ❷ 조사구내 건물(거처)의 신축 또는 철거로 가구수가 다소 증감된 경우에는 인접 조사구의 가구수를 고려하여 조사구 경계를 조정합니다.
- ❸ 조사구내 건물이 대량으로 신축되어 가구수에 현저한 증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사구 설정기준에 따라 조사구를 분할하여 수정합니다.
 - 건물이 대량으로 철거되어 가구수가 대폭 감소한 경우에는 인접조사구와 통합하여 경계를 조정합니다.

[그림 21] 지형지물 및 가구수 변동으로 인한 조사구 수정 예

[조사구를 분할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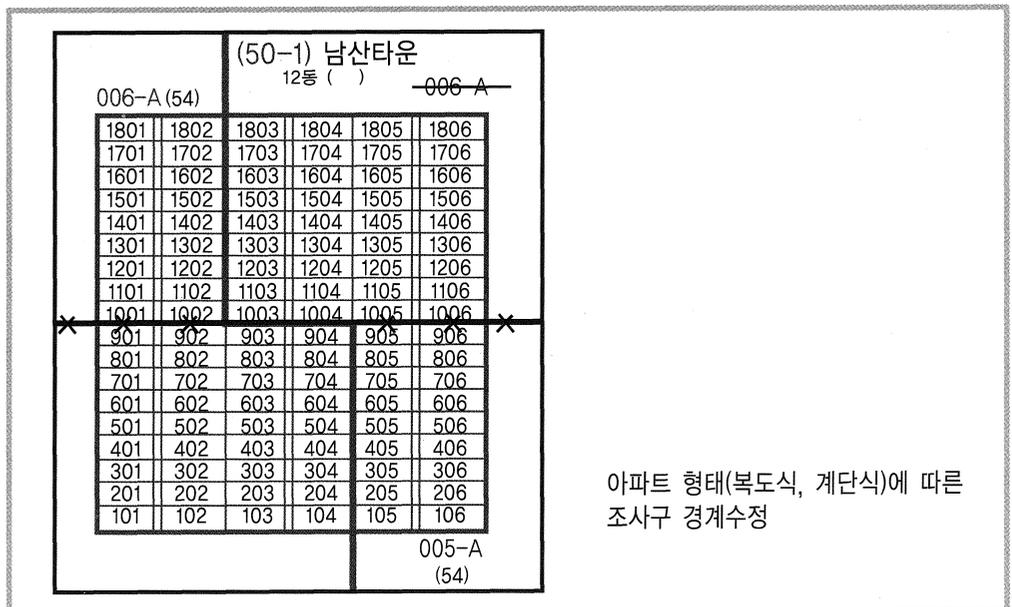
[조사구를 통합하는 경우]



공동주택

- ❶ 기초조사시 미입주(입주예정) 또는 신축중으로 조사되었던 공동주택은 입주여부 및 입주예정월 등을 재확인하여 입주가구수를 기준으로 조사구를 재설정합니다.
- ❷ 조사구내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의 신축으로 가구수가 현저히 증가된 경우에는 인접 조사구와 경계를 조정하거나 조사구를 추가하여 설정합니다.
 - 연립 및 다세대주택의 철거로 조사구내 가구수가 대폭 감소한 경우에는 인접 조사구와 통합하거나 경계를 조정합니다.
- ❸ 공동주택전개도를 수정한 경우에는 이에따른 조사구 경계도 확인 보완 합니다. (계단식은 계단(벽)을 기준, 복도식은 층을 기준으로 함)

[그림 22] 공동주택 형태에 따른 수정·보완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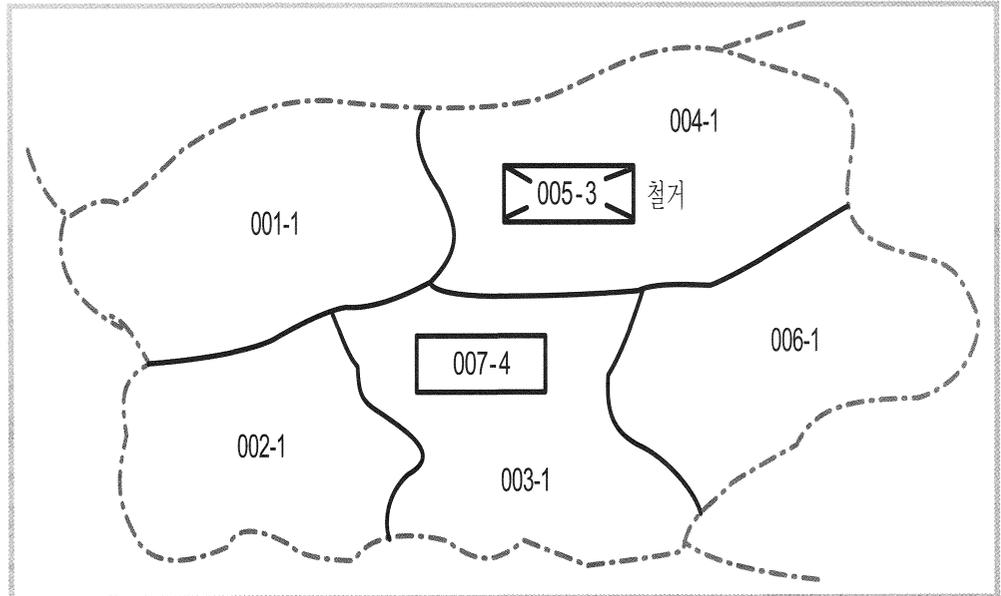
아파트 형태(복도식, 계단식)에 따른
조사구 경계수정

시설지역

❶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시 작성한 통·리별 가구수일람표에는 파악되어 있으나 기본도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은 시설지역은 조사구 가설정시 누락되어 있으므로 확인하여 조사구 설정을 합니다.

- 기초조사 이후 신축 또는 철거된 시설에 대해서는 아래 그림과 같이 조사구를 추가 또는 삭제 합니다.

[그림 23] 기숙시설·특수사회시설의 신설, 철거로 인한 조사구수정 예



❷ 시설조사구는 담장(울타리)을 경계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시설지역 전체로 표시한 경우는 해당 시설만 조사구 경계로 설정될 수 있도록 재확인하여 수정·보완합니다.

❸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에 거주(수용)인원을 파악하지 않고 시설의 호실수를 기입한 착오 사례도 있으므로 보완합니다.

- 관광호텔조사구를 객실수로 파악하여야 하나 인원수로 잘못 파악한 경우

❹ 외국인거주지역 조사구는 인원수로는 20명, 가구수로는 10가구 이상 인접하여 거주하는 경우만 해당되나, 한국인(가구)과 혼합거주하는 경우는 보통조사구로 설정합니다.

3. 정리 및 이기

- ❶ 현지확인을 완료한 후 현장 조사용 기본도, 부분 확대도 및 공동 주택전개도를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 ❷ 정리가 완료된 도면을 이용하여 나머지 1부(제출용)에 수정 및 보완 사항을 그대로 이기합니다.
 - 이기 작업시에는 수정 사항이 동일 색상으로 표시되도록 해야 하며, 빠짐없이 이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4. 기본도 확인표 작성

[확인표 작성 예시]

확 인 표									
사용 지도	새주소 ○	수치 지형도	출력 지도	출력축적 1 : 896	출력매수				
					기본도	부분확대도	아파트전개도	연립·다세대전개도	
					1	0	2	1	
통리수	총가구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수							
34		계	아파트	보통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호텔·외국인	
		55	7	43	0	4(548)	1(33)	0()	
읍면동 담당자	직위(직급)	성명	날인	시군구 담당자	직위(직급)	성명	날인		
	조사원	김희영			6급	정환경			
					7급	김연성			
상기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									
2005년 4월 일 대전광역시 (시) 서군 동상 1면 인 도 (구) (동)									
심사관	시/도	직급		성명		성명(날인)			
	통계청	직급		성명		성명(날인)			

- ❶ 조사구 적합성 확인이 완료된 후 기본도 좌측 상단에 있는 확인표를 최종 수정·보완하여 심사에 임합니다.
- ❷ 확인표에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적색펜으로 작성합니다.
 - 조사구의 종류 및 통리수
 - 조사구 적합성 확인이 완료된 후 특성번호별로 조사구수 및 통리수를 연필로 수정·보완 합니다.
 - 심사가 완료된 후 확정된 조사구수 및 통리수를 적색펜으로 수정·보완 합니다.

- 총가구수(인구)
 - 해당 읍·면·동의 현재 거주가구수를 기입합니다(아파트조사구, 보통조사구, 섬조사구, 외국인거주지역 조사구의 전체가구수임)
 -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및 관광호텔 조사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들 조사구내의 수용 또는 거주인구 합계를 가구수 아래에 ()하고 기입합니다.
- 시·군·구담당자 및 읍·면·동 담당자
 - 시·군·구 및 읍·면·동의 담당자명을 기입하고 날인합니다.
- 읍·면·동장 직인
 - 조사구 적합성 확인이 완료되면 시·군·구장(업무이관 지역) 또는 읍·면·동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조사구심사에 임해야 합니다.
- 심사관
 - 심사시 조사구설정이 확정된 읍·면·동에 대해 심사담당자가 기입합니다.

5. 조사구심사표 작성

❶ 조사구 적합성 확인이 끝나면 시·군·구 또는 읍·면·동(조사원)은 이를 토대로 조사구 심사표를 2부 작성하여 심사에 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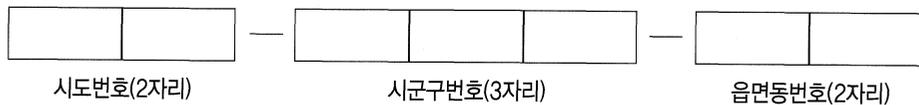
- 통계청에서 제공한 조사구일람표(심사표 작성 참고용)를 참조합니다.

[조사구심사표 작성 예시]

[조사구심사표 작성 예시]				심사관 :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구역부호	총조사구수	A	1	2	3	4	5	총가구수 (인구)		
대전	서구	둔산1동	2503059	62	5	53	-	1 (25)	2 (31)	1 (33)	3,596 (56/33)		

심사 전			심사 후			소재지 (법정동, 통·리/반명 및 번지를 구체적으로 기입)	비고
조사구 번호	특성 번호	가구수 (인구)	조사구 번호	특성 번호	가구수 (인구)		
001	1	64				둔산동 4통 1~3번지 257-332번지	
002	A	69				둔산동 센머리아파트 1~3호라인 전체, 4호라인1~10층	
003	A	66				둔산동 센머리아파트 4호라인 11~20층, 5~7호라인 전체	
004	3	(25)				둔산동 5통 61번지	삼천중 육상부 기숙사
005	4	(31)				둔산동 12통 124번지둔산양로원	둔산양로원
006	5	(33)				둔산동 2통 126번지청사호텔	청사호텔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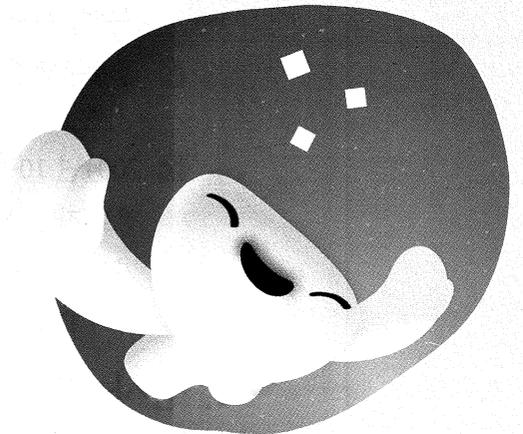
- 행정구역명 및 행정구역분류부호
 -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명을 기입합니다.
 - 기본도의 확인표 상단에 행정구역분류부호를 참조하여 기입합니다.(기본도의 행정구역분류부호가 잘못 표기된 경우는 수정)



- 심사관 소속 · 직급 · 성명 · 서명
 - 심사시 조사구설정이 확정된 읍면동만 심사관이 소속, 직급, 성명을 기입하고 서명합니다.
- 총 조사구수 및 총 가구수(인구)
 - 확인표 작성 요령과 동일
 - 특성번호별 조사구수 합계임 : $A + 1 + 2 + 3 + 4 + 5 =$ 총 조사구수
 - 총가구수(인구) : (56/33)중 56은 특성번호 3, 4의 인구수 합계이며, 33은 특성번호 5의 관광호텔 객실수를 표시합니다.
- 조사구번호 및 특성번호
 -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은 심사전, 심사관은 심사후 란에 작성합니다.
- 가구수(인구)
 - 조사구별 가구수를 기입하며 아파트조사구, 보통조사구, 섬조사구 이외에는 수용인원수를 ()안에 기입합니다.
- 소재지
 - 조사구별 해당 법정동 및 통 · 리(동, 구), 반명칭과 번지를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 아파트, 연립 등 공동주택의 경우 명칭 및 동번호까지 기입합니다.
 - 1개의 통, 리가 2개 이상의 조사구로 분할된 경우에는 조사구의 식별이 가능하도록 해당되는 반, 부락명, 번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 비고
 - 조사구 특성번호 3, 4, 5번에 해당되는 경우는 시설의 명칭을 기입합니다.

조사구 심사 VI

1. 심사 준비	45
2. 심사 방법	45
3. 심사 내용	45
4. 심사 결과 조치	45



1. 심사 준비

- 조사구 적합성 현지 확인이 완료된 후 심사 실시전에 아래의 자료를 준비합니다.
- ❶ 현지 확인 수정·보완이 완료된 기본도, 부분확대도, 공동주택전개도 각 2부
(제출용, 보관용)
- ❷ 공동주택기본정보현황표 1부
- ❸ 조사구 심사표 2부

2. 심사 방법

- 심사 일정에 따라 통계청 및 시·도 합동 심사반이 지정된 심사장소에서 시·군·구 및 읍·면·동 직원의 참석(조사원 참석 가능)하에 심사를 실시합니다.
- 심사도중 수정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즉시 보완하여 재심사를 받습니다.
 - 부득이 심사당일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음 심사장소에서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3. 심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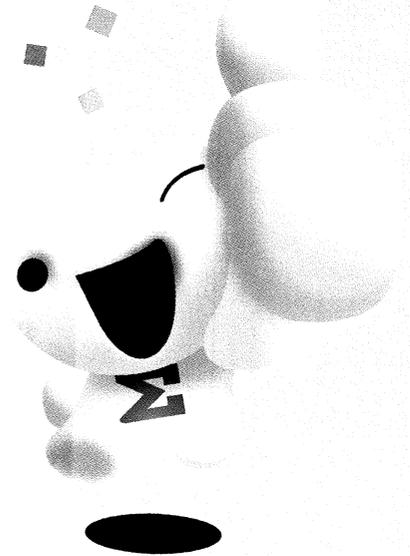
- 심사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합니다.
- ❶ 적정 조사구수에 대한 검토
 - 조사구설정 기준에 맞게 조사구설정이 되었는가를 검토
 - 적정조사구수=읍면동 총가구수/64±1
 - * 단, 가구수의 변동이 거의 없는 경우 가설정 조사구수 ± 1
- ❷ 기본도 및 부분확대도의 수정보완 상태 확인
 - 행정구역 및 통·리 경계, 주요 지형지물(건물)의 보완상태
- ❸ 조사구 경계 적합성 확인 및 보완 상태
 - 특히, 가구수 과약 취약지역(상가밀집, 원룸지역, 오피스텔 등)의 정확성 여부
- ❹ 공동주택전개도 확인 및 수정 상태
 - 기존 공동주택전개도의 동(棟)배치, 층수, 호수, 출입구 등 확인 및 보완상태
- ❺ 2004년 10월 이후 신축 또는 누락된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정보 작성 상태
- ❻ 기본도상의 확인표 작성 상태
- ❼ 조사구심사표(읍면동용) 작성 상태

4. 심사 결과 조치

- 심사관은 제출용과 보관용이 똑같이 표시되어 있는지 대조하여 최종확인하고 기본도 확인표 심사관란에 2부 모두 서명(날인) 합니다.
- 심사 결과 조사구설정 및 수정·보완사항 등이 부적절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사항을 보완토록 조치하고 보완후 재심사하여 반드시 기한내에 완료 조치합니다.

자료제출 VII

1. 조사구일람표 및 집계표 47
2. 공동주택기본정보 현황표... 48
3. 현지확인 제출용 지도 48



1. 조사구일람표 및 집계표

- 조사구 심사가 완료된 후에 조사구일람표(읍·면·동용)를 작성합니다.
- 조사구일람표는 조사구심사표를 이용하여 아래 양식과 같이 작성합니다.

[조사구일람표 작성 예시]

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구역부호	총조사구수	A	1	2	3	4	5	총가구수 (인구)
대전	서구	둔산1동	2503059	62	5	53	-	1 (25)	2 (31)	1 (33)	3,596 (56/33)

조사구 번호	특성 번호	가구수 (인구)	소재지 (법정동, 통·리/반명 및 번지를 구체적으로 기입)	비고
001	1	64	둔산동 4통 1~3번 257-332번지	
002	A	69	둔산동 샘머리아파트 1~3호라인 전체, 4호라인1~10층	
003	A	66	둔산동 샘머리아파트 4호라인 11~20층, 5~7호라인 전체	
004	3	(25)	둔산동 5통 61번지	삼천중 육상부 기숙사
005	4	(31)	둔산동 12통 124번지둔산양호원	둔산양호원
006	5	(33)	둔산동 2통 126번지청사호텔	청사호텔
f	f	f	f	f

☞ 기입요령 : 조사구 심사표 기입요령 참조

- 조사구일람표 작성이 완료된 후에 해당 시·군·구내의 읍·면·동일람표를 취합하여 엑셀 통합문서로 작성합니다.

- 작성파일명 : josagu_시군구부호.xls

(예시 : 대전시 서구 ➡ josagu_25030.xls)

- 시·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한 양식에 의해 별도로 조사구 집계표를 작성합니다.

☞ 조사구 집계표 (시·군·구용)양식 : 부록3참조

- 시·군·구에서는 읍·면·동별 조사구일람표와 집계표를 출력하여 시·도에 제출하고, 엑셀파일을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자료실의 “기타”란에 게시합니다.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주소 : <http://www.nso.go.kr/census2005/>

- 시·도에서는 시·군·구 조사구 집계표를 취합하여 시·도용 조사구 집계표를 작성한 후 5월 31일 까지 통계청에 제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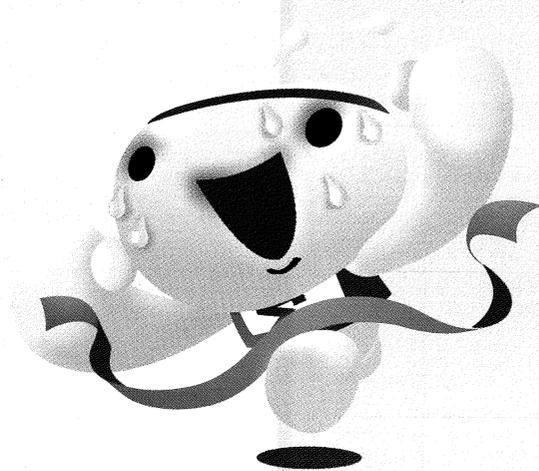
2. 공동주택기본정보 현황표

- 심사완료 후 시·군·구단위로 작성된 “공동주택기본정보현황표” 를 조사구 일람표와 같이 인구주택 총조사 홈페이지 자료실의 “기타” 란에 게시합니다.
 - 작성 파일명 : gong_시군구부호.xls 예) 대전시 서구 ⇒ gong_25030.xls
 - 반드시 시·군·구별로 한 sheet에 모두 작성

3. 현지확인 제출용 지도

- 조사구 심사가 완료된 후 3일 이내에 제출용 지도는 읍·면·동 제출용 봉투에 넣은 후 시·군·구단위로 포장하여 택배로 통계청에 발송합니다.
 - 제출 지도의 종류 : 기본도, 부분확대도, 공동주택전개도,
공동주택기본정보현황표 각1부
 - ☞ 통계청 주소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번지)
통계청 인구조사과 통계지리정보실 1동 1803호

VIII 변동조사구 수정·보완



VIII. 변동조사구 수정·보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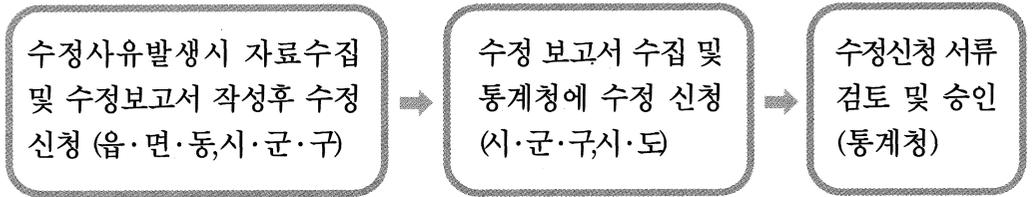
수정 기간

조사구 적합성 심사 이후부터 2005. 10. 15 까지 조사구에 수정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요령에 따라 수정·보완을 요청 합니다.

수정사유 및
방법

- ㉑ 조사구 적합성 심사 이후~2005. 10. 15.
- ㉒ 인접 읍면동으로부터 편입되는 경우
 - 우선 기본도 및 부분확대도에 편입지역을 연결하여 지형지물과 거처 및 가구수를 보완한 다음, 조사구설정 기준에 의하여 편입지역만을 재설정하거나 인접 조사구에 통합 설정합니다.
- ㉓ 읍면동의 일부가 인접 읍면동으로 분할되어 나갔을 경우
 - 읍면동의 경계를 수정 보완하되, 몇 개의 조사구가 부분적으로 잘려 나갔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인접 조사구와 통합 재조정하여 수정합니다.(P37 ~P38 참조)
- ㉔ 지형지물의 변동이 심하여 조사구경계를 수정해야 할 경우
 - 구획정리, 지역재개발, 도로 신설, 하천 개수, 재해 등에 의한 지형지물의 현저한 변화로 조사구 경계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조사구를 수정합니다.
(P37 ~P38 참조)
- ㉕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등이 신설 또는 철거되었을 경우
 - 신설된 경우에는 위치 및 형태를 기본도 및 부분확대도에 기입한 후 조사구 경계를 표시하고 조사구번호를 부여합니다.
 - 철거된 경우에는 이미 표시된 조사구 경계를 적색 수정펜으로 × 표시를 하고, 그 지역(건물)이 속하는 조사구에 포함시켜야 합니다.(P40 참조)
- ㉖ 가구수의 현저한 증감으로 조사구의 분할, 통합이 불가피한 경우
 - 조사구 설정 후 조사구내 가구수의 급격한 증가로 조사구의 분할이 필요할 경우에는 기본도 및 부분확대도에 증가된 거처 및 가구수를 보완하고 설정 기준에 의하여 분할 설정합니다.
 - 가구수가 현저히 감소되어 기준 가구수에 미달된 경우에는 인접 조사구와 통합 하여 재설정합니다.

수정 절차



수정 보고서 작성

- 1 시군구 및 읍면동은 해당 지역내에서 조사구의 수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현지를 재방문하여 확인한 후 지형지물의 형태, 가구수 등 조사구 수정에 필요한 제반 자료를 수집합니다.
- 2 시군구 및 읍면동은 조사구 수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시도)를 경유, 통계청에 수정 신청합니다
 - 매월 1회, 15일까지 보고 합니다.
 - 단, 변동조사구가 없는 경우에도 “변동없음”으로 보고 합니다.
 - 변경된 내용을 기본도(부분확대도)상에 수정·보완한 후 해당 부분을 복사하여 첨부합니다.
 - * 공동주택의 경우는 수정·보완된 전개도 포함

[수정 보고서 작성 예시]

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 구역 번호	구분	총 조사구수	특성별 조사구수					가구수 (인구)	
						A	1	2	3	4		5
대전	서구	둔산1동	2503059	당초	62	5	53	-	1 (25)	2 (31)	1 (33)	3,596 (56/33)
				수정	64	6	53	-	1 (25)	3 (42)	1 (33)	3,656 (67/33)

당 초			수 정			소재지 (법정동, 통·리/반명 및 번지를 구체적으로 기입)	수정사유	비 고
조사구 번호	특성 번호	가구수 (인구)	조사구 번호	특성 번호	가구수 (인구)			
005	A	64	005	A	64	둔산동 36통 센머리아파트 110동 1-4라인		
			062	A	60	둔산동 36통 센머리아파트 110동 5-8라인	2005년 7월 입주	
			063	4	(11)	둔산동 37통 7번 59번지	2005년 6월 신성	신성둔산 양호원

공통사항

- 행정구역명 및 행정구역 부호를 기입합니다.
- 조사구설정 심사 후 확정된 읍면동별 총조사구수, 특성별 조사구수, 총가구수(인구) 등을 기입합니다.
- 조사구설정이 완료된 후 수정 사유의 발생으로 수정·보완된 읍면동별 총조사구수, 특성별 총조사구수, 총가구수(인구) 등을 기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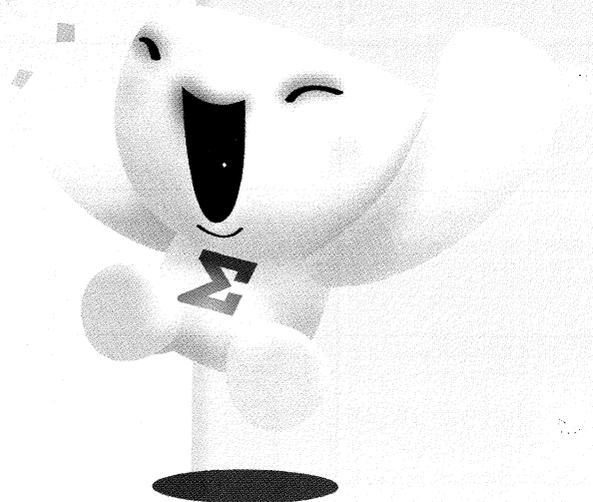
변동사항

- 당 초 : 수정 요청 조사구의 당초 조사구번호, 특성번호, 가구수(인구)를 기입합니다.
- 수 정 : 수정 요청 조사구의 수정된 조사구번호, 특성번호, 가구수(인구)를 기입합니다. 단, 지형지물의 수정 보완으로 조사구번호, 특성번호, 가구수가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둡니다.
- 소 재 지 : 수정 요청 조사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 통·리/반명 및 번지를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 수정사유 : 조사구의 분할·통합, 행정구역경계의 편입·분할·통합,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의 신설·철거 등 수정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IX 부록

1. 조사구 심사표 예시	54
2. 조사구일람표(읍·면·동용) 예시	55
3. 조사구집계표(시·군·구용) 예시	56
4. 조사구집계표(시·도용) 예시	57
5. 수정 보고서 예시	58
6. 무엇이든 물어보세요(Q&A)	59
7. 새주소 지도 활용 지역 현황	62
8. 조사구 가설정 읍면동지도	
8-1. 기본도	64
8-2. 아파트 전개도	65
8-3. 연립·다세대 전개도	66
8-4. 공동주택 모형도 (단지배치도, 전개도, 평면도)	67

for us Census



200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심사표

심사관: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구역 부호

총 조사구수	A	1	2	3	4	5	가구수 (인구)

심사 전			심사 후			소 재 지 (법정동, 통·리/천명 및 번지를 구체적으로 기입)	비 고
조사구 번 호	특 성 번 호	가구수 (인구)	조사구 번 호	특 성 번 호	가구수 (인구)		

(매 중 매)

2005년 월 일

통 계 청 장 귀 하

시 시 읍
 군 면 장
도 구 동

200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일람표
(읍·면·동용)

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구역 부호

총 조사구수	A	1	2	3	4	5	가구수 (인구)

조사구 번호	특성 번호	가구수 (인구)	소재지 (법정동, 통·리/반명 및 번지를 구체적으로 기입)	비고
계				

(매증 매)

2005년 월 일

통 계 청 장 귀 하

시 시 읍
 군 면 장
도 구 동

200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집계표
 (시·군·구용)

시·도 시·군·구

행정구역명 (읍·면·동)	총 조사구수	특성별 조사구수						가구수	인구	비 고
		A	1	2	3	4	5			
계										

(매중 매)

통 계 청 장 귀하

시 시
 도 군 구

장

2005 인구주택총조사
조 사 구 집 계 표
 (시·도용)

시·도

행정구역명 (시·군·구)	총 조사구수	특성별 조사구수						가구수	인구	비 고
		A	1	2	3	4	5			
계										

(매중 매)

통 계 청 장 귀 하 시

도

장

2005 인구주택총조사 수 정 보 고 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구역 부호

구분	총 조사구수	특성별 조사구수					가구수 (인구)
		A	1	2	3	4	
당초							
수정							

당 초			수 정			소 재 지	수정 사유	비 고
조사구 번호	특성 번호	가구수 (인구)	조사구 번호	특성 번호	가구수 (인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Q&A)

사 례	해 설
<p>Q1 동탄신도시아파트는 공사가 완료되어 현재 입주 중에 있으며, 2005. 9월 입주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때, 미입주된 가구도 총조사시 조사 대상에 포함되므로 미입주 가구를 포함하여 미리 조사구설정을 해야 합니까?</p>	<p>A1 현재 입주중이거나 2005. 11월이전 입주예정이라 할지라도 조사구설정 당시 미입주된 가구는 조사구설정 대상가구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입주가 완료되는 대로 변동조사구 수정이 매월 1회 (또는 수시) 이루어지므로 추가로 설정해야 합니다.</p>
<p>Q2 적합성 확인용 기본도상의 조사구번호 아래 ()내에 최종 가구수 기입은 반드시 연필로 기입·작성해야 합니까?</p>	<p>A2 그렇습니다. 추후 내용검토, 변동조사구 수정·보완 및 조사구역도 작성시 오류사항이 나타날 때 수정·참고해야 합니다.</p>
<p>Q3 조사구가설정시 파악된 기숙시설(3), 특수사회시설(4),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지역(5)조사구가 적합성 확인시 제외되거나 추가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p>	<p>A3 적합성 확인시 제외된 경우는 결번 처리하고, 추가되었을 경우에는 조사구일련번호 끝번호에 이어 부여합니다. ☞ 단, 적합성 확인시 제외 또는 추가되는 조사구수가 10%이상 일 때는 기본도상의 전체 조사구일련번호를 재부여합니다.</p>
<p>Q4 관내 기본도 및 공동주택전개도상에 오피스텔, 원룸 등 취약지역이 누락되어 재조사 하였습니다. 그런데, 호실별로 1가구로 간주하여 조사구설정을 할 수 있는지요?</p>	<p>A4 아닙니다. 지난해 기초조사시 공동주택중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 및 연립에 대해서만 호당 1가구로 간주하여 가구수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아파트, 연립 이외 오피스텔 원룸 등이 추가되었을 경우 호실마다 가구수를 철저히 재파악하여 조사구설정을 해야 합니다.</p>
<p>Q5 적합성 확인용 기본도상에 조사구경계선이 빌딩(상가) 또는 빌라 가운데를 지나거나, 여러 주택에 걸쳐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p>	<p>A5 기존의 경계선은 청색으로 ××표시하고, 변경된 경계선은 청색 굵은실선으로 수정·보완합니다. ☞ 변경된 사항은 기본도나 부분확대도 들중 한 곳에 수정·보완합니다.</p>
<p>Q6 공동주택전개도(아파트전개도)를 확인하다가 조사구경계, 조사구번호가 중복되어 있는 경우 그대로 두어도 상관이 없습니까?</p>	<p>A6 공동주택전개도(아파트전개도)의 가설정은 2000년 조사구설정을 참고하여 조사구를 설정 하였습니다. 아파트전개도상에 2000년 조사구경계, 조사구번호는 조사구일람표를 활용하여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 수정·보완하시기 바랍니다.</p>

사 례	해 설
<p>Q7 기본도 「제출용」은 반드시 종이테이프로 접합해야 하나요?</p>	<p>A7 접합 합니다. 적합성 확인과정이 200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설정 마지막 단계로써 「제출용」뿐만 아니라 조사구설정 관련 「보관용」서류의 보관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보관용은 수정보고의 근거자료임)</p>
<p>Q8 수도권(서울, 경기 등)지역의 하우스내에 거주하는 가구수를 하우스 지역 전체로 한 경우 통계청에서는 「하우스 전체 가구수」/64가구로 조사구 가설정을 하였습니다 예시) 하우스 전체 가구수가 1,000가구일 경우, 1,000가구/64가구 =15.6개 조사구이며, 001-1~016-1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p>	<p>A8 적합성 확인용 기본도에 하우스동별로 최대한 가구수를 재파악하여 조사구를 분할재설정 해야 합니다.</p>
<p>Q9 아파트인데 연립주택으로 간주되어 단지번호가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처리합니까?</p>	<p>A9 읍면동 단위로 부여된 앞부분 공동주택일련번호는 그대로 두고 아파트 단지번호의 맨 마지막 다음번호를 부여합니다.</p>
<p>Q10 신축(또는 누락)된 공동주택의 명칭이 없는 경우 공동주택명칭은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p>	<p>A10 명칭이 없는 공동주택은 번지를 명칭 대신 기입합니다. <small>☞ 단, 새주소 지역은 새주소 번호를 함께 기입합니다. [예시 920번지(선사로 139)]</small></p>
<p>Q11 기본도의 주요 범례 및 수정·보완 색상이 지난번 기초조사와 동일하나, 조사구경계선은 청색으로 수정·보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p>	<p>A11 금번 조사구 적합성 확인 부문에서는 조사구경계선 조정이 중요함에 따라 색상(청색)을 달리하여 정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p>
<p>Q12 2004년 9~10월 기초조사 이후 부속건물인 창고, 화장실을 철거한 경우도 수정합니까?</p>	<p>A12 그렇지 않습니다. 현저한 변화가 있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거쳐(주택)이 아닌 건물을 보완할 때는 주건물 위주로 수정·보완합니다.</p>
<p>Q13 조사구경계선이 잘못되었을 경우 수정펜으로 지울 수 있습니까?</p>	<p>A13 조사구경계선은 반드시 청색 굵은실선으로 수정·보완해야 하며, 이외 수정펜은 수정여부(수정대상)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p>

무엇이든 물어보세요(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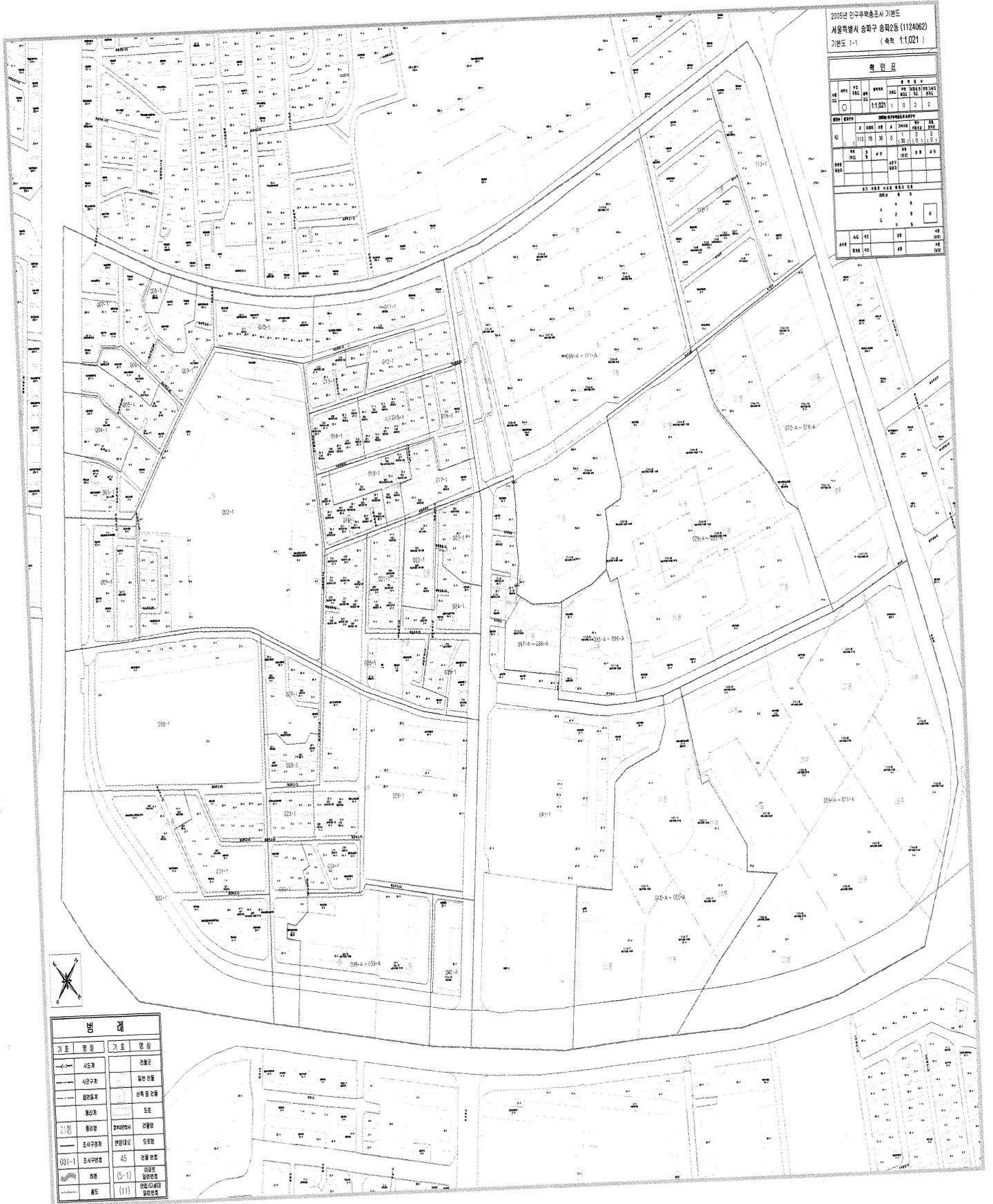
사 례	해 설
<p>Q14 중점 확인대상 읍면동은 어떻게 조사합니까?</p>	<p>A14 중점 확인대상 지역 현황(자료별첨)에서 해당 읍면동명을 확인한 다음 기초조사 기본도(보관용)를 이용하여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읍면동 전체를 재확인한 다음 조사구설정을 새로 해야합니다.</p>
<p>Q15 고시원에 공동식당은 없지만 취사시설이 있어 밥을 제공하는 경우도 기숙시설로 추가할 수 있습니까?</p>	<p>A15 그렇습니다. 「고시원의 운영형태에 따른 기숙시설과 보통조사구 구분 사례」를 살펴보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부만 할 수 있는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사, 취침이 불가능한 형태로 기숙시설조사구 설정대상이 아닙니다. · 개별 취침, 공동 취사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형적인 기숙시설로서 기숙시설조사구로 설정합니다. · 개별 취침, 개별 취사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내에 공동취사 시설이 없이 개별적인 생활 형태로 각각 개별가구로 간주하고 보통조사구로 설정합니다. · 혼합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부는 개별 취침 및 공동취사를 하고 있으며 일부는 개별적으로 취사 또는 매식하는 형태는 기숙시설조사구에 포함합니다.

새주소 지도 활용 지역 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	비 고
전국	87	1,491	
서울	25개 구	522	
부산	9개 구	141	
	서구	15	
	부산진구	25	
	북구	13	
	사하구	16	
	금정구	18	
	연제구	13	
	수영구	10	
	해운대구	17	
동대구	14		
인천	8개 구	117	강화군, 옹진군, 중구 영종동, 용유동은 새주소 제외
광주	5개 구	90	
대전	5개 구	80	
경기	17개시	293	
	수원시	42	
	성남시	45	
	부천시	37	
	광명시	18	
	안산시	24	
	고양시	37	
	과천시	6	
	의정부시	15	
	동두천시	7	
	구리시	8	
	오산시	6	
	시흥시	14	
	군포시	11	
	의왕시	6	
	하남시	10	
안성시	3	읍·면 제외	
이천시	4	읍·면 제외	

시·도	시·군·구	읍·면·동	비 고
강 원	3개 시	42	
	춘천시	15	읍·면 제외
	원주시	14	"
	강릉시	13	"
충 북	2개 시	38	
	청주시	29	
	제천시	9	읍·면 제외
충 남	6개 시·군	45	
	천안시	14	읍·면 제외
	공주시	6	"
	보령시	5	"
	아산시	6	"
	논산시	4	면 제외
	금산군	10	
전 북	4개 시	80	
	전주시	40	
	군산시	19	읍·면 제외
	익산시	14	"
	남원시	7	"
경 남	1개 시	12	
	창원시	12	읍·면 제외
제 주	2개 시	31	
	제주시	19	
	서귀포시	12	

기 본 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기본도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2동 (1124062)
기본도 1-1 (축척 1:1,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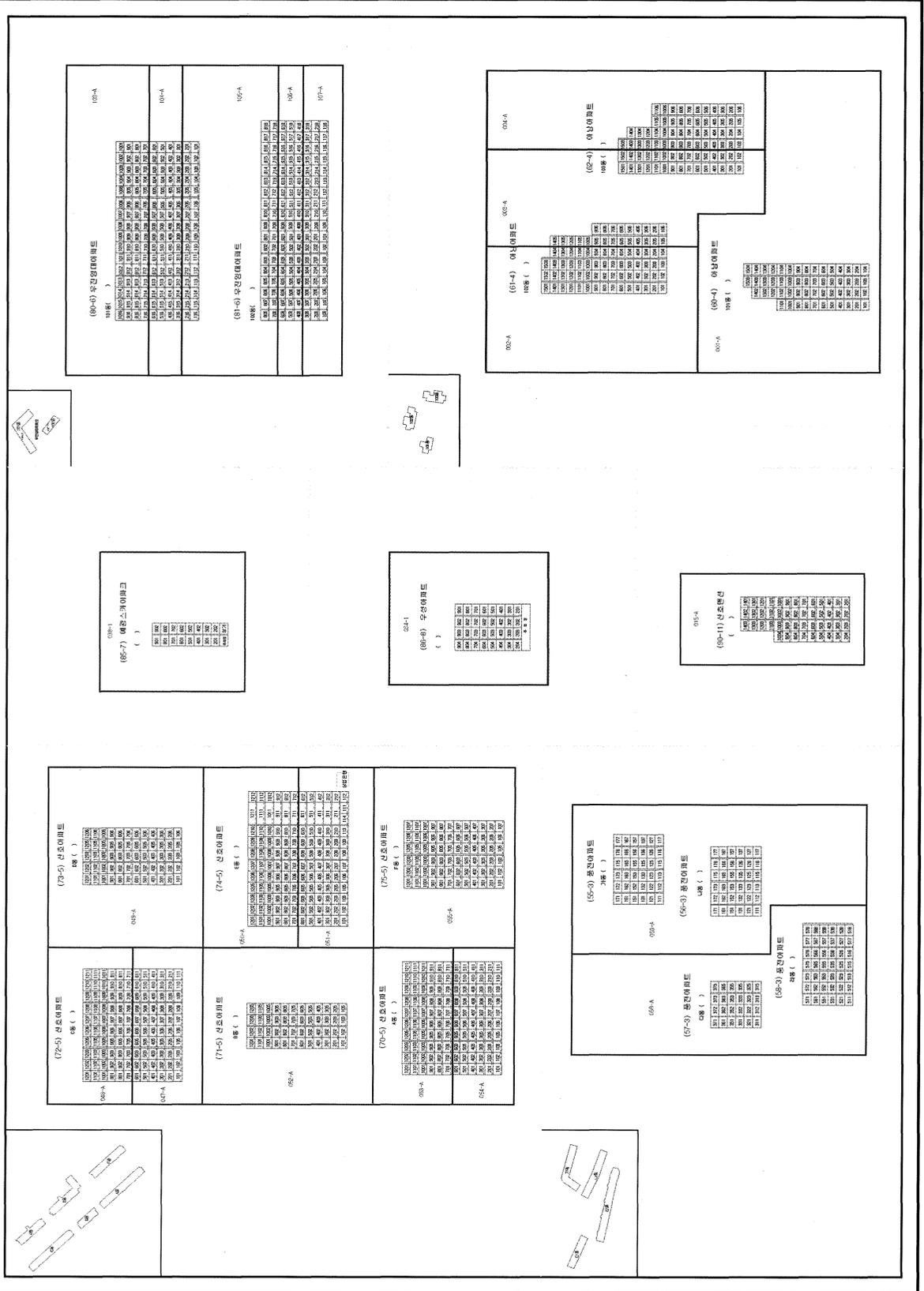
통계표											
세대	인구	주택	세대	인구	주택	세대	인구	주택	세대	인구	주택
11	111	11	111	111	11	111	111	11	111	111	11
2005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2005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2005년 12월 31일 현재 기준											

범례

기호	명칭	기호	명칭
→	시도계	○	건물주
→	시군구계	○	일반 건물
→	읍면동계	○	상속 중 건물
→	동계	○	도로
→	마을경계	○	간월경
→	조사구경계	○	도로망
→	조사구번호	45	건물 번호
→	연령	(5-1)	간월 경계
→	분리	(1)	도로망

아파트 전개도

2005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동 (1103057) 아파트 전개도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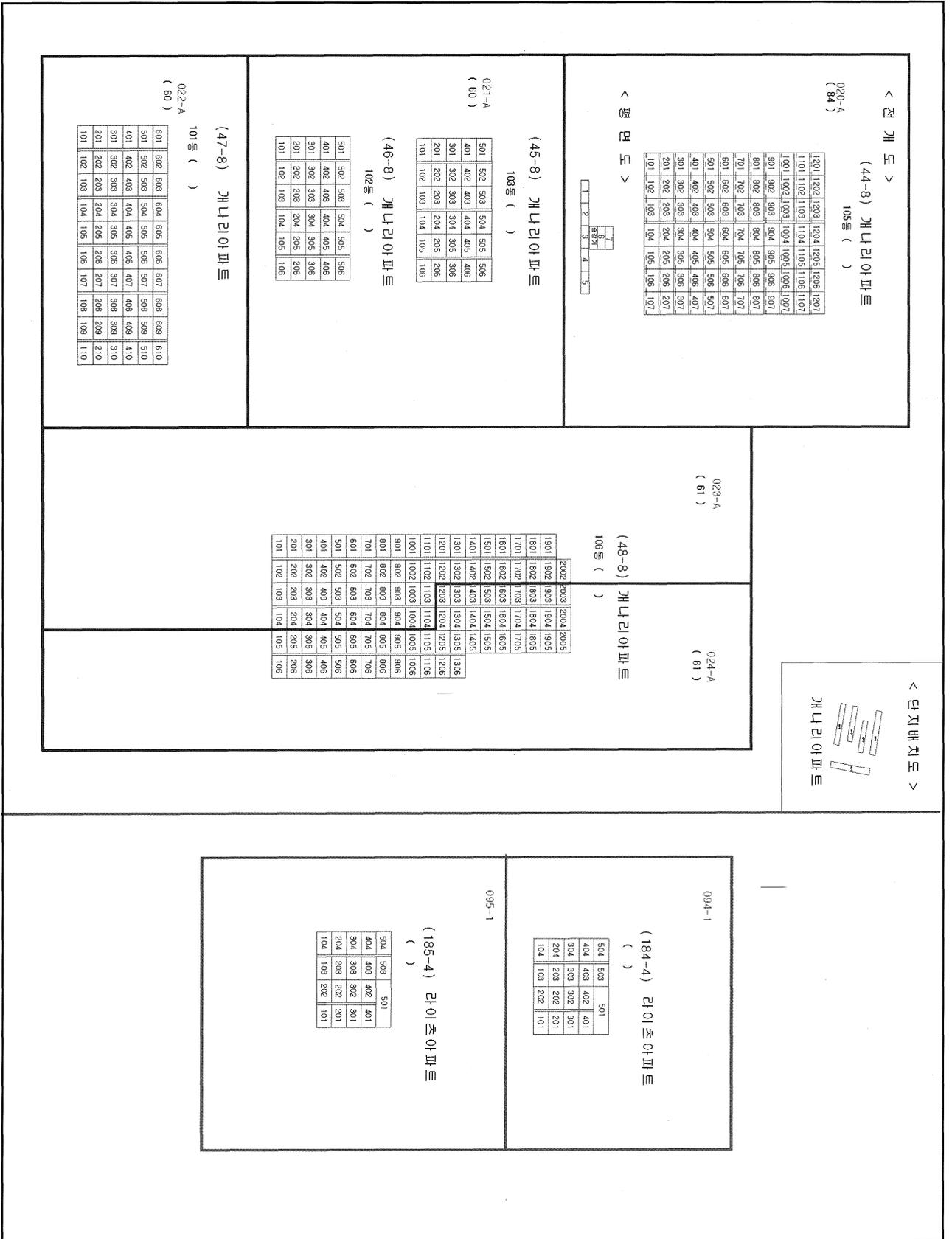


연립 · 다세대 전개도

2005 인구주택총조사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2동 (1103057) 연립 · 다세대 전개도 1-1

2층										3층	
(61) 원효로3가1-146 () [301 302 303] [201 202 203] [101 102 103] 주거용	(62) 원효로3가1-144 () [301 302 303] [201 202 203] [101 102 103] 주거용	(63) 원효로3가 1-145 () [301 302 303] [201 202 203] [101 102 103] 주거용	(64) 원효로3가 67 () [301 302 303] [201 202 203] [101 102 103] 주거용	(65) 원효로3가75-1 () [301 302 303] [201 202 203] [101 102 103] 주거용	(66) 원효로3가33-2 () [401] [301 302] [201 202] [101 102] 주거용	(68) 원효로3가1-140 () [301 302] [201 202] [101 102] 주거용	(69) 원효로3가1-142 () [301 302] [201 202] [101 102] 주거용	(70) 대성빌라 () [401 402 403] [301 302 303] [201 202 203] [101 102 103] 주거용	(60) 일광빌라 () [401 402] [301 302] [201 202] [101 102] 주거용		
4층			7층			8층		11층		11층	
(39) 대성빌라 () [302 301] [202 201] [102 101] 주거용	(40) 대교빌라 () [401 402] [301 302] [201 202] [101 102] 주거용	(42) 3-192 () [401] [301 302] [201 202] [101 102] 주거용	(59) 대성빌라 () [301 302] [201 202] [101 102] 주거용	(67) 삼성하이츠 () [501 502] [401 402] [301 302] [201 202] [101 102] 주거용	(38) 삼성빌라 () [301 302] [201 202] [101 102] 주거용	(22) 청나빌라 () [402] [301 302] [201 202] [101 102] 주거용	(35) 뉴정빌라 () [401] [301 302] [201 202] [101 102] 주거용				
10층		11층		11층		11층		11층		11층	
(36) 뉴정빌라 가동 () [401 402] [301 302] [201 202] [101 102] 주거용	(37) 럭키빌라 () [302 301] [202 201] [102 101] 주거용	(81) 신창동82-9 () [301] [201 202] [101 102 103] 주거용	(23) 삼성하이츠 () [301] [201 202] [101 102] 주거용	(24) 대성아파트 () [501 502] [401 402] [301 302] [201 202] [101 102] 주거용	(26) 원효하이츠빌라 () [301 302] [201 202] [101 102] 주거용	(25) 77-29 () [301 302 303] [201 202 203] [101 102 103] 주거용	(27) 청운빌라 () [401] [301 302] [201 202] [101 102] 주거용	(29) 대성5차빌라 () [401 402] [301 302] [201 202] [101 102] 주거용	(30) 승원주력 () [302 301] [202 201] [102 101] 주거용		
11층				12층				14층			
(31) 은행나무주력 () [302 301] [202 201] [102 101] 주거용	(32) 현대유연빌라 () [401 402] [301 302] [201 202] [101 102] 주거용	(33) 신창빌라 A동 () [302 301] [202 201] [102 101] 주거용	(34) 신창동77-51 () [302 301] [202 201] [102 101] 주거용	(52) 96-6(성심어린이집) () [401] [301] [201] [101] 주거용	(53) 동효빌라 () [401] [301 302] [201 202] [101 102] 주거용	(54) 동효빌라 () [301 302] [201 202] [101 102] 주거용	(43) 원효로4가 69 () [301 302] [201 202] [101 102] 주거용	(44) 승진빌라 () [401 402] [301 302] [201 202] [101 102] 주거용			
14층											
(45) 창기아파트 () [301 302 303] [201 202 203] [101 102 103] 주거용	(46) 삼현빌라 () [301 302 303] [201 202 203] [101 102 103] 주거용	(47) 동원연선 () [401 402 403] [301 302 303] [201 202 203] [101 102 103] 주거용	(48) 이화연선 나동 () [201 202] [101 102] 주거용	(49) 이화연선 가동 () [201 202] [101 102] 주거용	(50) 원효연선 () [301 302 303] [201 202 203] [101 102 103] 주거용	(51) 이화연빌 () [301 302 303] [201 202 203] [101 102 103] 주거용					
14층											
(82) 원효로3가227-1 () [301] [201] [101] 주거용	(83) 티워빌라 () [401] [301 302] [201 202] [101 102] 주거용	(84) 한마음타워 () [401] [301 302] [201 202] [101 102] 주거용	(85) 한마음빌라 () [301] [201 202] [101 102] 주거용	(86) 창노루빌 () [501 502] [401 402] [301 302] [201 202] [101 102] 주거용							
15층											
(200) 한신코아오피스텔 068-1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067-1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069-1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065-1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909 910 911 912 913 914 915 916 917 918 919 920 921 922 923 924 925 926 927 928 929 930 931 932 933 934 935 936 937 938 939 940 941 942 943 944 945 946 947 948 949 950 951 952 953 954 955 956 957 958 959 960 961 962 963 964 965 966 967 968 969 970 971 972 973 974 975 976 977 978 979 980 981 982 983 984 985 986 987 988 989 990 991 992 993 994 995 996 997 998 999 1000]						(202) 동일스위트 062-1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26 227 228 229 230 231 232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 271 272 273 274 275 276 277 278 279 280 281 282 283 284 285 286 287 288 289 290 291 292 293 294 295 296 297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30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332 333 334 335 336 337 338 339 340 341 342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 352 353 354 355 356 357 358 359 360 361 362 363 364 365 366 367 368 369 370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386 387 388 389 390 391 392 393 394 395 396 397 398 399 400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상가 상가 상가 상가					

공동주택 모형도(단지배치도, 전개도, 평면도)





200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 세부실시계획

2004. 8.

통 계 청

차 례

I. 조사구 설정 개요	3
1. 설정 목적	3
2. 설정 방법	3
3. 대상 지역	3
4. 실시 체계	3
5. 실시 일정	4
II. 개선 및 변경사항	5
III. 단계별 실시계획	6
1. 조사구 설정용 지도 작성	6
2. 아파트 조사구 가설정	7
3. 시·도 통계관 회의	7
4.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	7
5. 조사구 가설정	7
6. 조사구 경계 입·출력	8
7. 조사구 확인 및 수정	8
8. 표본 조사구 추출	8
9. 조사구지도 작성	9
10. 변동 조사구 수정	9

IV.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 세부 실시계획	10
1. 업무 흐름도	10
2. 대상 지역	11
3. 실시 기간	11
4. 실시 방법	11
5. 인력 동원	11
6. 수행 사항	12
7. 조사용품류	13
8. 업무량 배정	16
9. 조사원 채용	17
10. 교 육	19
11. 현장조사 및 실사지도	20
12. 확인 및 접수	22
13. 자료 제출	23
V. 예산 재배정	24
1. 재배정 예산과목	24
2. 재배정 기준	24
3. 재배정 내역	26
VI. 행정 사항	27
[부 록]	29
1. 조사구 설정 기준	31
2. 거처와 가구의 개념	38
3. 새주소 지도 활용 지역	41
4. 동원 가능 읍면동 현황	43
5. 아파트가 대부분인 洞	44
6. 시·도별 교육 일정	45
7. 지방통계사무소 동원 인력	46
8. 기초조사 지침서 배부 내역	48
9. 행정리 이장 답례품 배부 내역	49
10. 행정리 이장 협조 사항	50
11. 통·리별 가구수 일람표	51

I. 조사구 설정 개요

1. 설정 목적

- 조사담당 구역을 명확히 하여 거처(가구)의 누락 또는 중복을 방지
- 조사원의 업무량을 적정하게 배분
-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틀로 활용
- 소지역별 통계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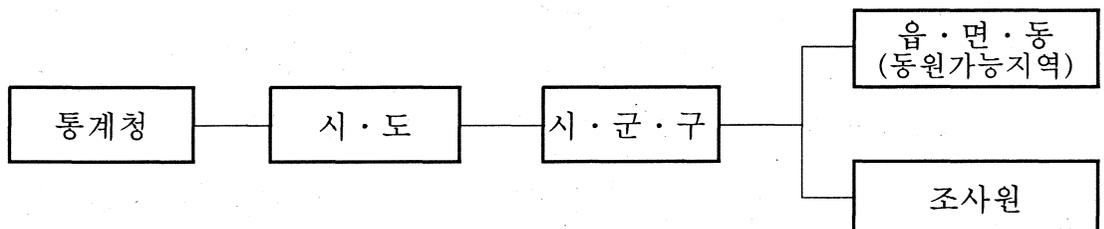
2. 설정 방법

-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 : 지자체를 통한 조사원 채용, 활용
 - 조사 내용 : 현장확인 및 가구수 파악
- 조사구 설정 : 경계 가설정(통계청) ⇒ 적정성 확인(지자체)
 - 조사구 가설정 : '04. 6~'05. 2월
 - 아파트 조사구 : '04. 6~'04. 12월
 - 아파트 외 조사구 : '04. 10~'05. 2월
 - 가설정 조사구 경계 적정성 확인 : '05. 3~4월

3. 대상 지역

- 전국 3,552개 읍·면·동
 - 제4차, 5차 시험조사 지역(12개 읍면동)은 제외
 - ⇒ 시험조사 조사구 설정 자료 활용

4. 실시 체계



5. 실시 일정

업무단계	담당	일정	업무내용
조사구 설정용 지도 작성 및 배부	통계청	'04. 6~8월	읍면동지도 및 부분확대도, 공동주택(연립,다세대)전개도 2부
↓			
아파트 조사구 가설정	통계청	'04. 6~ '05. 1월	아파트 전개도를 이용하여 통계청에서 조사구 가설정
↓			
시·도 통계관 회의 개최	통계청 시·도	'04. 8월 말	조사구 설정 세부계획 전달, 협조사항 당부 및 토의
↓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 (현장 확인 및 가구수 파악)	지자체 (조사원)	'04.9~10월	지형지물(도로, 건물, 주요명칭 등) 각종 경계선, 지형지물 현장 확인·보완 및 건물(거처)별 가구수 파악
↓			
조사구 가설정	통계청	'04. 10월~ '05. 2월	읍면동별 조사구 경계 구획 및 번호 부여, 조사구 일람표 작성
↓			
조사구 경계 입·출력	통계청	'04. 10월~ '05. 3월	아파트 조사구 : '04. 9~12월 아파트 외 : '04. 11~'05. 3월
↓			
조사구 확인 및 수정	지자체 (조사원)	'05. 3~4월	지역실정에 적합한 조사구 경계 확인 및 수정·보완
↓			
표본조사구 추출	통계청	'05. 4~5월	아파트, 보통 및 섬조사구를 대상으로 10% 표본조사구 추출
↓			
조사구지도 작성	통계청	'05. 5~9월	조사구 경계 수정입력 및 조사구지도(2부) 출력
↓			
변동 조사구 수정	지자체 (통계청)	'05.5~10월	- 분양 아파트 정보 사전 수집 및 특별 관리 - 변화 심한지역 중점 관리

II. 개선 및 변경사항

구 분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가구수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건물(거처)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종류 및 지역특성별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연립주택 ⇒ 가구수 파악 안함(戶별 1가구로 간주) - 아파트·연립주택 이외 ⇒ 변동 건물 위주로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동 : 조사원 현장조사 · 면 : 이장 협조를 통해 확인
설정 방법	횟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부, 시부 구분(2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1회) 실시
	업무 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 가구수 파악 및 조사구 가설정 ○ 통계청 : 조사구 심사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 가구수 파악, 가설정 조사구 적합성 확인 및 보완 ○ 통계청 : 조사구 가설정 및 확정
	아파트 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부,시부 조사구 설정시 가설정 및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아파트 자료를 이용하여 통계청에서 가설정 후 현장 보완 - 2004년 경계 가설정 완료 예정
조사구 설정용 지도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치지도(CAD형태)를 이용하여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주소 지역 : 도로명 및 건물번호가 표시된 찾기 쉽고 정확한 새주소 지도 활용(1,485개 읍면동) ○ 새주소 이외 : 수치지도(CAD) 활용(2,067개 읍면동)
변동조사구 관리 및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 변동조사구 수정보고(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 변동조사구 수정보고(매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양 아파트 정보수집 및 특별 관리 - 변화가 심한 지역 중점 관리

Ⅲ. 단계별 실시계획

1. 조사구 설정용 지도 작성

- 지도 종류 : 4종
 - 읍면동지도, 부분확대도, 공동주택(연립·다세대주택)전개도, 면지역 행정리 지도

- 작성 방법 : 새주소 지역과 이외 지역을 구분하여 작성
 - 새주소 지역 : 1,485개 읍면동
 - 새주소 지도 활용지역 : 부록3(41쪽) 참조
 - 새주소 이외 : 2,067개 읍면동

- 작성 기간 : 2004년 6~8월
- 출력 부수 : 각 2부
- 작성 기준
 - 읍면동지도 및 부분확대도
 - 읍면동지도 : 읍·면·동 단위로 관내지역 전체가 나타나도록 작성
 - 밀집지역은 부분확대 또는 전체확대하여 식별이 가능하도록 작성
 - 공동주택(연립·다세대 주택)전개도 : 별지에 따로 모아서 작성

- 읍면동지도 출력 사항 비교

구 분	새주소 활용 지역	새주소 이외 지역
지도 표시 사항	① 지형지물 : 도로, 하천, 건물 ② 행정구역 및 통·리 경계 ③ <u>새주소</u> : 도로명, 건물번호(적색) ④ 주요명칭 : 관공서, 학교, 병원, 공원 등 ⑤ 2000년 총조사 가구수(녹색) ⑥ 2000년 총조사 이후 신축, 증개축 변동 건물(녹색)	①, ② : 좌 등 ③ : 자료 부재로 제외 ④ 주요명칭 : 관공서, 학교, 병원, 공원, 빌딩명, 주요사업체 등(조사구경계 식별가능토록) ⑤ 2000년 총조사 가구수(녹색) ⑥ : 신축·증개축 미표기 (자료 부재)
도 로	도로 음영 표시 : 연회색	도로 선을 진하게 표시

2. 아파트 조사구 가설정

□ 실시 방법

- 아파트 정보(전개도 등)를 이용하여 통계청에서 경계 구획
- 조사구 경계의 적합성 현장확인 및 수정('05. 3~4월)

□ 설정 기간 : '04. 6~'05. 1월

□ 설정 기준

- 40가구 이상인 아파트에 대해 60가구(± 20) 범위내에서 설정
- 40가구 미만인 아파트는 일반지역에 포함하여 설정

3. 시·도 통계관 회의

□ 회의 안건

- 조사구 설정 세부실시계획 전달
-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 지침 설명
- 시·도 추진사항 및 협조사항 당부

□ 회의 일자 : 2004. 8. 30.~31.

- 8. 30 : 조사구 설정 관련 회의(16개 시·도)
- 8. 31 : 시범예행조사 실시 관련 회의(서울, 충북, 경북)

□ 참석 범위 : 시·도 통계담당 계장 및 실무자

- 시범예행조사 지역(3개 시군구)은 시군구청 통계담당 및 실무자 참석

4.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 : 세부내용은 10쪽 부터 참조

5. 조사구 가설정

□ 설정 기준 : 부록1 “조사구 설정 기준(31쪽)” 참조

- 가구수 파악이 완료된 조사구설정용 지도상에 식별이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평균 60가구(± 20 가구) 기준으로 조사구 경계 구획 및 번호 부여

□ 설정 방법 및 내용

- 아파트 지역과 이외지역으로 구분하여 가설정 실시
- 조사구 경계 구획 및 번호 부여 : 통계청 인구조사과
- 조사구 가설정 완료후 일정양식에 의해 조사구일람표 작성

설정 기간

- 읍·면(1,408개) : 2004년 10월~12월
- 동 (2,144개) : 2004년 12월~2005년 2월
- ※ 제4차, 5차 시험조사 지역(2개 面, 10개 洞) 제외

6. 조사구 경계 입·출력

실시 내용

- 가설정 조사구 경계 및 번호 전산파일에 입력
- 조사구 경계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구 읍면동지도 출력
- 조사구 일람표 입력

실시 방법

- 통계청에서 표준사양 작성, 용역사업으로 추진
- 단, 조사구 일람표는 통계청에서 입력

실시 기간 : 2004. 9월~2005. 3월

- 아파트 조사구 : 2004. 9~2005. 1월
- 아파트 외 조사구 : 2005. 1~3월

7. 조사구 확인 및 수정

실시 내용

- 통계청에서 가설정한 조사구 경계가 지역실정에 적합한지 여부와 타당성 확인 및 수정

실시 방법

- 지자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

실시 기간 : 2005년 3~4월

인력 동원 : 지자체 공무원 및 조사원 채용, 활용

세부 계획 : 별도 수립, 시행

8. 표본 조사구 추출

실시 방법

- 조사구 일람표를 이용하여 시군구 단위로 10% 표본조사구 추출
- 통계청에서 추출

- 추출 시기 : 2005년 4~5월(추가 추출 : 8~10월 기간중)
- 표본조사구 일람표 인쇄 및 배부 : 2005. 10월 초

9. 조사구지도 작성

- 작성 내용
 - 조사구 경계 수정사항을 전산에 입력한 후 조사구 단위로 일정 규격에 의해 조사구지도 2부 출력
- 추진방법
 - 통계청에서 조사구지도 출력 표준 사양 작성
 - 업무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용역사업으로 추진
- 작성 사양 : 별도 계획 수립, 시행
- 작성 기간 : 2005년 5~9월

10. 변동 조사구 수정

- 실시 내용
 - 조사구 설정 이후 가구수 증감 또는 지형지물 변동에 의한 조사구 수정 및 관리
- 실시 방법
 - 조사구 수정보고 및 관리 철저
 - 가구수 증감 및 지형지물 변동에 의한 조사구 수정보고
 - 분양 아파트 정보 사전수집 및 특별 관리
 - 대단위 개발지구, 아파트 신축지역 등 변화가 심한 지역은 집중 관리
 - 수정보고 주기 : 매월 1회
 - 단, 대규모 아파트 입주 및 대단위 공사 착수로 조사구 수정이 많을 경우에는 수시 보고
 - 조사구 수정 및 관리를 위한 지역전담 인력 운영
- 실시기간 : 2005년 5~10월

IV.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 세부 실시계획

1. 업무 흐름도

담당	업무명	추진일정	업무내용
통계청	기초조사 지도 작성	'04. 6.7.~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지도(부분확대도), 공동주택 전개도 각 2부를 제작하여 시군구에 배부 * 면 : 40가구 이상 행정리별 지도 1부 배부
시군구	조사원 채용	'04. 8.26.~9.4.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당 배정일수에 따라 1명 채용 채용기간 : 9. 6. ~ 10. 2. 단, 아파트가 대부분인 동(77洞)제외
통계청 시군구	담당자 교육	'04. 9.6.~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 : 시군구 담당자(계장 및 실무자), 조사원 교 관 : 통계청 직원 장 소 : 시도, 시군구별 지정장소
조사원	조사용품 수령	'04. 9.7.~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지도, 부분확대도, 전개도 행정 정보 자료 사무용품
조사원	현장확인·보완	'04. 9.13.~1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계선 : 행정구역, 통·리 등 지형지물 : 건물, 도로, 철도, 하천 등 신축(또는 누락)된 공동주택 정보파악
조사원	가구수 파악	'04. 9.13.~10.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면상에 표시된 건물별 실제거주 가구수 파악, 가구묶음, 통·리별 가구수 일람표 작성
통계청 시군구	확인 및 접수	'04. 10.4.~1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계선, 지형지물, 가구수 적정여부, 가구묶음 적정여부를 확인후 접수

2. 대상 지역

□ 전국 3,552개 읍면동(제4차, 5차 시험조사 지역 12개 읍면동 제외)

○ 제외 대상 : 12개 읍면동

- 제4차 시험조사 지역 : 송파구 송파2동, 안성시 안성3동·보개면

- 제5차 시험조사 지역 : 대구시 동구 방촌동, 인천 연수구 선학동, 강화군 화도면,
광주시 남구 백운1동·주월2동, 대전시 동구 판암1동·
산내동, 울산시 북구 송정동·양정동

※ 제4차, 5차 시험조사 지역은 시험조사 조사구 경계를 그대로 활용

3. 실시 방법

□ 업무를 3단계로 구분 실시 : 담당자 교육, 현장조사 및 지도, 확인 및 접수

4. 실시 기간 : 2004. 9. 6.~10. 16.

□ 담당자 교육 : 9. 6.~9. 10. 기간중 2일

○ 시도 및 시군구 직원 교육 : 1일

○ 시군구 전달교육 (읍면동 직원 및 조사원) : 1일

□ 현장조사 및 지도 : 9. 13.~10. 2.

□ 확인 및 접수 : 10. 4.~10. 16.

5. 인력 동원

□ 지자체 : 통계담당 공무원, 조사원

○ 동원 가능 읍면동 : 통계담당 공무원, 조사원

○ 동원 불가능 읍면동 : 조사원

□ 통계청 : 본부 및 지방통계사무소

○ 교육 : 본부 교관 6명

○ 실사지도 : 약 142명(본부 10명, 지방통계사무소 132명)

○ 확인 및 접수 : 약 142명(본부 10명, 지방통계사무소 132명)

※ 지방통계사무소 동원인력 : 부록7(46쪽) 참조

6. 수행 사항

[통계청]

- 조사구 설정 실시 계획 수립 및 총괄
- 조사구 설정용 지도 출력 및 배부
- 조사구 설정 용품 제작 및 배부
-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교육
- 실사 지도, 확인 및 접수
- 조사구 가설정 및 입력

[시·도]

- 조사구 설정 실시 계획을 시·군·구에 시달
 - 시·군·구에 예산 재배정
- 시·군·구 담당자 교육장소 확보
- 시·군·구별 조사원 채용 현황 취합 및 관리
- 통계청 직원과 합동 실사지도 및 확인, 접수
- 관내지역의 기타 업무 총괄

[시·군·구]

- 조사원 채용 및 업무량 배정
- 지침서 전달 교육
 - 전달 교육 대상 : 조사원, 읍·면·동 직원(동원 가능 지역)
- 현지확인 및 가구수 파악 실사 및 지도
 - 부실 및 취약지역의 집중 지도, 지원
- 관련 예산의 집행
- 현장조사 완료 지도의 확인 및 접수

[읍·면·동 : 동원 가능 지역]

-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 총괄 및 관리
 - 행정구역 경계 및 통·리 경계 확인
 - 현장 조사 지원 및 업무진행상황 점검
- 교육 참석
- 확인 및 접수 참석
 - 자료 준비 및 시군구별 확인, 접수에 임함

[조사원]

교육 참석

- 일 시 : 2004. 9. 7.부터 시군구 지정 일자
- 장 소 : 시·군·구청 지정장소
- 교육내용 : 기초조사 지침서 중심 교육

조사용품 수령

- 수령 일시 : 기초조사 교육 후
- 기초조사 지도 : 읍면동지도, 부분확대도, 공동주택전개도 각 2부(1부는 「제출용」, 1부는 「보관용」) [2003년 기초단위구 현지확인 지도는 참고용임]
- 행정자료 : 신축 및 증·개축 건물 목록, 기숙시설·특수사회시설·관광호텔 목록
- 사무용품 : 연필, 지우개, 3색 볼펜(적색, 청색, 흑색), 자, 종이테이프

현장조사

- 조사 내용 : 지형지물 확인·보완, 건물(거처)별 가구수 확인 및 지도에 가구수 기입

정리 및 제출

- 조사 내용을 제출용 도면에 이기 및 정리
- 가구 묶음(20가구 내외), 통·리별 가구수 일람표 작성

7. 조사용품류

가. 조사구 설정용 읍면동 지도

지도 종류 : 4종

- 읍면동지도, 부분확대도, 공동주택 전개도, 면지역 행정리 지도

배부 부수

- 기초조사용 지도(3종) : 2부(현장조사용, 제출용)
- 2003년 기초단위구 현지확인용 읍면동지도 : 1부 ⇒ 참고용으로 활용

배부 장소 : 시군구청 통계담당 부서

배부 방법 : 방문 소포(택배)

배부 시기 : 교육 실시 전까지 도착

배부 내역 : 별도 첨부

시·군·구 확인 및 조치 사항

- 배부 내역(별도 붙임)과 실제 배부된 수량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통계청 인구조사과에 연락(☎042-481-2249, 481-6831)

나. 조사원증

제작 방법

- 케이스 : 통계청에서 제작·배부
 - 착용 형태 : 목걸이형
- 조사원증 : 시군구에서 아래 사양에 맞게 자체 작성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nso.go.kr/census2005) 자료실에 게시

조사원증 작성 사양

- 규 격 : 가로 11cm× 세로 8cm
- 바탕색 : 노랑
- 사진부착 : 반명합판(3cm×4cm)
- 기입 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무수행기간(조사원 마다 다름)
- 관 인 : 뒷면에 시군구청장 직인

<앞 면>

<뒷 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100%; height: 100%;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p style="margin: 0;">사 진 (3cm×4cm)</p> </div>	<p>200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설정 기초조사 조 사 원 증 홍 길 동</p> <p>○○시(도) ○○구(시군)</p>
---	--

발급번호 :
주민등록번호 :
직무수행기간 : 2004. 9. ~ .
<p>이 사람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4년 9월 일</p> <p>○○시(도) ○○구(시군)청장</p>

다.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 지침서

- 배부 장소 : 시·도청 통계담당 부서
- 배부 방법 : 방문 소포
- 인쇄 수량 : 10,000부
- 배부 기준
 - 시·도 : 160부(16개 *10부)
 - 시·군·구 : 1,016부(254개*4부)
 - 읍·면·동 : 8,525부(3,552개*2부*1.2)
 - 조사원 및 담당공무원 각 1부
- 시도별 배부 내역 : 부록8(48쪽) 참조

라. 지도 보관 봉투

- 제작 방법 : 통계청에서 일괄 제작
- 용 도 : 조사구 설정용 지도 제출용 및 보관용으로 활용
- 보관 단위 : 읍면동별 각각 보관
- 배부 방법 : 조사구 설정용 지도 배부시 함께 배부
- 배부 장소 : 시군구 통계담당 부서
- 제작 수량 : 8,800개
 - 시군구 : 7,815개(3,552개 읍면동*2매(보관용, 제출용)*1.1)
 - 시·도 : 562개(234개 시군구*2매(보관용, 제출용)*1.2)

마. 행정리 이장 답례품

- 답례품 지급 목적
 - 면지역은 관할구역이 넓어 조사원의 현장방문 보다는 관내 지리에 밝은 행정리장의 협조를 통한 정확하고 효율적인 가구수 파악 필요
 - 따라서, 조사원의 현장 방문을 최소화하고 행정리장의 협조에 대한 답례품을 지급함으로써 조사 협조 유발 및 정도제고에 기여
- 지급 대상 : 면지역 행정리 이장
- 지급 사유 : 행정리 관내 가구수 및 지형지물 확인 협조에 대한 답례
- 품 목 : 수건 1세트(2장)
- 조달 방법 : 통계청에서 일괄 발주 및 배부
- 배부 장소 : 시군청 통계담당부서
- 제작 수량 : 31,000세트
 - 행정리 : 28,189세트(28,189리 * 1세트 : 행정리장)
 - 면 : 2,398세트(1,199면 * 2세트 : 면장, 담당자)
 - 시·군 : 280세트(140市·郡 * 2세트 : 통계담당 계장, 실무자)
- 시·도별 배부내역 : 부록9(49쪽) 참조

바. 사무용품

- 종 류 : 연필, 지우개, 볼펜(3색 1세트), 종이테이프
- 구입 방법 : 예산 재배정을 통한 시·군·구 자체 구입
- 구입 단가 : 읍·면·동 당 2,000원

8. 업무량 배정

가. 읍면동별 업무량 배정 기준

□ 기본 업무량 : 읍면동별 각 2일

- 교육 1일, 정리 1일

□ 지형지물 변동 상태(2003년 10월 이후) : 읍면동별 상·중·하로 구분

- 상 : 4일, 중 : 3일, 하 : 2일

- 상 : 택지개발, 아파트 신축, 구획정리 등으로 인해 변동상태가 심한 경우(20%이상)
- 중 : 변동상태가 심하지 않지만 도로, 건물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5-20%)
- 하 : 지형지물 변동이 거의 없는 경우(5% 미만)

※ 2003년 10월 이후의 변동상태는 상·중·하로 분류하여 2004. 6.30.~7.20. 기간 중에 지자체를 통해 파악한 자료를 이용하여 산정

□ 확인 대상 규모별 업무량

<읍·洞 : 아파트 이외 확인 대상 거주수(2000년 총조사 자료)기준으로 배정>

- | | |
|------------------|------------------|
| ○ 500 미만 : 1일 | ○ 500~ 999 : 2일 |
| ○ 1000~1499 : 3일 | ○ 1500~1999 : 4일 |
| ○ 2000~2499 : 5일 | ○ 2500~2999 : 6일 |
| ○ 3000~3999 : 7일 | ○ 4000 이상 : 8일 |

<면 : 행정리 數에 의해 배정>

- | | |
|---------------|---------------|
| ○ 1~10개 : 1일 | ○ 11~20개 : 2일 |
| ○ 21~30개 : 3일 | ○ 30~40개 : 4일 |
| ○ 41개 이상 : 5일 | |

나. 시군구별 업무량 배정 기준

□ 2000년 총조사(11. 1.) 이후 신축 및 증개축 건물에 대한 가구수 확인

- 1일 : 200개 건물 기준 배정

⇒ 시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배부한 건축물대장(신축, 증개축)을 확인하고 신축,증개축 건물이 많은 읍면동에 업무량 적정 배정

다. 읍면동별 배정일수 산정 방법

□ 읍·동 : 기본업무량 2일+변동상태(상, 중, 하)+확인대상 거쳐수+
변동건물(신축, 증개축) 가구수 파악 배정량

○ 변동건물의 가구수 파악 1일 배정량 : 200건

□ 면 : 기본업무량 2일+변동상태(상, 중, 하)+행정리 수에 의한 배정량

<업무량 배정 일수 산정 예시>

① ○○洞의 경우 : [지형지물 변동상태는 “중”]+[2000년 총조사 아파트
이의 확인 대상 거쳐수 “2,512개”]+[신축, 증개축 건물 “210건”]

⇒ 2일[기본 업무량] + 3일[변동상태 “중”] + 6일[확인대상 거쳐수] +
1일[신축, 증개축 건물 가구수 파악] : 총 12일

② ○○읍의 경우 : [지형지물 변동상태는 “상”]+[2000년 총조사 아파트
이의 확인 대상 거쳐수 “3,554개”]+[신축, 증개축 건물 “150건”]

⇒ 2일[기본 업무량] + 4일[변동상태 “상”] + 7일[확인대상 거쳐수] +
1일[신축, 증개축 건물 가구수 파악] : 총 14일

③ ○○면의 경우 : [지형지물 변동상태는 “하”]+[행정리 “35개”]

⇒ 2일[기본 업무량] + 2일[변동상태 “하”] + 4일[행정리 수] : 총 8일

☞ 면 지역은 행정리 이장의 협조를 통해 지형지물 및 가구수 확인을
실시하기 때문에 신축, 증개축 건수는 업무량에 반영하지 않음

9. 조사원 채용

가. 채용 기준

□ 조사원은 읍·면·동별 채용일수 기준으로 1명 배정을 원칙으로 함

○ 단, 읍면동 실정에 따라 2개 읍면동에 1명 배정 가능

○ 아파트가 대부분인 洞[부록5(44쪽) 참조]

⇒ 조사원 채용 없이 인접 읍면동 담당 조사원이 업무 수행

예) 읍·면·동 전체가 ① 대부분이 아파트 지역 이거나 ② 지형지물의 변동이 거의 없는 지역과 ③ 지형지물의 변동이 많은 지역이 혼재된 지역은 재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위의 채용일수 및 배정기준을 실정에 맞게 신축적으로 조정 가능

⇒ ①, ②지역은 업무량을 적게 배정하고 ③ 지역은 많이 배정하여 정확성을 기함

○ 조사원 1명당 채용일수는 가급적 15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배정

□ 조사원은 아래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적격자로 채용

- 관할 읍·면·동에 거주하는 사람
- 고졸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사람
- 지역 사정에 밝고 신분이 확실한 사람
- 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우대 요건>

- 관공서의 지도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지적도, 지형도 등)
- 기초단위구 현지확인 경험이 있는 사람
- 인구주택총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
- 기타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채용 단가 : 1인 1일당 35,000원

다. 선발 기간 : '04. 8. 25. ~ 9. 4.

라. 조사원 채용명부 작성 및 제출

□ 시·군·구는 적격자를 선정, 채용한 후 채용명부 2부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시·군·구에서 제출한 조사원 채용명부 1부와 함께 총괄표(시·도용)를 작성하여 통계청에 제출(10. 31일 한)

<조사원 채용명부 작성양식(시·군·구용)>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 조사원 채용명부

일련 번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학력	채용일수	담당 읍·면·동
			-				
∫			-				

2004 . 10 . .

시·군·구 장 (인)

<조사원 채용명부 총괄표 작성양식(시·도용)>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 조사원 채용명부

시·도

시·군·구	읍·면·동수	채용인원	비고
계			
○○시			
∫	∫	∫	

10. 교육

실시 방법

-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 시·도청에서 소집 교육(교관 : 통계청 직원)
- 읍면동 담당자 및 조사원 : 시군구별 전달 교육

교육 준비 및 협조 사항

- 시·도별 교육 장소 확보 및 기자재 준비
 - 통계청에서 배부한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 지침서”, 칠판(화이트보드) 등
- 시·도 직원은 교육장소에 임석하여 교육참석자 및 교육준비상태 점검
- 시·군·구 직원(통계계장 및 실무자)은 읍·면·동직원(또는 조사원)에 대한 자체 전달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반드시 참석

- 시·군·구별 전달교육(읍면동 직원 및 조사원)은 시군구 직원 교육 후 즉시 실시하여 업무의 연속성 유지

□ 교육 시간표

교육시간	교육내용	소요시간	비고
09:30~10:00	- 등록 및 교재 수령	30분	※ 교육참석시간 업무요망
10:00~10:50	- 조사구설정 세부시행계획 설명	50분	
11:00~11:50	- 수행 사항 및 확인·보완 요령	50분	
11:50~13:00	[중식]	70분	
13:00~13:50	- 가구수 파악 및 기입 요령	50분	
14:00~15:00	- 가구 묶음 및 정리·제출 요령	60분	

- 시·도별 교육 일정 : 부록6(45쪽) 참조

11. 현장조사 및 실사지도

- 조사원 채용 기간 : 9. 7.~10. 2. 기간 중 배정일수

- 현장조사 내용

<공무원 담당>

- ① 행정구역 경계 확인 및 수정
- ② 통·리 경계 확인 및 수정

<조사원 담당>

- ① 지형지물 현장방문 확인 및 보완
 - 도로, 하천, 건물, 주요 명칭 등
- ② 건물(거처)별 가구수 파악
- ③ 가구 묶음(제출용 지도에 깨끗이 기입)
- ④ 통리별 가구수 일람표 작성
 - 통·리별 가구수 일람표 양식 : 부록11(51쪽) 참조

- 조사구 설정용 지도 활용 방법

- 금년 조사구 설정용 지도는 읍면동별로 각각 2부를 배부하였으므로 1부는 현장확인시 작업용으로 활용하고 1부는 제출용으로 활용

□ 가구수 파악 방법 : 아파트·연립주택과 이외 지역으로 구분 하여 실시

<아파트·연립주택 지역>

- 별도로 가구수 파악하지 않고 호(戶)별 1가구로 간주
(단, 2003년 10월 이후 신축 아파트·연립주택은 공동주택정보 파악)

<아파트·연립주택 이외 지역>

- 지역특성 및 변동유무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

<읍·洞>

- 변동 없는 건물 : 읍면동지도에 표시되어 있는 2000년 인구주택
총조사 가구수를 참고하고 가구수 파악 안함
 - 단, 아래의 건물은 가구수 파악 실시
 - .. 2000년 총조사 당시 거주가구가 없었던 빈집, 상가, 공장, 빌딩 등
 - .. 단, 2000년 총조사 가구수와 편차가 심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건물
- 변동 있는 건물 : 2000년 총조사 이후 신축·증개축 등에 의해
변동된 건물은 현장 방문하여 가구수 파악
 - 새주소 지역 : 녹색으로 표시한 변동건물에 대해 가구수 파악
 - 새주소 이외 : 통계청에서 배부한 건축물대장 명부를 이용하여
해당 건물 확인 및 가구수 파악

<면>

- 面 지역 : 이장의 협조로 가구수 확인, 불확실한 건물은 현장 확인

□ 실사 지도

○ 실시 방법

- 통계청 및 시·도 : 지역 전담제 순회지도반 편성, 운용
- 시·군·구 직원 : 읍면동 순회 지도 및 지원

○ 실사지도 기간 : '04. 9. 13.~9. 24.

○ 중점 지도사항

- 취약지역 및 변화가 심한지역은 중점 지도
- 현지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해결
- 특히, 공동주택 전개도 확인 및 보완에 철저

- 실사 지도시 주의사항
 - 의문점에 대한 자의적 판단 금지 ⇒ 통계청 또는 실사 지도반에 문의
(통계청 인구조사과 : ☎ 042-481-2245~2249)
 - 현지확인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부진지역 중점 지도

12. 확인 및 접수

□ 기 간 : 10. 4.~10. 16. 기간 중 실시

□ 실시 방법

- 통계청 및 시·도 합동으로 조를 편성하여 시·군·구 일정에 의해 읍·면·동별 조사내용 확인 후 접수
 - ⇒ 시·군·구 및 읍·면·동(동원가능 지역) 직원은 반드시 참석
(조사원 참석 가능)하여 확인 업무에 임하여야 함

□ 시·도별 일정 수립 및 제출

- 시·도에서는 확인 및 접수 일정 기간 내에서 아래의 시·도별 조편성을 참조하여 조별 시·군·구 확인 및 접수 일자와 장소를 지정하고 9월 10일 까지 통계청에 제출(기한 엄수)
- 시군구별 일정 수립시 1개조(2명) 1일 확인 업무량을 고려
 - 1일 편성 업무량 : 1개 조 20개 내외 읍·면·동
- 통계청에서 시·도별로 편성한 조 단위로 일정 수립
 - 서울 : 4개 조, 부산 : 2개 조, 대구 : 2개 조, 인천 : 2개 조
광주 : 1개 조, 대전 : 1개 조, 울산 : 1개 조, 경기 : 4개 조
강원 : 2개 조, 충북 : 2개 조, 충남 : 2개 조, 전북 : 2개 조
전남 : 3개 조, 경북 : 3개 조, 경남 : 3개 조, 제주 : 1개 조

□ 사전 준비 사항

- 확인 및 접수 장소 사전 확보
 - 지도의 크기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면적이 넓은 장소 확보 요망

○ 확인 및 접수 자료 준비

-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 읍면동 지도 : 3종(4종)

- 읍면동지도, 부분확대도, 공동주택전개도, 면지역 행정리 지도 각 1부
- 2003년 10월 이후 신축(또는 누락)된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정보 각 1부
- 통·리별 가구수 일람표 1부

□ 확인 및 접수 내용

○ 읍면동지도(부분확대도)의 수정보완 상태 확인

- 행정구역 및 통·리 경계, 주요 지형지물(건물)의 보완상태

○ 가구수 파악의 정확성 및 가구 묶음 상태

○ 2003년 10월 이후 신축(또는 누락)된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정보 작성 상태

○ 읍면동지도상의 확인표 작성 상태

○ 통·리별 가구수 일람표 작성 상태

□ 시·도 협조 사항

○ 시·도는 통계청과 사전 협의하여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확인 및 접수 준비에 만전

○ 시·군·구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확인 및 접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장소 확보와 관련 자료준비에 만전

※ 필요시 관할 읍·면·동의 관내 현황도(지형도, 지번도, 공시지가도면 등)

○ 확인 및 접수 장소에 사무용품 준비

- 싸인펜 또는프러스펜(적·청·흑), 지우개, 연필, 자, 풀, 칼 등

13. 자료 제출

□ 제출 서류

○ 읍면동지도, 부분확대도, 공동주택전개도, 아파트 정보수집자료 각 1부

○ 통·리별 가구수 일람표(부록11 : 51쪽 참조) 1부

□ 제출 방법

- 확인 및 접수가 완료된 후에 제출서류를 읍면동별 제출용 봉투에 넣은 후
- 시군구별 포장하여 3일 이내에 통계청으로 우편(택배) 발송
 - 주소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번지)
통계청 인구조사과 1104호

V. 예산 재배정

1. 재배정 예산과목

- 130(일반행정)-131(일반행정)-1100(통계행정)-1131(사회통계국)
 - 211(인구주택총조사)-000(인구주택총조사)-102(비정규직보수)-02(일용임금)
 - 211(인구주택총조사)-000(인구주택총조사)-201(관서운영비)-01(일반수용비)
 - 211(인구주택총조사)-000(인구주택총조사)-201(관서운영비)-05(특근매식비)
 - 211(인구주택총조사)-000(인구주택총조사)-202(여비)-01(국내여비)

2. 재배정 기준

가. 일용임금

- 일일 수당 : 35,000원
 - 산정 단위 : 시군구 단위로 산정(백단위에서 올림)
 - 산정 기준 : (읍면동별 배정일수 × 35,000원)
- 산재보험, 고용보험 기관 부담금 배정
 - 채용 기간(시간)별 기관부담금 요율
 - 60시간 이상 ~ 1개월 미만 : 산재보험(5/1000), 고용보험(13/1000)
 - 60시간 미만 : 산재보험(5/1000)
 - ※ () 내의 보험요율은 기관부담금 기준이며, 보험가입은 채용기간 전체로 하고, 일용임금 예산에서 집행

나. 일반수용비

- 지도 발송비 : 시군구당 6,000원
 -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 확인 및 접수 완료후 시군구별 포장하여 택배 발송
- 사무용품 구입비 : 읍면동당 2,000원
 - 연필, 지우개, 볼펜, 종이테이프 등 구입

다. 특근매식비

- 1식 : 5,000원 배정

<시·도>

- 3명*10일 배정
 - 서울, 경기도는 4명*10일 배정

<시·군·구>

- 2명*5일 배정

라. 국내여비

- 2004년 예산편성기준 중 국내여비단가 적용
 - 관내 : 10,000원
 - 관외
 - 숙박

구분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합계
4·5급	10,000	18,000	25,000	5,800	58,800
6급이하	10,000	15,000	22,000	2,900	49,900

- 비숙박 : 27,900원

<시·도>

- 실사지도 : 10일*3명(4·5급 1명, 6급 이하 2명)
 - 단, 서울, 경기도는 6급 이하 3명 배정
- 확인 및 접수 : 시·군·구당 1일씩 배정

<시·군·구>

○ 교육 참석 : 2명(통계담당계장 및 실무자)

- 관내 또는 비숙박 여비 적용

○ 실사지도 : 2명*5일(1일 10,000원 배정, 단, 도서지역은 비숙박비 적용)

<읍·면·동 : 동원 가능 읍·면·동>

○ 교육 참석 : 1일 10,000원 배정

○ 확인 및 접수 : 1일 10,000원 배정

※ 도서 지역은 비숙박비 적용

※ 동원가능 읍면동 현황 : 부록4(43쪽) 참조

3. 재배정 내역

가. 시·도별 예산 재배정 총괄표

(단위 : 원)

시 도	총액	일용임금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특근배석비
전 국	1,172,986,000	1,061,507,000	87,595,000	8,584,000	15,300,000
서울특별시	172,133,000	164,125,000	5,366,000	1,192,000	1,450,000
부산광역시	76,268,000	71,969,000	2,801,000	548,000	950,000
대구광역시	46,106,000	43,494,000	1,730,000	332,000	550,000
인천광역시	48,640,000	43,240,000	4,416,000	334,000	650,000
광주광역시	27,957,000	26,191,000	1,160,000	206,000	400,000
대전광역시	25,566,000	23,632,000	1,350,000	184,000	400,000
울산광역시	15,662,000	13,368,000	1,752,000	142,000	400,000
경기도	178,926,000	164,784,000	10,326,000	1,266,000	2,550,000
강원도	59,196,000	51,773,000	5,889,000	484,000	1,050,000
충청북도	50,426,000	45,101,000	4,091,000	384,000	850,000
충청남도	72,007,000	61,988,000	8,555,000	514,000	950,000
전라북도	80,812,000	72,982,000	6,288,000	592,000	950,000
전라남도	95,830,000	82,703,000	11,147,000	730,000	1,250,000
경상북도	106,489,000	93,845,000	10,426,000	818,000	1,400,000
경상남도	99,209,000	87,464,000	9,847,000	748,000	1,150,000
제주도	17,759,000	14,848,000	2,451,000	110,000	350,000

주) 대전, 울산은 제5차 시험조사 예산 집행잔액(일용임금)을 제외한 금액임

- 대전 : 706,000원, 울산 : 4,606,000원 각각 제외

나. 시군구별 예산 산출내역 : 별첨 참조

VI. 행정 사항

□ 읍면동 지도 수량 및 내용 확인

- 배부된 읍면동 지도와 배부 내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통계청에 즉시 연락(☎ 042-481-2249, 2372, 6831)
 - 읍·동 : 읍면동 지도·부분확대도·공동주택 전개도 각 2부
 - 면 : 읍면동 지도·부분확대도·공동주택 전개도 각 2부, 행정리 지도 1부
- “2003년 기초단위구 현지확인용 지도”를 함께 배부하였으므로 현장 확인시 참고로 활용(공동주택이 있는 읍면동은 공동주택전개도와 함께 배부)

□ 읍면동별 조사원 배정

- 읍면동당 1명씩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정 가능
 - 업무량이 적은 읍면동 : 2개 읍면동을 1명 에게 배정
 - 업무량이 많은 읍면동 : 1개 읍면동을 2명 에게 배정(채용일수는 절반)
- 아파트가 대부분인 77개 동(1일씩 배정) : 인접 읍면동 조사원에게 배정
- 신축, 증·개축 건물에 대한 가구수 파악 업무량은 시군구에 배정하였으므로 시군구에서는 읍면동별 변동건물 상태에 따라 적절히 배정

□ 조사원 채용명부 등 제출

- 조사원 채용명부는 시군구용과 시도용으로 구분하여 작성양식(19쪽 참조)에 의거 2004. 10. 31까지 통계청에 문서로 제출
(중도포기 조사원 및 대체 조사원을 포함하여 작성)

□ 확인 및 접수 일정 수립·통보

- 시도에서는 통계청에서 편성한 조별로 확인 및 접수일정을 수립하여 2004. 9. 10 까지 통계청에 제출

□ 사무용품 구입 및 배부

- 시군구에서는 사무용품을 구입(읍면동당 2,000원 상당)하여 시군구별 전달교육 전에 조사원에게 배부

□ 이장단 회의 안건에 상정 및 협조 부탁

- 9월 이장단 회의시 “행정리 이장 협조 사항”을 회의 안건에 상정하고 면사무소 직원(또는 시군청 통계담당직원)이 설명
 - 행정리 지도 배부 및 확인·보완 요령 등 설명

<이장 협조 및 확인·보완 사항> : 부록10(50쪽) 참조

- ① 행정리 경계 확인 및 수정(청색)
 - ② 지형지물(도로, 하천, 건물 등) 확인 및 수정(적색)
 - ③ 건물(거처)별 가구수 파악 및 거주가구수 기입(연필)
- 면사무소(또는 시군청) 담당자는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지도 및 가구명부”를 행정리별로 1부 복사하여 이장단 회의시 배부
 - 이장 협조 사항 전달시 배부된 답례품(수건) 지급

□ 확인 및 접수 장소 확보

- 시군구에서는 확인 및 접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장소 확보
 - 지도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넓은 장소 확보 요망

□ 자료 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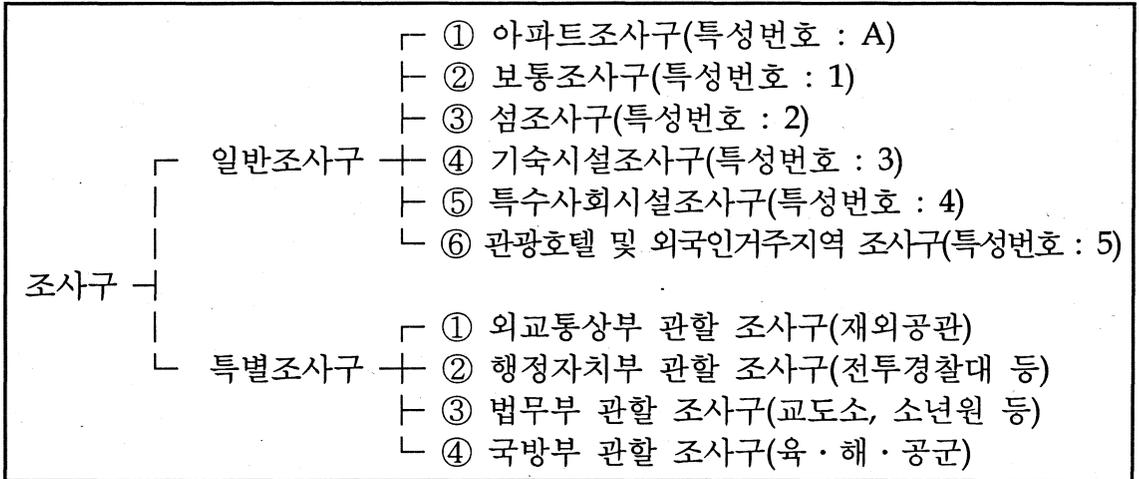
- 확인 및 접수가 완료된 지역은 제출 자료를 제출용 봉투에 넣어 시군구별 포장하여 3일 이내에 통계청에 택배로 발송

부 록

1. 조사구 설정 기준
2. 거처와 가구의 개념
3. 새주소 지도 활용 지역
4. 동원 가능 읍면동 현황
5. 아파트가 대부분인 洞
6. 시·도별 교육 일정
7. 지방통계사무소 동원 인력
8.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 지침서 배부 내역
9. 행정리 이장 답례품 배부 내역
10. 행정리 이장 협조 사항
11. 통·리별 가구수 일람표

조사구 설정 기준

♣ 조사구 종류



※ 조사구설정은 일반조사구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설정하고 특별조사구는 금번 시험조사 조사구설정에서 제외

♣ 일반조사구 설정기준

- 아파트조사구, 보통조사구, 섬조사구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평균 60가구 범위 (60±20가구)내에서 식별이 확실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
- 기숙시설조사구, 특수사회시설조사구, 관광호텔조사구는 시설단위별로 조사구를 설정
- 외국인조사구는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모여사는 지역에 대해 설정
- 2000년 총조사 이후 변동이 없는 지역은 2000년 조사구경계를 활용하고, 변동지역은 조사구 경계 재설정
 - 아파트 지역은 2000년 총조사 경계를 그대로 활용
 - 변동이 없는 아파트 이외 지역은 2000년 총조사 경계를 활용하되, 조사구경계가 불합리한 경우 일부 조정 가능
 - 변동지역은 적정가구수가 포함되도록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조사구 재설정

① 아파트조사구(특성번호 : A)

아파트조사구는 「일반가구」와 「비혈연자 6인이상 19인이하가 거주하는 집단가구」를 대상으로 1개 동(棟) 또는 2개 동(棟) 이상의 총 호수(戶數)가 40 이상이 될 때 설정하는 조사구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변동이 없는 아파트는 2000년 총조사 경계를 그대로 활용(불합리한 경우에만 일부 조정)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변동이 있는 아파트는 아래의 기준에 의해 설정
 - 상가아파트, 독신자아파트(사원, 공무원아파트 등) 등도 주택의 종류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조사구로 설정
 - 규모가 적은(40戶 미만) 아파트는 인접동(棟)과 통합하고, 규모가 큰 경우(90가구 이상)는 2개 이상의 조사구로 분할
 - 계단식 아파트는 계단을 기준으로 복도식 아파트는 층을 기준으로 설정
 -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 및 건물 등은 인접한 아파트 동(棟)에 포함하여 설정
 - 주택가 또는 외판지역의 1개 동(棟) 또는 2개 동(棟)이상의 아파트 호실(戶室)이 40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조사구에 포함
 -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빌라, 맨션 등)은 보통조사구에 포함하여 설정

[그림 1] 계단식과 복도식 아파트의 조사구 설정 예

[계단식]

[복도식]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009-A (60)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501	1502	1503	1504	1505	1506	1507	1508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401	1402	1403	1404	1405	1406	1407	1408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1201	1202	1203	1204	1205	1206	1207	1208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1101	1102	1103	1104	1105	1106	1107	1108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1001	1002	1003	1004	1005	1006	1007	1008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901	902	903	904	905	906	907	908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801	802	803	804	805	806	807	808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701	702	703	704	705	706	707	708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601	602	603	604	605	606	607	608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501	502	503	504	505	506	507	508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401	402	403	404	405	406	407	408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301	302	303	304	305	306	307	308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005-A
(60)

006-A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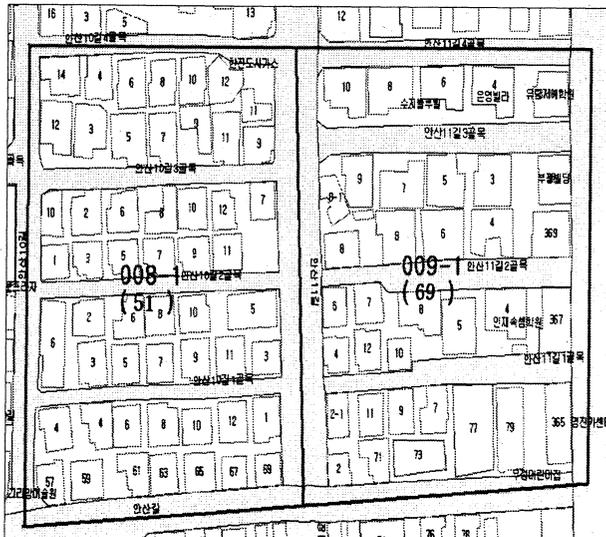
② 보통조사구(특성번호 : 1)

보통조사구란 「일반가구」와 「비혈연자 6인이상 19인이하가 거주하는 집단가구」를 대상으로 주요 지형지물(도로, 하천 등) 또는 행정 통·리 경계를 이용하여 설정하는 조사구

- 1개 조사구당 통상적으로 평균 60가구를 기준으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준 가구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40~80가구 범위내에서 설정
- 보통조사구는 반드시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해야 하며 대하천, 대도로 등은 가능한 조사구 경계로 이용해야 함
- 특히, 도심지역은 대하천, 대도로를 가로질러서 조사구를 설정하지 않도록 유의
- 2000년 총조사 이후 지형지물과 가구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2000 총조사 경계를 그대로 활용하되 불합리한 경우에는 일부 조정 가능

[그림 2] 도심지역의 조사구설정 예

[옳은 예]



[잘못된 예]



- 오피스텔, 가족이 거주하는 사원주택 등은 보통조사구로 설정
(기숙시설 조사구로 설정해서는 안됨)

③ 섬조사구(특성번호 : 2)

섬조사구란 육지와 완전히 분리되어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을 대상으로 보통 조사구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설정하는 조사구

- 군단위 이상의 청사가 소재하는 섬과 교량,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강화도 등)은 육지로 간주하여 보통조사구로 설정
- 유인도 또는 무인도가 군집되어 있는 섬지역은 거주가구수와 거처수를 고려하여 여러 개의 섬을 묶어 1개의 섬조사구로 설정하되 해상교통이 불편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섬에 한하여 기준가구수에 미달하더라도 1개의 섬조사구로 설정할 수 있음

④ 기숙시설조사구(특성번호 : 3)

기숙시설조사구란 기숙시설에 정식 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기숙시설에 정식 명칭이 없더라도 20인 이상이 공동취사를 하고 있는 시설단위별로 설정하는 조사구

- 기숙사의 정식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정식명칭이 없더라도 20인 이상이 공동취사를 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사구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수용인원 20인 기준인 경우 기숙시설조사구로 설정
- 고시원, 고시텔, 코콘하우스 등과 같이 집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고시원 명칭이 등록되어 있으면 무조건 기숙시설조사구로 설정
 - 단, 실버타운(Silver-town) 등과 같이 공통된 특성을 가진 사람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건물이 아파트일 경우에는 아파트조사구로,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보통조사구로 설정
- 단독주택 등에서 하숙업을 하거나 기숙사와 동일한 형태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주인 가구를 제외하고 비혈연자 20인 이상이 공동취사를 하고 있으면 기숙시설조사구로 설정

[그림 3] 하숙업을 하는 경우의 기숙시설조사구 설정 예



- 사원아파트의 독신자 숙소는 아파트 위치에 따라 설정되며, 회사내 위치는 기숙시설조사구이며, 회사밖에 위치하면 아파트조사구로 설정
- 기숙시설 내에 거주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300인을 기준으로 동(棟), 층 또는 호·실 단위로 기숙시설을 분할하여 조사구를 설정해야 함

[그림 4] 300인 이상인 기숙시설조사구 설정 예

[건물 기준으로 설정한 예]

001-3 조사구	A동 (298인)
002-3 조사구	B동 (321인)
003-3 조사구	C동 (307인)

[층을 기준으로 설정한 예]

012-3 조사구	3층 (340인)
013-3 조사구	2층 (275인)
014-3 조사구	1층 (296인)

⑤ 특수사회시설조사구(특성번호 : 4)

특수사회시설조사구란 고아원, 양로원, 육아원, 요양원, 나환자 수용소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 비혈연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수용시설 단위별로 설정하는 조사구

< 특수사회시설조사구로 설정되는 수용시설의 답례 >

-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수용시설
 - 고아원, 보육원, 희망원, 영아원, 교호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수용시설
 - 양로원, 노인요양원, 노인복지주택 등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수용시설
 - 맹·농아시설, 정신장애자 시설, 지체부자유자 등의 요양시설 및 재활시설
- 특수병원, 수용소
 - 정신병원, 결핵요양원, 나환자 수용소, 전염병환자 수용소 등
- 기타
 - 윤락여성 직업보도를 위한 수용시설 등 상기 사항에 준하는 수용시설

- 나환자들이 집단으로 부락을 형성하여 모여사는 지역은 보통조사구 (특성 번호 : 1)로 분류하여 설정
- 아동상담소, 아동직업보도소, 조산소, 아동입양위탁시설, 노인복지회관, 장애인이용시설, 점자도서관 등 비수용시설인 특수사회시설은 특수사회시설조사구로 설정하지 않음
- 단, 특수사회시설이지만 시설내에서 개별적으로 취사, 취침을 달리 하고있는 경우에는 각각 개별가구로 파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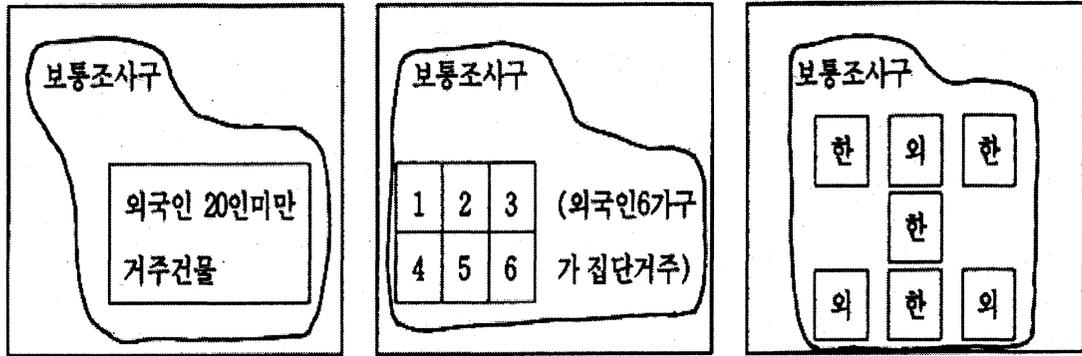
⑥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지역조사구(특성번호 : 5)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지역조사구란 외국인이 투숙한 관광호텔과 20인 이상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건물 또는 10가구 이상의 외국인 가구가 모여서 생활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조사구

- 관광호텔은 3등급(무궁화 2개)이상인 경우에만 호텔단위별로 「관광호텔조사구」로 설정하고, 3등급 미만(무궁화 1개)의 관광호텔, 여관 등은 보통조사구에 포함하여 설정

- 외국인이 20인 미만 또는 외국인 가구가 10가구 미만이거나 한국인 가구와 섞여서 거주하는 지역은 보통조사구에 포함하여 설정

[그림 5] 기준미달인 외국인 가구의 조사구설정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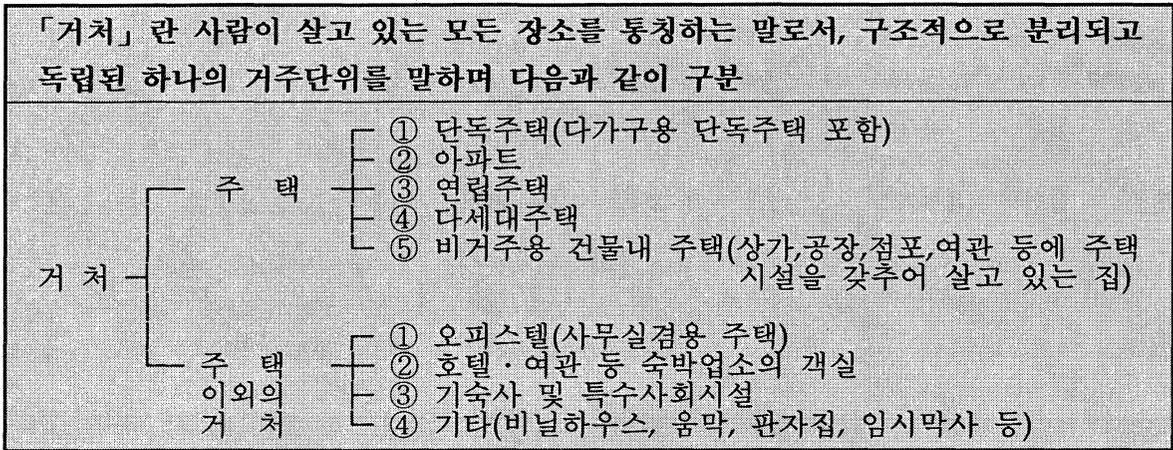
- 1인 가구 또는 혈연가구가 숙박하고 있는 간이숙박소는 여관, 여인숙 등과 같이 보통조사구에 포함하여 설정
- 기숙시설내의 외국인이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내국인과 구분하여 별도의 기숙시설 조사구로 설정

[그림 6] 기숙시설내에 외국인 20인 이상이 살고있는 경우

외국인 24인을 외국인조사구로 설정	외국인 (6인)	외국인 (6인)	한국인 (6인)	한국인 (6인)	한국인 24인을 1개의 기숙시설 조사구로 설정
	외국인 (6인)	외국인 (6인)	한국인 (6인)	한국인 (6인)	

거처와 가구의 개념

1. 거처



가. 주택

주택이란 한 가구 이상이 살림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 ① 영구건물이어야 하고
- ② 부역과 1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 ③ 독립된 출입구가 있고
- ④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건물

① 단독주택

- 통상 한 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 일반 단독주택 : 통상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부역,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고 있으며,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가 가능
 - 다가구(용) 단독주택 : 한 거처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며 각 구획마다 부역,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으나 구획별로 매매는 불가능

②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5층이상(90년 이전은 4층 이상), 20가구 이상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상가아파트 포함)
 - 아파트단지내에 4층이하의 동(棟)이 있는 경우도 아파트로 봄

③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이하 주택으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으로 동(棟)당 건축연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주택(4층이하의 빌라, 맨션 포함)

④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이하의 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동(棟)당 건축연면적이 **200평 이하인** 주택

♣ 다가구용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다른 점은?

「다세대 주택」은 주택(세대)별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매매 및 분양이 가능한 점에서 「다가구(용)단독주택」과 다릅니다

☞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건물전체가 하나의 거처로 보는데, 다세대 주택은 각각의 세대를 주거단위로 하여 거처로 봅니다

⑤ 비거주용 건물(상가·공장·점포·여관 등)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

나. 주택이외의 거처

주택이외의 거처란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로서 사람이 살고 있는 구조물

① 오피스텔

- 사무실 겸용 주택

②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 대실료를 받고 손님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구조물

※ 단, 주인가구가 여관 등 숙박업소 건물내에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살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으로 봄

③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 기숙사, 수녀원, 양로원, 보육원 및 대사찰 등과 같이 집단수용을 위한 구조물

④ 기타

- 여기에는 천막집, 비닐하우스, 판자집, 움막, 암자, 건설공사장의 임시막사 등과 같이 임시 거주를 위한 구조물이 해당

2. 가 구

가. 가구의 개념

가구란 혈연 또는 비혈연을 불문하고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가정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와는 다름

나. 가구의 종류

① 일반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가구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② 집단가구

-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 19인 이하의 가구**
(단, 보통조사구에 해당됨)
- 집단 시설 가구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보면,
 - 기숙사, 수녀원, 사찰 등 20인 이상이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설일 경우(단, 기숙시설조사구에 해당됨)
 - 고아원, 양로원, 육아원, 요양원 등의 특수사회시설에 2인 이상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일 경우(단, 특수사회시설조사구에 해당됨)

[부록 3]

새주소 지도 활용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비 고
전 국	87	1,485	
서 울	25개 區	521	4차 시험조사 지역 제외(송파구 송파2동)
부 산	9개 區	141	
	서 구	15	
	부산진구	25	
	동래구	14	
	북구	13	
	사하구	16	
	금정구	18	
	연제구	13	
	수영구	10	
	해운대구	17	
인 천	8개 區	117	서구 영종동 제외(새주소 없음) 5차 시험조사 지역 제외(연수구 선학동)
광 주	5개 區	88	5차 시험조사 지역 제외 (남구 백운1동, 주월2동)
대 전	5개 區	77	5차 시험조사 지역 제외 (동구 판암1동, 산내동)
경 기	17개 市	291	-
	수원시	42	-
	성남시	44	-
	부천시	37	-
	광명시	18	-
	안산시	24	-
	고양시	37	-
	과천시	6	-
	의정부시	15	-
	동두천시	7	-
	구리시	8	-
	오산시	6	-
	시흥시	14	-
	군포시	11	-
	의왕시	6	-
	하남시	10	-
	안성시	2	읍·面 제외, 4차 시험조사 지역 제외(안성3동)
이천시	4	읍·面 제외	

새주소 지도 활용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비고
강 원	3개 市	44	-
	춘천시	15	군·面 제외
	원주시	16	"
	강릉시	13	"
충 북	2개 市	38	
	청주시	29	군·面 제외
	제천시	9	"
충 남	6개 市·郡	45	
	천안시	14	군·面 제외
	공주시	6	"
	보령시	5	"
	아산시	6	"
	논산시	4	面 지역 제외
	금산군	10	군·面 전체
전 북	4개 市	80	-
	전주시	40	군·面 제외
	군산시	19	"
	익산시	14	"
	남원시	7	"
경 남	1개 市	12	-
	창원시	12	-
제 주	2개 市	31	-
	제주시	19	-
	서귀포시	12	-

[부록 4]

동원 가능 읍면동 현황

(2004. 8. 20. 기준)

시·도	합 계	읍면동수		동원가능 시군구 (동원가능/대상읍면동수)
		동원가능	동원불가능	
전 국	3,552	1,146	2,406	- 전체 동원 가능 : 81개 시군 - 일부 동원 가능 : 5개 시군
서 울	521	44	477	서초(18/18), 강남(26/26)
부 산	226	7	219	강서(7/7)
대 구	142	9	133	달성군(9/9)
인 천	137	19	118	강화(12/12), 용진(7/7)
광 주	88	-	88	-
대 전	77	19	58	동(21/21)
울 산	56	26	30	남(14/14), 울주(12/12)
경 기	511	15	496	화성(15/15)
강 원	188	69	119	춘천(4/25), 강릉(21/21), 속초(8/8), 삼척(12/12), 영월(9/9), 정선(9/9), 인제(6/6)
충 북	153	20	133	옥천(9/9), 영동(11/11)
충 남	209	209	-	전체 동원 가능(16개 시군)
전 북	251	113	138	정읍(15/23), 남원(23/23), 김제(19/19), 완주(13/13), 무주(6/6), 임실(12/12), 순창(11/11), 고창(14/14),
전 남	299	144	155	여수(27/27), 담양(12/12), 고흥(16/16), 보성(12/12), 장흥(10/10), 해남(14/14), 영암(11/11), 무안(9/9), 완도(12/12), 진도(7/7), 신안(14/14)
경 북	337	212	125	경주(25/25), 김천(22/22), 안동(24/24), 구미(27/27), 영천(16/16), 상주(24/24), 문경(14/14), 경산(3/14), 청송(8/8), 영양(6/6), 영덕(9/9), 청도(9/9), 예천(12/12), 울진(10/10), 울릉(3/3)
경 남	314	209	105	창원(15/15), 진주(37/37), 사천(14/14), 통영(18/18) 밀양(11/16), 거제(16/16), 양산(6/9), 의령(13/13), 창녕(14/14), 고성(14/14), 산청(11/11), 함양(11/11), 거창(12/12), 합천(17/17)
제 주	43	31	12	제주(19), 북제주(7/7), 남제주(5/5)

주) 제4차, 5차 시험조사 지역(12개 읍면동) 제외

- 제4차(3) : 서울 송파구 송파2동, 경기 안성시 안성3동·보개면
- 제5차(9) : 대구 동구 방촌동, 인천 연수구 선학동, 강화군 화도면, 광주 남구 백운1동·
주월2동, 대전 동구 판암1동·산내동, 울산 북구송정동·양정동

[부록 5]

아파트가 대부분인 洞

(2000년 총조사 기준)

시·도	시·군·구	읍·면·동	
전국 (읍면동수)	25개 市·區	77개 洞	
서울 (35)	용산구(1)	이촌1동	
	노원구(10)	월계3동, 하계2동, 중계1동, 중계2동, 중계3동, 상계6동, 상계7동, 상계8동, 상계9동, 상계10동	
	중랑구(1)	신내2동	
	도봉구(1)	창4동	
	양천구(2)	목6동, 신정6동	
	강서구(3)	등촌3동, 가양2동, 가양3동	
	구로구(1)	구로1동	
	서초구(3)	반포본동, 반포2동, 반포3동	
	강남구(3)	대치1동, 대치2동, 개포3동	
	송파구(9)	오륜동, 가락1동, 잠실1동, 잠실2동, 잠실3동, 잠실4동, 잠실5동, 잠실6동, 잠실7동	
	강동구(1)	둔촌1동	
부산 (6)	해운대구(4)	좌1동, 좌2동, 좌3동, 좌4동	
	수영구(1)	남천2동	
	사상구(1)	모라3동	
인천(3)	연수구(3)	연수3동, 동춘2동, 동춘3동	
대전 (4)	서구(3)	둔산1동, 월평2동, 월평3동	
	대덕구(1)	법1동	
경기 (29)	성남시 분당구(3)	수내2동, 정자2동, 이매2동	
	안양시 동안구(5)	부흥동, 달안동, 부림동, 평안동, 범계동	
	부천시 원미구(5)	중1동, 중4동, 상1동, 상2동, 상3동	
	광명시(3)	하안2동, 하안3동, 하안4동	
	안산시 단원구(1)	원곡2동	
	고양시	덕양구(2)	성사2동, 화정2동
		일산구(4)	일산3동, 마두2동, 주엽1동, 주엽2동
	시흥시(3)	정왕2동, 정왕3동, 정왕4동	
군포시(3)	오금동, 수리동, 궁내동		

[부록 6]

시·도별 교육 일정

시·도	교육일자	참석인원	교육장소	비고
서울특별시	9. 9.(목) 13:30	50	시청 태평홀(본관)	시청 : 3명
부산광역시	9. 10(금) 10:00	32	시청 국제회의실	시 : 2명
대구광역시	9. 6.(월) 14:00	16	시청 소회의실	시 : 2명
인천광역시	9. 6.(월) 10:00	20	시청 전산교육장	"
광주광역시	9. 7.(화) 10:00	10	시청 제3 세미나실	"
대전광역시	9. 7.(화) 14:00	10	시청 전산교육장	"
울산광역시	9. 6.(월) 10:00	10	시청 회의실	"
경기도	9. 7.(화) 10:00	82	경기도 문화예술회관	도 : 3명
강원도	9. 7.(화) 10:00	36	도청 소회의실(신관)	도 : 2명
충청북도	9. 6.(월) 14:00	28	충북여성발전센터	"
충청남도	9. 8.(수) 10:00	32	충남공무원교육원 전산교육장(공주 소재)	"
전라북도	9. 6.(월) 10:00	32	전주시청 회의실	"
전라남도	9. 6.(월) 10:00	44	도청 회의실	"
경상북도	9. 8.(수) 10:00	48	안동시 청소년수련원 회의실	"
경상남도	9. 8.(수) 10:00	40	경남통계사무소 회의실	"
제주도	9. 10.(금) 10:00	8	제주시청 정보화사업단 회의실	"

[부록 7]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
지방통계사무소 동원 인력

사무소 및 출장소명	동원 인원		시군구	관 할 구 역
	실사 지도	확인, 접수		시·군·구 명
전 국	132	132	234	-
서울사무소	13	13	25	서울특별시 전역
부산사무소	10	10	21	부산광역시 전역, 울산광역시 전역
부산사무소	7	7	16	부산광역시 전역
울산출장소	3	3	5	울산광역시 전역
경기사무소	20	20	31	경기도 전역
도사무소	6	6	8	수원시,오산시,화성시,안산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용인시
성남출장소	2	2	3	성남시,과천시,광주시
의정부출장소	2	2	5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부천출장소	3	3	4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
평택출장소	2	2	2	평택시,안성시
고양출장소	2	2	2	고양시,파주시
구리출장소	2	2	4	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가평군
이천출장소	1	1	3	이천시,여주군,양평군
전남사무소	14	14	27	광주광역시 전역, 전라남도 전역
도사무소	5	5	10	광주광역시 전역, 장성군,담양군,영광군,곡성군,화순군
목포출장소	2	2	3	목포시,진도군,신안군
순천출장소	3	3	4	순천시,여수시,광양시,구례군
나주출장소	2	2	4	나주시,영암군,무안군,함평군
보성출장소	1	1	3	보성군,장흥군,고흥군
해남출장소	1	1	3	해남군,강진군,완도군
경북사무소	18	18	31	대구광역시 전역, 경상북도 전역
도사무소	8	8	15	대구광역시 전역, 영천시,경산시,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포항출장소	2	2	3	포항시,경주시,울릉군
안동출장소	3	3	6	안동시,영주시,의성군,청송군,봉화군,영양군
구미출장소	2	2	2	구미시,김천시
상주출장소	2	2	3	상주시,문경시,예천군
울진출장소	1	1	2	울진군,영덕군
인천사무소	5	5	10	인천광역시 전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 지방통계사무소 동원 인력

사무소 및 출장소명	동원 인원		관할 구역	
	실사 지도	확인, 접수	시군구	시·군·구 명
강원사무소	11	11	18	강원도 전역
도사무소	3	3	5	춘천시,홍천군,화천군,철원군,양구군,인제군
원주출장소	2	2	2	원주시,횡성군
강릉출장소	1	1	1	강릉시
속초출장소	2	2	3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삼척출장소	2	2	3	삼척시,동해시,태백시
영월출장소	1	1	3	영월군,정선군,평창군
충북사무소	6	6	12	충청북도 전역
도사무소	3	3	6	청주시,청원군,괴산군,증평군,진천군,음성군
충주출장소	2	2	3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옥천출장소	1	1	3	옥천군,영동군,보은군
충남사무소	12	12	21	대전광역시 전역, 충청남도 전역
도사무소	6	6	10	대전광역시 전역,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연기군,
천안출장소	2	2	3	천안시,아산시,예산군
보령출장소	2	2	5	보령시,홍성군,서천군,부여군,청양군
서산출장소	2	2	3	서산시,당진군,태안군
전북사무소	8	8	14	전라북도 전역
도사무소	4	4	5	전주시,익산시,군산시,김제시,완주군
정읍출장소	2	2	3	정읍시, 부안군,고창군
남원출장소	1	1	3	남원군,임실군,순창군
진안출장소	1	1	3	진안군,무주군,장수군
경남사무소	13	13	20	경상남도 전역
도사무소	6	6	8	창원시,마산시,진해시,밀양시,김해시,양산시,창녕군,합안군
진주출장소	3	3	4	진주시,사천시,산청군,의령군
통영출장소	2	2	3	통영시,거제시,고성군
하동출장소	1	1	2	하동군,남해군
거창출장소	1	1	3	거창군,함양군,합천군
제주사무소	2	2	4	제주도 전역

[부록 8]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 지침서 배부 내역

□ 배부 기준

○ 시·도 : 10부

○ 시·군·구 : (읍면동*2부*1.2)+(시군구*4부)

□ 배부 내역

시·도	행정구역수		배부 수량	비 고
	시군구	읍면동		
전 국	246	3,552	10,000	4차, 5차 시험조사 지역 (12개 읍면동)은 제외
서 울	25	521	1,361	송파구 송파2동
부 산	16	226	617	
대 구	8	142	383	동구 방촌동
인 천	10	137	379	연수구 선학동, 강화군 화도면
광 주	5	88	242	남구 백운1동, 남구 주월2동
대 전	5	77	215	동구 판암1동, 동구 산내동
울 산	5	56	165	북구 송정동, 북구 양정동
경 기	47	511	1,425	안성시 안성3동, 안성시 보개면
강 원	18	188	534	
충 북	14	153	434	
충 남	16	209	576	
전 북	16	251	677	
전 남	22	299	816	
경 북	25	337	919	
경 남	20	314	844	
제 주	4	43	130	
통계청	-	-	283	

[부록 9]

행정리 이장 답례품 배부 내역

- 지급 품목 : 수건 1세트(2장)
- 지급 대상 : 행정리 이장, 면(2개), 시군(2개)
- 지급 내역

시·도	면 수	행정리 수	지급 수량		
			합 계	면지역	시·군
총 계	1,199	28,189	30,867	30,587	280
부 산	3	67	75	73	2
대 구	6	133	147	145	2
인 천	18	213	253	249	4
울 산	8	167	185	183	2
경 기	110	2,695	2,945	2,915	30
강 원	90	1,494	1,704	1,674	30
충 북	90	2,247	2,449	2,427	22
충 남	146	3,557	3,876	3,844	32
전 북	145	4,328	4,644	4,618	26
전 남	198	5,316	5,754	5,712	42
경 북	203	4,051	4,503	4,457	46
경 남	177	3,879	4,271	4,233	38
제 주	5	47	61	57	4

[부록 10]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
행정리 이장 협조 사항

□ 조사용품 배부

- 행정리 지도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당시 40가구 이상 행정리
⇒ 40가구 미만 행정리는 조사구 설정용 읍면동 지도(읍면동지도)에 표시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지도와 가구명부 사본
⇒ 면사무소에서 사전 준비하여 “이장단 회의”시에 배부
- 이장 협조에 대한 답례품 : 수건 1세트(2장)

□ 이장 협조 사항 및 확인·보완 요령

① 행정리 경계 확인 및 수정

- 지도상에 주황색으로 표시된 행정리 명칭과 경계를 확인하고 잘못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청색으로 수정
- ⇒ 잘못된 경계선은 청색으로 「xx」 표시하고 올바른 경계선은 「—○—○—」 기호로 수정·보완

② 지형지물 확인 및 수정

- 행정리 지도(또는 읍면동 지도)에 표시된 지형지물(도로, 하천, 건물 등)을 확인하고 잘못표시된 경우에는 적색으로 수정
 - 도로 : 도로폭 3m 이상은 두줄로 표시(==), 3m 미만은 점선으로 표시(----)
 - 건물 : 신축·누락건물 및 잘못 표시된 건물은 적색으로 보완, 철거 건물 적색으로 「xx」 표시

③ 가구 파악 및 거주가구수 기입

- 시군구에서 보관중인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지도”와 “가구명부”를 참조하여 배부된 행정리 지도상에 건물별로 현재 거주가구수 확인
 - 농촌·산간지역은 축사, 창고 등의 부속건물이 지도에 나타나 있으므로 거주가구수 확인시 주의
- 행정리 지도상에 거주하고 있는 가구의 사용건물을 하나로 묶어서 가구수를 연필로 기입

[부록 11]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 통·리별 가구수 일람표

시·도			시·군·구		읍·면·동
통·리 명	가구수 (인구수)	비 고	통·리	가구수 (인구수)	비 고
소 계			총 계		

작성요령 :

1. 통·리 존재순에 의해 가구수 파악이 완료된 읍면동 지도상의 통·리별 가구수 집계
2.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등은 통·리의 『가구수(인구수)』란에 수용인원수를 기입하고 『비고』란에 시설명 기재
 - 단, 기숙사 시설내에 외국인이 10명 이상 거주하고 있으면 외국인만 별도 구분하여 기재
3. 외국인집단지주지역(10가구 이상 또는 20명 이상)은 칸을 구분하여 시설단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기입
4. 무궁화 2개(3등급) 이상인 관광호텔은 『가구수(인구수)』란에 객실수를 기입하고 『비고』란에 호텔명을 기입

2005
Census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가설정 조사구 적합성 현지확인 계획

2005. 4.



통 계 청

차 례

I.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3
1. 의의 및 목적	3
2. 조사 연혁	3
3. 법적 근거	4
4. 조사기준시점	4
5. 조사 대상	4
6. 조사 단위	4
7. 조사 기간	4
8. 조사 체계	5
9. 조사 방법	5
10. 조사 항목	5
11. 동원 인력	5
12. 소요 예산	5
13. 결과 공표	5
II. 조사구 설정 개요	6
1. 의의 및 목적	6
2. 추진 방향	6
3. 설정 방법	6
4. 대상 지역	7
5. 추진 경과	7
6. 향후 추진 일정	8
III. 조사구 적합성 현지확인 계획	9
1. 업무 흐름도	9
2. 대상 지역	10
3. 실시 방법	10
4. 실시 기간	10
5. 인력 동원	10
6. 중점 확인 내용	11

7. 수행 사항	11
8. 조사 용품	13
9. 업무보조원	16
10. 조사원	16
11. 채용명부	18
12. 교육	19
13. 현장조사	20
14. 실사지도	21
15. 심사	21
16. 자료 제출	23
IV. 변동 조사구 관리	24
1. 수정 대상	24
2. 수정 기간	24
3. 수정 주기	24
4. 수정 절차	25
5. 수정보고서	25
V. 예산 재배정	25
1. 예산과목	25
2. 재배정 기준	25
3. 재배정 내역	28
VI. 행정 사항	29
[부 록]	31
1. 조사구 설정 기준	33
2. 거처와 가구의 개념	39
3. 새주소 지도 활용 지역	42
4. 조사구심사표	44
5. 조사구일람표	45
6. 조사구 수정 보고서	48
7. 지방통계사무소 동원 인력	49
8. 인력 동원 가능 및 불가능 읍면동 현황	51

I.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1. 의의 및 목적

□ 역사적·범세계적 통계조사

- 우리나라의 인구조사는 삼한시대부터 호구조사라는 명칭으로 실시
 - 근대적 인구조사는 1925년부터 5년 마다 16차례에 걸쳐 실시
- 세계적으로는 고대 바빌로니아(B.C. 3600년경) 시대부터 실시하였으며, 1790년 미국에서 근대적 인구조사를 최초로 실시
 - 2000년 라운드 센서스에는 217개 국가(독립지역) 중 204개 국가에서 실시

□ 국가기본통계 조사

- 국가 영토내의 사람과 거처를 전부(완전성), 일시에(동시성), 각각 개별적(개별성)으로, 일정한 주기(주기성)를 갖고 실시되는 국가의 기본이 되는 통계조사
- 조사결과는 국가기관, 기업, 학술단체 및 일반대중의 정책입안, 계획 수립, 연구 및 평가, 학습 등을 포함한 각종 분야의 기초 자료로 유용
- 인구, 가구 및 주택통계의 기준통계로서 각종 표본통계조사의 모집단 제공

□ 소지역 단위 통계조사

- 읍·면·동 통계자료가 작성·제공되는 통계조사
- 지역에 대한 비교 가능한 기초 자료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물론, 지역 정책의 수립 및 개발을 위해 유용한 자료로 활용
-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연계하여 통계지도 작성 가능

2. 조사 연혁

- 인구총조사는 1925년, 주택 총조사는 1960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
-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총조사는 1949년에 실시
- 2005년도에 실시하는 인구총조사는 제17차, 주택총조사는 제9차에 해당

3. 법적 근거

-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의한 지정통계
 - 인구총조사 : 지정통계 제10101호
 - 주택총조사 : 지정통계 제10102호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재정경제부령 제143호, 2000. 7.1.제정)

4. 조사기준시점 : 2005. 11. 1. 0시 현재

5. 조사 대상

- 조사 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 다만, 다음과 같은 인구와 거처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제외되는 인구	제외되는 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취업·취학중인 사람○ 외교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공무로 체류중인 국내거주 외국인 및 그 가족○ 국내주둔 외국군인·군속 및 그 가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군, 전투경찰대(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병영 막사○ 교도소, 소년원, 구치소, 경찰서 보호소, 등 시설○ 외국군대의 병영 막사○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이 살고 있는 거처 등

6. 조사 단위 : 가구

- 가구를 기본단위로 조사 실시
 - ※ 조사구는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60가구 내외의 가구가 포함되도록 경계를 설정하며, 조사업무의 할당을 위한 기본단위임

7. 조사 기간

- 준비조사
 - 전수조사구 : 2005. 10. 29 ~ 10. 31(3일간)
 - 표본조사구 : 2005. 10. 30 ~ 10. 31(2일간)
- 본조사 : 2005. 11. 1. ~ 11. 15.(15일간)

8. 조사 체계

- 주관기관 : 통계청
- 실시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부처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지도원 ⇔ 조사원
 - 특별조사구 : 해외주재공관(외교통상부), 교도소·소년원(법무부), 군부대(국방부), 전투경찰대(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의무소방대(소방방재청)

9. 조사 방법

- 조사원 면접방식, 응답자 기입방식, 인터넷 조사방식

10. 조사항목 : 44개 항목

- 전수조사 항목 : 21개 항목
- 표본조사 항목 : 23개 항목(시도 특성항목 3개 포함)

11. 동원 인력 : 약 107천명

- 공무원 : 약 5천명
- 총 관리자 : 3,567명(읍면동별 1명)
- 조사원 : 약 90천명(예비조사원 8천명 포함)
- 조사관리자 : 약 8천명(조사원 10명당 1명)

12. 소요예산(2005년) : 1,290억원

13. 결과 공표

- 잠정결과 : 2005. 12월
- 전수집계결과(2회) : 2006. 5, 7월
 - 인구부문 : 2006. 5월
 - 가구·주택부문 : 2006. 7월
- 표본집계결과(3회) : 2006. 9, 11, 12월
 - 경제관련부문 : 9월
 - 주거·복지부문 : 11월
 - 기타부문 : 12월
- 특성별 분석 : 2006. 9~2007. 12월

II. 조사구 설정 개요

1. 의의 및 목적

- 전국의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도로, 하천 등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 지도상에 일정가구수가 포함되도록 조사담당구역을 구획하는 작업
 - 조사담당구역을 명확히 함으로써 인구·가구 및 주택의 누락 또는 중복을 방지
 - 조사원의 업무량을 균등하게 배분
 - 총조사 실시 후 각종 표본조사의 표본틀 및 소지역통계 작성의 기초자료로 활용

2. 추진 방향

- 찾기 쉽고 정확한 지도 작성으로 조사 정도 제고
 - 2000년 총조사시 처음 도입한 수치지도(Digital Map)와 위치 식별이 용이한 새주소 지도를 총조사에 적합하도록 재제작
- 일관성 유지와 체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조사구 설정 방법 변경
 - 조사구 설정 횟수 단일화 : 군부, 시부로 구분(2회) → 통합 실시
 - 업무추진방법 변경으로 악화된 조사 환경 극복 및 정확성 확보
 - 지자체 : 가구수 파악, 조사구 적합성 확인
 - 통계청 : 조사구 경계 가설정, 조사구 심사 및 확정
- 변화가 심한 지역의 특별 관리를 통하여 누락·중복 예방
 - 대단위 개발지구, 아파트 신축 지역 등 변화가 심한 지역의 지속적 관리

3. 설정 방법

- 행정구역(읍면동) 단위로 지도(기본도)상에 일정기준에 의해 조사구 경계 설정

4. 대상 지역

□ 전국 3,567개 읍·면·동

5. 추진 경과

□ 조사구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 : '04. 9. 6. ~ 10. 16.

○ 조사 내용

- 읍면동별 지도상에 지형지물, 행정구역경계 수정·보완 및 거처별 가구수 파악(아파트, 연립주택은 1가구로 간주)

○ 결과 평가

- 취약지역의 가구수 오차 발생(오피스텔, 빌딩 등 파악 어려운 지역)
- 미입주 신축 아파트의 가구수 과다집계 등

⇒ '05. 4월 조사구 적합성 현지 확인시 철저 보완

□ 조사구 경계 가설정 : '04. 11. 1. ~ '05. 3. 5.

-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 결과 자료를 이용 통계청에서 조사구 설정 기준에 의해 경계구획 및 번호부여

○ 조사구 가설정 결과('05. 3. 현재)

구 분	합 계	아파트	보 통	섬	기숙시설	특수사회 시설	관광호텔 및외국인
전국	269,098	103,271	158,585	1,109	3,848	1,764	521
읍.면	57,202	13,037	41,007	1,059	1,153	855	91
동	211,896	90,234	117,578	50	2,695	909	430

※ 본조사시 272천개 내외의 조사구 예상

6. 향후 추진 일정

□ 조사구 적합성 현지확인 : '05. 4~5월

- 통계청에서 가설정한 조사구 경계의 적합성 여부
 - 지형지물 및 가구수 변동, 기초조사시 가구수 편차가 심한 지역을 중점 확인
- 실시방법 및 인력동원
 - 읍면동 단위로 조사원을 채용, 현장 확인
 -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책임성 및 정확성 확보

□ 표본조사구 추출(1차 : 6월, 2차 : 10월)

- 조사구 설정 결과를 이용하여 보통·섬·아파트조사구의 10% 내외 표본조사구 추출

□ 조사구 요도 작성 및 출력 : '05. 5~9월 초

- 조사구 적합성 현장 확인 결과를 수정·입력 후 조사구 단위로 일정규격의 조사용 도면 작성

□ 변동조사구 관리

- 조사구 설정 이후부터 2005년 총조사 직전까지 수정을 요하는 사항 발생시 조사구 수정(월1회, 지자체 신청) 및 보완
 - 행정구역 경계 변동, 시설조사구 변동, 가구수 변동이 심한 지역 등
 - 대단위 아파트 신축 및 철거, 택지개발 및 재개발 지역 특별 관리

Ⅲ. 조사구 적합성 현지확인 계획

1. 업무 흐름도

업 무 명	추진일정	업 무 내 용	수행기관
현지확인용 지도 작성 ↓	~ '05. 3월	· 읍면동별 기본도(부분확대도), 공동주택 전개도 각 2부를 제작하여 시군구에 배부	통계청
조사원 및 업무보조원 채용 ↓	'05. 4. 4. ~ 4. 13.	· 조사원 : 읍면동당 1명 (업무량에 따라 채용인원 조정가능) · 업무보조원 : 시군구당 1명	시·군·구
담당공무원 교육 ↓	'05. 4. 14. ~ 4. 18.	·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 · 시군구 업무보조원	통계청
조사원 교육 (조사용품 배부) ↓	'05. 4. 14. ~ 4. 18.	· 읍면동 공무원 및 조사원 (교육시 조사용품 배부)	시·군·구
조사구 적합성 현장 확인 ↓	'05. 4. 18. ~ 4. 30.	· 경계선 : 행정구역, 통·리 등 · 지형지물 : 건물, 도로, 하천 등 · 가설정 조사구 경계의 현지 적합성 여부	조사원 (읍·면·동)
심 사 ↓	'05. 5. 2. ~ 5. 13.	· 조사구 적합성 및 지형지물 수정 사항의 최종 심사, 확정	통계청 시·도
정리 및 제출 ↓	'05. 5. 6. ~ 5. 18.	· 심사 내용 보완 정리 및 제출 (1부 보관, 1부 제출)	읍면동⇒시군구 ⇒ 통계청

2. 대상 지역

전국 3,517개 읍·면·동

- 시범예행조사 50개 읍·면·동은 별도 시행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 17개 동
 - 경상북도 김천시 : 22개 읍면동
 - 충청북도 보은군 : 11개 읍면

3. 실시 방법

- 읍면동별로 조사원을 채용하여 현장 확인 후 보완
- 업무를 3단계로 구분 실시 : 담당자 교육, 현장조사 및 지도, 심사

4. 실시 기간 : 2005. 4. 14. ~ 5. 13.

- 담당자 교육 : 4. 14. ~ 4. 18. 기간중 2일
 - 시도 및 시군구 직원 교육 : 1일
 - 시군구 전달교육 (읍면동 직원 및 조사원) : 1일
- 현장조사 : 4. 18. ~ 4. 30.
- 심 사 : 5. 2. ~ 5. 13.

5. 인력 동원

- 통계청
 - 교 육 : 12명(본청)
 - 실사지도 : 약 100명(본청 30명, 지방통계사무소 70명)
 - 심 사 : 약 100명(본청 30명, 지방통계사무소 70명)
- 지자체 : 담당공무원, 시군구 업무보조원, 조사원
 - 현장조사 : 약 3,517명(조사원)
 - 실사지도 : 약 4,317명(16시도×2명, 256시군구×3명, 3,517읍면동×1명)
 - 심 사 : 약 4,317명(16시도×2명, 256시군구×3명, 3,517읍면동×1명)
 - ※ 지자체 동원인력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6. 중점 확인 내용

- 가설정 조사구 경계의 적합성 확인 및 보완
 - 조사구 경계 설정 상태가 지역실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고 보완
 - 조사구 설정을 위한 기초조사시 파악한 가구수의 오차가 예상되는 지역은 중점 확인
 - 빌딩, 오피스텔, 원룸지역 등 가구수 파악이 어려운 지역
 - 미입주 아파트 및 신축아파트 지역의 가구수 오차 발생지역
 -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시 가구수 파악 부실지역
-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정보 확인
 - 배치도, 출입구, 호수, 층수 등의 정확성을 전개도와 비교 검토

7. 수행 사항

[통계 청]

- 조사구 적합성 현장확인 실시계획 수립 및 총괄
- 현장조사용 지도 출력 및 배부
- 조사용품 제작 및 배부
- 시도 및 시군구 담당자 교육
- 실사 지도 및 심사
- 조사구 수정사항 입·출력 및 조사구 요도 작성

[시·도]

- 실시계획을 시·군·구에 시달 및 예산 재배정
- 시·군·구 담당공무원 교육장소 확보
- 업무보조원 및 조사원 명부 취합 및 통계청에 제출
- 통계청과 합동 실사지도 및 심사
- 조사구일람표 취합 및 제출
- 관내 지역의 기타 업무 총괄

[시·군·구]

- 업무보조원 및 조사원 채용, 관리
- 조사지침 전달 교육
 - 교육 대상 : 조사원, 읍·면·동 공무원
- 읍·면·동(조사원) 업무진행 상황 점검 및 독려
- 현장 확인 실사지도
 - 부실 및 취약지역의 집중 지도 및 지원
 - 변동이 심한지역의 현장지도 및 지원 강화
 - 가구수 파악 부실지역 중점 지도
- 관련 예산의 집행
- 심사 준비 : 자료 준비 및 심사 장소 확보

[시·군·구 업무보조원]

- 교육 참석
- 조사용품류 확인 및 배부시 보조
- 읍면동 조사구일람표 수정 및 시군구 조사구일람표 작성
- 심사 후 수정사항 정리 및 제출 업무 보조
- 기타 시·군·구 담당공무원 업무 보조

[읍·면·동 담당자, 조사원]

- 교육 참석
- 조사용품 수령 : 조사원 교육 실시 장소에서 수령
 - 현장조사용 지도 : 기본도 및 부분확대도, 공동주택전개도
 - 사무용품 : 연필, 지우개, 3색 볼펜(적색, 청색, 흑색), 자, 종이테이프
 - 행정자료 : 조사구일람표 등
- 현장 조사 : 각종 경계선, 지형지물 확인, 조사구 경계 적합성 등
- 정리 및 제출
 - 심사 전에 조사내용을 제출용 도면에 이기 등
 - 통계청에서 제공한 조사구일람표를 이용하여, 조사구심사표 작성

8. 조사 용품

가. 현장조사용 지도

- 제작 목적 : 가설정 조사구 적합성 현장조사용 지도로 활용
- 제작 방법 : 현장조사에 용이하도록 읍·면·동 단위로 제작
- 지도의 종류 : 3종(기본도, 부분확대도, 공동주택전개도)
 - 기본도 및 부분확대도 : 새주소 지도와 수치지형도의 특성이 서로 다름

<새주소 지도와 수치지형도 비교>

구 분	새주소 지도	수치지형도
도 로	회색 실선 및 음영	회색 실선
도로명	3M 이상 도로 전체	주요 도로
건 물	청색 실선 (단, 신축건물 점선)	건물특성에 따라 색상 구분 - 단독주택 : 청색, - 아 파 트 : 적색, - 연립·다세대주택 : 연두색 - 기타 건물 : 보라색
건물번호	적색	없음
건물군	노란색 음영	없음
등고선	없음	주황색 실선
하 천	청색 음영	청색 실선

※ 새주소 지도 사용지역 : 부록3 참조

- 배부 방법 : 방문 소포(택배)
 - 시·군·구 통계담당부서로 조사원 교육실시 전까지 도착되도록 배부
 - 배부 내역(별도 붙임,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자료실)과 실제 배부된 수량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을 경우 통계청 인구조사과에 연락 (☎042-481-2372, 481-6831)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nso.go.kr/census2005/>

- 배부 기준 : 읍·면·동당 각 2부(보관용, 제출용)
 - 현장조사용으로 사용한 지도는 조사완료 후 보관용으로 활용

나. 조사원증

- 제작 목적 : 조사원 신분 보장 및 증명 자료로 활용
- 제작 방법
 - 조사원증 케이스 : 통계청에서 일괄 제작
 - 착용 형태 : 목걸이형
 - 조사원증 : 통계청에서 제시한 표준 사양에 맞게 시군구에서 자체 제작
 - 조사원증 표준 사양(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규 격 : 가로 11cm× 세로 7.7cm,
 - 사진부착 : 반명합판(3cm×4cm)
 - 기입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무수행기간
 - 관 인 : 뒷면에 시군구청장 직인

<앞 면>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margin: 0 auto; padding: 5px;"> <p style="text-align: center;">사 진 (3cm×4cm)</p> </div>	<p style="text-align: center;">200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 조사원증 홍길동</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 ○○구(시군)</p>
--	---

<뒷 면>

<p>발급번호 :</p> <p>주민등록번호 :</p> <p>직무수행기간 : 2005. 4. ~ .</p> <p style="text-align: center;">이 사람은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 조사원임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05년 4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시(도) ○○구(시군)청장</p>
--

- 배부 방법 : 방문 소포
 - 시·도 통계담당부서로 배부하되 포장은 시군구단위로 실시
 - 시·군·구 담당공무원 및 업무보조원 교육시 시·군·구에 배부
- 배부 기준 : 읍·면·동당 1개*1.2

다. 조사지침서

- 제작 목적 : 조사 지침을 자세히 수록하여 현장조사에 활용
- 제작 방법 : 통계청에서 인쇄·배부

배부 방법 : 방문 소포

- 시·도 통계담당부서로 배부하되 포장은 시군구단위로 실시
- 시·군·구 담당공무원 및 업무보조원 교육시 시군구에 배부

배부 기준

- 시·도 : 10부
- 시·군·구 : 4부(업무보조원용 포함)
- 읍·면·동 : 2부*1.2(조사원용 포함)

라. 현장확인 참고 자료(지도 스캔 파일)

제작 목적 : 조사구 경계 및 가구수 현장확인시 참고용으로 활용

제작 방법 : 조사구 가설정 원도를 스캔하여 이미지 파일형태로 수록

대상 지역 : 2,130洞, 210 邑(단, 邑은 부분확대도만 해당)

- 수록 단위 : 읍면동 단위로 기본도 및 부분확대도별 파일 수록
- 수록 파일 예시 :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기본도 1매, 부분확대도 1매)

⇒ 기본도 파일 : 1101051.jpg, 부분확대도 파일 : 1101051_A.jpg

배부 방법 : 시군구 단위로 관련내용이 수록된 CD(1매) 제공

마. 지도 보관 봉투

제작 목적 : 조사구 현장확인용 지도의 보관

- 보관용 및 제출용 봉투 2종 제작

제작 방법 : 통계청에서 일괄 주문 제작

배부 방법 : 방문 소포

- 시·도 통계담당부서로 배부하되 포장은 시군구단위로 실시
- 시·군·구 담당공무원 및 업무보조원 교육시 시군구에 배부

배부 기준

- 시·군·구 : 읍·면·동당 제출용, 보관용 각 1부(합계 2부)*1.2

바. 사무용품

배부 목적 : 가설정 조사구 적합성 현장확인시 활용

종 류 : 연필, 지우개, 볼펜(3색 1세트), 칼, 자, 종이테이프 등

배부 방법 : 배정된 예산으로 시·군·구에서 일괄 구입 후 배부

배정 기준 : 읍·면·동당 5,000원

9. 업무보조원

가. 채용규모 및 자격요건

- 시·군·구별 1명 채용
 - 단, 비자치구는 구별 채용 가능(예 : 수원시의 경우 4명)
- 자격요건
 -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사람
 - 신분이 확실한 사람
 - 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 전산처리능력(아래 한글, 엑셀 등)이 있는 사람

나. 채용단가 : 1인 1일당 28,850원

다. 채용기간 : '05. 4. 14. ~ 5. 13. 기간중 채용일수 산정

- 시·군·구 관할 읍·면·동수 기준으로 산정
 - 5개 미만 : 5일 ○ 6 ~ 9개 : 7일
 - 10 ~ 14개 : 9일 ○ 15 ~ 19개 : 11일
 - 20 ~ 24개 : 13일 ○ 25 ~ 29개 : 15일
 - 30개 이상 : 17일

- 교육일수(1일)를 채용 일수에 포함

※ 채용일수 산정 예시 : 19개洞을 관할하는 서울시 종로구의 경우
⇒ 11일(읍·면·동수 기준) + 1일(교육) : 12일간 채용

10. 조사원

가. 채용규모 및 자격요건

- 읍·면·동당 1명 채용을 원칙으로 함
 - 조사원 1명당 가급적 14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채용 하되
 - 채용일수 과소지역은 2개 읍·면·동에 1명 채용 가능, 과다 지역은 1개 읍·면·동에 2명 이상 채용 가능

□ 자격요건

- 관할구역내 거주하는 사람
- 지역 사정에 밝고 신분이 확실한 사람
- 본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 아래 요건을 갖춘 사람은 우대 채용

- 관공서의 지도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지적도, 지형도 등)
- 기초단위구 현지확인 경험이 있는 사람
- 인구주택총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
- 기타 통계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채용단가 : 1인 1일당 36,750원

다. 채용기간 : '05. 4. 14. ~ 4. 30. 기간중 채용 일수 산정

□ 읍·洞과 面으로 구분

<읍·洞> : 아파트와 아파트 이외로 구분하여 조사구 규모로 일수 산정

○ 아파트 조사구

- | | | | |
|--------------|------|--------------|------|
| - 50개 미만 | : 1일 | - 50 ~ 99개 | : 2일 |
| - 100 ~ 149개 | : 3일 | - 150 ~ 199개 | : 4일 |
| - 200 ~ 249개 | : 5일 | - 250 ~ 299개 | : 6일 |
| - 300개 이상 | : 7일 | | |

○ 아파트 이외 조사구

- | | | | |
|--------------|-------|--------------|-------|
| - 20개 미만 | : 2일 | - 20 ~ 39개 | : 3일 |
| - 40 ~ 59개 | : 4일 | - 60 ~ 79개 | : 5일 |
| - 80 ~ 99개 | : 6일 | - 100 ~ 119개 | : 7일 |
| - 120 ~ 139개 | : 8일 | - 140 ~ 169개 | : 9일 |
| - 170 ~ 199개 | : 10일 | - 200개 이상 | : 11일 |

<面> : 전체 조사구 규모로 일수 산정

- | | | | |
|------------|------|------------|------|
| - 20개 미만 | : 2일 | - 20 ~ 39개 | : 3일 |
| - 40 ~ 59개 | : 4일 | - 60 ~ 79개 | : 5일 |
| - 80 ~ 99개 | : 6일 | - 100개 이상 | : 7일 |

중점 확인대상 읍·면·동은 채용일수에 20% 추가 배정

○ 중점 확인대상 지역 : 792개 읍·면·동(별도 붙임)

※ 지역실정에 따라 배정된 예산 범위내에서 채용일수 조정 가능

11. 채용명부

시·군·구 : 업무보조원 및 조사원 채용명부(2부)를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시·도 : 시·군·구에서 제출한 조사원 채용명부를 이용하여 시·도용 총괄표를 작성하고, 시·군·구에서 제출한 채용명부와 함께 통계청에 제출('05. 5. 31일 한)

<채용명부 작성양식(시·군·구용)>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및 업무보조원 채용 명부

구분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학력	채용일수	담당 읍·면·동
업무 보조원			-				
조사원							
∫			-				

2005 . 5 . .

시·군·구 장 (인)

<채용명부 총괄표 작성양식(시·도용)>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및 업무보조원 채용 현황

시·도

시·군·구	읍·면·동수	채용인원			비 고
		계	조사원	업무보조원	
계					
○○시					
∫	∫	∫			

12. 교 육

□ 실시 방법

교 육 대 상	실 시 방 법	교 관
- 시·도 및 시·군·구 담당공무원 (통계계장 및 실무자)	시·도 소집교육	통계청
- 시·군·구 업무보조원 - 읍·면·동 담당공무원 - 조 사 원	시·군·구 전달교육	시·군·구 (시·도)

□ 교육 일정

○ 시·도 소집교육

- 시·도는 교육기간('05. 4. 14.~4. 18.)중 교육장소를 확보하고, 교육 일정은 통계청과 협의(4. 4일 까지)
- 시·도에서 통보받은 교육일정에 따라 교육계획 수립 및 교관 파견 (단, 교육 일정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시·군·구 전달교육 : 시·도 소집교육 후 즉시 자체 전달교육 실시

□ 교육 시간표

교육시간	교 육 내 용	소요시간	비 고
09:30~10:00	- 등록 및 교재 수령	30분	※ 교육참석시간 엄수 요망
10:00~10:50	- 총조사 및 조사구 설정 개요	50분	
11:00~11:50	- 현장확인 세부실시계획	50분	
11:50~13:00	[중 식]	70분	
13:00~15:50	- 현장확인 및 보완 요령	170분	
16:00~17:00	- 정리·제출 및 기타 행정사항	60분	

□ 협조 사항

○ 시·도 소집교육 준비

- 교육실시 전 “조사 지침서”를 시·군·구 담당공무원에게 배부
- 교육 기자재 준비 : 책상 및 의자, 칠판(화이트보드) 등
- 교육 참석자 현황 파악 : 참석자 서명부 작성 등

○ 시·군·구 전달교육

- 시·군·구 담당공무원 자체 전달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반드시 참석
- 시·도 소집교육 후 즉시 실시 요망

13. 현장조사

□ 조사기간 : '05. 4. 18.~4. 30. 기간 중

□ 수행사항

<담당공무원>

- ① 행정구역 경계 확인 및 수정
- ② 통·리 경계 확인 및 수정
- ③ 지역실정 및 특성에 적합한 조사구 설정 여부 검토
 - 특히, 가구수 편차가 심한 조사구 집중 검토

<조사원>

- ① 지형지물 현장방문 확인 및 보완
 - 도로, 하천, 건물, 주요 명칭 등
- ② 현지 실정에 적합한 조사구 경계 구획 상태 확인 및 수정
 - 가구수 편차가 심한 조사구는 가구수 전면 재확인 및 조사구 경계 조정
 - 통계청에서 배부한 읍면동별 스캔 파일(기본도 및 부분확대도)을 이용하여 조사구 경계선 확인시 참조
- ③ 기존 공동주택전개도 확인 및 신축 공동주택 정보 수집
- ④ 조사구일람표 확인 및 변동조사구 수정 : “소재지”란 작성
- ⑤ 제출용 지도에 이기 및 정리

14. 실사지도

□ 실사지도 기간 : '05. 4. 19.~4. 30. 기간 중

□ 실시 방법

- 통계청, 시·도 : 지역 전담 및 순회지도 실시
- 시·군·구 : 읍면동 순회지도 및 부진·취약지역 지원

□ 실사지도 요령 및 유의사항

- 취약지역 및 변화가 심한지역은 중점 지도
- 현지확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점 해결
 - 특히, 공동주택 전개도 확인 및 보완이 철저히 되도록 지도
- 실사지도시 유의사항
 - 의문점의 자의적 판단 금지 ⇒ 통계청 또는 실사지도 출장자에게 문의 (통계청 인구조사과 : ☎ 042-481-2245~2249)
 - 현지확인시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부진지역 중점 지도

15. 심 사

□ 심사목적

- 가설정 조사구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조사구 확정
 - 부적합 조사구 및 부실조사 조사구 발생시 정확성 확보대책 강구

□ 심사기간 : 5. 2.~5. 13. 기간 중 시·군·구별 1~2일간 실시

□ 심사방법

- 통계청 및 시·도 합동으로 조를 편성하고, 시·군·구별 순회 심사
 - ⇒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공무원은 반드시 참석(조사원 참석 가능)하여 심사 업무에 협조

□ 심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시·도는 시·군·구 단위로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4월 15일 까지 통계청에 통보
 - 단, 심사기간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심사계획을 수립하되, 심사일정은 통계청과 협의 후 조정 가능
 - 1조 1일 평균 심사 업무량 : 20개 내외 읍·면·동

<통계청의 지역별 심사 조 편성 규모 : 34개 조>

서울 : 4개 조, 부산 : 2개 조, 대구 : 1개 조, 인천 : 1개 조
 광주 : 1개 조, 대전 : 1개 조, 울산 : 1개 조, 경기 : 5개 조
 강원 : 2개 조, 충북 : 2개 조, 충남 : 2개 조, 전북 : 2개 조
 전남 : 3개 조, 경북 : 3개 조, 경남 : 3개 조, 제주 : 1개 조

예시 : <전라북도 심사 계획>

심사일자	1 조			2 조		
	대상지역	읍면동수	심사장소	대상지역	읍면동수	심사장소
5. 2(월)	무주군 장수군	6 7	무주군청 대회의실	고창군	14	고창군청 대회의실
5. 3(화)	진안군	11	진안군청 대강당	부안군	13	부안군청 대회의실
5. 4(수)	임실군	12	임실군청 대회의실	완주군	13	완주군청 대강당
5. 6(금)	남원시	23	남원시청 대회의실	익산시	29	익산시청 대회의실
5. 9(월)	순창군	11	순창군청 대회의실			
5. 10(화)	정읍시	23	정읍시청 대강당	군산시	30	군산시청 대강당
5. 11(수)	전주시 완산구	23	전주시청 대회의실			
5. 12(목)	전주시 덕진구	17		김제시	23	김제시청 대회의실

□ 주요 심사 내용

- 조사구수 증감 허용 범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읍면동 단위 ±1
- 기본도 및 부분확대도의 수정보완 상태 확인
 - 행정구역 및 통·리 경계, 주요 지형지물(건물)의 보완상태
- 조사구 경계 적합성 확인 및 보완 상태
 - 특히, 가구수 파악 취약지역(상가밀집, 원룸지역, 오피스텔 등)의 조사구 경계 적합성 확인 상태 중점 심사
- 공동주택전개도 확인 및 수정 상태

- 기존 공동주택전개도의棟배치도, 층수, 호수, 출입구 등 확인 및 보완상태
- 2004년 10월 이후 신축 또는 누락된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다세대주택) 정보 작성 상태
- 기본도상의 확인표 작성 상태
- 조사구심사표(읍면동용) 작성 상태

□ 심사 준비 및 협조 사항

<시·도>

- 심사 계획 수립

<시·군·구>

- 심사 일정에 따라 장소 확보
 - 지도의 크기 및 업무량을 고려하여 면적이 넓은 장소 확보
- 심사 준비
 - 조사구 적합성 현장확인용 지도 : 3종
 - 기본도, 부분확대도, 공동주택전개도 각 2부(제출용, 보관용)
 - 2004년 10월 이후 신축 또는 누락된 공동주택 정보 각 1부
 - 읍·면·동별 조사구심사표 각 1부 : 부록4 참조
 - ※ 필요시 관할 읍·면·동의 관내 현황도 : 지형도, 지번도 등
 - 사무용품 : 싸인펜 또는 프러스펜(적·청·흑), 지우개, 연필, 자, 풀, 칼 등

16. 자료 제출

□ 제출 서류

- 기본도, 부분확대도, 공동주택전개도 각 1부
- 신축(또는 누락)된 공동주택전개도 및 기본정보 현황 각 1부
- 조사구일람표 3종
 - 읍·면·동용, 시·군·구용, 시·도용 조사구일람표 각 1부

□ 제출 방법

<제출용 지도>

- 심사가 완료된 후에 제출용 지도는 읍·면·동 제출용 봉투에 넣은 후
- 시·군·구 단위로 포장하여 심사 후 3일 이내에 우편(택배) 발송
- 주소 :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 번지)
통계청 인구조사과 통계지리정보실 1동 1803호

<조사구일람표> : 부록5 참조

- 시·군·구 : 심사완료 후 조사구일람표 2종(읍·면·동용, 시·군·구용) 작성하여 시도에 제출 및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http://www.nso.go.kr/census2005/>)에 게시
- 시·도 : 시·군·구 조사구일람표를 취합하고, 시·도용 조사구일람표를 작성하여 통계청에 5월 31일 까지 제출

IV. 변동 조사구 관리

1. 수정 대상

- 행정 읍·면·동 경계가 변경된 경우
- 구획정리, 지역재개발, 도로 신설, 하천 개수, 재해 등에 의한 지형지물의 현저한 변화로 조사구 경계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 기숙시설, 특수사회시설, 관광호텔 등이 신설 또는 철거된 경우
- 주택단지 조성, 건물 철거 등의 사유로 조사구내 가구수가 현저하게 증감하여 조사구의 분할·통합이 불가피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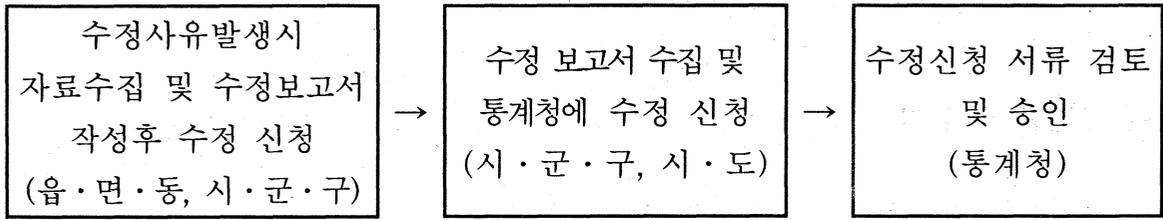
2. 수정 기간

- 조사구 적합성 심사 이후 ~ 2005. 10. 15.
- 2005. 10. 15을 경과하여 수정 신청할 경우는 반영이 곤란하므로 총조사 실시전까지 변동이 확실한 조사구는 최종 수정보고서에 반영

3. 수정 주기 : 매월 1회(매월 15일까지 통계청에 보고)

- 변동 조사구가 없는 경우에도 “변동 없음” 보고

4. 수정 절차



5. 조사구 수정보고서 : 부록5 참조

V. 예산 재배정

1. 예산과목

- 130(일반행정)-131(일반행정)-1100(통계행정)-1131(사회통계국)
 - 211(인구주택총조사)-000(인구주택총조사)-102(비정규직보수)-02(일용임금)
 - 211(인구주택총조사)-000(인구주택총조사)-201(관서운영비)-01(일반수용비)
 - 211(인구주택총조사)-000(인구주택총조사)-201(관서운영비)-05(특근매식비)
 - 211(인구주택총조사)-000(인구주택총조사)-202(여비)-01(국내여비)

2. 재배정 기준

가. 일용임금

- 조사원 수당 : 36,750원/일
 - 산정 단위 : 시·군·구 단위로 산정(백원 단위에서 올림)
- 업무보조원 수당 : 28,850원/일
 - 배정 기준 : 시·군·구 단위로 읍·면·동수에 따라 차등 적용(16쪽 참조)
- 보험료 :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사업주부담금
 - 산재보험 : 사업주부담금(6/1000)
 - 고용보험 : 사업주부담금(13/1000)
 - 사업주부담금 : 실업급여(4.5/1000)+고용안정사업(1.5/1000)+
직업능력개발사업(7/1000)

※ 실업급여(9/1000)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1/2부담이므로 4.5/1000는
 일용수당에서 개인별로 부담

나. 일반수용비

- 지도 발송비 : 시군구당 6,000원
 - 조사구 설정 기초조사 확인 및 접수 완료후 시군구별 포장하여 택배 발송
- 사무용품 구입비 : 읍면동당 5,000원
 - 연필, 지우개, 볼펜, 종이테이프 등 구입

다. 국내여비

- 2005년 예산편성기준 중 국내여비단가 적용
 - 관내 : 10,000원
 - 관외
 - 숙박

구분	일비	식비	숙박비	운임	합계
4·5급	10,000	18,000	25,000	5,800	58,800
6급이하	10,000	15,000	22,000	2,900	49,900

- 비숙박 : 27,900원

- 시·도
 - 시·도 통계담당관 회의 참석 : 3명(4·5급 2명, 6급 이하 1명), 2일씩 배정
 - 운임은 실비 적용, 숙박지역은 숙박비(1박 2일) 배정
 - 실사지도 : 3명(4·5급 1명, 6급 이하 2명), 12일 배정
 - 심사 : 시도별 편성 조*심사기간(12일)

□ 시·군·구

- 교육 참석 : 3명(통계담당계장 및 실무자, 업무보조원)
 - 관내 또는 관외지역으로 구분배정
 - 관외 지역중 숙박지역은 1박 2일 배정
- 실사지도 : 2명, 8일 배정
 - 1일 10,000원 배정(단, 도서지역은 비숙박비 적용)

□ 읍·면·동

- 교육 참석 : 읍면동당 1일 배정
- 현장조사 : 1일 10,000원 배정
 - 동원 가능 : 4일 배정
 - 동원 불가능 : 2일
- ※ 도서 지역은 비숙박비 적용 : 시군구별 예산 재배정 내역 참조
- 심사참석 : 읍면동당 1일 배정

라. 특근매식비

□ 시·도

- 2명, 20일 기준으로 배정

□ 시·군·구

- 2명, 10일 기준으로 배정

3. 재배정 내역

가. 시·도별 예산 재배정 총괄표

(단위 : 원)

시 도	총액	일용임금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특근매식비
전 국	1,211,816,000	887,879,000	276,328,000	19,049,000	28,560,000
서울특별시	199,554,000	166,321,000	27,743,000	2,760,000	2,730,000
부산광역시	71,489,000	56,233,000	12,421,000	1,135,000	1,700,000
대구광역시	49,957,000	39,900,000	8,294,000	763,000	1,000,000
인천광역시	52,381,000	40,538,000	9,888,000	755,000	1,200,000
광주광역시	28,693,000	22,198,000	5,315,000	480,000	700,000
대전광역시	30,333,000	23,053,000	6,150,000	430,000	700,000
울산광역시	21,558,000	15,869,000	4,669,000	320,000	700,000
경 기 도	198,670,000	152,898,000	38,026,000	2,816,000	4,930,000
강 원 도	63,620,000	40,790,000	19,782,000	1,048,000	2,000,000
충청북도	47,572,000	32,161,000	13,129,000	782,000	1,500,000
충청남도	70,507,000	46,649,000	20,917,000	1,141,000	1,800,000
전라북도	71,463,000	48,809,000	19,509,000	1,345,000	1,800,000
전라남도	88,236,000	56,974,000	27,235,000	1,627,000	2,400,000
경상북도	100,671,000	66,801,000	29,552,000	1,718,000	2,600,000
경상남도	99,308,000	67,118,000	28,300,000	1,690,000	2,200,000
제 주 도	17,804,000	11,567,000	5,398,000	239,000	600,000

나. 시군구별 예산 재배정 내역 : 별첨 참조

VI. 행정 사항

□ 읍면동 지도 수량 및 내용 확인

- 배부된 읍면동 지도와 배부 내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통계청에 연락(☎ 042-481-2372, 481-6831)
- 기본도 · 부분확대도 · 공동주택 전개도 각 2부

□ 시·군·구 업무보조원 채용

- 시·군·구별 채용 일수 준수

□ 조사원 채용 및 업무량 배정

- 읍면동당 1명씩 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실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배정 가능
 - 채용일수가 적은 읍면동 : 2개 읍면동을 1명 에게 배정
 - 채용일수가 많은 읍면동 : 1개 읍면동을 2명 이상 에게 배정
- 취약지역 및 가구수 과약 부실지역에 업무량 집중 배정
 - 중점 확인 대상 지역의 현장조사 철저
- 조사원 중도포기시 업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 조사원 대체

□ 채용명부 작성 및 제출

- 조사원 채용명부는 시·군·구용과 시·도용으로 구분하여 작성양식(19쪽 참조)에 의거 2005. 5. 23까지 통계청에 문서로 제출
(중도포기 조사원 및 대체 조사원을 포함하여 작성)

□ 심사일정 수립 및 제출

- 시·도에서는 통계청에서 편성한 심사 조 규모로 심사일정을 수립하여 2005. 4. 15일 까지 통계청에 제출
- 시군구에서는 심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심사장소 사전 확보
 - 지도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넓은 장소 확보

□ 사무용품 구입 및 배부

- 시·군·구에서는 배정된 예산으로 사무용품을 구입(읍면동당 5,000원 상당)하여 조사원에게 배부

□ 자료 제출

- 심사 완료후 3일 이내에 제출자료를 봉투에 넣어 시·군·구 포장한 후 통계청에 택배 발송
 - 제출 자료
 - 현장조사용 지도 : 기본도, 부분확대도, 공동주택전개도 각 1부
 - 신축 또는 누락 공동주택전개도 및 기본정보 현황표 각 1부
 - 조사구일람표 3종(읍·면·동용, 시·군·구용, 시·도용)
- ⇒ 조사구일람표는 서면 제출과 동시에 전산파일(엑셀)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

□ 자료 보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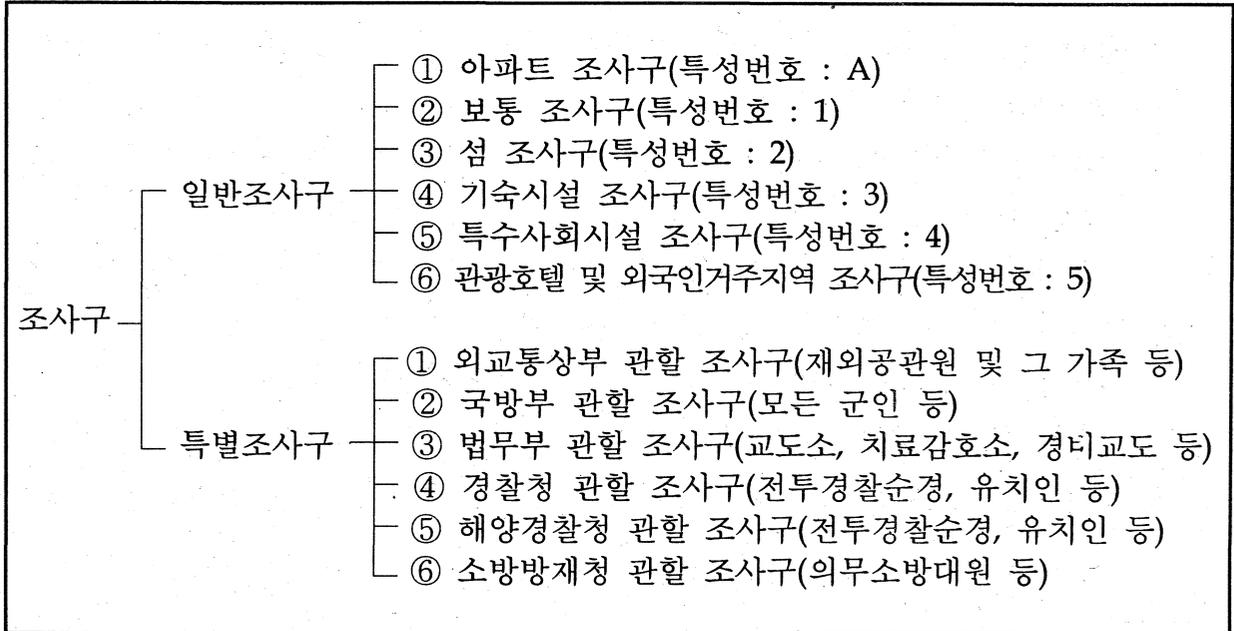
- 조사구 설정 지도(보관용) : 3종
 - 기본도, 부분확대도, 공동주택전개도 각 1부
 - 조사구일람표
- 보관 장소
 - 총조사 실시 전 : 읍면동(단, 기능전환 지역은 시군구)
 - 총조사 실시 후 : 시군구 통계담당 부서
- 보존 기간 : 10년

부 록

1. 조사구 설정 기준
2. 거처와 가구의 개념
3. 새주소 지도 활용 지역
4. 조사구심사표
5. 조사구일람표(3종)
6. 조사구 수정보고서
7. 지방통계사무소 동원 인력
8. 인력 동원 가능 및 불가능 읍면동 현황

조사구 설정 기준

□ 조사구 종류



※ 조사구설정은 일반조사구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해서만 설정하고 특별조사구는 조사구설정 대상에서 제외

□ 일반조사구 설정기준

- 아파트조사구, 보통조사구, 섬조사구는 가구수를 기준으로 평균 64가구 범위(64±20가구)내에서 식별이 확실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
- 기숙시설조사구, 특수사회시설조사구, 관광호텔조사구는 시설단위별로 조사구를 설정
- 외국인조사구는 외국인이 집단적으로 모여사는 지역에 대해 설정
- 2000년 총조사 이후 변동이 없는 지역은 2000년 조사구경계를 활용하고, 변동지역은 조사구 경계 재설정
 - 변동없는 아파트 지역은 2000년 총조사 조사구 경계 활용
 - 변동이 없는 아파트 이외 지역은 2000년 총조사 경계를 활용하되, 조사구경계가 불합리한 경우 일부 조정
 - 변동지역은 적정가구수가 포함되도록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조사구 재설정

① 아파트조사구(특성번호 : A)

아파트조사구는 「일반가구」와 「비혈연자 6인이상 19인이하가 거주하는 집단가구」를 대상으로 1개 동(棟) 또는 2개 동(棟) 이상의 총 호수(戶數)가 40 이상이 될 때 설정하는 조사구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변동이 없는 아파트는 2000년 총조사 경계 활용(불합리한 경우 일부 조정)
- 2000년 인구주택총조사 이후 변동이 있는 아파트는 아래의 기준에 의해 설정
 - 상가아파트, 독신자아파트(사원, 공무원아파트 등) 등도 주택의 종류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아파트조사구로 설정
 - 규모가 적은(40戶미만) 아파트는 인접동(棟)과 통합하고, 규모가 큰 경우는 2개 이상의 조사구로 분할
 - 계단식 아파트는 계단을 기준으로 복도식 아파트는 층을 기준으로 설정
 - 아파트 단지내의 상가 및 건물 등은 인접한 아파트 동(棟)에 포함하여 설정
 - 주택가 또는 외딴지역의 1개 동(棟) 또는 2개 동(棟)이상의 아파트 호실(戶室)이 40戶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조사구에 포함
 - 아파트가 아닌 공동주택(연립, 다세대, 빌라, 맨션 등)은 보통조사구에 포함하여 설정

② 보통조사구(특성번호 : 1)

보통조사구란 「일반가구」와 「비혈연자 6인이상 19인이하가 거주하는 집단가구」를 대상으로 주요 지형지물(도로, 하천 등) 또는 행정 통·리 경계를 이용하여 설정

- 1개 조사구당 통상적으로 평균 64가구를 기준으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기준 가구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능한 40~85가구 범위내에서 설정
- 보통조사구는 반드시 명확한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설정해야 하며 대하천, 대도로 등은 가능한 조사구 경계로 이용해야 함

- 특히, 도심지역인 경우 대하천, 대도로를 가로질러서 조사구가 설정되지 않도록 유의
- 2000년 총조사 이후 지형지물과 가구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2000년 총조사 경계를 그대로 활용하되 불합리한 경우에는 일부 조정
- 오피스텔, 가족이 거주하는 사원주택 등은 보통조사구로 설정 (기숙시설 조사구로 설정해서는 안됨)

③ 섬조사구(특성번호 : 2)

섬조사구란 육지와 완전히 분리되어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을 대상으로 보통조사구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설정

- 군단위 이상의 청사가 소재하는 섬과 교량, 방조제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강화도 등)은 육지로 간주하여 보통조사구로 설정
- 유인도 또는 무인도가 군집되어 있는 섬지역은 거주가구수와 거처수를 고려하여 여러 개의 섬을 묶어 1개의 섬조사구로 설정하되,
- 해상교통이 불편하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섬의 경우에는 기준 가구수에 미달하더라도 한 개의 섬을 하나의 섬조사구로 설정할 수 있음

④ 기숙시설조사구(특성번호 : 3)

기숙시설조사구란 기숙시설에 정식 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기숙시설에 정식 명칭이 없더라도 20인 이상이 공동취사를 하고 있는 시설단위별로 설정

- 기숙사의 정식명칭이 등록되어 있거나, 정식명칭이 없더라도 20인 이상이 공동취사를 하고 있는 시설로서, 조사구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수용인원이 20인 이상인 경우 기숙시설조사구로 설정
- 고시원, 고시텔, 코콘하우스 등과 같이 집단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명칭이 등록되어 있으면 기숙 시설조사구로 설정

- 단, 실버타운(Silver-town) 등과 같이 공통된 특성을 가진 사람이 집단으로 모여 사는 건물이 아파트일 경우에는 아파트조사구로, 연립·다세대·단독주택일 경우에는 보통조사구로 설정

【 고시원의 형태에 따른 기숙시설과 보통조사구 구분 방법 】

- 「순수형」은 개별로 구획된 방에 책상을 비치하여 공부만 할 수 있도록 한 시설로써 취사시설은 없고, 심야이용이 불가능한 형태는 대상이 아님
- 「숙박형」은 개별로 구획된 방에서 공부하며 취사 및 거주 가능한 시설로써 원룸형 월세방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이는 개별가구로 처리하여 보통조사구로 설정
 - ※ 「숙박형」은 개별로 구획된 방에서 공부하며 취사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나 대부분 외식으로 대체하는 경우(또는 밥은 준비되어 있고 반찬만 가지고 식사하는 경우 포함)는 기숙시설조사구로 설정
- 「혼합형」은 순수형과 숙박형 고시원이 혼재된 경우로 기숙시설조사구로 설정
- 「공부방형」은 공부와 상관없는 숙식을 위한 시설로써 주거목적으로 업태는 고시원이나 실재는 하숙형태이므로 기숙시설조사구로 설정
- 단독주택 등에서 하숙업을 하거나 실제로 기숙사와 동일한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주인 가구를 제외한 비혈연자 20인 이상이 공동 취사를 하고 있으면 기숙시설조사구로 설정
- 사원아파트의 독신자 숙소는 아파트 위치에 따라 설정되며, 회사내에 위치하면 기숙시설조사구로, 회사밖에 위치하면 아파트조사구로 설정
- 기숙시설 내에 거주인원이 300인을 초과할 경우에는 300인을 기준으로 동(棟), 층 또는 호·실 단위로 기숙시설을 분할하여 조사구를 설정

⑤ 특수사회시설조사구(특성번호 : 4)

특수사회시설조사구란 고아원, 양로원, 육아원, 요양원, 나환자 수용소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 비혈연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수용시설 단위별로 설정

- 나환자들이 집단으로 모여사는 지역은 보통조사구(특성 번호 : 1)로 분류하여 설정
- 아동상담소, 아동직업보도소, 조산소, 아동입양위탁시설, 노인복지회관, 장애인이용시설, 점자도서관 등 비수용시설은 특수사회시설조사구로 설정하지 않음
- 단, 특수사회시설이지만 시설내에서 개별적으로 취사, 취침을 달리 하고있는 경우에는 각각 개별가구로 파악

< 특수사회시설조사구로 설정되는 수용시설의 사례 >

- 아동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수용시설
 - ▶ 고아원, 보육원, 희망원, 영아원, 교호시설, 자립지원시설 등
- 노인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수용시설
 - ▶ 양로원, 노인요양원, 노인복지주택 등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설치된 수용시설
 - ▶ 맹·농아시설, 정신장애자 시설, 지체부자유자 등의 요양시설 및 재활시설
- 특수병원, 수용소
 - ▶ 정신병원, 결핵요양원, 나환자 수용소, 전염병환자 수용소 등
- 기타
 - ▶ 윤락여성 직업보도를 위한 수용시설 등 상기 사항에 준하는 수용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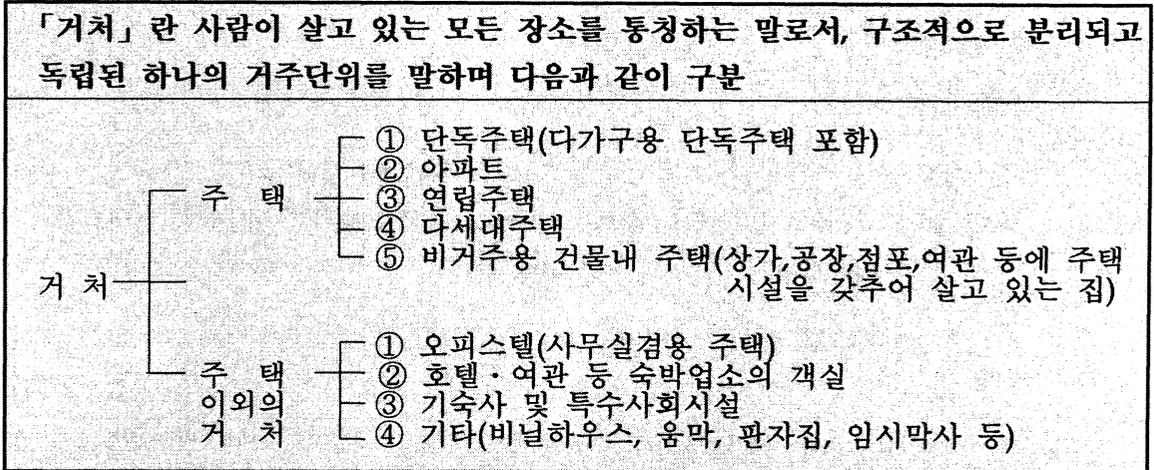
⑥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지역 조사구(특성번호 : 5)

관광호텔 및 외국인거주지역 조사구란 외국인이 투숙한 관광호텔과 20인 이상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건물 또는 10가구 이상의 외국인 가구가 모여서 생활 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

- 관광호텔은 3등급(무궁화 2개)이상인 경우에만 호텔단위별로 「관광호텔조사구」로 설정하고, 3등급 미만(무궁화 1개)의 관광호텔, 여관 등은 보통조사구에 포함하여 설정
- 관광호텔조사구는 객실수가 조사대상임
- 외국인이 20인 미만 또는 외국인 가구가 10가구 미만이거나 한국인 가구와 섞여서 거주하는 지역은 보통조사구에 포함하여 설정
- 1인 가구 또는 혈연가구가 숙박하고 있는 간이숙박소는 여관, 여인숙 등과 같이 보통조사구에 포함하여 설정
- 기숙시설내의 외국인이 20인 이상인 경우에는 내국인과 구분하여 별도의 기숙시설 조사구로 설정

거처와 가구의 개념

가. 거처의 구분



(1) 주 택

주택이란 한 가구 이상이 살림할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 ① 영구건물이어야 하고
- ② 부엌과 1개 이상의 방을 갖추고 있으며
- ③ 독립된 출입구가 있고
- ④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의 한 단위를 이루고 있는 건물

① 단독주택

○ 통상 한 가구가 살림할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 일반 단독주택 : 통상 한 가구가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집으로서 부엌, 독립된 출입구를 갖추고 있으며, 관습상 소유 또는 매매가 가능

- 다가구(용) 단독주택 : 한 거처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구획되어 있으며 각 구획마다 부엌, 독립된 출입구, 화장실이 모두 구비되어 있으나 구획별로 매매는 불가능

② 아파트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5층이상(90년 이전은 4층 이상), 20가구 이상이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주택으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상가아파트 포함)
 - 아파트단지내에 4층이하의 동(棟)이 있는 경우

③ 연립주택

- 한 건물내에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이하 주택으로 건축당시 「연립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으로 동(棟)당 건축 연면적이 **200평을 초과하는 주택**(4층이하의 빌라, 맨션 포함)

④ 다세대주택

- 한 건물내 여러 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건축되어진 4층이하의 주택으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것으로 동(棟)당 건축 연면적이 **200평 이하인 주택**

♣ 다가구용 단독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다른 점은?

「다세대 주택」은 주택(세대)별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매매 및 분양이 가능한 점에서 「다가구(용)단독주택」과 다름

- ☞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건물전체가 하나의 거처로 보는데, 다세대 주택은 각각의 세대를 주거단위로 간주

⑤ 비거주용 건물(상가·공장·점포·여관 등)내 주택

- 영업용 목적으로 건축된 건물내에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 그 거주부분이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을 갖추고 있으면 여기에 해당

(2) 주택이외의 거처

주택이외의 거처란 주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물로서 사람이 살고 있는 구조물

① 오피스텔

- 사무실 겸용 주택

②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 대실료를 받고 손님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구조물

※ 단, 주인가구가 여관 등 숙박업소 건물내에서 주택의 요건을 갖추어 살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거주용 건물내 주택」으로 간주

③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 기숙사, 수녀원, 양로원, 보육원 및 대사찰 등과 같이 집단수용을 위한 구조물

④ 기타

- 여기에는 천막집, 비닐하우스, 판자집, 움막, 암자, 건설공사장의 임시막사 등과 같이 임시 거주를 위한 구조물이 해당

나. 가 구

(1) 가구의 개념

가구란 혈연 또는 비혈연을 불문하고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 취침 등 생계를 같이하는 생활단위를 말함. 따라서,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족, 가정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와는 다름

(2) 가구의 종류

① 일반가구

-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 가족과 가족이외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가구
- 혼자서 살림하는 가구
-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함께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② 집단가구

-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함께 사는 6인 이상 19인 이하의 가구
- 집단 시설 가구는 크게 2가지로 구분
 - 기숙사, 수녀원, 사찰 등 20인 이상이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시설일 경우입니다(단, 기숙시설조사구에 해당)
 - 고아원, 양로원, 육아원, 요양원 등의 특수사회시설에 2인 이상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단, 특수사회시설조사구에 해당)

[부록 3]

새주소 지도 활용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비 고
전 국	87	1,490	
서 울	25개 區	522	
부 산	9개 區	141	
	서 구	15	
	부산진구	25	
	동래구	14	
	북구	13	
	사하구	16	
	금정구	18	
	연제구	13	
	수영구	10	
	해운대구	17	
인 천	8개 區	117	서구 영종동, 용유동 제외(새주소 없음)
광 주	5개 區	90	
대 전	5개 區	79	
경 기	17개 市	291	-
	수원시	42	-
	성남시	44	-
	부천시	37	-
	광명시	18	-
	안산시	23	-
	고양시	37	-
	과천시	6	-
	의정부시	15	-
	동두천시	7	-
	구리시	8	-
	오산시	6	-
	시흥시	14	-
	군포시	11	-
	의왕시	6	-
	하남시	10	-
	안성시	3	-
	이천시	4	읍·面 제외

새주소 지도 활용 지역

시·도	시·군·구	읍·면·동	비 고
강 원	3개 市	44	-
	춘천시	15	읍·面 제외
	원주시	16	"
	강릉시	13	"
충 북	2개 市	38	
	청주시	29	읍·面 제외
	제천시	9	"
충 남	6개 市·郡	45	
	천안시	14	읍·面 제외
	공주시	6	"
	보령시	5	"
	아산시	6	"
	논산시	4	面 지역 제외
	금산군	10	읍·面 전체
전 북	4개 市	80	-
	전주시	40	읍·面 제외
	군산시	19	"
	익산시	14	"
	남원시	7	"
경 남	1개 市	12	-
	창원시	12	-
제 주	2개 市	31	-
	제주시	19	-
	서귀포시	12	-

[부록 5]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일람표
 (읍·면·동용)

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구역부호

총 조사구수	A	1	2	3	4	5	총가구수 (인구수)

조사구 번호	특성 번호	가구수 (인구수)	소재지	비고
계				

(매중 매)

통 계 청 장 귀 하 시 시 구
 도 군 면 장
 동 동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일람표
(시·군·구용)

시·도 시·군·구

행정구역명 (읍·면·동)	총 조사구수	특성별 조사구수						가구수	인구수	비 고
		A	1	2	3	4	5			
계										

(매 중 매)

통 계 청 장 귀하 시 시
 도 군 장
 구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일람표
 (시·도용)

시·도

행정구역명 (시·군·구)	총 조사구수	특성별 조사구수						가구수	인구수	비 고
		A	1	2	3	4	5			
계										

(매중 매)

통계청장 귀하 시

장

도

[부록 6]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수정 보고서

시도	시군구	읍면동	행정구역부호

구분	총 조사구수	특성별 조사구수					가구수 (인구수)
		A	1	2	3	4	
당초							
수정							

당 초			수 정			소 재 지 (법정동, 통·리/반명 및 번지를 구체적으로 기입)	수정 사유	비 고
조사구 번호	특성 번호	가구수 (인구수)	조사구 번호	특성 번호	가구수 (인구수)			

[부록 7]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
지방통계사무소 동원 인력

사무소 및 출장소명	동원 인원		관할 구역	
	실사 지도	심사	시군구	시·군·구 명
전 국	70	70	234	-
서울사무소	9	9	25	서울특별시 전역
부산사무소	4	4	21	부산광역시 전역, 울산광역시 전역
부산사무소	3	3	16	부산광역시 전역
울산출장소	1	1	5	울산광역시 전역
경기사무소	10	10	31	경기도 전역
도사무소	3	3	8	수원시,오산시,화성시,안산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용인시
성남출장소	1	1	3	성남시,과천시,광주시
의정부출장소	1	1	5	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포천시,연천군
부천출장소	1	1	4	부천시,광명시,시흥시,김포시
평택출장소	1	1	2	평택시,안성시
고양출장소	1	1	2	고양시,파주시
구리출장소	1	1	4	남양주시,구리시,하남시,가평군
이천출장소	1	1	3	이천시,여주군,양평군
전남사무소	6	6	27	광주광역시 전역, 전라남도 전역
도사무소	2	2	10	광주광역시 전역, 장성군,담양군,영광군,곡성군,화순군
목포출장소	1	1	3	목포시,진도군,신안군
순천출장소	1	1	4	순천시,여수시,광양시,구례군
나주출장소	1	1	4	나주시,영암군,무안군,함평군
보성출장소	1	1	3	보성군,장흥군,고흥군
해남출장소	1	1	3	해남군,강진군,완도군
경북사무소	8	8	31	대구광역시 전역, 경상북도 전역
도사무소	3	3	15	대구광역시 전역, 영천시,경산시,군위군,청도군,고령군,성주군,칠곡군
포항출장소	1	1	3	포항시,경주시,울릉군
안동출장소	1	1	6	안동시,영주시,의성군,청송군,봉화군,영양군
구미출장소	1	1	2	구미시,김천시
상주출장소	1	1	3	상주시,문경시,예천군
울진출장소	1	1	2	울진군,영덕군
인천사무소	2	2	10	인천광역시 전역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설정
지방통계사무소 동원 인력**

사무소 및 출장소명	동원 인원		관할 구역	
	실사 지도	심사	시군구	시·군·구 명
강원사무소	7	7	18	강원도 전역
도사무소	2	2	5	춘천시,홍천군,화천군,철원군,양구군,인제군
원주출장소	1	1	2	원주시,횡성군
강릉출장소	1	1	1	강릉시
속초출장소	1	1	3	속초시,고성군,양양군
삼척출장소	1	1	3	삼척시,동해시,태백시
영월출장소	1	1	3	영월군,정선군,평창군
충북사무소	4	4	12	충청북도 전역
도사무소	2	2	6	청주시,청원군,괴산군,증평군,진천군,음성군
충주출장소	1	1	3	충주시,제천시,단양군
옥천출장소	1	1	3	옥천군,영동군,보은군
충남사무소	6	6	21	대전광역시 전역, 충청남도 전역
도사무소	3	3	10	대전광역시 전역,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연기군,
천안출장소	1	1	3	천안시,아산시,예산군
보령출장소	1	1	5	보령시,홍성군,서천군,부여군,청양군
서산출장소	1	1	3	서산시,당진군,태안군
전북사무소	5	5	14	전라북도 전역
도사무소	2	2	5	전주시,익산시,군산시,김제시,완주군
정읍출장소	1	1	3	정읍시, 부안군,고창군
남원출장소	1	1	3	남원군,임실군,순창군
진안출장소	1	1	3	진안군,무주군,장수군
경남사무소	7	7	20	경상남도 전역
도사무소	3	3	8	창원시,마산시,진해시,밀양시,김해시,양산시,창녕군,합안군
진주출장소	1	1	4	진주시,사천시,산청군,의령군
통영출장소	1	1	3	통영시,거제시,고성군
하동출장소	1	1	2	하동군,남해군
거창출장소	1	1	3	거창군,함양군,합천군
제주사무소	2	2	4	제주도 전역

[부록 8]

통계업무 기능전환에 따른
인력 동원 가능 및 불가능 읍면동 현황

(2005. 3. 22. 기준)

시·도	합 계	읍면동수		(동원가능/전체 읍면동수)
		동원가능	동원불가능	
전 국	3,567	1,170	2,397	- 전체 동원 가능 : 83개 시군구 - 일부 동원 가능 : 7개 시군구
서 울	522	44	478	서초(18/18), 강남(26/26)
부 산	226	7	219	강서(7/7)
대 구	143	9	134	달성(9/9)
인 천	139	-	139	-
광 주	90	-	90	-
대 전	80	73	7	서(23/23), 동(21/21), 중(17/17), 대덕(12/12)
울 산	58	26	32	남(14/14), 울주(12/12)
경 기	514	25	489	화성(15/15), 광주(10/10)
강 원	188	69	119	춘천(4/25), 강릉(21/21), 속초(8/8), 원주(25/25), 삼척(12/12), 영월(9/9), 정선(9/9), 인제(6/6)
충 북	153	44	109	옥천(9/9), 영동(11/11), 괴산(11/11), 충주(13/25)
충 남	209	207	2	전체 동원 가능(16개 시군), (장항읍, 서천읍제외)
전 북	251	113	138	정읍(15/23), 남원(23/23), 김제(19/19), 완주(13/13), 무주(6/6), 임실(12/12), 순창(11/11), 고창(14/14),
전 남	299	24	275	보성(12/12), 완도(12/12)
경 북	338	289	49	포항(33/33), 경주(25/25), 김천(22/22), 구미(27/27), 영천(16/16), 상주(24/24), 문경(14/14), 경산(16/16), 청도(9/9), 예천(12/12), 울진(10/10), 안동(24/24), 군위(8/8), 의성(18/18), 영덕(9/9), 청송(8/8), 영양(6/6), 칠곡(8/8)
경 남	314	209	105	창원(15/15), 진주(37/37), 사천(14/14), 통영(18/18) 밀양(11/16), 거제(16/16), 양산(6/9), 의령(13/13), 창녕(14/14), 고성(14/14), 산청(11/11), 함양(11/11), 거창(12/12), 함천(17/17)
제 주	43	31	12	제주(19/19), 북제주(7/7), 남제주(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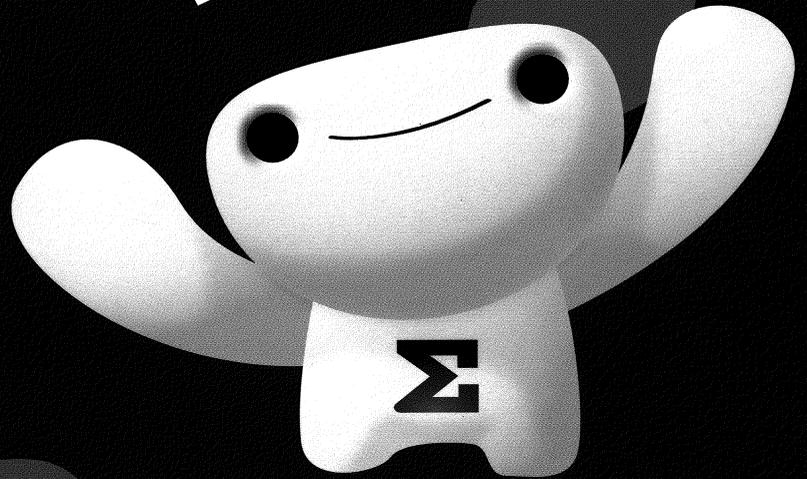
9
34-01

2005 인구주택총조사

홍보 계획

2005. 6

함께해요



목 차

I. 2005인구주택총조사 홍보 개요	3
1. 목적	3
2. 기본방향	3
3. 추진전략	6
4. 홍보활동 추진기구	12
5. 홍보 위기관리 시스템	13
II. 세부실행 계획	15
【통계청 자체 추진 홍보】	
1. 홍보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용	15
2. 홈페이지 개설·운영	17
3. 전화홍보	19
4. 신문 및 방송자막광고	21
5. KBS 협찬 캠페인 광고	23
6. 홍보물 제작	25
7. 국정홍보처 협조 지원 요구	29
8. 지방 통계사무소 홍보 활동 지원	33
9. 기타	34

【종합홍보대행사를 통한 홍보】

- 1. 방송사 협찬 캠페인 광고 36
- 2. 이벤트 홍보 40
- 3. 대언론 홍보(PR) 45
- 4. 인터넷 홍보 55
- 5. 모바일 광고 61
- 6. 대중교통수단 홍보 63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홍보】

- 1. 자체 홍보 계획 수립 및 실시 64
- 2. 중앙 홍보의 적극 지원 및 협조 68

Ⅲ. 홍보평가 70

- 1. 기본방향 70
- 2. 평가내용 70

< 붙임 >

- 홍보 추진 일정 72
- 홍보 모니터링 결과 양식 73

I. 2005인구주택총조사 홍보 개요

1 목적

- 국민에게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및 중요성을 정확히 인지시켜 적극 협조 및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
- 전략적 홍보활동을 통해 열악한 조사환경을 타개하여 원활한 조사 업무 수행을 도모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총조사의 성공 토대를 마련

2 기본방향

2.1 2000년 홍보평가

사업개요

- 언론매체(TV, 신문 등) 집중 홍보로 홍보효과 제고
- 홍보대사 위촉 운용, BI(Brand Identity) 제정 활용
- 080 전화 및 인터넷 홍보(홈페이지 개설운영, 배너광고)
- 방송(TV, 라디오, 케이블 등)에 스팟 광고 도입 등

평가

- 전문성, 기획력 부족으로 조직적, 체계적 홍보 추진에 한계
 - 매체/수단별 제작업체가 각기 달라 Identity의 일관성 결여
 - 특히, 대언론 PR분야는 미흡
- 홍보인력의 부족
 - 기획, 관리 및 행정 등 전반 분야를 담당하기에는 역부족
 - 언론사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파트너십 구축 및 관리가 곤란
- 홍보예산의 부족
 - TV 매체를 통한 광고 및 PR 등 예산 확보 곤란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규모 미흡

2.2 2005 총조사 환경분석

- 사회 구조의 변화
 - 맞벌이, 단독 가구 등 주간 부재가구의 증가로 면접 곤란

- 가치관의 변화
 - 사생활 보호의식 확산으로 갈수록 기피현상 증대
 - 정부사업에 대한 무관심 및 비협조 경향 증가

- 온라인 등 새로운 매체 환경의 변화
 - 인터넷·모바일이 새로운 홍보 매체로 각광
 - 온라인을 통한 정보 접촉 채널의 증대

- 통계 조사 여건의 변화
 - 읍면동 통계기능의 시군구 이관으로 지자체의 협조체계 약화
 - 응답불응가구증가 등 열악한 조사여건으로 조사원 중도 포기 증가 예상

2.3 2005 총조사 홍보방향

- 효율성 제고를 위한 민간위탁과 자체 추진의 이원화
 -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민간홍보전문회사에 아웃소싱하여 일관적, 체계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민간위탁이 곤란한 분야는 자체추진

- 시대 변화를 반영한 총조사 홍보 수단의 다양화
 - 슬로건·심볼마크·캐릭터 등 새로운 CI(Census Identity) 개발·활용
 - 인터넷 포털사 제휴 광고, 음성자동전화, 캠페인광고, 드라마PPL 등

- 연령 및 계층 등 유형별 홍보 전략의 특성화
 - 어린이, 젊은 층, 주부 등 연령대별 차별화 전략수립 및 홍보전개
 - 주간부재가구, 외국인, 노숙자 등 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홍보

- 지역 단위 홍보의 활성화
 -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 홍보를 위한 예산 지원 확대

◆ 홍보 활동 체계도 ◆

2005년 조사 환경

- ◎ 맞벌이,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 구조의 변화
- ◎ 사생활 보호의식 확산 등 가치관의 변화
- ◎ 인터넷과 모바일 등 새로운 매체 환경의 변화
- ◎ 읍면동 통계 기능의 약화 등 통계조사 여건의 변화



효율적인 총조사 홍보 활동

- ◆ 단계별 홍보 추진 전략 수립 및 실시
- ◆ 종합홍보체계 구축 및 추진
- ◆ 홍보 방법 및 내용의 내실화



대국민 총조사 인식 제고 및 자발적 참여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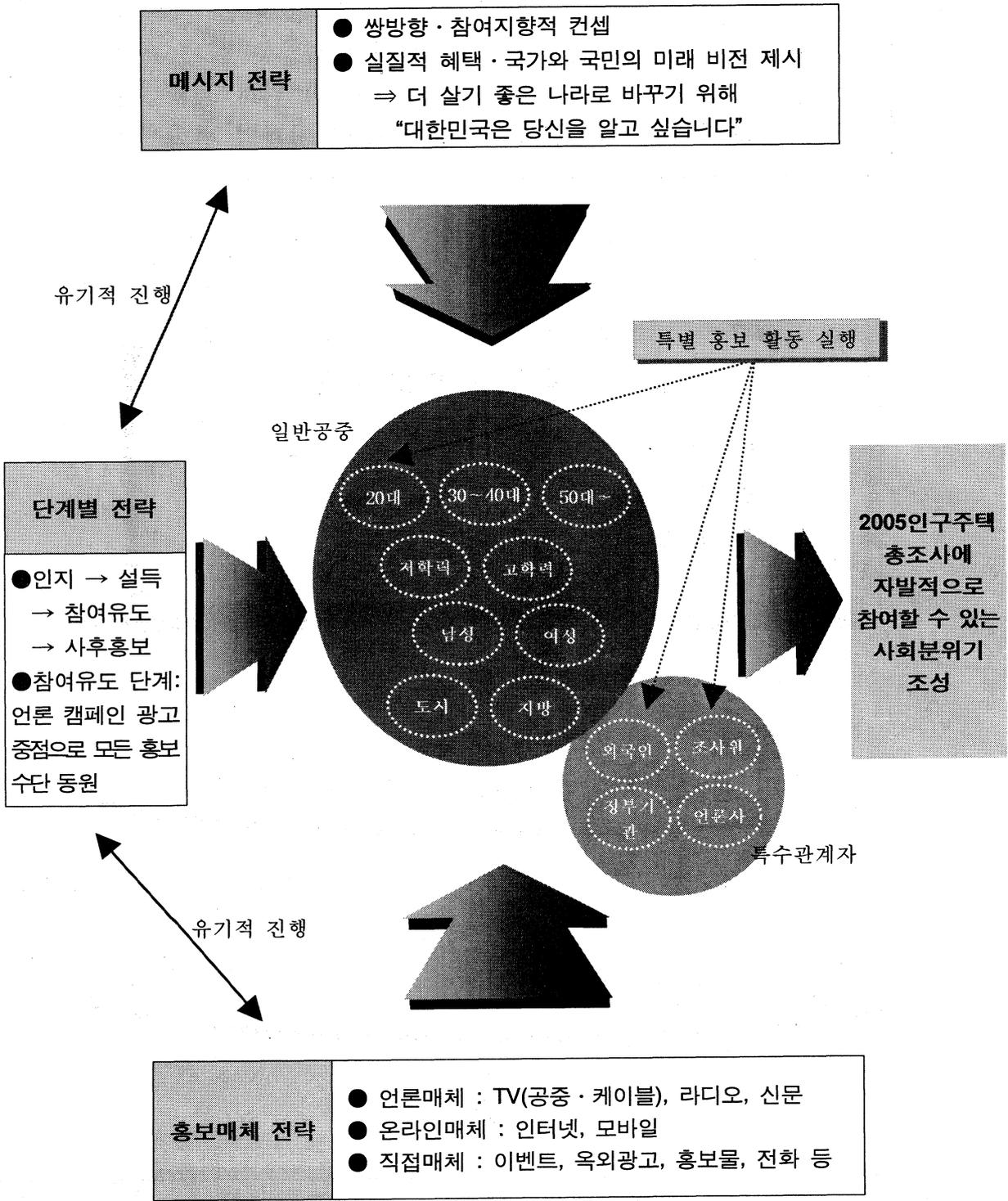
범국민적 통계 행사로 승화



2005년 총조사의 성공적 수행

3 추진전략

◆ 홍보 전략모형 ◆



3.1 메시지 전략

□ 기본 방향

- 총조사의 중요성과 개인의 연관성을 강조한 새로운 홍보 컨셉 설정 및 구체적 언어의 설득 메시지를 개발

□ 개발 전략

- 쌍방향·참여지향의 홍보 컨셉의 정립
 - 총조사가 국민이 참여하는 사업이라는 홍보 컨셉을 설정하고 홍보 메시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달
- 대의명분과 유익한 혜택으로 [총조사-국민]간 상호관계를 형성하는 메시지 개발
 - 총조사가 국가와 개인의 미래 비전과 희망이 된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언어로 개발

□ 2005 총조사 홍보 메시지 정립

메인 메시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바꾸기 위해
“대한민국은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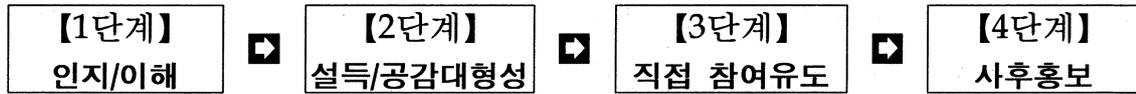
서브 메시지
(방송 캠페인)



당신의 마음을 보여 주세요
“당신을 알아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3.2 단계별 홍보전략 및 수단

3.2.1 단계별 홍보전략



□ 1단계(인지/이해) : 2005. 5~8월

- 총조사 인지도 확보 및 제고에 주력
 - 총조사 컨셉 및 PR 메시지 정립
 - 홍보활동 수단의 최종 정비
- 홍보물 제작·배포, 홍보원고 작성 등 홍보활동 준비
 - 연간 캠페인 업무 주력

□ 2단계(설득/공감대형성) : 2005. 8~10월

- 총조사 중요성·관련성 전달에 주력(타겟별 접촉)
 - 국민 참여 축제 컨셉 전달
 - 참여 중요성 및 개인 연관성 강조
- 타겟과 1:1 접촉 등 현장 중심의 홍보활동 전개
 - 조사원모집 캠페인, 기자 설명회, 공모 등

□ 3단계(직접 참여유도단계) : 2005. 10~11월

- 총조사 참여 유도에 주력
 - 총조사 인지와 설득 활동 병행
- TV, 신문, 인터넷, 중점 타겟 이벤트 등 각종 매체를 통한 모든 홍보수단 동원

□ 4단계(사후 홍보) : 2005. 11~12월

- 총조사 참여 대국민 감사 홍보
- 홍보효과 조사

3.2.2 단계별 홍보수단

구 분	1단계 : 인지 (6~8월)	2단계 : 설득 (8~10월)	3단계 : 참여유도 (10~11월)	4단계 : 사후홍보 (11~12월)
중점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조사 인지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겟별 현장중심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모든 홍보수단 동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국민 감사 홍보
언론매체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고·문안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인 설명회 협찬 캠페인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찬 캠페인 광고 방송 자막 광고 신문 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국민 감사 광고 홍보효과분석
언론매체 (P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론사연계보도 지역신문보도 코리아인텍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KBS 다큐 방영 백화점 문화센터 틀게이트취재방영 통계의 날 방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문사 기획캠페인 방송사 다큐멘터리 드라마, 퀴즈 PPL 대담방송·인터뷰 	
온라인 매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리뉴얼 온라인 동영상 광고 D-day 캠페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캠페인 포털 플래시 배너 방송사 VOD광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캠페인 모바일 SMS 광고 기업형통화연결음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조사 홍보대사 및 통계대사 위촉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기업제휴고지서 편의점, 할인점에서 비닐봉투 제공 추석틀게이트행사 엄마와 함께 알아보는 총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스터리 이벤트 	
옥·내외 게시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설치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옥외 광고 포스터 	
교통수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고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버스 광고 	
홍보물 제작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유인물 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 홍보물 제작 라디오 방송물 제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유인물 배포 사보, 소식지 홍보 	
기 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문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품·기념품 구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음성자동전화 홍보 LED전광판 홍보 	

주) 매체별 홍보수단은 계획 확정 과정에서 일부 달라질 수 있음

3.3 홍보 매체별 전략 및 수단

함께해요 "2005인구주택총조사"

언론 매체 (TV · 신문 · 라디오 등)	온라인 매체 (인터넷 · 모바일 등)	직접 매체 (이벤트 · 홍보물 등)
<p><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공중 대상 · 총조사 인지 및 행위 유발 <p><기본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홍보활동 진행 · 총조사 실시 2개월 전부터 집중적 광고 활동 진행 · 노출 형태의 다양화 · 자연스러운 노출로 긍정적 이미지 형성 <p><홍보 수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찬 캠페인 광고 - 방송사 기획 다큐멘터리 - 드라마 PPL - 퀴즈 프로그램 PPL - 방송 행사 참여 ○ 신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시 광고 및 참여광고 - 신문사 기획 캠페인 - 일간지 이벤트 사진 기사 ○ 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찬 캠페인 광고 - 출근 및 오전 주부 청취 시간대 집중 공략 ○ 언론인 설명회 	<p><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30대 젊은층 및 공중 · 총조사 인지와 동시 행위 유발로 연결 <p><기본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층 선호 매체 활용 · 재미와 정보 동시 제공 · 사전 분위기 조성 · 온라인공간의 구전효과를 이용하여 이슈화 <p><홍보 수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Daum) 온라인 지점 - 옷찾사 홍보 동영상 - D-day 캠페인 - 포털 사이트를 통한 동영상 광고(VOD) ○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MS 발송 - 기업형 통화연결음 	<p><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공중, 고연령 · 지방지역민, 외국인 대상 · 행위 유발 목적 <p><기본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과의 직접적 접촉으로 인지 제고 · 차별적 이벤트로 자발적 국민 참여 유도 <p><홍보 수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벤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홍보대사 - 미스터리 이벤트 - 엄마와 함께 알아보는 인구주택총조사 - 공기업 제휴 고지서 홍보 - 추석연휴 톨게이트 캠페인 - 버스 광고 ○ 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성자동메세지(크로샷) - 114 안내 대기음 ○ 옥외광고 및 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수막, 플래카드, 홍보탑 등 - LED 전광판 - 포스터, 리플렛 - 기념엽서, 맞춤형 엽서

3.4 연령별 홍보 수단

전 연령대 도달을 목표로 하되 주된 응답 대상이 될 주부 집단을 중심으로 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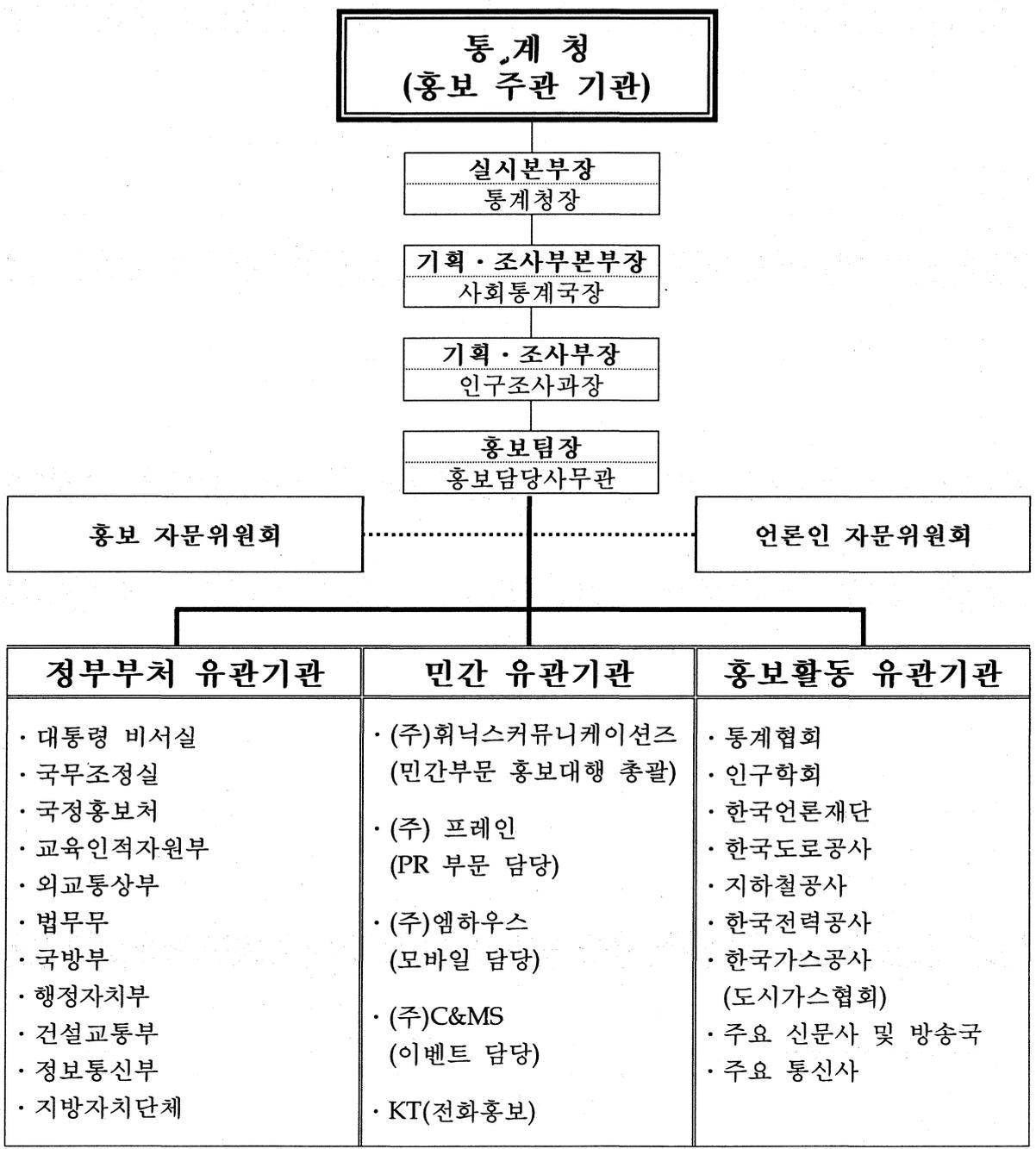
구분	10대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input type="checkbox"/> 방송협찬캠페인							
TV							
Cable TV							
Radio							
<input type="checkbox"/> 이벤트 홍보							
홍보대사 선정							
미스터리 이벤트							
공기업 제휴 홍보							
편의점/할인점 봉투							
추석 톨게이트 홍보							
엄마와 함께하는 이벤트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홍보							
웃찾사 동영상							
D-Day 캠페인							
브랜드 검색 광고							
다음 온라인 지점							
협찬 캠페인 VOD							
<input type="checkbox"/> 모바일 홍보							
SMS 발송 고지							
기업형통화연결음(비즈투링)							
<input type="checkbox"/> 대인론 홍보(PR)							
방송사, 신문사 연계홍보							
코리아 인텍스 발표							
백화점 문화레터							
추석 연휴 홍보							
신문사 기획 캠페인							
방송사 다큐 제작							
퀴즈/드라마 PPL							
통계의 날 방송 행사							
일간지 이벤트 사진기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홍보탑, 현수막, 현판 등							
LED 전광판							
국정홍보처 지원홍보							
전화홍보							
신문광고							
대중교통수단 홍보							

4 홍보활동 추진기구

□ 목적

- 정부시책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부처, 협회, 민간기관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조직 편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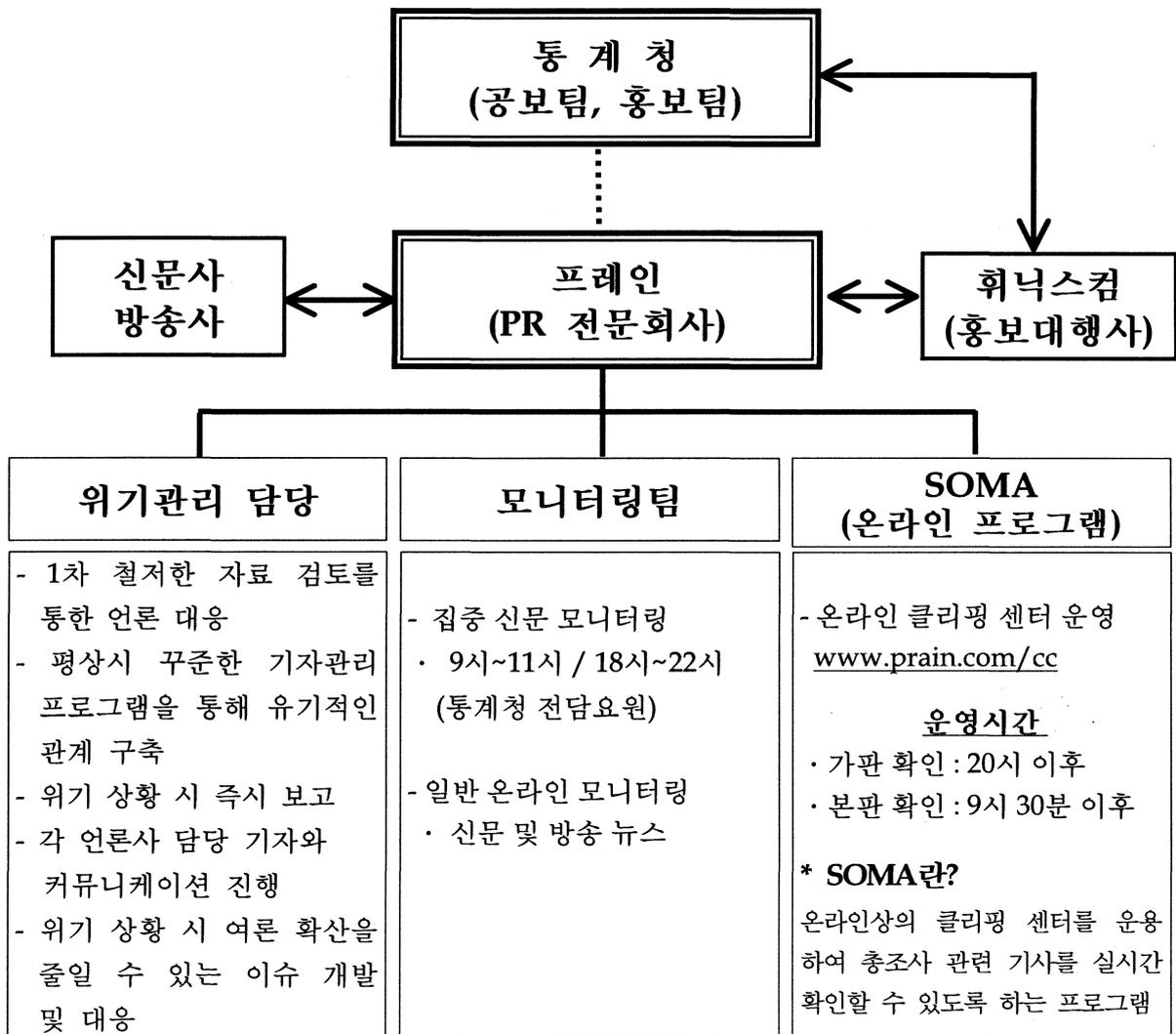
5 **홍보 위기관리 시스템**

□ 목적

- 발생 가능한 위기사항을 준비하고 효과적으로 통제, 관리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커뮤니케이션 방향 및 방법 수립

□ 조직 구성 및 운영

- 통계청(공보팀, 홍보팀)과 대행사(프레인, 휘닉스컴)간의 위기관리 TF팀 구성 및 운영
- 국정홍보처와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2004. 7월 ~ 2005. 11월)



※ 실선은 직접 의견교환, 점선은 간접 의견교환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계획 수립 및 대응

- 계획 수립 : 통계청 및 프레인(언론 PR담당)
- 운영 : 2005. 6~11월
- 관리 사항
 -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팀의 구성 및 운용
 - 초기 대응 커뮤니케이션 전략(보도자료 작성 및 행동지침)
 - 타겟별 메시지 전략 및 미디어 전략
 - 예상 질문 답변서
 - 기자회견 등 대변인 선정
 - 발표 일정 및 방법

◆ 위기 대응 프로세스 ◆

발생단계(초기대응)	진행단계(중간대응)	수습단계(최종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상황발생 - 초기 상황실 (위기관리 본부) 소집 - 진상파악 및 리스크 분석 - 내부입장 정리 및 대응 통일화 - 언론 및 외부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관리 본부 운영 - 언론 자료 배포 - 대내외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황종료 - 사고 종합분석 - 종합홍보

II. 세부실행 계획

【통계청 자체 추진 홍보】

1 홍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용

기 본 방 향

- ◎ 홍보관련 교수진 및 언론 관계자를 자문위원으로 선정, 총조사 홍보활동에 대한 의견 수렴
- ◎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홍보 자문위원회와 언론인 자문위원회를 별도 구성 운영

1.1 홍보 자문위원회

□ 개요

- 총조사 대국민 홍보 계획수립 및 추진 단계에서 전문가의 의견수렴

□ 실행 계획

○ 구성

- 국정홍보처와 신문, 방송, PR 등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

○ 구성시기 : 2005. 6월

○ 운용기간 : 6 ~ 12월

○ 운용방법

- 총조사의 올바른 홍보 실시 방향 및 컨셉 검토
- PR 부문 원고 자문 및 TV 광고 제작 자문
- 온라인 VOD광고 시안 자문

1.2 언론인 자문위원회

개요

- 언론 관계자와의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청의 홍보 요청 사항을 적기에 방송·보도토록 함으로써 대국민 홍보 효과제고

실행 계획

- 구성대상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방송부문은 편성실(국)장, 신문부문은 편집부장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
- 구성시기 : 2005. 8월
- 운용기간 : 8 ~ 11월
- 운용방법
 - 통계청 공보팀과 업무 협의를 통해 추진
 - 방송부문
 - 효율적인 TV 캠페인 협찬 광고에 관한 사항
 - 정부시책 및 기타 방송 홍보에 관한 사항
 - 신문부문
 - 보도내용 및 시기에 관한 사항
 - 각종 신문 광고에 관한 사항
 - 정부시책 및 기타 신문 홍보에 관한 사항

기대효과

- 방송사 인터뷰, 대담방송 출연 홍보, 흐름자막방송 요청 및 신문사 기획보도와 연계홍보

2 홈페이지 개설 · 운영

기 본 방 향

- ◎ 총조사 관련 자료 제공, 홍보, 현장 조사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 다양한 참여 이벤트를 통해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함으로써 긍정적 이미지를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발적 참여 유도

□ 개요

- 다양하게 홍보할 수 있는 차별화 된 컨셉을 가진 사이트 구축
- 심벌마크 및 캐릭터 등 CI(Census Identity)를 활용하여 웹페이지를 구성함으로써 친근감 형성

□ 실행 계획

- 메인 도메인 등록 및 운영
 - www.census.go.kr
- 수록 내용
 - 실시본부 : 본부장 인사, 조직도, 추진 일정
 -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 의의, 목적, 역사, 대상, 방법, 항목 등
 - 현장조사정보 : 공지사항, 조사구설정, 공동주택정보 등
 - 홍보나라 : CI(Census Identity), 이벤트, 포토갤러리 등
 - 묻고 답하기 : 무엇이 궁금하세요, 자주하는 질문, e-편한 민원 등
 - 인터넷조사 : 참여방법, 신청, 입력
 - 자료실 : 가구, 주택 부문 총조사 통계, 보도자료 등

○ 운영 방법

- 정기적 리뉴얼(renewal)로 현실 감각에 맞는 다양한 정보 제공
 - 계절별 메인 이미지 변경
 - 지속적인 업데이트로 총조사 진행상황과 관련 자료 제공
- Daum 온라인 지점과의 연계를 통한 홍보
 - 이벤트를 통해 총조사 홈페이지와 연결시켜 자세한 정보 제공 및 지속적인 방문을 유도
- 자료처리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한 e-census 추진
 - 총조사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조사 신청·입력을 하면, 자료처리 시스템의 DB로 연결되어 조사 및 관리가 이루어짐

○ 세부 운영 일정

- 1차 리뉴얼(2005. 3월)
 - 메인 이미지 - '봄' 테마로 구성
- 2차 리뉴얼(2005. 6월)
 - 홍보용역업체 개발 콘텐츠 수록 및 온라인 동영상 게재
 - 메인 이미지 - '여름' 테마로 구성
- 3차 리뉴얼(2005. 9월)
 - TV 방송 캠페인 시작 시점과 맞추어 개편
 - 메인 이미지 - '가을' 테마로 구성
 - 직접적인 참여 유도 이벤트 실시

□ 기대 효과

- 지속적인 인지를 통한 신뢰도 향상
 -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주부 이용자들이 쉽고 편하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지속적인 인지효과에 의해 친화력과 신뢰도 향상
- 향상된 사용자의 욕구를 만족
 - 차별적인 디자인, 체계화된 정보 구성을 통해 향상된 국민 욕구 충족
- 현장조사업무 지원을 통한 효율적 조사체계 구축

3

전화홍보

기본방향

- ◎ 총조사 실시 직전 조사대상 가구내 일반 전화를 활용한 “자동음성 메시지”를 발송함으로써 인지도 극대화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
- ◎ 무작위 발송에 따른 거부감 완화 및 민원 예방 추진

3.1 음성자동메시지(크로샷)

□ 개요

- 조사대상 가구내 일반 전화를 활용하여 총조사 실시에 대한 협조 안내를 음성자동메시지로 발송하여 인지도 제고 및 협조 유도

□ 실행 계획

- 발송 대상 : 1,600만 가구(KT 1530만, 하나로 75만)
- 발송 기간 : 2005. 10. 28~11. 1(5일간)
- 제작 방법 : 홍보대사의 친근한 음성으로 제작(30초 내외)
- 발송 방법
 - 기본 1회, 미통화 가구 등에 추가 2회까지 재송출로 성공시까지 최대 3회 발송
 - 발송 시간은 너무 이르거나 늦은 시간대를 피하여 민원 발생소지를 최소화

※ 법적근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24조 2항 및 제 50조

실행 일정

- 통계청과 KT간 상호협력 위한 협정체결 및 조인식 : 2005. 8 ~ 9월
- 실무협의체 구성(DB구축, 녹음, 프로그램 설계 등) : 2005. 9월
- 전화명부 DB 확보 : 2005. 10월

기대 효과

- 총조사 직전 1:1 홍보로 사전 실시 고지를 통한 인지도 제고
 - 조사원 방문시 조사 업무 수행에 원활한 도움 예상
- 080콜센터와 연계하여 운용함으로써 민원 즉시 해결 가능
- KT와의 협정체결에 따른 부대서비스 제공 협조
 - 전화요금 청구서 후면에 총조사 실시 안내
 - 사내방송, 사보 등을 통해 KT 직원 대상 홍보(4만명)

3.2 114안내 대기시간 광고(링고)

개요

- 114 문의 시 안내 대기 시간 중 약 8초 동안 총조사 협조안내 음성메시지를 발송하여 총조사 실시에 대한 알림 및 참여유도 제고

실행 계획

- 광고 제작 : 총조사 CM 및 홍보대사 멘트 이용(2005. 9월)
- 광고 기간 : 10. 16~11. 15

4 신문 및 방송자막광고

기본방향

- ◎ 일상생활의 정보원인 신문의 주목률·이용률을 활용하여 담화문 및 참여유도 캠페인 광고 게재
- ◎ 공중파(3사) 방송의 시간대별 및 주요 대상별로 자막광고(ID, 끝이어)를 전략적으로 편성 방영

4.1 신문광고

□ 개요

- 총조사 실시 직전에 실시개요, 조사방법, 비밀보호사항 및 당부말씀 등 국무총리 명의 담화문 게재
-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당부하는 내용의 참여유도 캠페인 광고 게재

□ 실행 계획

- 담화문(실시공고문 포함) 광고
 - 대상 : 31개 중앙종합 일간지, 경제지 및 스포츠지
 - 기간 : 2005. 10. 25~10. 26 중 1회
 - 방법 : 통5단, 흑백, 2면 또는 사회면
- 총조사 참여유도 캠페인 광고
 - 대상 : 31개 중앙종합 일간지, 경제지 및 스포츠지
 - 기간 : 2005. 10. 31~11. 1 중 1회
 - 방법 : 변형 9단, 칼라, 사회면

4.2 TV자막광고

□ 개요

- 방송사별로 TV 자막광고를 방영하여 캠페인 협찬광고 편성 시간대 이외에 틈새 광고를 노출함으로써 캠페인 광고의 전략적 보완 수단으로 활용

□ 실행 계획

○ 실행 전략

- KBS-2

- 곧이어 광고 시행
- 전국권역 주부 시청 시간대로 편성

- MBC

- 곧이어 및 ID(Identification) 프로그램에 자막광고 시행
- 서울권역 주부 및 시사성 프로그램 시간대 편성
 - * ID : 서울권은 춘천, 청주, 강릉, 진주, 여수, 충주, 원주, 삼척 포함
 - * 곧이어 : 서울권 + 제주

- SBS

- 곧이어 및 ID광고 시행
- 서울권역의 독신 계층을 대상으로 시간대 편성

○ 실행 방법

- 기간 : 2005. 10.10 ~ 11.10 (1개월)
- 유형 : ID 및 곧이어 광고
- 위치 : 화면 하단(화면 크기의 1/4)
- 길이 : 10초
- 대상 : 공중파 3사 TV(KBS-2, MBC, SBS)
- 횟수 : 46회(KBS-2 24회, MBC 13회, SBS 9회)
 - * 상기 방송사별 광고 횟수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5 KBS 협찬 캠페인 광고

기 본 방 향

- ◎ 파급력이 높은 대중 매체를 통해 집중 노출함으로써 총조사의 중요성과 참여의식 제고
- ◎ 공익 캠페인 내용을 다양한 매체접근과 집중적 홍보활동으로 국민의 친근감 형성

□ 개요

- 전체 캠페인 집행에서 주력 매체의 역할
- 가구별로 시청률·청취율이 높은 프로그램을 공략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 실행 전략

- 신뢰도 및 효율성이 높은 공익 캠페인에 집중 노출하여 인지 및 긍정적 참여행동 유도
- TV 캠페인 광고 전에 라디오 광고를 통해 사전 분위기 조성 극대화

□ 실행 계획

- 대상 매체 : KBS-1, KBS-2 채널 TV 및 라디오
- 실행 방법
 - 계약방식 : 통계청과 KBS미디어(KBS광고 대행업체)의 계약체결
 - 고정시간대가 아닌 순환방영 시간대 운영에 따라 SA와 A시급 등 최대한 우수 시간대 확보 추진

○ 프로그램 회수 및 일정

[KBS TV]

구분	시급	회 수		총회수	일 정
		KBS-1	KBS-2		
KBS-TV	SA급	12	12	24	9/16 ~ 30
	SA급	26	26	52	10/1 ~ 31
	SA급	16	16	32	11/1 ~ 14
	A40%급	16	16	32	
소 계		70	70	140	

[KBS 라디오]

채 널	프로그램	시급	요일	회수	일정
KBS-1 라디오	07:57(8시 뉴스와 화재 앞)	A	월~일	91	8/16~11/14
	18:57(오후 7시 종합뉴스 앞)	A	월~일	45	10/1~11/14
소 계				136	
KBS-2 라디오	09:55(안녕하세요! 정한용 왕영은입니다 2부 끝)	A	월~일	91	8/16~11/14
	15:55(이호섭 임수민의 희망가요 2부 끝)	A	월~일	45	10/1~11/14
소 계				136	
총 계				272	

* 상기 프로그램 및 시간대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6 홍보물 제작

6.1 CI (Census Identity)

□ 개요

- 총조사의 새로운 이미지 구축 및 인지도 향상
 - 언론,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체화·표준화된 새로운 이미지를 반복 노출 및 인지시켜 대국민 홍보효과 제고
- 조직 구성원 결속력 강화 및 대외 위상 제고
 - 대내적으로 조직 구성원간의 소속감 및 일체감 증진
 - 대외적으로 총조사의 상징적 의지를 표명하여 인지도 제고
- 높은 시각적 효과와 PR의 극대화로 캠페인 목적 명확히 전달

□ CI 종류

- 심볼 마크
 - 곡선의 부드러운 느낌 서체에서 인사하는 사람의 모양을 형상화
 - 'Grey'에 친화적이고 편안한 'Green'으로 포인트 컬러를 적용하여 안정감과 편안한 느낌으로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총조사 취지 표현

2005
총조사

< 한글 >

2005
Census

< 영어 >

○ 슬로건

- 자연스러운 느낌의 프리체를 사용하여 편안하게 다가가려는 센서스의 이미지를 부각
- 다함께 참여한다는 이미지를 표현하여 센서스가 축제적 행사로 전 국민에게 다가간다는 의미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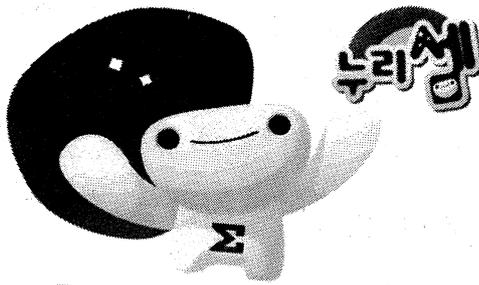
함께해요

for us Census

< 한글 >

< 영어 >

- 캐릭터
 - 어린 아이의 순수한 내면을 표현한 형태
 - 포근한 느낌, 단순하면서 귀여운 느낌으로 국민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이미지로 디자인



□ 추진 계획

- 총조사 CI 규정집 제작 및 배포
 - 대상처 : 언론사, 통계청(지방사무소 포함),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 홍보대행업체, 유관기관 등
 - 제작수량 : 500부
 - 제작 및 배포 시기 : 2005. 7~8월

□ 활용 방안

- TV, 신문 등 언론매체 홍보에 활용
- 옥외 광고에 활용 - 현수막, 플래카드, 홍보탑, 현판, 가로기
- 조사용품 제작 - 조사표, 지침서, 조사용 가방, 각종 물품
- 홍보물 제작 - 홍보 명함, 기념품, 기념엽서, 포스터 및 유인물
- 홈페이지 구성 및 온라인 지점 제작에 활용
- 온·오프라인 이벤트에 활용
-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에 활용

6.2 홍보물(유인물) 제작

□ 개요

- 비주얼에 의한 시각적 노출을 극대화하여 홍보효과 제고
- 지역별, 계층별 적정 소요량 파악 및 대행사에 의한 품질 제고

□ 실행 계획

- 제작 종류 : 6종
 - 가구전단, 포스터(조사원모집, 참여유도 2종), 리플렛, 신문광고용 등
- 실행 방법
 - 역할 분담
 - 기획·디자인은 대행사, 인쇄 및 배부는 통계청 담당
 - 대행사 이벤트(엄마와 함께 알아보는 총조사)의 유인물 인쇄 및 배부는 통계청 담당
 - 제작 배부 기간 : 2005. 8~9월

6.3 기념 우편엽서 및 맞춤형 우편엽서

□ 개요

- 총조사의 국가적 사업을 기념하여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서 기념 우편엽서를 발행, 통계청에서는 맞춤형 우편엽서를 제작
- 국가적 사업을 기념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총조사의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우편엽서를 통해 총조사의 선택적 홍보 가능

□ 실행 계획

- 실행 일정
 - 기념 우편엽서 발행(무료) : 2005. 11. 1
 - 맞춤형 우편엽서 제작(유료) : 2005. 7월

- 실행 방법
 - 수량 : 기념 우편엽서(20만매), 맞춤형 우편엽서(3만매)
 - 기념엽서 : 본조사 시작인(11. 1)부터 전 우체국에서 판매
 - 맞춤형 엽서 : 지자체 및 지방사무소에서 홍보용으로 활용

6.4 총조사 명함

개요

- 총조사 관련 전 직원을 홍보요원화하여 적극적인 홍보 추진
- 총조사에 대한 참여의식 고취 및 일체감 형성

세부 사항

- 대상
 - 통계청 : 총조사 실시본부요원, 지방사무(출장)소장
 - 시·도 : 기획관리실장, 통계과장, 통계계장 및 실무자
- 방법 : 총조사 CI를 활용하여 제작·배부
- 제작 시기 : 2005. 3월(기제작)

6.5 기념품

개요

- 효율적인 홍보업무 추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대상기관 방문 시 활용 및 각종 인터넷 공모 등 행사의 당선자에게 제공

실행 계획

- 종류 : 경품, 기념품, 사례품 등으로 구분
- 품명 및 소요량 : 추후 결정
- 구입시기 : 2005. 6 ~ 10월

7 국정홍보처 협조 지원 요구

기 본 방 향

- ◎ 통계청·국정홍보처 양자간 홍보현안에 대하여 협의 및 역할 분담을 통해 공동 추진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신속한 업무수행
- ◎ 국정홍보처의 가용 홍보수단을 총 동원하여 정책홍보를 효과적으로 운영 및 홍보효과의 극대화

7.1 홍보협의회 구성·운영

배경

- 조사환경 변화에 따른 범국민적 홍보를 위해 국정홍보처와 양자간 공동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정부 대응이 가능
- 전문성이 확보된 국정홍보처를 통해 총조사의 대국민 홍보전략의 노하우와 아이템 발굴 등 컨설팅 및 협조로 효율성 제고

구성 범위

	< 통계청 >	< 국정홍보처 >
국장급	사회통계국장	홍보협력국장

실무급	인구조사과장 담당사무관 및 실무자	행정경제홍보과장 담당서기관 및 실무자

운영 기간 : 2004. 7월 ~ 2005. 12월

운영 내용

- 홍보기본계획의 사전 조율 및 협의 이행
 - 양자간 협의를 통해 홍보세부계획 마련(2005. 6월)
 - 매체 발굴, 민간대행사 운용방법 등
- 홍보전략 수립 및 노하우 등 컨설팅
 - 언론 및 인터넷 오보와 부정적 여론(안티센서스 등)의 모니터링 및 위기관리 대응 지원

- 대통령 내외분 조사장면 촬영 지원
 - 본조사 시작일(11.1)에 맞춰 조사원대표(또는 홍보대사)가 대통령 내외분을 면접 조사하는 장면을 촬영하여 기사화
- 정부 가용매체 활용, 홍보 적극 지원
 - 주요 정책발표 사전협의
 - 담화문 발표(10.25) : 국무조정실, 국정홍보처와 통계청(공보팀) 협의
 - KTV, 인터넷 국정브리핑 취재, 보도 및 특집 등 게재
 - 전광판 광고(전국 114개소)
 - 정책고객서비스(PCRM) DB망 활용, 조사계획 등 전파
 - 각급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사이버 홍보강화
- 대언론 접촉 강화
 - 대언론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한 조사 배경, 내용 등 설명
 - 보도자료 등 각종 자료 제공
 - 공중파 TV 및 케이블TV를 통한 흐름(스크롤)자막방송 지원
- 유관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연계, 홍보체계 구축
 - 총리실, 국정홍보처 등 유관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연계, 홍보지원

7.2 KBS 다큐멘터리 방송 제작 지원

□ 개요

- 광복 60주년을 기념하여 각종 통계지표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와 세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세계 속에 한국의 모습 재조명
- KBS 다큐멘터리 방영을 통해 통계의 중요성 및 통계청의 위상 제고

□ 실행 계획

- 제작 방법
 - 국정홍보처에서 KBS와 다큐 제작 및 방영 추진
 - 통계청에서는 제작비 및 통계자료 지원
- 제작 : 2005. 6 ~ 8월
- 방영 : 2005. 8. 14 ~ 15(2일간)

7.3 K-TV(한국정책방송)

□ 개요

- 정부정책 전문채널인 K-TV를 통해 총조사 캠페인 광고
- K-TV의 주시청자인 국정관계자, 오피니언 리더, 일반 전 국민 대상으로 총조사 정보 제공 및 참여 유도

□ 실행 계획

- 실행 일정 : 2005. 9 ~ 11월
- 실행 방법 : 광고 시간대는 추후 협의

7.4 LED 전광판

□ 개요

- 전국 LED전광판을 통해 총조사의 TV캠페인 광고를 노출

□ 실행 계획

- 실행 일정 : 2005. 9 ~ 11월
- 실행 방법
 - 전국 114개 LED 전광판에서 TV캠페인 광고물(40초)을 편집하여 노출(국정홍보처와 협의)

□ 기대 효과

- 전국 주요도시, 교통 요충지,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설치되어 전 지역 커버리지 가능
- 실시간 뉴스송출 및 공익적 내용의 표출로 매체의 신뢰성 확보 및 반복 노출 가능

7.5 홍보 만화

□ 개요

- 국정홍보처의 월간 만화잡지 「야호 코리아」에 총조사 내용 수록 배부

실행 계획

- 실행 일정 : 2005. 9월(격월지)
- 실행 방법
 - 배부수량 : 30,000부
 - 배부처 : 일반 행정기관, 대학 및 지역 도서관, 각 군부대

기대 효과

- 관공서 등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대기 시간에 흥미 있는 읽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총조사를 인지, 이해하고 참여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

7.6 잡지 기사화 및 광고 게재

개요

- 「코리아 플러스」 잡지에 총조사 내용 기사화 및 지면광고 수록 배부

실행 계획

- 실행 일정 : 2005. 9 ~ 11월(매달 1일 및 16일 발간)
- 실행 방법
 - 기사 제공
 - 총조사에 대한 심층적인 기사제공으로 국민의 참여 유도
 - 배부처 : 각급 행정기관, 대학 연구소, 방송언론사 등
 - 배부 수량 : 25,000부

기대 효과

- 관공서를 찾는 민원인들에게 대기 시간에 흥미 있는 읽을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총조사를 인지, 이해하고 참여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

8 지방 통계사무소 홍보 활동 지원

기 본 방 향

- ◎ 지방 통계사무소별로 지역실정에 맞게 자체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 ◎ 중앙 및 지방의 홍보 모니터링 통하여 홍보효과 측정 및 피드백

8.1 자체 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 개요

- 각 지방사무소(출장소 포함)에 예산 재배정을 통해 자체 홍보활동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대외적으로는 총조사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대내적으로는 직원의 관심도 제고 및 참여의식 고취
- 지방사무소장은 지역 실정에 적합한 홍보수단을 강구하여 신축성 있게 집행

□ 실행 계획

- 지원 범위
 - 공통사항 : 청사 게시물, 사무소(출장소) 단위의 동호회 지원
 - 자체활동 : 언론PR, 기타홍보물품, 통계 홍보대사 활용 등
- 실적 제출 : 홍보활동 실적(사진, 스크랩)을 2005. 12월까지 제출
- 예산 재배정 : 2005. 6월(기 집행)

8.2 홍보 모니터링요원 선정 및 운영

홍보 모니터링

○ 목적

- 매체별 홍보 내용, 시간대, 횟수 등을 파악하여 보고
- 각종 홍보물 배부 및 관리상태 점검

○ 구성

- 각 지방사무(출장)소 직원 중 1명 선정

○ 운영

- 중앙 홍보시 별도 모니터링 양식에 기록하여 보고
- 지방 사무소의 자체 홍보 내용도 포함하여 보고
- 전화, e-mail로 우선 보고 후 관련 기사 및 기록물 사후 제출

○ 일정

- 모니터링 요원 구성 : 2005년 8월
- 모니터링 기간 : 2005. 9 ~ 11월

9 기타

9.1 청사내 홍보물 설치

개요

- 정부대전청사 공무원 및 방문객을 대상으로 총조사 분위기 조성 및 참여의식 고취

실행 계획

- 실행 일정 : 2005. 9 ~ 11월
- 실행 방법
 - 설치 종류 : 현판, 홍보탑, 배너(가로기)

- 설치 장소
 - 현 판 : 동·서 현관 출입구 상단
 - 홍보탑 : 만년동 바다마트와 청사 서현관 방향 도로 사거리
 샘머리 아파트와 청사 동현관 방향 사거리
 - 가로기 : 샘머리 아파트에서 청사 방향, 청사에서 스타게이트 방향

9.2 동호회 홍보활동 지원

목적

- 대외활동 및 공식행사에 참여하는 본청 동호회에 대해 총조사 홍보활동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관심도 및 참여 의식 고취

실행 계획

- 대상 : 9개 (등산 마라톤, 배드민턴, 볼링, 야구, 인라인 축구, 탁구, 테니스)
- 기준 : 인원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물품구입비는 정액 지원
- 실적 제출 : 홍보활동 자료(사진, 스크랩)를 2005. 12월까지 제출

9.3 홍보용역 원가계산

개요

- 홍보대행사에서 집행하는 사업의 투명한 예산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전문기관인 감우회에 회계감리업무를 위탁

실행방법

- 홍보대행사에서는 각종 영수증, 원가계산서 등 비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감우회에 제출하여 사용한 비용 검토를 의뢰함
- 감우회는 원가계산 검토결과를 통계청에 제출

【종합홍보대행사를 통한 홍보】

1 방송사 협찬 캠페인 광고

기 본 방 향

- ◎ 총조사에 참여했을 시 가시화·구체화 된 유익한 혜택을 매개로 총조사와 국민간의 상호 관계 형성
- ◎ 전체 홍보 목표에 따라서 파급력이 높은 대중 매체를 통해 총조사 실시 기간 동안 참여 설득

1.1 공중파 TV

개요

- 전체 캠페인 집행에서 주력 매체의 역할
- 가구별로 시청률·청취율이 높은 프로그램을 공략하여 홍보효과 극대화

실행 전략

- 신뢰도 및 효율성이 높은 공익 캠페인에 집중 노출하여 인지 및 긍정적 참여행동 유도
- TV 캠페인 광고 전에 라디오 광고를 통해 사전 분위기 조성 극대화

실행 계획

- 대상 : MBC, SBS
- CF 제작
 - 제작 종류 : 2편(참여 유도)
 - 제작 방법 : 대행사(휘닉스 컴)를 통해 시리즈로 제작
 - 작품 길이 : 40초
 - 제작 시기 : 2005. 8~9월

○ 실행 방법

- 시청률이 가장 높은 SA 및 A 시급대 집중 노출
- 고정 시간대 지정을 통하여 전국 권역에 방영
- KBS 협찬 캠페인은 통계청 자체 추진

○ MBC/SBS 프로그램 및 일정

채널	프로그램	초수	시급	요일	횟수	일정	
MBC	09:29(아침드라마 뒤)	40	A	월~토	52	9/16 ~ 11/15	
	21:54(월화, 수목드라마 앞)	30	SA	월~목	34		
	22:39(제5공화국 뒤)	40	SA	토, 일	18		
	19개 지방MBC(중앙 포함)	40	-	-	-		
소 계					104		
SBS	08:59(아침연속극 앞)	40	A	월, 수, 금	26		
	19:59(SBS8뉴스 앞)	40	SA	월~일	61		
소 계					87		

* 지방 MBC는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시급 및 횟수는 중앙에 포함

1.2 라디오

□ 개요

- 공중파 및 케이블TV 집행 전 라디오 광고를 활용하여, 사전 분위기 조성 극대화
- 캠페인 종료시점까지 지속적인 집행으로 총조사 중요성 제고

□ 실행 계획

○ CM 제작

- 제작 종류 : 2편(참여 유도)
- 제작 방법 : 대행사(휘닉스 컴)를 통해 시리즈로 제작
- 작품 길이 : 20초
- 제작 시기 : 2005. 7 ~ 8월

- 실행 방법
 - 채널별 청취율 상위 프로그램 집중 노출
 - 주부공략을 위한 오전시간대 확보
 - 각 방송사별 고정 시간대 지정을 통한 운영
 - KBS 협찬 캠페인 광고는 통계청 자체 추진

○ MBC/SBS 프로그램 및 일정

채널	프로그램	시급	요일	횟수	일정
MBC AM	09:29(여성시대1부 뒤)	A	월~일	92	8/16~11/15
MBC FM	11:59(정오의회망곡 앞)	A	월~일	61	8/16~ 9/30 11/1~11/15
소 계				153	
SBS FM	06:59(이숙영 파워FM 앞)	A	월~일	92	8/16~11/15
	11:59(최화정 파워타임 앞)			92	
	15:59(허수경 가요풍경 앞)			92	
소 계				276	

* 상기 프로그램 시간대와 횟수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기대 효과

- 총조사 면접 조사 시 예상되는 주된 참여 대상인 주부의 청취 시간대를 집중 공략함으로써 적극적 동참 유발
- 민족 대명절인 추석 및 휴가철 기간 포함으로 홍보대상 이동 시 노출 확대 기대

1.3 케이블 TV

□ 개요

- 전체 캠페인 집행에서 공중파TV와 함께 주력 매체의 역할
- 공중파 비 방영 시간대 집중 노출로 취약시간대 확보
- 채널군별 점유율이 높은 드라마, 영화, 뉴스 채널 집중

□ 실행 계획

○ 실행 방법

- 케이블 TV 시청시간 중 가장 점유율이 높은 심야 및 오후 시간대 위주 프로그램으로 집중
- 전 홍보대상에게 채널 선호도가 가장 높은 드라마·영화·뉴스 채널 위주 집행
- 뉴스채널 및 국정채널은 전략적으로 활용

○ 지정 프로그램 및 일정

채널	시간대	시급	요일	횟수	기간
MBC드라마	11:00, 16:00, 21:00, 22:00	SSA	월~일	189	9/16~11/15
KBS드라마	11:00, 15:00, 16:00	SSA	월~일	120	9/16~11/15
SBS드라마	11:00, 23:00	SSA	월~일	180	9/16~11/15
OCN	13:30, 22:00, 24:00	SSA	월~일	72	9/16~11/15
홈CGV	13:00, 17:00, 20:00	SSA	월~일	94	9/16~11/15
YTN	12:30, 06:00, 20:00, 23:00	SSA	월~일	77	9/16~11/15
한경TV	08:00, 15:30, 22:30	SSA	월~일	38	9/16~11/15
매경TV	07:00, 10:00, 17:00	SSA	월~일	47	9/16~11/15
KTV		SSA	월~일	100	9/16~11/15
소 계(VAT 포함) - 총 횟수 917					

* 상기 프로그램 시간대와 횟수는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KTV의 경우 국영기업임에 따라 통계청의 별도 협조 공문을 통해 시간대 확정

□ 기대 효과

- 전체 가구 보급률 80%(1천 1백만가구)로 공중파 TV와 병행하여 집행 시 시너지효과 극대화 기대
- 캠페인 기간 중 공중파 및 케이블 TV를 통해 홍보대상의 75% 이상에게 3회 이상 노출 가능

2

이벤트 홍보

기 본 방 향

- ◎ 일방 통행식 홍보를 지양하고 쌍방향, 직접 접촉형 이벤트 통한 즉각적인 호응과 참여 및 깊이 있는 정보 제공
- ◎ 보도가치가 있는 이슈를 다각적으로 발굴해 내어 총조사에 대한 국민적 이목 집중
- ◎ 일상에서의 접근 통한 호기심 유발 및 관심 유지

2.1 홍보대사 선정 및 활동

□ 개요

- 범국민적 친근감과 호감도를 가진 인물을 홍보대사로 선정함으로써 총조사의 국민적 관심 고조 및 참여 유도
- 각종 언론매체, 이벤트 등에 노출시킴으로 홍보효과 제고

□ 실행 계획

- 대사 선정 : 텔런트 유준상, 홍은희 부부
- 실행 방법
 - 홍보대사 위촉식 진행(2005. 8월)
 - 추석 틀게이트 가두 캠페인
 - 2005인구주택총조사 실시고지 보도
 - 홍보대사와 조사원이 설문지와 POP물을 들고 있는 연출 사진을 촬영하여 보도자료와 함께 언론 전달(10. 26예정)
 - 기업형 통화연결음 및 음성자동전화 홍보 멘트 녹음
 - TV 협찬 캠페인 광고 촬영 및 라디오 캠페인 녹음
 - 신문광고, 포스터, 리플렛 등 유인물에 초상권 사용

2.2 미스터리 이벤트

□ 개요

- 도심 곳곳에서 알 수 없는 복장을 하고 알쏭달쏭한 메시지를 전하거나 퍼포먼스로 호기심 일으키며 보도를 통해 국민들의 관심 유발(게릴라성으로 진행)

□ 실행 계획

- 실행 일정
 - 2005년 10월중(6일간)
- 행사 장소
 - 인터넷에 관심이 높은 20~30대 유동인구 밀집 지역
 - 강남권/강북권/여의도, 서대문권/지하철 2호선 예정
- 행사 운영
 - 서울 4권역으로 구분 총 2개팀 6일간 운영
- 제작물 운영계획
 - 누리샘 캐릭터 의상 총 8벌 제작
 - "2005. 11. 1, 00:00" 문구 적힌 피켓 총 8개 제작(0.6×0.9m)

□ 기대 효과

- '누리샘' 퍼포머를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 카메라로 담아 인터넷에 올리는 행동 유도함으로써 자발적 전파에 의한 홍보 효과
- 각 언론사에 사진자료 및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보도기사 노출

2.3 공기업 제휴 홍보

개요

- 공과금을 부과하는 공기업과 제휴하여 공과금 청구서(우편)를 통해 총조사에 대한 정보 제공

실행 계획

- 대상 :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 실행 일정 : 2005. 9 ~ 10월
- 실행 방법
 - 기업별 공과금이 납부되는 일정에 따라 1개월에 1회 배포 예정

2.4 추석 할인점(편의점) 홍보

개요

- 추석준비를 위해 할인점(편의점)을 찾는 고객 대상으로 포장용 비닐봉투에 총조사 관련 캐릭터 및 정보를 인쇄해 배부

실행 계획

- 실행 일정
 - 2005. 9월
 - 추석을 전후로 중점 운영
- 실행 방법
 - 수량 : 비닐봉투 3백만부

기대 효과

- 일반인 특히 주부들에게 대중화된 할인점등의 쇼핑을 통해 메시지 수용도가 높은 고객접점에서 총조사 노출 통한 인지, 친밀감 형성

2.5 추석 틀게이트 캠페인 이벤트

□ 개요

-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추석을 맞이해 고속도로 이용하는 귀성객 (가족단위)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
- 추석연휴를 활용하여 전국적/지역적, 효과적으로 인지도 확산

□ 실행 계획

○ 실행 일정

- 행사 운영 : 2005. 9. 16~17(2일간) 11:00~18:00(6시간)
- 취재 및 촬영 : 2005. 9. 16 11:00~12:00

○ 실행 방법

- 장소 : 궁내동 틀게이트(하행선 17개 운영)
 - ※ 귀성객 차량의 수에 따라 탄력적으로 게이트 운영
- 행사 운영 계획
 - 홍보 나레이션 및 도우미 환송: '누리샘' 캐릭터 선물 제공
 - 고속도로 통행권 발급/배부 서비스
- 제작물 운영 계획
 - POP물 : 애드벌룬 3구형(현수막 8m×10m 포함)_2조
 - 현수막류 : 기둥내림 현수막 64식, 도로공사 건물 부착 1식
 - 아치형 풍선 : 상·하행선 설치 30개
- 취재 지원 계획
 - 각 언론사 및 방송사에 보도자료 작성 및 전달
 - 언론보도를 위해 미디어 섭외 및 현장 취재/촬영 지원

□ 기대 효과

- 귀성객 대상의 홍보 캠페인 통해 총조사 인지 및 참여를 이슈화, 친지, 가족단위의 구전 홍보 가능
- 캐릭터인 누리샘 노출로 친근감을 확보하고 인지도 확대

2.6 엄마와 함께 알아보는 인구주택총조사

□ 개요

- 교육인적자원부 및 시도 교육청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총조사에 대한 과제를 주고 이를 부모와 함께 알아보도록 함

□ 실행 계획

- 실행 일정 : 2005. 9~10월
- 실행 방법
 - 대상 : 전국 5,000여개 초등학교 저학년
 - 운영 방법
 - 교육부와 연계하여 초등학생 대상 과제물 제시
 - 각 학교 담임에 의한 과제물 배포 후 엄마와 함께 과제 풀이 후 서명 받아오도록 유도
 - 과제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여 검색 가능한 총조사 관련 내용으로 함

□ 기대 효과

- 자녀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자녀의 학교 과제에 동참함으로써 개개인 스스로 총조사에 대한 정보 획득 및 참여 의지를 제고
- 30~40대 주부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 습득 통한 조사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인식하여 실제 조사원 방문 시 심리적 거부감 완화

3 대인론 홍보 (PR: Public Relations)

기 본 방 향

- ◎ 방송사, 신문사를 통해 매체 특성에 맞는 메시지를 개발하여 효과적인 언론 홍보 진행
- ◎ 방송 교양 프로그램 및 드라마 PPL (Product placement)을 통해 실질적으로 총조사에 대한 인지도와 이해도 제고

3.1 방송사/라디오 및 신문사를 통한 언론 홍보

□ 개요

- 각 매체 특성에 따라 홍보대상에 맞는 메시지를 개발하여 효과적인 언론 홍보 진행

□ 실행 계획

- 실행 일정 : 2005. 6 ~ 12월
- 실행 방법
 - 리서치 담당자를 두고 국내외 유의미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칼럼 및 인터뷰를 포함한 기획기사(최소 월 3건 이상) 진행
 - ① 뉴스 앵글의 다변화
 - 단순 공지성 보도에서 벗어나 흥미를 유발 메시지 개발 및 보도
 - ② 신문사 칼럼 기고
 - 통계대사를 활용하여 열독률이 높은 매체의 칼럼 게재
 - ③ 각 계/담당자 인터뷰
 - 홍보대사/통계대사 뿐 아니라 유명인사 및 조사원을 활용한 인터뷰
 - ④ 통계 결과에 대한 보도 및 대응
 - 12월 발표될 잠정집계결과에 대한 보도와 언론 대응뿐 아니라 국민 참여에 대한 감사 메시지를 중심으로 홍보
 - ⑤ 기사 클리핑 및 모니터링
 - 보도기사에 대한 클리핑 및 모니터링으로 언론 오보 시 대응

□ 기대 효과

- 총조사의 당위성을 쉽게 이해하게 하여 능동적인 참여 유발
- 총조사 개시시점까지 시행 일정과 참여 방법을 꾸준히 노출하여,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참여의지 제고

3.2 지역별 차별화된 홍보메세지 개발/전파

□ 개요

- 각 시도별 특성에 맞는 메시지를 개발해 정책 참여의 자부심을 갖도록 하여 인지도 확산 및 참여 의지 제고

□ 실행 계획

- 실행 일정 : 2005. 6 ~ 11월
- 실행 방법
 - 각 지역의 정서에 맞는 메시지를 개발하여 시·도별 슬로건으로 활용
 - 선정된 메시지를 각 도의 지방지, 지방방송국에 전달해 기획 기사, 공동캠페인 등으로 진행
- 대상매체

지역	신문사
서울	종합지/경제지/스포츠지/무가지 등 전 매체*
경인지역	경기일보, 경인일보, 인천일보, 중부일보
강원도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충청도	동양일보, 중부매일신문
대전광역시	대전일보
경상도	경북일보, 경남일보
대구광역시	대구신문, 대구일보
울산광역시	경상일보
부산광역시	국제신문, 부산일보
전라도	전라일보, 전북일보, 전남일보
광주광역시	광주일보

* 전 매체 : 아래의 종합지/경제지/스포츠지/무가지 등

종합지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경향신문, 서울신문, 한겨레, 세계일보, 국민일보, 문화일보
경제지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파이낸셜뉴스, 헤럴드경제, 제일경제, 머니투데이
스포츠지	스포츠조선, 스포츠서울, 일간스포츠, 스포츠투데이
무가지	메트로, 포커스, am7, 스포츠한국, 굿모닝서울, 데일리즘
온라인뉴스	연합뉴스, inews24, edaily, 뉴스와이어, 스타데일리, 디지털데일리
주간지	매경이코노미, 환경비즈니스, 주간 한국, 이코노미스트, 한겨레21, 이코노21
방송	MBC, KBS, SBS, EBS, MBN, YTN, 환경와우TV, KTV

기대 효과

-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라는 인식의 전환으로 이해 확산

3.3 '코리아 인덱스' 발표

개요

- 1960 Vs. 2000의 총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대한민국의 성장을 알리는 유의미한 메시지를 발굴
- 2040년의 비전 및 예측을 함께 제시하여 총조사의 필요성 강조

실행 계획

- 실행 일정
 - 2005. 7월 한달 간 집중 보도
- 실행 방법
 - '숫자로 대한민국을 말하다'라는 전제 아래 1960 Vs. 2000의 총조사 결과를 비교해 일반인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을 두 개의 대비되는 숫자를 만들어 2005년 추정치와 함께 전 매체 발표

- 발표를 시작으로 총조사에 대한 언론 보도 집중 시행
- 개발된 코리아 인덱스에 대하여 서울 지역 및 각 도별 언론사에 발표 자료 전달하여 전 매체에 게재될 수 있도록 진행

기대 효과

- 통계자료가 딱딱하고 재미없다는 일반인들의 선입관 전환
- 언론의 관심을 미리 유의미한 통계 결과를 통해 긍정적으로 유도

3.4 전국 백화점 문화센터를 통한 행복 레터 발송

개요

- 총조사의 주요 조사 대상자인 주부를 홍보대상으로 인지도를 높이고, 중상층의 부정적 인식 개선

실행 계획

- 실행 일정 : 2005. 9월
- 실행 방법
 - 전국 주요 백화점에서 발행하고 있는 문화센터 소식지 및 온라인을 통해 홍보메시지 전달
 - 백화점과 제휴 업체 및 각 문화센터 운영 담당자와 협의를 통해 게재
 - 1차는 소식지, 2차는 각 문화센터 홈페이지에 노출
- 대상매체
 - 롯데백화점 외 각 지역 문화센터 소식지

기대 효과

- 초기 인지를 확보하고 주요 조사대상자인 주부들을 중심으로 구전 효과 기대

3.5 신문사 기획 캠페인

□ 개요

- 선진국의 통계조사 및 총조사 사례를 기획 취재 하여 시리즈로 연재
- 통계에 대한 유용성 및 통계조사의 당위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총조사에 대한 참여의지 제고

□ 실행 계획

- 실행 일정 : 9월 중 기획 및 취재, 10월 마지막 주에 시리즈 게재
- 실행 방법
 - 일본 교토, 미국 미네아폴리스, 싱가포르, 파리 등 도시 계획이 잘 되어 있는 도시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인구센서스와 도시계획과의 관계 취재
 - 취재 기자 및 사진기자가 현지 취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기획
 - 기획시리즈로 각 지역 취재 결과를 보도하고 시리즈의 마지막에는 총조사에 대한 내용과 통계청장의 인터뷰 진행
 - 탐사취재팀 담당 기자와 협의를 통해 취재 아이템 확정
 - 취재 전 충분한 사전 교육 및 협의로 기사 앵글 조정
- 대상매체 : 중앙일보 (언론사 사정으로 대상매체 변경될 수 있음)

□ 기대 효과

- 공신력 있는 언론사를 통해 전문가, 해외 선진도시 사례를 보여 줌으로써 살기 좋은 도시를 계획하는데 전국민의 가장 큰 노력이 총조사 참여와 협조라는 인식 조정

3.6 방송사 공동 기획 다큐멘터리 방영

□ 개요

- 우리나라를 포함한 각국의 센서스 실행 내역과 참여방법에 대해 소개하면서 도시개발계획을 위한 국민 참여 의식을 효과적으로 구성

□ 실행 계획

- 방영 일정 : 2005. 10월 셋째 주(또는 넷째 주) 방영
- 대상 프로그램
 - KBS 세상의 아침 : 정보 및 시사 전달 프로그램(오전 6~8시)
- 제작 방법
 - 전문 기획 다큐 프로그램 제작진과 협의하여 프로그램 방향 및 콘텐츠 기획, 방송사 제안 진행(6 ~ 8월)
 - 촬영 및 프로그램 제작(8 ~ 9월)
- 실행 방법
 - 총조사를 실시한 이후 지표변화를 각 카테고리별로 구성하여 총조사의 의의와 참여의 당위성 전달
 -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알려 개인정보 유출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참여의지를 제고
 - 제작된 영상을 조사 실시 기간 내에 웹에서 입소문 될 수 있도록 총조사 사이트에 업로드(upload)하여 노출 확대

□ 기대 효과

- 총조사 주 응답자에게 정확히 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정확한 정보 전달과 이해를 확보

3.7 드라마 PPL (Product placement)

개요

- 자연스럽게 총조사에 대한 인지 및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 내 PPL(간접광고)을 진행

실행 계획

- 방영 일정 : 2005. 10. 23(또는 10. 30)
- 실행 방법
 - 주인공 중 조사원으로 설정 여러 가지 화제거리를 나타냄으로써 조사 시기와 중요성, 협조를 대사로 통해 간접적으로 노출
 - 방송에 노출되는 조사원의 모습은 실제 진행할 소품을 착용토록 하여 친근감 전달
 - 15분 정도로 한 테마에 소재로 활용
- 대상매체
 - SBS 일요일 좋다 내 반전드라마 (매주 일요일 오후 6시)
 - ※ 방송사 사정 및 프로그램 개편으로 변경될 수 있음

기대 효과

- 총조사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끌어낼 수 있도록 함

3.8 퀴즈 프로그램 PPL

개요

-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퀴즈프로그램으로 흥미롭게 기획
-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에 방영해 자연스럽게 총조사를 포함한 통계 조사의 필요성과 의의를 인지시킴

실행 계획

- 실행 일정 : 2005. 10월 말
- 대상매체
 - KBS 스타 골든벨(일요일 오전 10시 50분 방영)
 - ※ 프로그램 개편, 제작진 교체로 변경될 수 있음
- 실행 방법
 - 인구주택총조사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재미있는 문제를 풀고 사회자의 멘트를 통해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한 부가 설명
 - 사회자나 참석 연예인 중 하나가 가방을 들고 나와 자연스럽게 총조사 실시에 대한 안내 고지 및 중요성 멘트

기대 효과

- 총조사 참여가 사회지표로 표현될 수 있음을 전달하여 참여의지 제고
- 시기와 방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부정적 인식 완화

3.9 통계의 날을 활용한 방송 프로그램 방영

□ 개요

- 9월 1일 통계의 날에 맞춰 방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총조사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전 국민적 행사임을 효과적으로 전달

□ 실행 계획

- 방영 일정 : 2005. 9월

○ 실행 방법

- 통계청 직원과 통계학과 학생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중 하나로 기획하고, 통계청장 및 관련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
- 통계의 날을 알리고 총조사에 대한 노출 확대
- 통계와 관련한 문제를 출제하여 총조사에 대한 관심 제고
- 통계청장 혹은 직원의 인터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총조사에 대한 고지 및 참여 독려

○ 대상매체

- MBC 일요일일요일밤에 한 코너인 '김용만의 전국이 들썩'
(일요일 오후 6시)

※ 프로그램 개편 및 제작진 교체로 변경될 수 있음

□ 기대 효과

- 통계의 날에 맞춘 기획 프로그램으로 방송에 노출됨으로써 전국 규모의 통계에 대한 관심 확보
- 실제적으로 조사대상자가 되는 시청자들에게 노출함으로써 인지도 및 참여 의지 제고

3.10 일간지 이벤트 사진 기사

□ 개요

- 실제 총조사 참여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적 관심이 높은 행사임을 전달하고, 비인지자들에게 다각도로 노출

□ 실행 계획

- 실행 일정 : 2005. 11. 1(화), 11. 7(월) 오전 10시 취재 및 촬영

○ 실행 방법

- 대통령 면접조사장면 기사화(11. 1)

- 국정홍보처와 협의를 통해 조사원대표(또는 홍보대사)가 대통령 관저에서 대통령 내외분의 조사 장면을 사진으로 보도
- 일간지 사진기자 외 방송사를 함께 섭외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사실을 보도하고 국민참여를 독려하는 대통령의 인터뷰 진행

※ 대안 : 홍보대사(유준상·홍은희 부부) 조사 장면

- 저소득층 또는 격오지 조사장면 기사화(11. 7)

- 연합뉴스 사진기자와 함께 산간 혹은 저소득층 지역 등의 격오지를 찾아 조사원의 조사 장면을 촬영하고 전 일간지 사진 기사로 전달

□ 기대 효과

- 11월 15일까지 총조사가 진행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국민적 관심을 최대한 유지 강화

4 인터넷(Internet) 홍보

기 본 방 향

- ◎ 상호작용(Interactive) 특성, 멀티미디어를 활용하여 인지에서 학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조사 참여 유도
- ◎ 웹(web)에서 페이지와 페이지가 연결되는 링크(Link)를 이용하여 조사 참여를 유도
- ◎ TV, 신문 및 오프라인 행사와의 연계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 ◎ 젊은층 및 맞벌이 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홍보수단으로 적극 활용

4.1 다음(Daum) 온라인 지점 운영

□ 개요

- 국내 포털사이트 1위인 다음(Daum)에 2005인구주택총조사 사이버 본부를 마련하여 조사에 대한 취지 및 참여방법에 대한 교육·홍보 의 장으로 활용

□ 실행 계획

- 운영 기간 : 2005. 7. 24 ~ 11. 15
- 구성 내용
 - 홍보 동영상 및 TV 캠페인 광고 노출
 - 총조사 취지 안내 및 참여 방법 교육
 - 온·오프라인 행사에 대한 안내
 - 10일마다 이뤄지는 카운트 릴레이(Count Relay) 내용
- 세부 실행 일정
 - 온라인 페이지 및 배너 제작 : 7. 4 ~ 7. 11
 - 시안제시 및 수정 : 7. 12 ~ 7. 15

- 온라인 페이지 제작 및 동영상 인코딩 : 7. 17 ~ 7. 22
- 총조사 Daum 지점 공개 및 운영 : 7. 24 ~ 11. 15

□ 기대효과

- 이용률이 높은 다음에 네티즌과의 접점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접속을 유도함으로써 총조사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

4.2 '웃찾사'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 동영상

□ 개요

- 총조사가 사람들에게 이슈화 및 인터넷에서 입소문날 수 있는 콘텐츠 제공

□ 실행 계획

- 운영 기간 : 2005. 7. 24 ~ 9. 15
- 실행 방법
 - 약 1~3분의 2개 동영상을 제작하여 총조사 다음(Daum) 온라인 지점에서 배포
 - URL제공으로 개인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 옮겨 전파시킬 수 있도록 유도
- 세부 실행 일정
 - 프로그램 선정, 촬영 준비 : 6. 24 ~ 7. 23
 - 동영상 에피소드1 공개 : 7. 24 ~ 7. 31
 - 동영상 에피소드2 공개 : 8. 1 ~ 9. 15

□ 기대 효과

- 인기있는 '웃찾사(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의 코너를 활용하여 쉽게 인지도 제고 및 사전 분위기 조성

4.3 D-Day 캠페인

□ 개요

- Daum 초기면과 온라인 지점에서 D-day를 노출시킴으로써 총조사 시행일을 알림

□ 실행 계획

- 운영 기간 : 2005. 7. 24 ~ 10. 31(100일간)
- 실행 방법
 - D-100일인 7월 24일부터 100일 동안 진행
 - 10일 마다 카운트 릴레이(Count Relay) 진행
- 다음 D-day 캠페인 위치
 - 다음 초기면이 6월 초 리뉴얼(renewal)로 인해 메인 페이지의 캠페인 위치는 6월 중 결정
- 구성 내용
 - 인터뷰 기사
 - 설문조사(Cyber Poll) 및 각종 이벤트
- 세부 실행 일정
 - 다음 메인 페이지에서 D-day 공지 부분 확정 : 6. 10
 - 온라인 페이지 적용 시안 작업 : 7. 4 ~ 7. 11
 - 시안 제시 및 수정 : 7. 12 ~ 7. 15
 - D-day 캠페인 공개 : 7. 24

□ 기대 효과

- 다음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총조사의 진행에 대한 기대감 조성 및 이슈화

4.4 브랜드 검색 광고

□ 개요

- 인구주택총조사를 검색하였을 때 검색 결과 창을 행사 내용에 맞게 정보를 제공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내용을 노출

□ 실행 계획

- 운영 기간 : 2005. 7. 24 ~ 11. 15

○ 실행 방법

< 1단계 >

- 오프라인 행사 및 홍보책자를 통해 검색 유도
-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는 '웃찾사'를 활용한 홍보 동영상 제공
- 간략한 인구주택총조사 시행에 대한 안내
- Daum 온라인 지점과 총조사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함

< 2단계 >

- 4대 매체광고를 중심으로 TV하단에 자막을 삽입하여 검색 유도
- '엄마와 함께 알아보는 인구주택총조사' 이벤트와 연계하여 검색
-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는 TV 캠페인 광고 동영상 제공
- 간략한 인구주택총조사 참여방법 안내
- Daum 온라인 지점과 총조사 홈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함

○ 세부 실행 일정

- 1차 시안제시 및 수정 : 7. 12 ~ 15
- 온라인 페이지 제작 및 동영상 인코딩 : 7. 17 ~ 7. 22
- 1단계 공개 : 7. 24
- 2차 시안제시 및 수정 : 8. 22 ~ 9. 6
- 온라인 페이지 제작 및 동영상 인코딩 : 9. 7 ~ 9. 15
- 2단계 공개 : 9. 16

□ 기대 효과

- 인터넷 검색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보다 빠르고 쉬운 정보를 제공하고 이동할 수 있는 접점을 확보하여 시행취지와 참여방법에 대한 인지도 극대화

※ 온라인 운영 스케줄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비고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 다음 온라인 지점 운영																			다음
○ 웃찾사 활용 동영상																			다음
○ D-day 캠페인																			다음
○ 브랜드 검색 광고																			다음
○ VOD 및 동영상 광고																			다음 / 네이버 / MSN

※ 다음(Daum) 광고 집행 스케줄

구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노출량 (imps)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다 음	다음 초기 D-day																		고정
	다음 초기 TO(Take Over)	1일	1일														1일		18,000,000
	다음 초기 배너(Banner)																		30,000,000
	섹션 TO(Take Over)	3일	2일																100,000
	로그인 배너																		10,000,000
	카페 초기 배너																		20,000,000
	기사 삽입 배너																		10,000,000
	기사 박스삽입배너																		10,000,000
	섹션 SS(SkyScraprer)																		20,000,000
	검색 트렌드																		300,000,000
	미즈넷																		고정

4.5 인터넷 포털사 중심의 동영상 광고(VOD)

□ 개요

- 주요 포털사(네이버, MSN)와 방송 3사 홈페이지(MBC, SBS, KBS)를 통해 기존 TV광고 소재를 온라인화(VOD 혹은 동영상 플래시)하여 방송과 동시에 집중적으로 노출

□ 실행 계획

○ 운영 기간 : 2005. 9. 16 ~ 11. 15

○ 실행 방법

- 방송사 사이트 인기 프로그램 앞에 VOD광고를 집행하고 포털 사이트 (네이버, MSN)를 중심으로 동영상 플래시 배너를 집행
- VOD(Video On Demand) 광고
 - 해당 기간동안 시청률이 높은 인기 프로그램 약 10개 앞에 진행
- 동영상 플래시 배너(Flash Banner)
 - 네이버, MSN의 동영상 배너가 가능한 곳을 중심으로 집행

○ 세부 실행 일정

- 배너 제작 및 시안제시 : 9. 1 ~ 15
- VOD 및 동영상 광고 : 9. 16 ~ 11. 15

□ 기대 효과

- 동시에 집중적으로 노출하여 제한적인 TV광고로 접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접근함으로써 총조사에 자발적 참여 행동 유발

※ 동영상광고 및 VOD 광고 집행 스케줄

구분		9월		10월				11월			노출량 (imps)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KBS											6,000,000
SBS											8,000,000
MBC											12,000,000
네이버	동영상 확장배너										15,000,000
	초기면 상단배너										5,000,000
	초기면 좌측배너										15,000,000
	뉴스초기면 렉텅글(사각배너)										3,000,000
	뉴스서브면 렉텅글										10,000,000
	뉴스면 확장배너										10,000,000
	뉴스면 텍스트										10,000,000
MSN	초기면 동영상 플로팅										2,000,000
	초기면 하키스틱										3,000,000
	서브 SS(SkyScraper)										4,000,000
	메신저 투데이 렉텅글										4,000,000

5 모바일(Mobile) 광고

기 본 방 향

- ◎ 1:1 접촉 매체로 직접적인 정보 전달을 통해 인지 및 행동 유발
- ◎ 조사실시 직전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최종 홍보 수단으로 활용
- ◎ 젊은 연령층 및 맞벌이 부부를 타겟으로 하여 참여 유도

5.1 SMS 발송을 통한 직접적인 고지

□ 개요

- 총조사 실시 직전에 문자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정보 전달

□ 실행 계획

- 실행 일정 : 2005. 10. 24 ~ 26
 - 지속적인 인지도 유지를 위해 일별 발송량을 조절하여 발송
 - 구전효과를 위하여 점심 시간대(12 ~ 1시)에 발송
- 실행 대상
 - 전국 대도시 거주자 : 서울특별시, 지방 광역시 및 각 지역별 “시” 이상의 도시 거주자에게 발송
 - 25~40세 남녀
 - 조사 참여 의지는 높으나 맞벌이 부부로 조사 기간에 참여하기 힘들며, 조사대상 중에서 모바일에 대한 반응정도가 가장 높음
- 지역별 발송 계획 : 총 700만명(수신 동의 회원)

(단위 : 만 건)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구	대전	경남	경북
170	150	39	57	46	26	40	36
광주	울산	강원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18	17	17	17	20	8	21	18

- 실행 방법
 - SMS 발송 : 단순 고지를 통한 직접적인 홍보 방법
 - SMS 콜센터
 - SMS 발송 시 인구주택총조사 콜센터 080번호를 삽입
 - 사용자가 확인/통화 버튼을 누르면 080 콜센터 상담원으로 연결 (해당 지역에서 예약조사 서비스를 실시할 경우 본인의 조사시간을 예약하여 참여율 증가 도모)

5.2 기업형 통화연결음(비즈투링)

□ 개요

- 통계청 전 직원의 휴대폰으로 홍보를 할 수 있는 신개념 모바일 광고 매체
- 2개월간 통계청 전 직원에게 전화를 거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가능

□ 실행 계획

- 실행 일정 : 2005. 9. 15 ~ 11. 15(2개월간)
- 실행 대상 : 통계청 전 직원(지방통계사무소 포함)
- 실행 방법
 - 휴대전화의 통화 연결음을 총조사 홍보 음악과 멘트로 설정
 - 설정 시간 : 09:00 ~ 18:00

□ 기대 효과

- 저렴한 비용으로 집중력 높은 홍보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전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홍보 활동으로 소속감과 자부심 고취

6 대중교통수단 홍보

기 본 방 향

- ◎ 단기간 내 전국민 참여 유도 위해 TV/CATV/라디오 등의 대중 매체를 보조하는 홍보수단
- ◎ 움직이는 매체로서 타겟의 이동 동선을 따라 노출 가능
- ◎ 총조사 정보 노출 통한 이미지 제고 및 참여의식 확산

□ 개요

- 시내버스 외부 양면에 총조사 홍보물 부착

□ 실행 계획

- 실행 일정 : 2005. 10. 16 ~ 11. 15(1개월)
- 대상 지역 : 서울 및 부산
- 광고 수량 : 300대
 - 서울 : 220대(순환, 간선 120대, 광역 50대, 도심 50대)
 - 부산 : 80대(도심)

□ 기대 효과

- 조사 실시 1개월 전 달리는 버스 통한 인지도 극대화 유도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홍보】

1 자체 홍보 계획 수립 및 실시

기 본 방 향

- ◎ 중앙의 홍보전략에 의거 지역실정에 맞는 홍보 계획 수립 및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 ◎ 지역 단위 홍보의 활성화

1.1 계획 수립시 참고 사항

- 시·도 및 시·군·구별로 지역실정에 적합한 홍보계획 수립
- 중앙의 홍보계획을 참조, 지역 체육·문화행사와 연계한 홍보수단 개발
 - 중앙으로부터 재배정된 예산 및 자체 확보된 예산 활용
- 지방 대중매체 활용한 집중 홍보 방안 강구
- 홍보수단별 준비사항을 사전에 철저히 확보하여 시행
 - 게재지면(신문) 및 게재장소(지정 게시판 등)

1.2 시·도 홍보계획 수립 및 보고

- 보고 내용
 - 시·도 자체 홍보 계획
 - 시·군·구별 자체 계획수립 내용 중 주요 추진사항을 일괄 취합, 정리하여 보고
 - 중앙 계획을 참조하되 자체 계획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고
- 보고 기한 : 2005. 8월

1.3 홍보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제 구축

- 각종 수단 및 매체별 홍보방법·시기 및 홍보내용에 관한 사항
- 자체 홍보실시에 관한 사항
 - 지역 방송(TV/CATV/라디오)을 통한 보도, 대담, 인터뷰 등
 - 인터넷 홈페이지 통한 홍보 및 이벤트 개발 등
 - 지방 일간지 및 지역 정보지 등 신문을 통한 홍보
- 반상회보 및 시·도정, 시·군·구청 뉴스 통한 홍보
- 지역 CATV/유선방송 통한 흐름(스크롤) 자막방송
- 관내 기관 및 사업체에 대한 특별 홍보
- 마을 앰프 방송 및 아파트 구내방송 홍보

1.4 예산 재배정 통한 홍보

가. 지역케이블 흐름(스크롤)자막 광고

- 개요
 - 시군구별 지역케이블 흐름(스크롤)자막광고 집행을 통해 공중파 방송의 커버리지 보완
- 실행일정
 - 예산 재배정 시기 : 2005. 7 ~ 8월
 - 재배정 기준 : 시군구별 지역 케이블TV 현황 자료
 - 광고 문안 : 별도 통보(지역실정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작성)
 - 집행 기간 : 1개월

나. 가두홍보물 설치

개요

- 전국의 주요 유동인구 밀집지역에 가두 홍보물을 설치함으로써 총조사의 인지 제고

홍보 가두물(재배정 대상)

- 예산 재배정 시기 : 2005. 7~8월
- 설치내용 : 홍보탑, 육교현판, 현수막, 플래카드, 가로기 배너 등
- 설치기간 : 9. 16 ~ 11. 15
- 설치장소 : 홍보효과가 뛰어난 곳을 시도 자체적으로 선정
- 홍보문안 : CI 규정집 참조

1.5 시·도 자체 추진 사항

기관장 조사 장면 보도

- 본조사 시작일(11.1)에 맞추어 기관장이 가정에서 조사표 작성하는 장면을 지역 언론에 보도
- 언론 보도시 지역 주민의 적극 참여 당부 문안을 작성하여 제공

각급 기관·단체 회의 및 교육

- 통·리 반장
- 유흥 및 접객업소 업주
- 지역·직장 예비군 및 민방위대원 교육

유인물 홍보

- 시(군·구)보, 반상회보, 지역생활정보신문, 각종지역신문, 기업체 사보, 학보 등
- 아파트 게시판, 엘리베이터에 총조사 실시 안내문 부착
- 각종 고지서, 광고 전단 등에 홍보문구 삽입

인터넷 홍보

- 시·도, 시·군·구 홈페이지에 총조사 실시 고지 및 홍보
- 참여 유도 위한 인터넷 퀴즈 실시
- 조사원 모집시 인터넷 응모 및 접수

각종 방송 홍보

- 엠프 방송(읍면동, 통리반, 아파트 등)
- 차량 이동 순회 방송

2 중앙 홍보의 적극 지원 및 협조

추진 방향

- ◎ 중앙 홍보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협조 통한 홍보효과의 극대화
- ◎ 철저한 홍보 모니터링 실시 및 보고

2.1 조직구성 및 운용

□ 홍보관련 기관 및 협력단체 적극 활용

- 각종 행사 및 모집시 적극 게재 추진
 - 지역방송사, 신문사, 유선방송, 인터넷, 지역생활정보신문, 지역간행물에 게재 의뢰
- 각종 이벤트 행사에 민간단체의 적극 참여 유도 및 활용

□ 홍보 모니터링 요원 선정 및 운용

- 선정 대상
 - 시도, 시군구, 읍면동별 홍보모니터링 요원 각 1명
 - 읍면동은 총관리자 또는 조사관리자 중에서 선정
- 운용
 - 중앙 및 시도 홍보 활동시 매체별 각종 홍보 내용을 기록하여 전화, e-mail로 통보한 후 추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특히 매스컴 통한 홍보시, 방송시간, 내용 및 회수 등을 정해진 양식에 의거 기록하여 통보
 - 각종 홍보물 배부시 「홍보물 배부처 대상 현황」에 의해 신속·정확한 배부 및 관리(별도 공문 발송)

2.2 각종 모집 · 공고시 중앙 홍보 지원 및 자체 홍보의 적극추진

- 조사원 모집 및 각종 공고시 중앙 홍보 지원 및 자체 홍보의 적극추진
 - 매스컴, 인터넷, 반상회보, 지역신문 등에 게재 의뢰
 - 관내 각급 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학생들의 적극 참여 유도
 - 가정통신문, 서한문을 통해 적극 참여토록 유도
 - 조사원 모집 포스터 등 각종 홍보물 공공 지정 게시판 부착

2.3 중앙 제작 홍보물에 대한 효용성 제고

- 중앙 및 시도에서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시·도 평가에 반영
 - 지정 장소 설치 여부, 게시상태 및 홍보물 사장·폐기 여부 등
 - ※ 시군구 및 읍면동은 중앙에 보고한 「홍보물 배부처 대상처 현황」을 토대로 배분하여 부착
 - 홍보 게시 및 설치물 관리 철저
 - 설치물 및 게시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시로 부착 상태 파악
 - 홍보물이 파손된 경우 즉각 조치하여 홍보물 관리 철저

Ⅲ. 홍보평가

1 기본방향

- 금년도 실시한 홍보에 대한 종합 평가와 향후 총조사시 홍보의 개선 방향 모색
- 홍보 주체별로 실시한 홍보내용에 대한 용역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아 평가에 활용
-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홍보 계획 수립 및 활동실적을 보고 받아 홍보부문의 합리적인 평가 실시

2 평가내용

2.1 홍보 주체별 결과보고

통계청 자체추진 홍보

- 전화홍보 및 신문, 방송자막광고 등에 대한 홍보 실적 및 효과 분석에 대한 결과보고를 KT, 언론재단 등으로부터 2005. 12월중 제출 받음

종합홍보대행사를 통한 홍보

- 홍보대행사를 통하여 실시한 방송사 협찬 캠페인, 언론PR, 온라인, 이벤트 등에 대해 분야별로 홍보 실적 및 효과분석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2005. 12월 중 제출 받음
- 특히, 홍보대행사에서 집행한 사업비에 대한 회계감리는 원가 계산전문기관인 감우회에 위탁하여 결과를 보고 받음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홍보

- 매스컴(TV, 라디오, 유선방송, 신문 등) 홍보실적
 - 지역 언론매체를 이용한 총조사 관련 대담 및 인터뷰 등
- 기관장의 총조사 관심도 및 참여 정도
 - 기관장 명의의 실시공고문 및 담화문 홍보
 - 대담 및 인터뷰 등 방송, 신문사의 직접 출연 홍보 등
- 홍보물 배부, 부착 및 관리상태

⇒ 위 실적에 대하여 근거 서류 및 관련 내용물을 스크랩하여 시·도 및 시·군·구별로 따로 구분하여 2005. 12월까지 제출

2.2 홍보평가

지방자치단체

- 시·도별 계획, 추진 및 실적으로 구분 평가하여 기관 및 개인 표창에 적극 반영

홍보효과조사

- 2006년 외부 기관에 홍보효과조사를 의뢰하여 총조사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홍보 주체별 결과를 분석하여 차기 총조사 홍보를 위한 종합 홍보평가서를 발간

(붙임1)

홍보 추진 일정

수단	업무사항	추진일정	2005						
			6	7	8	9	10	11	12
언론	TV협찬 캠페인 광고 및 자막광고	9.16 ~ 11.15					—	—	
	라디오협찬 캠페인 광고	8.16 ~ 11.15			—	—	—	—	
	케이블 TV 캠페인 광고	9.16 ~ 11.15				—	—		
	신문광고	10.25 ~ 10.31						-	
	K-TV(캠페인 광고, 대담방송)	9.16 ~ 11.15				—	—		
인터넷	Daum 온라인 지점 및 브랜드 검색 광고	7.24 ~ 11.15			—	—	—	—	
	'웃찾사' 활용 온라인 동영상 광고	7.24 ~ 9.15			—	—			
	D-day 캠페인	7.24 ~ 10.31			—	—	—		
	포털 플래시 배너 및 방송사 VOD광고	9.16 ~ 11.15				—	—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운영	연 중	—	—	—	—	—	—	—
	총조사 조사원 모집 공고	8.20 ~ 9.5			—				
모바일	SMS 발송	10.5 ~ 11.5					—		
	기업형 통화연결음(비즈투링)	9.16 ~ 11.15				—	—		
PR	방송사, 신문사 연계(보도, 칼럼 등)	6 ~ 12월	—	—	—	—	—	—	—
	지역신문 홍보	6 ~ 11월	—	—	—	—	—	—	
	코리아 인덱스 발표	7월		—					
	백화점 문화레터 통한 홍보	9월				—			
	추석연휴 톨게이트 홍보	9.16				.			
	신문사 기획 캠페인	10월					—		
	방송사 다큐멘터리	10월					—		
	드라마 PPL	10월					—		
	퀴즈 프로그램 PPL	10월					—		
	통계의 날 방송 행사	9월				—			
	일간지 이벤트 사진 기사	11.1 ~ 7						-	
이벤트	홍보대사	8 ~ 11월			—	—	—	—	
	미스터리 이벤트	10월					—		
	공기업 제휴 고지서 홍보	9 ~ 10월				—	—		
	할인점(편의점) 봉투 이벤트	9월				—			
	추석연휴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벤트	9.16 ~ 17				.			
	엄마와 함께 알아보는 총조사	9 ~ 10월				—	—		
목외	LED전광판, 현수막, 홍보탑, 가로기 등	9.1~11.15				—	—		
교통	시내버스 광고	10.16 ~ 11.15					—		
홍보물	유인물 제작·배부(포스터, 리플렛 등)	8 ~ 11월			—	—	—		
전화	음성자동전화메시지	10.28 ~ 11.1						-	
	114대기 광고	10.16 ~ 11.15					—		
자문	자문위원회(홍보/언론) 구성·운영	6 ~ 11월	—	—	—	—	—	—	
평가	통계결과 보도 및 홍보효과 조사	12월						—	

(붙임2)

홍보 모니터링 결과 양식

방송매체

○○ 시도(사무소)

구분	방송사명	프로그램	방송내용	방송일시
TV				
케이블TV				
라디오				

신문매체

○○ 시도(사무소)

구분	신문사명	게재일자	보도면	내용	조석간	비고
일간지	△△일보		○면			
주간지	△△시보					

잡지매체

○○ 시도(사무소)

구분	잡지명	발간업체	게재지면	내용	비고
월간지					

전광판

○○ 시도(사무소)

구분	설치장소	표출회수(분당)	내용	비고

기타 매체는 상기 양식에 준하여 작성 보고

34-02

보도자료



담당과	통계청 인구조사과
과장	신승우 (申昇雨)
사무관	안병건 (安秉建)
전화번호	(042) 481-2369

▷ 이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및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nso.go.kr/census2005)에도 있습니다.

통계청, “2005 인구주택총조사” 준비 본격 돌입
“실시본부” 가동하고, “시도 기획관리실장회의” 소집

통계청(청장 오갑원)에서는 2005년 3월 29일(화) 정부대전청사에서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실시본부” 현판식을 갖고 각 시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등 본격적인 총조사 준비에 들어갔다.

금년 총조사는 20세기를 정리하고, 고령화와 저출산, 사회복지와 주거의 질과 같은 21세기 선진복지사회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는 센서스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금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동안 실시되는 이번 총조사는 총 10만 7천명이 동원되어 전국의 1,579만 가구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를 펼친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과 주택이 조사대상이 되는 범국가적인 대규모 사업이다.

한편, 1인 가구 및 맞벌이 부부가 전체 가구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아지는 등 어려운 조사환경을 감안하여 이번 총조사에 처음으로 32만 가구에 대하여 “인터넷 조사”를 도입하게 된다. 웹 기반에 의한 자료처리와 온라인을 통한 인적, 물적 자원관리 등 IT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조사결과 최종 공표시기를 예전보다 7개월 단축할 예정이다.

통 계 청

목 차

I.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1. 인구주택총조사란?	2
2. 인구주택총조사의 역사는?	3
3. 2005 인구주택총조사 준비는?	4
4.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항목은?	5
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방법은?	7
6. 자료처리 및 조사결과 공표는 언제?	7
7. 2005 인구주택총조사가 갖는 특별한 의미는?	7
8.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활용은?	8
9. 인구주택총조사의 비밀보호 장치는?	10
10.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11

II. 실시본부 발족

1. 목 적	12
2. 조 직	12
3. 운 영	13
4. 의 미	13

<붙임>

1. 인구주택총조사 이미지 통합(Census Identity)	14
2. 2005인구주택총조사 실시본부 체계도	15

I. 인구주택총조사 개요

1. 인구주택총조사란?

- 총조사(Census)란
 - 국가가 주관이 되어
 - 일정시점을 정하여
 - 통일된 기준에 따라
 - 조사대상의 총수와 그 개별적 특성을 일일이 파악하는
 - 전국적 규모의 통계조사를 일컬음.

- 인구주택총조사(Population and Housing Census)는 나라살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인구의 규모, 구조, 분포, 사회·경제적 특성, 가구구성과 주택의 수, 종류, 형태, 기본설비 등 주거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나라 국민이 어떤 주거상황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를 상세히 알 수 있는 국가기본통계 조사임

- 따라서 이 조사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따라 실시 함.
 - 전국단위조사(Universality); 대한민국 행정권이 미치는 전 영토를
 - 개인별 조사(Individual Enumeration); 모든 인구, 가구 및 주택에 대하여
 - 동시조사(Simultaneity); 11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 주기적으로 조사(Defined Periodicity); 5년 주기로 실시되는 것임

2. 인구주택총조사의 역사는?

- 우리나라의 인구조사는 삼국유사 등 문헌에 의하면 삼국시대부터 호구조사라는 명칭으로 실시되었음.
-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호구조사는 AD 755년 경에 작성된 신라장적에 그 기록이 있음.
- 근대적 의미의 조사방법과 체계를 갖추어 실시된 최초의 인구총조사는 국세조사(1925년)로, 이후 5년 주기로 실시되어 이번이 17번째(정부수립이후로는 12번째)이며, 주택총조사는 1960년 처음 실시 후 이번이 9번째임.(1966년에 미실시)

실시년도별 조사기준일 및 명칭

회수	조사기준일	명칭	특징
1	1925. 10. 1	간이국세조사	· 최초의 인구총조사
2	1930. 10. 1	조선국세조사	· 최초로 경제활동 사항 조사
3	1935. 10. 1	조선국세조사	
4	1940. 5. 1	국세조사	
5	1944. 5. 1	간이국세조사	
1	1949. 5. 1	총인구조사	· 최초로 인구이동 사항 조사
2	1955. 9. 1	간이총인구조사	· 전동천공기 도입
3	1960. 12. 1	인구주택 국세조사	· 최초로 주택조사 실시 · 20% 표본조사 병행
4	1966. 10. 1	인구센서스	· 10% 표본조사 병행
5	1970. 10. 1	총인구 및 주택조사	· 10% 표본조사 병행
6	1975. 10. 1	총인구 및 주택조사	· 5% 표본조사 병행
7	1980. 11. 1	인구 및 주택센서스	· 15% 표본조사 병행
8	1985. 11. 1	인구 및 주택센서스	· 전항목 전수조사 · 성씨, 본관 및 종교조사
9	1990. 11. 1	인구주택총조사	· OMR 기법도입 · 통근, 통학 항목 추가
10	1995. 11. 1	인구주택총조사	· 종교항목조사 · 빈집조사표 사용
11	2000. 11. 1	인구주택총조사	· 지식기반·정보화·복지관련 항목추가 · 수치지도 사용 · PC에 의한 자료처리
12	2005. 11. 1	인구주택총조사	· 저출산·고령화·주거의 질관련 항목추가 · 인터넷 조사방식 도입 · Web 기반에 의한 자료입력시스템 도입

3. 2005 인구주택총조사 준비는 ?

□ 개요

○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의한 지정통계
(인구총조사 제10101호, 주택총조사 제10102호)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재정경제부령 제143호, 2000. 7.1.제정)

○ 조사기준 시점 : 2005. 11. 1. 0시 현재

○ 조사대상

- 조사 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 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 조사 실시기간

- 준비조사 : 2005. 10. 29. ~ 10. 31. (3일간)
- 본 조사 : 2005. 11. 1. ~ 11. 15. (15일간)

○ 조사체계 : 통계청 주관 , 지자체 및 6개 중앙부처 실시

○ 조사방법 : 조사원 면접, 응답자 기입, 인터넷 조사방식 병행

○ 동원 인력 : 총 107천명

- 공무원 : 5천명(통계청 : 1,062명, 지자체 : 4,382명)
- 총 관리자 : 3,566명(읍면동별 1명)
- 조사원 : 약 90천명(예비조사원 8천명 포함)
- 조사관리자 : 약 8천명(조사원 10명당 1명)

□ 추진 경과

- 시험조사 실시(5회)
 - 2002. 11월, 2003. 6월, 11월, 2004. 3월, 7월
- 시범예행조사 실시 : 2004. 11월
- 조사구설정
 - 기초 자료 수집 : 2004. 9. 6. ~ 10. 16.
 - 조사구 경계 가설정 : 2004. 11. 1. ~ 2005. 3. 5.

□ 향후 일정

- 종합시행계획 수립 : 2005. 3월
- 조사구 설정 : 2005. 1 ~ 10월
- 조사표류 인쇄 및 용품 제작배부 : 2005. 3 ~ 8월
- 인력 동원 : 2005. 9 ~ 12월
- 교육·훈련 : 2005. 9 ~ 10월
- 대국민 홍보 : 2005. 1 ~ 12월
- 080 콜센터 운영 : 2005. 10 ~ 11월
- 본조사 실시 : 2005. 11. 1. ~ 15.
- 조사표류 정리 및 제출 : 2005. 11월

4.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항목은?

- 정책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조사항목의 개발
 - 저출산, 고령화, 주거의 질 및 복지관련 항목 강화

- 총조사 조사항목으로서의 가치와 적합성이 있는 항목 선정
 - 대규모 전수조사인 총조사의 특성을 감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거나 응답거부 등으로 신뢰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배제

- 지역 통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시·도별로 3개 항목을 표본항목으로 자체 선정하여 전국항목과 병행하여 조사

< 연도별 조사항목 수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계	31	28	40	28	45	28	50	44(3)
·전 수	14	11	22	28	33	17	20	21
·표 본	17	17	18	-	12	11	30	23(3)

※ ()안은 시·도 특성항목 수이며, 2005년 자료는 이를 포함한 수치임

< 조사 항목(44개 항목) >

구 분	항목 수	조 사 항 목
기본항목	13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5년전 거주지, 혼인상태, 가구구분, 거주기간, 거처의 종류 및 건물층수, 연건평, 대지면적, 건축년도
저 출 산	4	아동보육실태, 혼인년월, 총출생아수, 추가계획자녀수
고 령 화	1	고령자 생활비 원천
사회·복지	3	남북이산가족, 종교, 활동제약(장애)
노 동 력	5	경제활동상태, 종사자 지위, 산업, 직업, 근로장소
교 통	5	통근통학여부, 통근통학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 자동차 보유대수
주거의 질	10	사용방수, 주거시설형태, 거주층, 난방시설, 주택점유형태, 주택임차료, 총방수, 편의시설수, 주차시설, 주택소유 여부

※ 시·도별 특성항목 3개 별도

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 방법은?

- 전국을 265,000개의 조사구로 분할하여 조사구역 경계를 설정
- 면접 조사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아파트 조사구는 응답자기입식 조사방법을 병행
- 특히, 이번 총조사에는 1인가구 및 맞벌이 가구 등 면접이 곤란한 사람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희망자에 한해 인터넷 조사를 실시

6. 자료처리 및 조사결과 공표는 언제?

- 자료처리 소요기간의 단축 및 예산절감을 위해 시군구 단위에서 Web 기반에 의한 자료입력 방식을 채택하여 시의성을 확보
- 공표 일정(2000년 보다 3~7개월 단축)
 - 잠정집계결과 발표 : 2005. 12월
 - 전수집계결과 발표 : 2006. 5, 7월
 - 표본(10%)집계결과 발표 : 2006. 9, 11, 12월
 - 특성별 분석 : 2006. 9 ~ 2007. 12월

7. 2005 인구주택총조사가 갖는 특별한 의미는?

- 21세기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총조사
 - 국가의 기본현상을 지난 20세기와 연결해 주며, 21세기의 비전을 제시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통계조사

- 21세기 풍요로운 복지·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시의성 있는 기초 자료 제공
-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적기에 제공
 -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복지 등과 같은 사회 현상에 대한 체계적 파악
 - 최저주거기준의 도입으로 주택 정책이 양보다는 질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통계 수요에 부응
- IT 인프라의 적극 활용을 통한 e-census 추진
 - 1인 및 맞벌이 가구, 젊은 층 등과 같이 조사원의 면접 조사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누락 방지를 위한 인터넷 조사 방법 도입
 - 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질의·답변을 통하여 일관성 있는 현장조사 추진
 - 웹(Web)에 의한 분산입력 방식을 도입하여 최종결과를 조기에 공표
 - 인터넷 기반으로 인적·물적 자원관리
 - 인터넷과 각종자료 DB를 연계하여 현장조사 지원

8.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의 활용은?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제·사회·보건·교육·인력 개발·주택·가정복지 등 각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입안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및 이의 평가 자료로 활용함.

- 고용구조 및 인력 대책 마련(노동부)
 - 주택정책 수립(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 국토건설종합계획 수립(건설교통부)
 - 아동·노인 복지정책 수립(보건복지부)
 - 고용보험 개발(노동부)
 -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농림부, 해양수산부)
 - 병역자원예측(국방부)
 - 철도 수송계획(철도공사)
 - 대도시 교통망 건설계획 수립(건설교통부, 서울시 및 광역시)
 - 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 시도별 주택건설계획 수립(대한주택공사)
 - 여성복지정책 수립(여성부, 여성개발원)
- 각종 비교·분석자료로 활용
 - 노동통계비교(노동부, 노동연구원)
 - GNP 작성(한국은행)
 - 지역인구 및 생산현황작성(시도)
 - 고용통계비교, 소비자물가지수 도시별 가중치 산정(통계청)
 - 지역소득추계(통계청)
 -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설계를 위한 표본틀로 활용
 - 농림어업 총조사의 조사대상 명부(통계청)
 -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설계(통계청)
 - 농수산 통계 표본설계(통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 학술·정책 연구소의 각종 조사의 표본설계
 - 인구추계 작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 대학의 연구자료, 개인 논문자료로 활용
 - 기업의 판매계획, 공장입지 선정 등에 활용
 - 국제 비교자료로 활용(UN, ESCAP 및 각국)

9. 인구주택총조사의 비밀보호 장치는?

○ 모든 조사내용은 오직 통계자료로만 사용

- 통계법 제 13조(비밀의 보호등), 제 14조(통계작성사무 종사자등의 의무) 및 제 23조(벌칙)

※ 통계작성사무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조사대상자의 이름은 단지 중복·누락 확인사항으로 컴퓨터 입력시 제외시킴.
- 조사내용도 모두 숫자 및 부호화하여 입력함으로써 특정 개인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음.
- 자료처리 후 조사표는 통제 장소에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함.
- 보관 중에도 조사표 열람시 지정 공무원이외에는 출입이 엄격히 통제됨.

○ 조사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 개인정보 비밀보호를 위해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조사원으로 임명하며 서약과 아울러 철저한 교육 실시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을 제정

- 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실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을 제정

10.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는가?

○ 통계조사 환경의 악화

- 급속한 경제사회의 변화와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에 따른 가치관의 변화로 사생활보호 의식이 팽배
- 통계조사는 응답자인 본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무관심 및 조사 불응 가구 증가
- 조사사항의 응답부담으로 인한 왜곡 응답 및 기피현상 상존
- 1인가구, 맞벌이가구, 노인가구 등 주간부재 가구의 증가로 적절한 응답자 면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음.

* **극복방안** ⇒ ①인터넷조사기법 도입, ②80콜센터 운영, ③전 가구에 대한 전화홍보, ④취약지역에 대한 조사관리 강화, ⑤수도권 특별대책본부 설치, ⑥사이버 동영상 교육 시스템 개발 등

○ 중도 포기 조사원 발생

- 인구주택총조사의 가구 방문 조사를 수행하다 어려움에 직면하여 중도 포기하는 조사원이 다수 발생 예상(2000년 5.1%)

* **극복방안** ⇒ ①예비조사원 확보(10%), ②다양한 조사기법 채택

○ 통계조직의 시군구 이관 및 통계 기능의 약화

- 읍면동 통계업무가 시군구로 이관(73%)되어 통계 기능이 약화됨으로써 일선 통계 담당 공무원의 인력 동원에 애로

* **극복방안** ⇒ ①읍면동 단위로 총관리자 임명, ②조사원 10명당 1명의 조사관리자 임명, ③인구규모에 따라 1~2명의 보조 인력 지원

II. 실시본부 발족

1. 목적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차질 없는 준비와 원활한 조사 추진을 위한 조사체계 구축
- 전반적 환경 변화에 부응한 조직 및 인력의 운용
- 효율적·체계적 업무추진을 위한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2. 조직

- 1본부장, 2부분부장, 4부, 11팀으로 구성
- 기획·조사, 수도권 관리, 사후평가, 자료처리 등 4개의 핵심 분야로 분장
- 조직편성
 - 실시본부장 : 통계청장
 - 부분부장 : 기획·조사 부분부장, 자료처리 부분부장
 - 4 부 : 기획·조사부, 수도권관리부, 사후평가부, 자료처리부
 - 11 팀 : 조사기획팀, 조사항목팀, 홍보팀, 조사구팀, 조사개선팀, 행정지원팀, 사후조사팀, 자료처리팀, 전산운영팀, 취약지구관리팀(수도권), 홍보지원팀(수도권)

3. 운영

- 중앙 : 2005. 3월 ~ 2006. 3월
 - 수도권 관리부 : 2005. 7월 ~ 2005. 12월
- 실시기관 : 2005. 7월 ~ 2005. 12월

4. 의미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시발점
- 성공적인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를 위한 본격적인 실시체계 가동

인구주택총조사 이미지 통합(Census Identity)

CI (Census Identity)

심볼마크 Symbol mark



심볼마크는 인구주택총조사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것으로 2005센서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곡선으로 된 부드러운 느낌의 서체에서 인사하는 사람의 모양을 형상화한 워트마크 타입으로 볼록에서 온 듯한 "Gray" 컬러에 친화적이고 편안한 "Green" 으로 포인트 컬러를 적용하여 안정감과 편안한 느낌으로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총조사의 취지를 표현하였다

슬로건 Slog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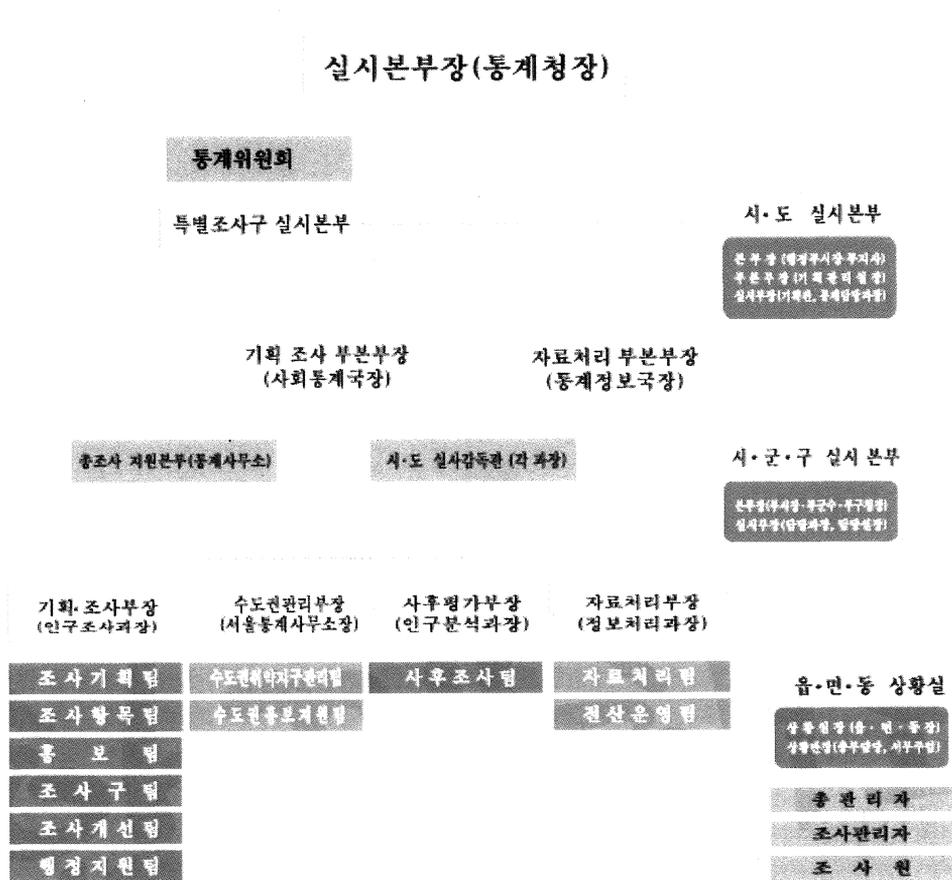
슬로건은 인구주택총조사의 이미지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직접적인 표현 시스템이다
자연스러운 느낌의 프리체를 사용하여 편안하게 다가가려는 센서스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으며, 다 함께 참여한다는 이미지를 표현하여 센서스가 축제적 행사로 국민들에게 다가간다는 의미를 상징하였다

캐릭터 Character



캐릭터는 census의 이미지를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직접적인 표현시스템이다
어린이의 순수한 내면을 표현한 형태로 포근한 느낌의 단순하면서도 귀여운 느낌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심플한 형태로 디자인되었다
더불어 함께한 census의 심볼마크와 슬로건의 이미지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2005인구주택 총조사 실시본부 체계도





보도자료

**2005
Census**

인구주택총조사
POPULATION AND HOUSING CENSUS

담 당 과	통계청 인구조사과
과 장	신 승 우 (申昇雨)
사 무 관	안 병 건 (安秉建)
전 화 번 호	(042) 481-2369

▷ 이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및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에도 있습니다.

통계청, '2005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이상 無
철저한 조사요원 교육으로 성공적인 총조사 이끌터

통계청(청장 오갑원)은 2005인구주택총조사 실시를 20일 앞둔 10월 1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총조사 부분부장인 전신애 사회통계국장의 발표로 총조사 준비 상황 및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현재, 조사구 설정, 조사 항목 선정, 조사표 설계, 조사 요원 선발 등 총조사를 위한 대부분의 주요 업무들은 마무리 된 상태이다. 통계청은 남은 한달, 그간 진행된 모든 사항에 대한 세밀한 재점검과 함께 조사 요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시키면서 TV, 라디오, 신문, 온라인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대국민 홍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IT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는 이번 2005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자료의 처리는 물론 인적·물적 자원관리, 사이버 교육, 현장조사 지원 등에도 이러한 기술이 접목된다. 이에 따라 최종 공표시기가 지난 2000년에 비하여 3~7개월 단축되어, 총조사 결과에 대한 시의성이 보다 현실화 될 전망이다.

개인 정보 보안도 더욱 강화된다. 조사 내용은 숫자 및 부호화하여 입력됨으로 특정 개인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조사 내용은 법에 의하여 엄격히 비밀이 보장된다.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동안 실시되는 전국적 규모의 이번 총조사는 총 10만여명의 조사인력이 동원되어 전국의 약1,6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모든 인구와 주택에 대해 파악하게 된다.

목 차

2005 인구주택총조사

◎ 요약	1
I. 조사 개요	3
II. 조사환경	6
III. 추진목표 및 전략	7
IV. 추진현황 및 계획	
1. 분야별 추진일정 및 방향	8
2.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	10
V. 주요 특징	
1. 2000년 대비 2005년 변화 내용	12
2. 조사항목	14
<참고자료>	
1. 2005인구주택총조사의 의의	17
2. 조사체계	18
3. 개인정보보호	19
4. e-census	20
5. 결과 활용	22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요약)

□ 조사개요

시 점	2005.11.1.0시 현재	
대 상	조사 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실시기간	준비조사	전수 : 3일 (10.29~31) , 표본 : 2일 (10.30~31)
	본조사	15일간 (2005. 11. 1 ~ 11. 15)
체 계	주관	통계청
	실시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
방 법	조사원 면접방식, 응답자 기입방식, 인터넷 조사방식 병행	
항 목	전수조사 21개, 표본조사 44개(시도 특성항목 3개 포함)	
동원인력	총 111.0천명(공무원 5.5천명, 조사요원 105.5천명)	
결과공표	잠정결과	2005. 12월
	집계결과	2006. 5, 7, 9, 11, 12월
	특성별분석	2006. 9 ~ 2007. 12월

□ 주요특징

○ 열악한 조사환경으로 지속적인 변화

- 가구구조의 변화 :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및 노인가구 등의 증가
- 가치관의 변화 : 개인주의의 팽배로 사생활 보호의식 강화
- 조사체계 변화 : 읍면동의 통계기능이 시군구로 이관되어 조사인력의 동원 및 관리기능 등이 매우 취약
⇒ 「총관리자」 도입

- 수요자 욕구 및 최근의 변화를 측정 할 수 있는 항목 선정
 - 최초로 12개의 항목 중 시도별 3개의 특성항목 별도 선정
 - 저출산·고령화, 주거의 질 및 복지(장애) 등과 관련한 사항을 중점 조사

구 분	조 사 항 목
저 출 산	혼인년월, 추가계획자녀수
고 령 화	고령자 생활비 원천
사회·복지	남북이산가족, 종교, 활동제약(장애)
노 동 력	경제활동상태, 종사자 지위, 산업, 직업, 근로장소
주거의 질	사용방수, 주거시설형태, 거주층, 난방시설, 주택점유형태, 주택임차료, 총방수, 편의시설수, 주차시설, 주택소유여부

주) 밑줄은 2005년 신규추가 항목(8개)임

- IT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e-census 추진으로 효율성 강화
 - 인터넷조사 도입으로 1인 및 맞벌이 가구, 젊은 층 등과 같이 조사원의 면접조사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누락방지
 - 웹기반 현지입력 방식으로 자료처리 방법을 개선
 - 온라인 조사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조사구, 인력, 물품 등에 대한 실시간 현황 파악 및 대처
 - 주택 DB, 외국인 등록 명부 DB, 시설조사구 명부 등을 확보·제공함으로써 현장조사지원

⇒ 최종결과 조기 공표(직전 주기 대비 3~7개월 단축)

○ 교육훈련력 강화

- 표준교안에 의한 통일된 교육 실시
- 총조사에 대한 예비지식을 확보하기 위한 사전 사이버 영상교육 실시

○ 열악한 조사환경 극복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홍보 전문업체의 아웃소싱을 통한 범정부적·전략적 홍보 추진
- TV·라디오 광고는 물론 인터넷 포털사이트, 이벤트 등을 적극 도입

I. 조사 개요

1. 연혁

- 인구총조사는 1925년, 주택 총조사는 1960년 이후 매 5년마다 실시
-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총조사는 1949년에 실시
- 2005년도에 실시하는 인구총조사는 제17차, 주택총조사는 제9차에 해당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 제1항 및 제8조에 의한 지정통계
 - 인구총조사 : 지정통계 제10101호
 - 주택총조사 : 지정통계 제10102호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재정경제부령 제143호, 2000. 7.1.제정)

3. 조사기준 시점 : 2005. 11. 1. 0시 현재

4. 조사대상

- 조사 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 다만, 다음과 같은 인구나 거처는 조사대상에서 제외

제외되는 인구	제외되는 거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취업·취학중인 사람◦ 외교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공무로 체류중인 국내거주 외국인 및 그 가족◦ 국내주둔 외국군인군속 및 그 가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군, 전투경찰대(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병영 막사◦ 교도소, 소년원, 구치소, 경찰서 보호소, 등 시설◦ 외국군대의 병영 막사◦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이 살고 있는 거처 등

5. 조사 실시기간

○ 준비조사

- 전수조사구 : 2005. 10. 29 ~ 10. 31(3일간)
- 표본조사구 : 2005. 10. 30 ~ 10. 31(2일간)

○ 본조사 : 2005. 11. 1 ~ 11. 15(15일간)

6. 조사체계

○ 주관기관 : 통계청

○ 실시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

- 일반조사구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총관리자)
⇔ 조사관리자 ⇔ 조사원
- 특별조사구 : 해외주재공관(외교통상부), 교도소·소년원(법무부), 군부대(국방부), 전투경찰대(경찰청 및 해양경찰청), 의무소방대(소방방재청)

7. 조사방법

- 조사원 면접방식, 응답자 기입방식, 인터넷 조사방식 병행

8. 조사항목

- 전수조사 항목 : 21개 항목
- 표본조사 항목 : 44개 항목(시도 특성항목 3개 포함)

9. 동원 인력 : 총 111.0천명

- 공무원 : 5.5천명(통계청 : 1,062명, 지자체 : 4,382명)
- 총 관리자 : 3.6천명(읍면동별 1명)
- 조사관리자 : 약 8.0천명(조사원 10명당 1명)
- 조사원 : 약 88.5천명(예비조사원 8천명 포함)
- 업무보조원 : 5.4천명

10. 소요예산(2005년) : 1,290억원

11. 결과공표

- 잠정결과 : 2005. 12월
- 전수 집계결과(2회) : 2006. 5, 7월
 - 인구부문 : 2006. 5월
 - 가구·주택부문 : 2006. 7월
- 표본 집계결과(3회) : 2006. 9, 11, 12월
 - 경제관련부문 : 2006. 9월
 - 주거·복지부문 : 2006. 11월
 - 기타부문 : 2006. 12월
- 특성별 분석 : 2006. 9~2007. 12월

II. 조사환경

1. 가구구조 변화

- 맞벌이 부부 및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주간 부재가구나 응답 곤란가구 증가
- 응답 여건이 여의치 않은 고령 부부 및 혼자 사는 노인 가구의 증가

2. 가치관 변화

- 근대화 과정에서 집단주의적 가치가 이완되고 개인주의의 팽배
⇒ 사생활 중시 경향, 각종 사회조사에 보수적·폐쇄적 자세 고조

3. 기술적 환경

- IT산업 발달은 자료수집 및 처리, 자원관리 등에 영향을 미침
 - 자료의 수집이나, 처리 공유는 물론 자원관리의 효율성 증대
 - 기술 환경의 변화는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며, 총조사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 가능

4. 행정적 환경(조사실시 체계)

-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읍면동의 통계기능이 시군구로 이관되어 조사인력의 동원 및 관리기능 등이 매우 취약
 - 인구주택총조사 실시체계는 조사원 동원 및 운영뿐만 아니라 조사표 배부 및 수집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 특히 읍면동의 역할은 매우 중요

Ⅲ. 추진목표 및 전략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수행

<p style="text-align: center;">원활한 조사추진</p> <p style="text-align: center;"><대규모 통계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체계적·합리적 업무추진 ▶ 업무단계별 추진 일정을 차질 없이 준수 ▶ 조사원 안전사고 및 각종 불편민원 최소화
<p style="text-align: center;">환경 변화에 대응</p> <p style="text-align: center;"><5년 주기로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변화에 적합한 조사기법의 개발·적용 ▶ 조사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대응 ▶ 현장조사 추진체계 및 기능 강화 ▶ 대국민 홍보의 강화
<p style="text-align: center;">정확·유용한 자료 신속 제공</p> <p style="text-align: center;"><국가기본통계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부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사항목 선정 ▶ 다양한 소지역통계의 제공 ▶ 모든 조사결과를 2006년 이내에 공표

중점 추진전략

- ◇ 종합시행계획의 조기수립으로 각종업무를 체계적·합리적으로 추진
- ◇ 현장 조사체계를 확립하여 원활한 조사 추진
- ◇ 총조사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사기법 개발·적용
- ◇ 조사대상의 중복·누락 최소화를 위한 조사현장 집중관리
- ◇ 정책부처의 통계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 선정
- ◇ IT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e-census 추진
- ◇ 대국민 홍보 강화로 열악한 조사환경 극복
- ◇ 전문 상담요원에 의한 080 콜 센터 운영으로 일관된 조사 추진
- ◇ Web기반 현지 입력 및 내검 실시로 자료처리기간 단축
- ◇ 최종결과 조기 공표(2006년 말까지 공표 완료)

IV. 추진현황 및 계획

1. 분야별 추진일정 및 방향

업무분야	추진일정	기본방향
1. 조사구 설정	2004. 3 ~ 200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총조사 및 행정자료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화 ◦ 새주소 지도를 활용하여 찾기 쉽고 정확한 조사용 지도를 작성 ◦ 변경이 심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 특별관리
2. 실시본부 구성·운영	2005. 3~200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조사 환경 변화에 부응한 조직 및 인력 운용체제 구축 ◦ 통계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구성 ◦ 통계청 실시본부 설치 : 2005. 3.29
3. 조사항목, 조사표 및 결과표 확정	~200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항목 및 결과표 조기 확정 ◦ 정책수요변화에 부응하고, 응답자 부담 경감 ◦ 정책부처, 전문가 및 이용자 의견 최대한 반영 ◦ 시도별 특성항목 설정 ◦ 전수 21개, 표본 44개 항목 선정
4. 조사표류 인쇄 및 용품 발주배부	2005. 3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상반기 중 발주 완료 ◦ 일부 조사표류 지방분산 제작 ◦ 경제적 총조사를 위한 절약 노력 ◦ 사용자 취향 및 용도 등을 적극 고려
5. 인력동원	2005. 4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총관리자 채용 ◦ 조사요원채용기준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전산 시스템에 의한 인력채용 및 관리
6. 교육훈련	2005. 8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관요원 정예화를 위한 훈련 강화 ◦ 관련 공무원 및 지도요원 교육 강화 ◦ e-learning 및 표준교육제도 도입을 통한 교육효과 극대화

업 무 분 야	추진일정	기 본 방 향
7. 대국민 홍보	2005. 1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조사환경 극복을 위한 획기적 홍보 전략 수립 ◦ 홍보 전문 업체 아웃소싱 ◦ 대중매체(TV, 신문) 홍보 대폭 확대 ◦ 뉴미디어(인터넷, 전화, 교통수단 등) 적극 활용
8. e-Census 실시	2005. 8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한 IT 인프라의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의 응답자 면접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한 인터넷 조사방법 도입 - 웹기반 현지(시군구) 입력 - 온라인 조사관리시스템 운영
9. 준비 및 본조사 실시	2005. 10 ~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DB 등 다양한 행정자료 적극 활용 ◦ 지도·감독요원의 최소 정예화 ◦ 취약지역 집중 관리 및 현장 조사오류의 최소화 방안 강구
10. 자료 입력 및 내검	2005. 11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에서 Web에 의한 직접 입력 및 특별조사구에 대한 ICR 방식 병행추진 ◦ 자료처리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입력 및 내검 소요기간 : 24일
11. 사후조사 실시	2005.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속방법으로 지방통계사무소를 통해 실시 ◦ 누락·중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조사 항목 개발
12. 최종결과 집계 및 공표	2006. 4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대비 3개월 이상 공표시기 단축
13. 자료제공 및 보고서 발간	2006. 5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제공범위 확대를 통한 고객 중심 서비스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조사항목의 읍면동 단위 공표가능성 검토
14. 평가 및 포상	2006. 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전 과정에서 성과측정 및 평가실시 ◦ 조사추진 모범사례 수집 및 평가대회 개최 ◦ 신상필벌 원칙 적용 강화

2.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

가. 교육·훈련

	교육대상(명)		교육기간	교관단 동원		
				담당	규모	기간
교관단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167 ◦ 지자체 247 	8.30~9.9	인구 조사과	본청 152명 지방청 70명 시군구 256명	2일	
지자체공무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공무원 4,383 ◦ 총 관리자 3,568 ◦ 업무보조원 5,170 	9.20~9.30	통계청 (본청)	130명	7~10일	
조사원교육						
전수 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조사원 63,898 	10.4~10.21	시군구 통계청	시군구 256명 통계청 87명	10~14일	
표본 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조사원 13,158 ◦ 예비조사원 7,706 ◦ 조사관리자 7,706 	10.4~10.21	통계청	134명	10~14일	

사전 사이버 교육 : 조사원 채용 직후 본교육 이전까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동영상 교재 사전학습 의무화

표준교육 : 사이버 교재/표준교안에 의한 통일된 교육 실시

나. 조사용품 제작·배부

조사용품류 현황

- 조사표 및 기입요령(전수, 표본), 가구홍보용 전단은 시도분산 제작되며, 홍보, 조사구 관련용품 별도 제작·배부

조사용품류 배송

- 배송물량 : 약 1,000톤(60여종)
- 배송업체 : 우체국
- 배송지 :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시간 및 장소에 배달

다. 대국민 홍보

□ 중앙 및 지역단위 홍보 병행 실시

○ 중앙단위

- 언론 : TV 캠페인 · 라디오 · 신문광고, 드라마 PPL, 방송사 다큐멘터리, 신문사 기획 캠페인 등
- 이벤트 : 추석연휴 톨게이트 캠페인, 엄마와 함께 알아보는 인구주택총조사, 미스터리 이벤트 등
- 인터넷 : 다음 온라인 지점 운영, 배너 및 VOD 광고 등
- 모바일 : 기업형 통화 연결음, SMS 발송
- 전화 : 음성자동전화메세지(크로샷), 114안내대기 시간 광고
- 옥외 : LED 전광판 광고, 홍보탑, 플래카드, 가로기 배너
- 교통 : 시내버스 광고
- 홍보물 : 포스터, 전단, 리플렛 등

○ 지역단위

- 방송광고 및 신문보도 : 지역 케이블 TV 광고, 전광판 광고 및 신문보도
- 옥외광고 : 홍보탑, 현수막, 플래카드, 가로기 배너 설치
- 기타 홍보 : 버스광고, 홍보물품 및 전단 제작 등 지역실정에 맞는 홍보 추진

V. 주요 특징

1. 2000년 대비 2005년 변화 내용

○ 조사내용

- 2000년 총조사 : 지식기반 및 정보화 사회 관련 항목 중심
- 2005년 총조사 : 저출산·고령화 및 주거의 질, 복지(장애) 등과 관련한 사항을 중점 조사, 지역단위 조사항목 채택
 - 저출산·고령화 : 초혼년월, 총출생아수, 추가계획자녀수, 고령자 생활비 원천 등
 - 주거의 질(質) : 침실수, 거주층 구분, 타지주택소유 여부, 건물 층수 등
 -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지자체별 통계자료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도별로 3개의 특성항목을 별도로 설정

○ 추진 방법

- 읍면동의 통계 기능이 시군구로 이관되면서, 인구주택총조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관리자」를 처음 채용
- 어려운 조사환경을 감안하여 대국민 홍보를 대폭 강화
- 자료처리 방법을 현지 Web 방식 입력으로 전환하여 최종 결과를 종전보다 3~7개월 단축하여 공표 예정
- 발달한 IT 산업을 적극 활용하여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인터넷조사를 처음으로 도입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동영상 교육을 실시하고, 온라인 조사관리를 통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추진
- 통계청뿐만 아니라, 전산망 운용 및 자료처리, 통신, 교육, 홍보 등에 민간 전문기술을 도입하여 명실상부한 21세기형 인구주택총조사를 실시하게 될 것임

○ 분야별 주요 변경사항

분 야	주 요 내 용	
	2000 총조사	2005 총조사
1. 조사원 업무량 및 조사기간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량 : 표본 1, 전수 2~3개조사구 조사기간 : 13일(교육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무량 : 표본 2, 전수 3~5개 조사기간 : 19일(교육포함)
2. 읍면동 총관리자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 공무원이 업무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읍면동별 1명의 책임자 채용 공무원은 전반적 사항만 관리
3. e-census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운영에 의한 민원 흡수 및 현장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ternet 조사 실시 온라인 조사관리 시스템 구축 Web 방식 자료처리 등
4. e-learning 및 표준 교육제도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원 교육시 비디오 교육자료를 통한 보충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사원 채용 직후에 Internet을 통하여 사전학습 실시 조사원 교육시 사이버 교재 및 표준교안 활용으로 교관별 표준 교육 실시
5. 실시기관 역할 강화 (시도 및 시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조사 중심으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특성항목 조사 교관요원으로 참여 자료입력 직접 추진
6. 조사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세기 새로운 정책수요에 부응하는 항목 조사(50개 항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정책수요에 부응 저출산고령화, 주거의 질 관련 항목 확대 지역 특성항목 설정
7. 자료처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외주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Web방식 및 ICR 처리 방식 병행 도입
8. 조사구 설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치지도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주소를 추가한 수치지도 활용 과거 총조사 및 행정자료를 이용한 가구수 파악
9. 행정자료 활용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수집 정보 간접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 행정정보(건축물대장), 한국감정원 자료 등
10. 자동코딩시스템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직업 행정구역 자동코딩 시스템 개발도입
11. 조사결과 조기공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정결과 : 2000. 12월 전수결과 : 2001. 9,10월 표본결과 : 2001.12, 2002. 4,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잠정결과 : 2005. 12월 전수결과 : 2006. 5,7월 표본결과 : 2006. 9, 11, 12월

2. 조사항목

□ 업무 추진 경과

- 기본계획 수립 : 2003. 4월
- 자료이용기관 의견수집 조사 : 2003. 4~5월
- 조사항목 학술용역(한국 인구학회, 주택학회) : 2003. 5~10월
- 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방향 설정 및 검토) : 2003. 7~12월
- 시·도 특성 항목(안) 수집 : 2004. 3~4월
- 조사항목(안) 현장 적용(시험 및 시범예행조사) : 2004. 7~11월
- 중앙행정기관 대상 조사항목 추가과약(국무총리 지시) : 2004. 8월
- 통계위원회 인구분과위원회 : 2005. 1월
- 조사항목 최종 확정 : 2005. 5월

□ 선정 결과(44개 항목)

구 분	항목 수	조 사 항 목
기본항목	13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5년전 거주지, 혼인 상태, 가구구분, 거주기간, 거처의 종류 및 건물층수, 연건평, 대지면적, 건축년도
저 출 산	4	아동보육실태, 혼인년월, 총출생아수, 추가계획자녀수
고 령 화	1	고령자 생활비 원천
사 회 · 복 지	3	남북이산가족, 종교, 활동제약(장애)
노 동 력	5	경제활동상태, 종사자 지위, 산업, 직업, 근로장소
교 통	5	통근통학여부, 통근통학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 소요 시간, 자동차 보유대수
주 거 의 질	10	사용방수, 주거시설형태, 거주층, 난방시설, 주택점유형태, 주택임차료, 총방수, 편의시설수, 주차시설, 주택소유여부

※ 시·도별 특성항목 3개 별도

□ 2000년 대비 2005년 조사항목 비교

○ 전수 항목 : 20개 → 21개 항목

구분	2000년	2005년	
		계속 조사	신규(추가)
계	20개 항목	17개 항목	4개 항목
인구	성명, 본관,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나이, 교육정도, 출생지, 혼인상태(8)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나이, 교육정도, 혼인상태(6)	종교(1) 이산가족(1)
가구	가구구분, 사용방수, 주거시설형태, 점유형태, 거처의 종류, 단독주택 종류, 주인대표가구여부(7)	가구구분, 사용방수, 주거시설형태+수도시설, 점유형태, 주인가구여부 +주택소유여부(5)	거주층(1), 난방시설(1), 주택소유여부(0)
주택	연건평, 대지면적, 총방수, 건축연도, 편의시설수(5)	연건평, 대지면적, 총방수, 건축연도, 편의시설수, 거처의 종류+단독주택 종류+건물층수(6)	건물층수(0)

○ 표본 항목 : 30개 → 20개 항목

구분	2000년	2005년	
		계속 조사	신규(추가)
계	30개 항목	16개 항목	4개 항목
인구	전공분야, 아동보육상태, 1년전 거주지, 5년전 거주지, 컴퓨터활용상태, 인터넷활용상태, 개인휴대용통신기기, 통근통학 여부, 통근통학 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 경제활동상태, 종사상의 지위, 산업, 직업, 현직업 근무연수, 총출생아수, 자녀거주장소, 생계수단, 주부양자, 거동불편여부(21)	아동보육실태, 5년전 거주지, 통근통학 여부, 통근통학 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 소요시간, 경제활동상태, 종사자 지위, 산업, 직업, 총출생아수, 고령자 생활비 원천(생계수단+주부양자), (12)	혼인년월(1), 추가계획자녀수(1), 활동제한(장애)(1), 근로장소(1) ※ 시도 특성 항목: 3개
가구	거주기간, 취사연료, 난방시설, 상수도 시설, 식수사용 형태, 정보통신기기 보유현황, 자동차 보유대수, 주차시설, 임차료(9)	거주기간, 자동차 보유대수, 주차시설, 주택 임차료(4)	
주택	-		

주) 밑줄은 2005년 조사에서 제외 또는 통합된 항목임

○ 시·도 특성항목 : 각 3개

서울특별시	자녀 출산시기/ 현 시·군·구 거주사유/ 다른 시·군·구 이동사유
부산광역시	노후준비방법/ 간호·수발자/ 최초 주택마련 시기 및 방법
대구광역시	다른 시·도 이동사유/ 식수 사용형태/ 최초 주택마련 시기 및 희망 주택형태
인천광역시	지역생활여건 만족도/ 컴퓨터 보유대수 및 인터넷 사용 여부/ 최초 주택마련 시기 및 방법
광주광역시	현 시·도 거주사유/ 다른 시·도 이동사유/ 지역생활여건 만족도
대전광역시	자원봉사/ 간호·수발자/ 지역생활여건 만족도
울산광역시	간호·수발자/ 치매·중풍시설 입소여부/ 지역생활여건 만족도
경기도	자녀 출산시기/ 현 시·도 거주사유/ 노후준비방법
강원도	현 시·도 거주사유/ 노후준비방법/ 컴퓨터 보유대수 및 인터넷 사용 여부
충청북도	노후준비방법/ 식수 사용형태/ 최초 주택마련 시기 및 방법
충청남도	간호·수발자/ 지역생활여건 만족도/ 최초 주택마련 시기 및 방법
전라북도	다른 시·도 이동사유/ 노후준비방법/ 컴퓨터 보유대수 및 인터넷 사용 여부
전라남도	다른 시·도 이동사유/ 노후준비방법/ 지역생활여건 만족도
경상북도	다른 시·도 이동사유/ 노후준비방법/ 가구 생활비 원천
경상남도	자녀 출산시기/ 간호·수발자/ 지역생활여건 만족도
제주도	컴퓨터 보유대수 및 인터넷 사용 여부/ 지역생활여건 만족도/ 가구 생활비 원천

※연도별 조사항목 수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계	31	28	40	28	45	28	50	44(3)
·전수	14	11	22	28	33	17	20	21
·표본	17	17	18		12	11	30	23(3)

*()내는 시·도 특성항목 수이며, 2005년 자료는 이를 포함한 수치임

[참고자료]

1. 2005인구주택총조사의 의의

□ 21세기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총조사

- 국가의 기본현상을 지난 20세기와 연결해 주며, 21세기의 비전을 제시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통계조사
- 21세기 풍요로운 복지·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시의성 있는 기초자료 제공

□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적기에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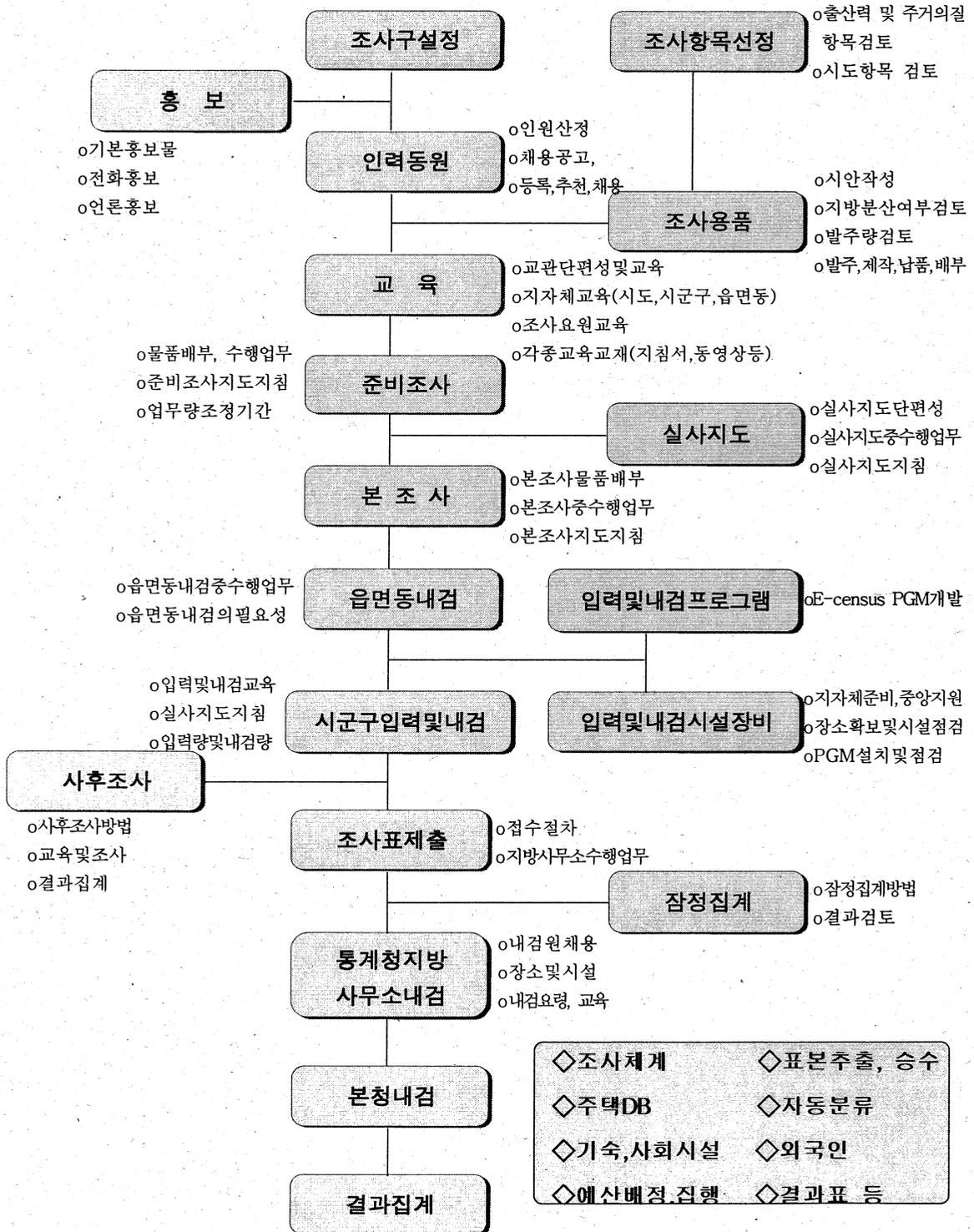
-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복지 등과 같은 사회현상에 대한 체계적 파악
- 최저주거기준의 도입으로 주택 정책이 양보다는 질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통계 수요에 부응

□ IT 인프라의 적극 활용을 통한 e-census 추진

- 1인 및 맞벌이 가구, 젊은 층 등 조사원의 면접조사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누락 방지 위한 인터넷 조사방법 도입
- 인터넷을 활용한 실시간 질의·답변을 통하여 일관성 있는 현장조사 추진
- 웹(Web)에 의한 분산입력 방식을 도입하여 최종결과를 조기에 공표
- 인터넷 기반으로 인적·물적 자원관리
- 인터넷과 각종자료 DB를 연계하여 현장조사 지원

2. 조사체계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일부 흐름도



3. 개인정보보호

- 모든 조사내용은 오직 통계자료로만 사용
 - 통계법 제 13조(비밀의 보호등), 제 14조(통계작성사무종사자들의 의무) 및 제 23조(벌칙)
- ※ 통계작성사무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누설 또는 타인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조사내용도 모두 숫자 및 부호화하여 입력함으로써 특정 개인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음.
 - 자료처리 후 조사표는 통제 장소에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함.
 - 보관 중에도 조사표 열람시 지정 공무원이외에는 출입이 엄격히 통제됨.
- 조사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 개인정보 비밀보호를 위해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조사원으로 임명하며 서약과 아울러 철저한 교육 실시
-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을 제정
 - 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실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을 제정

4. e-census

◆ IT 인프라의 적극 활용을 통한 「e-census」 실시

- 인터넷조사 도입으로 1인 및 맞벌이 가구, 젊은 층 등과 같이 조사원의 면접조사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누락방지
- 웹기반 현지입력 방식으로 자료처리 방법을 개선
- 온라인 조사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조사구, 인력, 물품 등에 대한 실시간 현황 파악 및 대처

가. 인터넷 조사

□ 목적

- 면접이 어려운 1인 및 맞벌이가구 등을 조사에 참여시켜 조사의 완전을 제고
- 조사원에 의한 면접조사, 자기응답기입식 이외에 또 다른 응답 방법 제공
- 차기 인터넷조사 확대 실시를 대비한 기반 구축

□ 실시 방법

- 인터넷조사 신청 : 2005. 10. 29~11. 7(10일간)
 - 준비 및 본조사 기간 중 총조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 신청가구 주소를 기준으로 주소DB와 연계하여 전수/표본을 자동 구분
- 인터넷 조사표 작성·제출 : 11. 1~11. 10(10일간)
 - 신청가구가 인터넷상에서 신청 아이디를 이용하여 조사표 입력
- 읍면동에서 조사구, 거처, 가구번호 입력(응답후 11.15까지)
- 미입력 가구 방문조사 : 2005. 11. 11~11. 15
 - 신청 가구 중 기간 내 입력하지 않은 가구는 방문 면접조사 실시

나. 웹기반 현지 입력 및 내검

□ 목적

- 현지에서 분산 입력 및 내검으로 자료 검토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료처리 기간 단축

□ 실시 방법

- 시군구 단위에서 조사요원 중 입력 및 내검원을 선발하고 임무부여
- 소요 PC 및 입력 장소는 자체확보를 원칙으로 함

다. 온라인 조사관리

□ 목적

- 정확한 현장조사 지원, 실사 및 내검의 효율적 지도
- 각종 행정서류 전산 작성으로 신속한 행정처리 지원 등

□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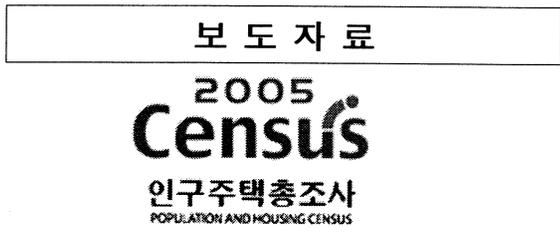
- 조사요원, 물품, 조사구 관리, 조사관련 행정서류

□ 실시 방법

- 조사구, 조사요원, 주택 등 DB를 구축하여 조사구, 인력, 물품 등 총조사 준비 및 관리를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실시

5. 결과 활용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경제 · 사회 · 보건 · 교육 · 인력개발 · 주택 등 각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입안과 균형 있는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및 이의 평가를 위한 기본 통계자료로 활용함
 - 고용구조 및 인력 대책 마련(노동부)
 - 주택정책 수립(건설교통부, 재정경제부)
 - 국토건설종합계획 수립(건설교통부)
 - 아동 · 노인 복지정책 수립(보건복지부)
 - 고용보험 개발(노동부)
 - 농어촌 구조개선 대책(농림부, 해양수산부)
 - 병역자원예측(국방부)
 - 철도 수송계획(철도공사)
 - 대도시 교통망 건설계획 수립(건설교통부, 서울시 및 광역시)
 - 중소기업 육성시책 수립(중소기업청,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 시도별 주택건설계획 수립(대한주택공사)
 - 여성복지정책 수립(여성부, 여성개발원)
- 각종 비교 · 분석자료를 위한 기본 통계자료로 활용
 - 노동통계비교(노동부, 노동연구원)
 - GNP 작성(한국은행)
 - 지역인구 및 생산현황작성(시도)
 - 고용통계비교, 소비자물가지수 도시별 가중치 산정(통계청)
 - 지역소득추계(통계청)
-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설계를 위한 표본틀로 활용
 - 각종 통계조사의 표본설계(통계청)
 - 농수산 통계 표본설계(통계청, 농림부, 해양수산부)
 - 학술 · 정책 연구소의 각종 조사의 표본설계
- 대학의 연구자료, 개인 논문자료로 활용
- 기업의 판매계획, 공장입지 선정 등을 위한 기본 통계자료로 활용



담당과	통계청 인구조사과
과장	신승우 (申昇雨)
사무관	안병건 (安秉建)
전화번호	(042) 481-2369

이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및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에도 있습니다.

**‘2005인구주택총조사’ 11월 1일부터 본격 실시
- 10만 조사원, 보름간 전국 가가호호 방문조사 -**

오갑원 통계청장은 2005인구주택총조사의 실시를 하루 앞둔 10월 31일, 과천정부 종합청사에서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리고, 국민들의 참여를 당부하는 브리핑을 하였다.

조사 업무에 관한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10만여 조사원들은 지난 10월 29일부터 3일간 자신이 조사할 구역에 대한 준비 조사를 마친 상태이다.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모든 가구는 조사원증을 지닌 조사원들이 방문 하였을 시, 조사원의 설명에 따라 응답하거나, 스스로 조사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두 방식으로 참여가 어려운 가구는 인터넷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응답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080 콜센터 (080-456-2005)로 문의하면 된다.

5년에 한번씩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전국의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내용을 파악하는 대규모 통계조사이다. 최근 저출산, 고령화, 삶의 질, 복지 부문에 관심이 깊은 만큼 이 분야에 대한 심층조사가 이루어진다. 한편, 통계청은 우리나라가 자랑할 수 있는 IT 기술을 인구주택총조사의 각 분야에 접목시킨 만큼 자료처리기간을 과거보다 3~7개월 단축시켜 오는 12월 잠정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2006년 12월까지 전수, 표본 조사의 최종 결과를 공표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오갑원 통계청장은 ‘21세기에 처음 실시하는 이번 총조사는 급변하는 사회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경제, 사회 전반의 중요한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의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며, ‘조사에 응답한 개인정보는 법으로 엄격히 보호되고, 조사의 혜택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목 차

2005 인구주택총조사

I. 추진목표 및 전략	1
II. 주요특징	2

<참고자료>

1. 조사개요	4
2. 조사항목	4
3. 분야별 주요사항	6
4. 조사원 교육	8
5. 조사 참여방법	9
6. 개인정보보호	10
7. 결과활용	10

I. 추진목표 및 전략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수행

열악한 조사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구조의 변화 :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및 노인 가구 등의 증가 ▪ 가치관의 변화 : 개인주의 팽배와 사생활 보호의식 강화 ▪ 조사체계 변화 : 읍면동의 통계기능이 시군구로 이관되어 조사인력의 동원 및 관리기능 등이 매우 취약
---------------------	---

원활한 조사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 통계조사인 만큼 ▶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체계적·합리적 업무추진 ▶ 업무단계별 추진 일정을 차질 없이 준수 ▶ 조사원 안전사고 및 각종 불편민원 최소화
---------------------	--

정확·유용한 자료 신속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가장 중요한 통계 조사인 만큼 ▶ 정책부처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조사항목 선정 ▶ 다양한 소지역통계의 제공 ▶ 모든 조사결과를 조기에 공표
----------------------------	---

중점 추진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합시행계획의 조기수립으로 각종업무를 체계적·합리적으로 추진 ▪ 정책부처의 통계수요를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 선정 ▪ 총조사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사기법 개발·적용 ▪ 조사대상의 중복·누락 최소화를 위한 조사현장 집중관리 ▪ 현장 조사체계를 확립하여 원활한 조사 추진 ▪ 대국민 홍보 강화로 열악한 조사환경 극복 ▪ IT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e-census 추진 ▪ 전문 상담요원에 의한 080콜센터(080-456-2005) 운영으로 일관된 조사 추진 ▪ Web기반 현지 입력 및 내점 실시로 자료처리기간 단축 ▪ 최종결과 조기 공표(2005. 12월 잠정결과 공표)
--	---

II. 주요특징

1. 21세기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총조사

- 국가의 기본현상을 지난 20세기와 연결해 주며, 21세기의 비전을 제시 하는데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는 통계조사
- 21세기 풍요로운 복지·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시의성 있는 기초 자료 제공

2. 급변하는 사회현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적기에 제공

-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복지 등과 같은 사회 현상에 대한 체계적 파악
- 최저주거기준의 도입으로 주택 정책이 양보다는 질 위주로 전환됨에 따라 관련 통계 수요에 부응
- 이번 조사항목에는 시도별로 3개 항목(*5쪽 참조)을 선택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단위로 필요한 자료를 만들고,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이는 계기 마련

3. IT 인프라의 적극 활용을 통한 e-census 추진

- 1인 및 맞벌이 가구, 젊은 층 등과 같이 조사원의 면접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인터넷 조사방법 도입
- 080 콜센터를 활용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일관성 있는 현장 조사 지원
- 웹(Web)에 의한 현지입력 방식을 도입하여 최종결과를 조기에 공표

- 행정자료의 전산화 발달에 따른 각종자료 적극 활용
(수치지형도, 새주소지도, 건축물대장, 특수사회시설, 외국인 등록현황, 종교관련 시설현황 등)

4. IT 전문업체의 아웃소싱을 통한 최선의 민간 기술을 통계조사 추진에 처음으로 도입

- 전산망 운용 및 자료처리 등 전체 조사 및 인적·물적 자원 관리에 on-line 시스템 도입
- 통신, 교육(사이버 영상교재), 홍보 등에 민간 전문기술 도입

5. 열악한 조사환경 극복을 위한 대국민 홍보 강화

- 국정홍보처 협조 및 홍보 전문업체에 대한 아웃소싱을 통한 범정부적·전문적 홍보 추진
- 광고효과가 높은 TV, 라디오 등의 공중파를 이용한 광고를 실시하고, 중복·누락 가능성이 큰 젊은 층의 취향에 맞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이용한 광고 실시
- 또한, 추석연휴 톨게이트 캠페인, “엄마와 함께 알아보는 인구주택총조사” 등의 각종 이벤트를 적극 도입

6. 다양하고 유용한 조사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국민에게 공표함으로써 고객 만족도 제고

- 모든 조사결과를 2006년 이내에 공표 (과거 총조사 대비 3~7개월 단축)

< 참고자료 >

1. 조사개요

시 점	2005. 11. 1. 0시 현재	
대 상	조사 기준시점 현재 대한민국 영토내에 상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	
실시기간	준비조사	전수 : 3일 (10.29~31) , 표본 : 2일 (10.30~31)
	본조사	15일간 (2005. 11. 1 ~ 11. 15)
체 계	주관	통계청
	실시	지방자치단체 및 6개 중앙행정기관
방 법	조사원 면접방식, 응답자 기입방식, 인터넷 조사방식 병행	
항 목	전수조사 21개, 표본조사 44개(시도 특성항목 3개 포함)	
동원인력	총 111.0천명(공무원 5.5천명, 조사요원 105.5천명)	
결과공표	잠정결과	2005. 12월
	집계결과	2006. 5, 7, 9, 11, 12월
	특성별분석	2006. 9 ~ 2007. 12월

2. 조사항목 (전수 21개, 표본 44개)

□ 전국항목 : 41개

구 분	항목수	전 수 항 목 (21개)	표 본 항 목 (20개)
기본항목	13	성명, 성별, 나이, 가구주와의 관계, 교육정도, 혼인상태, 가구구분, 거처의 종류 및 건물층수, 연건평, 대지면적, 건축년도(11개)	5년전 거주지, 거주기간(2개)
저 출 산	4		아동보육실태, 혼인년월, 총 출생아수, 추가계획자녀수 (4개)
고 령 화	1		고령자 생활비 원천(1개)
사 회 · 복 지	3	남북이산가족, 종교(2개)	활동제약(장애) (1개)
노 동 력	5		경제활동상태, 종사자 지위, 산업, 직업, 근로장소 (5개)
교 통	5		통근통학여부, 통근통학장소, 이용교통수단, 통근통학 소요 시간, 자동차 보유대수 (5개)
주 거 의 질	10	사용방수, 주거시설형태, 거주층, 난방시설, 주택점유형태, 총방수, 편의시설수, 주택소유여부(8개)	주택임차료, 주차시설(2개)

※ 시·도별 특성항목 3개 별도, 밑줄은 2005년 신규추가 항목(8개)임

□ 시·도 특성항목 : 각 3개

서울특별시	자녀 출산시기/ 현 시·군·구 거주사유/ 다른 시·군·구 이동사유
부산광역시	노후준비방법/ 간호·수발자/ 최초 주택마련 시기 및 방법
대구광역시	다른 시·도 이동사유/ 식수 사용형태/ 최초 주택마련 시기 및 희망 주택형태
인천광역시	지역생활여건 만족도/ 컴퓨터 보유대수 및 인터넷 사용 여부/ 최초 주택마련 시기 및 방법
광주광역시	현 시·도 거주사유/ 다른 시·도 이동사유/ 지역생활여건 만족도
대전광역시	자원봉사/ 간호·수발자/ 지역생활여건 만족도
울산광역시	간호·수발자/ 치매·중풍시설 입소여부/ 지역생활여건 만족도
경기도	자녀 출산시기/ 현 시·도 거주사유/ 노후준비방법
강원도	현 시·도 거주사유/ 노후준비방법/ 컴퓨터 보유대수 및 인터넷 사용 여부
충청북도	노후준비방법/ 식수 사용형태/ 최초 주택마련 시기 및 방법
충청남도	간호·수발자/ 지역생활여건 만족도/ 최초 주택마련 시기 및 방법
전라북도	다른 시·도 이동사유/ 노후준비방법/ 컴퓨터 보유대수 및 인터넷 사용 여부
전라남도	다른 시·도 이동사유/ 노후준비방법/ 지역생활여건 만족도
경상북도	다른 시·도 이동사유/ 노후준비방법/ 가구 생활비 원천
경상남도	자녀 출산시기/ 간호·수발자/ 지역생활여건 만족도
제주도	컴퓨터 보유대수 및 인터넷 사용 여부/ 지역생활여건 만족도/ 가구 생활비 원천

○ 2005년 조사항목은 44개로 2000년의 50개 보다 항목이 다소 감소

- 5년주기의 조사항목과 10년 주기의 조사항목이 있으므로 '5'자 주기에서 조사항목이 다소 감소

※연도별 조사항목 수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 계	31	28	40	28	45	28	50	44(3)
·전수	14	11	22	28	33	17	20	21
·표본	17	17	18		12	11	30	23(3)

*()내는 시·도 특성항목 수이며, 2005년 자료는 이를 포함한 수치임

3. 분야별 주요사항

업무분야	추진일정	기본방향
1. 조사구 설정	2004. 3 ~ 2005.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총조사 및 행정자료를 활용한 저비용·고효율화 ◦ 새주소 지도를 활용하여 찾기 쉽고 정확한 조사용 지도를 작성 ◦ 변경이 심한 지역에 대한 지속적 특별관리
2. 실시본부 구성·운영	2005. 3~200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조사 환경 변화에 부응한 조직 및 인력 운용체제 구축 ◦ 통계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구성 ◦ 통계청 실시본부 설치 : 2005. 3.29
3. 조사항목, 조사표 및 결과표 확정	~2005.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항목 및 결과표 조기 확정 ◦ 정책수요변화에 부응하고, 응답자 부담 경감 ◦ 정책부처, 전문가 및 이용자 의견 최대한 반영 ◦ 시도별 특성항목 설정 ◦ 전수 21개, 표본 44개 항목 선정
4. 조사표류 인쇄 및 용품 발주배부	2005. 3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상반기 중 발주 완료 ◦ 일부 조사표류 지방분산 제작 ◦ 경제적 총조사를 위한 절약 노력 ◦ 사용자 취향 및 용도 등을 적극 고려
5. 인력동원	2005. 4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읍면동 총관리자 채용 ◦ 조사요원채용기준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 ◦ 전산 시스템에 의한 인력채용 및 관리
6. 교육훈련	2005. 8 ~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관요원 정예화를 위한 훈련 강화 ◦ 관련 공무원 및 지도요원 교육 강화 ◦ e-learning 및 표준교육제도 도입을 통한 교육효과 극대화

업 무 분 야	추진일정	기 본 방 향
7. 대국민 홍보	2005. 1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악한 조사환경 극복을 위한 획기적 홍보 전략 수립 ◦ 홍보 전문 업체 아웃소싱 ◦ 대중매체(TV, 신문) 홍보 대폭 확대 ◦ 뉴미디어(인터넷, 전화, 교통수단 등) 적극 활용
8. e-Census 실시	2005. 8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한 IT 인프라의 적극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원의 응답자 면접이 어려운 취약 계층을 위한 인터넷 조사방법 도입 - 웹기반 현지(시군구) 입력 - 온라인 조사관리시스템 운영
9. 준비 및 본조사 실시	2005. 10 ~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DB 등 다양한 행정자료 적극 활용 ◦ 지도·감독요원의 최소 정예화 ◦ 취약지역 집중 관리 및 현장 조사오류의 최소화 방안 강구
10. 자료 입력 및 내검	2005. 11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군구에서 Web에 의한 직접 입력 및 특별조사구에 대한 ICR 방식 병행추진 ◦ 자료처리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입력 및 내검 소요기간 : 24일
11. 사후조사 실시	2005.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속방법으로 지방통계사무소를 통해 실시 ◦ 누락중복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조사 항목 개발
12. 최종결과 집계 및 공표	2006. 4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대비 3개월 이상 공표시기 단축
13. 자료제공 및 보고서 발간	2006. 5 ~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제공범위 확대를 통한 고객 중심 서비스 지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조사항목의 읍면동 단위 공표가능성 검토
14. 평가 및 포상	2006. 1~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사 전 과정에서 성과측정 및 평가실시 ◦ 조사추진 모범사례 수집 및 평가대회 개최 ◦ 신상필벌 원칙 적용 강화

4. 조사원 교육

□ 교육 · 훈련

	교육대상(명)		교육기간	교관단 동원		
				담당	규모	기간
교관단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계청 167 ◦ 지자체 247 		8.30~9.9	인구조사과	본청 152명 지방청 70명 시군구 256명	2일
지자체공무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담당 공무원 4,383 ◦ 총 관리자 3,568 ◦ 업무보조원 5,170 		9.20~9.30	통계청(본청)	130명	7~10일
조사원교육						
전수 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수조사원 63,898 		10.4~10.21	시군구 통계청	시군구 256명 통계청 87명	10~14일
표본 조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본조사원 13,158 ◦ 예비조사원 7,706 ◦ 조사관리자 7,706 		10.4~10.21	통계청	134명	10~14일

- 사전 사이버 교육 : 조사원 채용 직후 본교육 이전까지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동영상 교재 사전학습 의무화
- 표준교육 : 사이버 교재/표준교안에 의한 통일된 교육 실시
- 조사요원 안전수칙 : 각종 사고의 위험과 야간방문조사 증가 등 열악해져 가는 조사환경으로부터 조사원이 원활한 조사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지침 교육

5. 조사 참여방법

□ 조사원 면접 방식 (11월 1일~ 15일)

- 조사원이 조사 대상 가구를 방문하여 응답자를 대상으로 조사 사항을 질의하고 응답 내용을 조사표에 기입

□ 응답자 기입 방식 (11월 1일~ 15일)

- 면접조사 방법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기를 희망하는 가구는 응답자 기입조사방법으로 조사
- 조사표를 배부 받은 응답자가 응답 내용을 조사표에 기입하는 방법으로 조사원은 약속 일자에 조사표를 회수
- 내검 후 누락 사항 발견 시 면접 또는 전화조사 실시

□ 인터넷 조사 방식 (10월 29일~11월 10일)

- 인터넷조사는 원룸이나 젊은 층 밀집지역, 오피스텔 등과 같이 주간 부재가구가 많은 지역을 주 대상으로 하며, 준비 조사 기간 중에 별도 홍보지를 배포하여 참여 유도
- 응답자가 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를 통하여 조사 내용을 작성하고 자료 전송
- 내검 후 누락 사항 발견 혹은 미입력 시 면접 조사 실시

※ 080 콜센터 (080-456-2005) 상시운영

- 100여명의 콜센터 전문 요원이 인구주택총조사 안내

6. 개인정보보호

모든 조사내용은 오직 통계자료로만 사용

- 통계법 제 13조(비밀의 보호등), 제 14조(통계작성사무종사자등의 의무) 및 제 23조(벌칙)
- 조사내용도 모두 숫자 및 부호화하여 입력함으로써 특정 개인에 대해 전혀 알 수 없음.
- 자료처리 후 조사표는 통제 장소에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함

조사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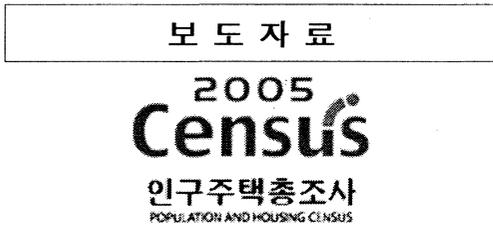
- 개인정보 비밀보호를 위해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조사원으로 임명하며 서약과 아울러 철저한 교육 실시
- ※ 금번 조사에서는 주민등록번호와 가구의 금융관계를 문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다만, 인터넷 조사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의 확인을 받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제시)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을 제정

- 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실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을 제정

7. 결과활용

- 총조사에서 얻어지는 통계는 경제·사회·보건·교육·인력개발·주택 등 국가의 각종 정책 수립과 이의 평가 자료로 활용
- 기업의 경영, 대학의 연구자료 등 폭넓게 활용됨
- 특히, 읍면동 단위까지 통계 자료가 작성·제공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자료가 됨
- 한 나라를 경영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통계가 생산되기 때문에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는 무형의 사회간접자본이라고 할 수 있음



담 당 과	통계청 인구조사과
과 장	신 승 우 (申昇雨)
사 무 관	안 병 건 (安秉建)
전 화 번 호	(042) 481-2369

이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및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www.census.go.kr)에도 있습니다.

‘2005인구주택총조사’ 높은 국민 참여 속에 성공적 마감
-국민 소중한 답변, 국민을 위한 통계로 보답할 터-

오갑원 통계청장은 18일 2005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인 완료를 알리고, 국민의 참여에 감사드리는 브리핑을 가졌다.

11월 1일부터 보름간 전 국민, 전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인구주택총조사는 극 소수 장기 부재 및 불응가구를 제외하고 높은 참여율을 보이며 마감되었으며, 앞으로 조사표 입력 및 내검, 그리고 분석 및 결과 공표 등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사회 환경 변화 및 낮 동안의 부재 가구 증가로 2005년 총조사 여건은 그 어느 해 보다도 어려웠다. 저출산, 고령화, 복지 부문에 초점을 맞춘 이번 조사는 민감한 내용의 조사항목에 대한 논란과 함께, 조사원과 일부 응답자간의 마찰,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으로 참여율이 다소 낮을 것으로 염려했으나 예상 참여율을 웃도는 수치를 보이며 마감되었다.

통계청은 장기 부재 및 불응 가구에 대하여 조사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협조라인을 구축하고 공무원에 의한 추가 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조사 마감에 이어서 오는 28일부터 12월 22일까지는 각 시군구별로 조사 내용에 대한 입력 및 검토 작업이 실시된다. 우리나라의 IT 기술을 바탕으로 조사결과의 공표시기는 과거보다 3~7개월 단축된다. 오는 12월 잠정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2006년 5월(인구)과 7월(가구 및 주택) 전수조사 집계결과를 발표하고, 2006년 9월, 11월, 12월에는 표본조사 집계결과를 특성별로 나누어 공표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오갑원 통계청장은 ‘다소 민감한 조사 내용에 대한 부담과 일일이 시간을 내어 참여해야 하는 불편함에도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철저한 자료처리 과정을 거쳐 신뢰도 높은 통계 자료를 사회에 제공함으로써, 조사 참여 혜택이 온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05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공표

기본방향

- * 잠정 집계 결과를 2005년 말까지 공표
- * 모든 조사 집계 결과를 2006년 이내 공표(3~7개월 조기 공표)
- * 다양한 분석 결과와 지역 통계 제공 확대

1. 조사 현황 및 현안과제 해결

- 2005인구주택총조사, 국민 협조 속에 극소수를 제외하고 조사 완료
- 부재 및 불응가구에 대한 최종 확인 및 최소정보 수집
 - 성별, 연령, 가구원수, 거처형태 등 기본사항을 주변을 통해 확보
- ⇒ 조사 불능 집단 현황 파악
- ⇒ 최소 정보 미확보 지역에 대한 추가 조사 실시

2. 대국민 협조 감사

-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속에 높은 참여율로 2005인구주택총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응답 내용은 오로지 통계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입니다.
- 조사 결과는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정책을 세우는데, 가장 필수적인 자료가 될 것입니다.

3. 개인 정보 보호

모든 조사내용은 오직 통계목적으로만 사용

- 통계법 제 13조(비밀의 보호등), 제 14조(통계작성사무종사자 등의 의무) 및 제 23조(벌칙)
- 조사내용을 부호화하여 입력함으로써 특정 개인에 대한 정보 보호
- 자료처리 후 조사표는 통제 장소에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

조사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 개인정보 비밀보호를 위해 신분이 확실한 사람을 조사원으로 임명하며 서약과 아울러 철저한 교육 실시

인구주택총조사 규칙

- 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실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규칙을 제정

조사 ~ 집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익명화하고, 조사자료 그 자체는 어떤 기관·개인에게도 제공되지 않음 (집계·분석 후 파기)

4. 자료 활용

총조사에서 얻어지는 통계는 경제·사회·보건·교육·인력개발·주택 등 국가의 각종 정책 수립과 이의 평가 자료로 활용

- 특히, 2005년 조사결과는 저출산·고령화, 주거의 질, 복지 등 현안 정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임

기업의 경영, 대학의 연구자료 등 폭넓게 활용됨

특히, 읍면동 단위까지 통계 자료가 작성·제공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필수적인 자료가 됨

5. 결과 공표

□ 잠정 집계 결과

- 최신의 자료를 조기에 활용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시기 : 2005. 12월 말 이전
- 내용 : 인구·가구·주택에 대해 읍·면·동 단위까지 공표
 - 인구부문 : 성별, 인구
 - 가구부문 : 일반·집단·외국인 가구 수
 - 주택부문 : 주택유형별(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주택 수

□ 최종 집계 결과

- 추진 방향
 - 전수 조사항목과 표본 조사항목으로 구분하되 특성별로 묶어서 공표
 - 소지역 통계 제공 범위 확대
- 내용별 공표 시기

공 표 내 용		공표시기(예정)
전수 조사 항목	인구 부문	2006. 5월
	가구·주택 부문	2006. 7월
표본 조사 항목	인구이동, 통근·통학 부문	2006. 9월
	산업·직업, 주거·복지 부문	2006. 11월
	여성·아동, 고령자, 1인가구 부문	2006. 12월

6. 향후 주요업무 추진일정 및 방향

업 무 분 야	추진 일정	기 본 방 향
자료입력 및 1차내검 (시군구)	2005. 11~12월	
2 차 내 검 (통계청 지방청)	2006. 1~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조사구 : Web에 의한 직접 입력 ◦ 특별조사구 : ICR 입력 ◦ 자료처리기간을 3개월 이상 단축
3 차 내 검 (본청)	2006. 3~4월	
최종 결과 공표	2006. 5~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 대비 3~7개월 공표시기 단축
자료제공 및 보고서 발간	2006. 5월~ 2007.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제공범위 확대를 통한 고객 중심 서비스 지향 - 표본조사항목 중 읍면동 단위 항목 개발

<참고> 조사항목 관련 주요국 사례

1. 인구총조사(Population census)

조사항목	대한민국	미국	일본	UN 권고안	비고(조사목적)
성 명	○ (미입력)	○	○	-	조사대상 확인, 중복누락 방지
연 령	○	○	○	기본항목	
교육정도	○	○	○	기본항목	취학상태, 국가 교육정책, 타항목 연계분석
혼인상태	○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기본항목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장래가구형성 및 소멸 예측, 가구추계 기초, 출산력 분석, 타항목 연계분석
출 생 지	○	○	○	기본항목	생애 인구이동 파악
종 교	○ (’85, ’95, ’05)	-	-	권고항목	종교관련 정책 기초 종교인구의 경제사회적 특성
통근통학 관련	○	○	○	권고항목	주야간 인구변동분석 교통정책, 주간인구 행정수요 예측, 교통망 건설, 도시계획 등
초혼연령	○ (’75, ’80, ’90, ’05)	-	-	권고항목	출산력 분석 초혼연령 변화 분석
경제활동 상태	○	○	○	기본항목	경제활동상태, 취업구조, 노동력 수급, 고용대책 등
종사상 지위	○	○	○	기본항목	취업형태 및 구조파악, 노동력 수급 및 고용대책
산 업	○ (사업체 이름, 내용)	○ (사업체이름, 직장종류, 주취급 일)	○ (사업체이름, 일의 종류)	기본항목	산업구조 및 취업형태, 노동력 수급 및 고용대책, 산업구조관련 정책 수립 등)
직 업	○ (부서 및 직책, 일의종류)	○ (직업, 주요활동 및 임무)	○ (실제하고 있는 일의 종류)	기본항목	직업구조 및 취업형태, 노동력 수급 및 고용대책, 교육 및 직업의 연계성 등)
개인소득	-	○	○ (가구소득)	권고항목	
심신장애	1980, 2005	○	-	권고항목	복지정책

2. 주택총조사(Housing census)

조사항목	대한민국	미국	일본	UN 권고안	비고
거처의 종류	○	○	○	정의	주택보급률, 거처수, 가구수, 핵수 등 주택정책 수립
가구구분	○	-	○	정의	가구주계 기초, 가족 및 인구구조 분석, 인력공급 전망, 가구규모 결정요인
점유형태	○ (자기집, 전세, 월세, 사글세, 무상)	○	○	권고	주거실태, 주택보급률 등 주택정책 자료
사용방수	○	-	-	기본항목	주택정책, 주거의 질 파악 등
임차료	○ (1985~)	○	○	기본항목	주택정책 기초자료
연건평	○	-	○	기본항목	주택정책, 주거의 질 파악 등
대지면적	○	-	○	-	주택정책, 주거의 질 파악 등
총방수	○	○	○	기본항목	주택정책, 주거의 질 파악 등